2024회계연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외 교 부	소관
통 일 부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재 외 동 포 청	소관

2025. 8.

외 교 통 일 위 원 회

2024회계연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5. 8.
외교통일위원회

Ⅰ. 소관 기관 회부 결산

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o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o 기금 :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2. 통일부 소관

o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o 기금 : 남북협력기금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o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 5. 30.

2. 회부일자 : 2025. 6. 2.

3. 상정 및 의결일자

가. 외교부 소관

□ 제428회국회(임시회)

o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 8. 18.)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 8. 19.)

- 상정・대체토론

o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 8. 20.)

- 상정・대체토론・원안의결

나. 통일부 소관

□ 제428회국회(임시회)

o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 8. 18.)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 8. 19.)

- 상정・대체토론

o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 8. 20.)

- 상정・ 대체토론・원안의결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제428회국회(임시회)

o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 8. 18.)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 8. 19.)

- 상정・대체토론

o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 8. 20.)

- 상정· 대체토론・원안의결

라. 재외동포청 소관

□ 제428회국회(임시회)

o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 8. 18.)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 8. 19.)

- 상정・대체토론

o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 8. 20.)

- 상정· 대체토론・원안의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외교부 소관 :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I.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 입

< 세입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과 목	세 입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 차 (C-A)	예산액대 수납액 비율 (C/A)
재산수입	559	440	438	-	2	△121	78.4
경상이전수입	7,203	16,393	16,099	-	294	8,896	223.5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37,200	197,853	197,853	-	-	60,653	144.2
수입대체경비 수입	132,361	154,022	154,022	-	-	21,661	116.4
합 계	**277,323**	**368,708**	**368,412**		**296**	**91,089**	**132.8**

2024년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773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684억 1,200만원으로 당초 세입 예산액 대비 910억 8,900만원이 증가(132.8%)하였음. 수납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경상이전 수입 88억 9,6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06억 5,300만원, 수입대체경비수입 216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세입증감액조서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편성대비 증감액		증 감 사 유
	증	감	
11관 재산수입	**299**	**419**	국유재산 건물 임대 수입액 감소 및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 수입액 증가
51항 관유물대여료	-	419	
511목 토지대여료	35	-	
512목 건물대여료	-	419	
54항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64	-	
546목 기타재산이자수입	264	-	
12관 경상이전수입	**8,895**	-	국고보조금(분담금)반환 등 기타경상이전 수입액 증가
56항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38		
564목 징계부과금	38		
57항 변상금 및 위약금	18	-	
571목 변상금	4	-	
572목 위약금	14	-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8,839	-	
596목 기타경상이전수입	8,839	-	
13관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0,653**	-	사증 및 공증 수수료 등 영사 수입액 증가
65항 면허료 및 수수료	60,332	-	
651목 면허료 및 수수료	60,332	-	
69항 잡수입	321	-	
691목 기타잡수입	321	-	
14관 수입대체경비수입	**21,661**	-	여권 수수료 수입액 증가
65항 면허료 및 수수료	21,661	-	
651목 면허료 및 수수료	21,661	-	
합 계	**91,508**	**419**	

2. 세 출

가. 개 요

< 세출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C/A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4,029,753	4,056,957	3,911,217	97.1	96.4	1,934	143,805

※ 예산현액(4,056,957) = 당초예산액(4,029,753) + 전년도 이월액(9,004) + 수입대체초과지출승인액(18,200)

2024년도 당초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4조 297억 5,3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90억 400만원 및 수입대체초과지출승인액 182억원으로 인하여 예산현액은 4조 569억 5,700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 3조 9,112억 1,700만원을 집행(97.1%)하였고, 19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38억 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나. 예비비

해당사항 없음.

다. 전 용

< 전용 개요 >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전 용 사 유	금 액
기 타	재외공관 개설 및 청사 임차료 인상	4,700
	교체여비	2,644
	재외공관 공공요금 부족	2,128
	재외공관 직원 의료비 보상	1,383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984
	신설 공관 외교정보시스템 구축	73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민간지원요원 채용	613
	정상 및 총리 해외순방행사	338
	기타	2,277
합 계		15,801

2024년도 전용액은 총 158억 100만원으로, 재외공관 개설 및 청사 임차료 인상 47억, 교체여비 26억 4,400만원, 재외공관 공공요금 21억 2,800만원 등에 전용되었음.

라. 이 용

< 이용 개요 >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이 용 사 유	금 액
기 타	유엔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비 부족	1,380
합 계		1,380

2024년도 이용액은 총 13억 8,000만원으로, 유엔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비 부족으로 이용되었음.

마. 수입대체경비

< 수입대체경비 세출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과 목	세출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초과 지출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증감액	이용·이체액	초과지출 승인액					
외교·통일	141,030	64	-	-	18,200	159,294	158,899	63	331	-
-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 (수입대체경비)	141,030	64	-	-	18,200	159,294	158,899	63	331	-

2024년도 수입대체경비의 당초 세출예산액은 1,410억 3,0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400만원, 초과지출승인액 182억원이 합산되어 예산현액은 1,592억 9,400만원임.

이 중 1,588억 9,900만원이 집행되었고, 6,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3,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바. 이 월

< 이월 개요 >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이월사유	금 액
미지급금 이월	계약조건에 따른 미지급금 발생 등	1,036
	연구용역 미완료로 인한 이월 등	612
	소 계	**1,648**
사업계획 변경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165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 증가	121
	소 계	**286**
합 계		**1,934**

2024년도 이월 규모는 19억 3,400만원으로, 계약조건에 따른 미지급금 이월(10억 3,600만원) 발생 등이 주요 사유임.

사. 불 용

< 불용 개요 >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불 용 사 유	금 액
지급사유 미발생	인건비 지급사유 미발생 등	2,330
	소 계	**2,330**
계획변경 또는 취소	행사변경 및 취소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	2,261
	소 계	**2,261**
예산 절감	사업 예산 절감	192
	소 계	**192**
집행잔액	기타 집행잔액	139,022
	소 계	**139,022**
합 계		**143,805**

2024회계연도 불용액은 총 1,438억 500만원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23억 3,000만원, 계획변경 또는 취소 22억 6,100만원, 예산 절감 1억 9,200만원 및 집행잔액 1,438억 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Ⅱ.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검토의견

1. 개 요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구조를 보면, 한반도 평화 조성 등 17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4조 297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0억 400만원 및 수입대체 초과지출 승인액 182억원으로 인하여 예산현액은 4조 569억 5,700만원임.

이 중 3조 9,112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38억 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외교부 프로그램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2023 결산	2024년				2025 예산
		본예산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계	3,162,910	4,029,753	4,056,957	3,911,217	96.4	4,221,776
1. 한반도 평화 조성	22,523	15,712	15,772	13,470	85.4	22,101
2. 정상외교	53,094	27,113	28,184	26,058	92.5	29,557
3.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963	5,334	5,359	4,397	82.0	4,680
4.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4,158	46,147	46,714	44,945	96.2	11,501
5. 국제기구분담금	660,366	718,311	718,311	707,173	98.4	826,224
6. 다자관계 협력	17,378	25,013	26,867	25,733	95.8	21,585
7. 원자력 비확산 외교 강화	2,680	5,239	5,239	4,795	91.5	4,848
8. 국제개발협력	1,247,771	1,968,035	1,968,035	1,893,806	96.2	1,967,014

프로그램	2023 결산	2024년				2025 예산
		본예산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9. 국제법적 대응 강화	5,993	6,673	6,922	6,310	91.2	6,523
1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26,111	23,110	23,110	20,812	90.1	22,475
11.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12,496	15,744	15,585	12,711	81.6	14,679
12.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제고 및 재외동포 역량강화	33,207	-	-	-	-	-
13. 여권업무 선진화	109,483	141,030	159,294	158,899	99.8	123,893
14. 경제외교	10,461	12,860	12,877	11,171	86.7	112,566
15.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4,244	9,806	11,186	10,386	92.9	2,698
16.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12,524	15,964	15,464	13,057	84.4	14,945
17. 재외공관운영	712,023	776,394	776,478	744,765	95.9	801,182
18. 외교행정지원	213,435	217,268	221,560	212,727	96.0	235,305

2. 세 입

□ 관유물대여료 관리 철저 필요

관유물대여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1]에 따른 토지, 건물 등 정부 소유물에 대한 대여 수입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시 관유물대여료의 세입예산 계상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외교부는 2024년도 관유물대여료 예산액을 4억 2,900만원 편성하였으나, 10.5%인 4,500만원이 수납되었음.

< 2024년 관유물대여료 결산내역 및 '25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결산	2023결산	2024년				2025예산
			예산		결산(B)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A)			
51 관유물대여료	328	207	429	429	45	10.5	396
토지대여료 (51-511)		1			35	-	-
건물대여료 (51-512)	328	206	429	429	10	2.3	396

1)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외교타운 내 민간임대 공간 6실에 대하여 편성한 4억 2,900만원에 대해서는 수납률이 2.3%인 1,000만원이 수납되었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토지대여료가 3,500만원 수납되었음.

건물대여료의 부진한 수납실적에 대하여 외교부는 현재 민간임대 공간 6실 중 4실이 임대 중[2]인데, 3실이 유관 공공기관 및 장애인카페로 무상임대 형태이고, 나머지 2실에 대하여는 온비드를 통해 민간임대를 지속 추진 중이나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사용료가 주변 임대료보다 높은[3] 수준이어서 임차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함.

토지대여료는 2023년부터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수입금[4] 외에 2024년 2월 22일 지적측량 결과 세종연구소 건물이 외교부 소관 국유재산(토지) 일부를 점유하였음을 확인[5]함에 따라 과거 5년간 사용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것이라고 함. 세종연구소가 동 건물을 ㈜LIG넥스원에 매각함에 따라 이후 ㈜LIG넥스원으로부터 토지대여료를 징수[6]하고 있음.

---

2) 외교타운 내 민간임대 공간 6실 중 4실은 현재 임대 중임.
- 무상 사용허가: 유관 공공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 2실('24.10월), 장애인카페 1실('25.1월)
- 유상 사용허가: 민간업체 유상 사용허가 1실('24.11월)

3) 연간 사용료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시작하여, 2회 유찰 이후부터 10%씩 감액하여 80%까지 감액 가능함.

4) 2024년 수납액은 592,720원임.

5) 세종연구소 매각과 관련하여, 매입 예정자인 ㈜LIG넥스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확인됨.

6) 향후 토지대여료 수입액은 연간 약 600만원으로 예상됨.

< 2024회계연도 토지대여료 수납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구분	사용자	허가기간	수납액	비고
유상사용허가	세종연구소	2019-02-23~2024-04-24	29,52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30-16
유상사용허가	㈜LIG넥스원	2024-04-25~2027-04-24	4,455	
유상사용허가	㈜휴맥스이브이	2024-01-01~2024-12-31	593	전기차 충전시설
합 계			34,569	

(자료: 외교부)

그런데, 건물대여료의 2025년도 예산액이 3억 9,600만원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7]으로 편성되어, 실적 부진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바,

외교부는 건물대여료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함과 동시에, 외교센터 내 민간임대 공간 중 무상전환된 3실에 대해 향후 예산 편성 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관유물대여료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7) 관유물 대여료 예산액(2023년부터 편성)
- 2023년 3억 9,000만원
- 2024년 4억 2,900만원
- 2025년 3억 9,600만원

□ 세출예산 증액을 고려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 필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재외공관 반환수입금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2024년 예산현액 72억 300만원 대비 90억 4,400만원이 많은 162억 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160억 4,200만원을 수납(수납률 98.8%)하였으며, 2억 4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및 '25 예산>

(단위: 백만원)

2024								2025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7,203	7,203	-	7,203	16,247	16,042	204	-	7,203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은 국고보조금 등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024년 예산현액 1억 3,000만원 대비 2억 6,600만원이 많은 3억 9,6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3억 9,400만원을 수납(수납률 99.5%)하였으며, 2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2024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내역 및 '25 예산>

(단위: 백만원)

2024								2025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130	130	-	130	396	394	2	-	130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최근 4년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연례적으로 당초 예산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최근 4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1	7,203	7,203	-	7,203	4,945	4,736	65.8	95.8	208	-
'22	7,203	7,203	-	7,203	160,108	160,020	2,221.5	99.9	88	-
'23	7,203	7,203	-	7,203	78,398	78,282	1,086.8	99.9	116	-
'24	7,203	7,203	-	7,203	16,247	16,042	222.7	98.7	204	-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경우에도 최근 4년간 징수결정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수납액 역시 당초 예산액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4년간 기타재산이자수입(일반회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1	130	130	-	130	63	63	48.5	100	-	-
'22	130	130	-	130	187	187	143.8	100	-	-
'23	130	130	-	130	215	212	163.1	98.6	3	-
'24	130	130	-	130	396	394	303.1	99.5	2	-

이와 같이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이 당초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국제기구 분담금 반납액, 재외공관 반환수입금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액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집행잔액 등 반납액은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목으로, 그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은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목으로 분류하여 수납하고 있음.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주요항목>

(단위: 백만원)

구분	수납액	비고
국제분담금 반납액	10,498	- 아프간군 신탁기금 잔여기금 - 유엔 PKO 예산 분담금 잔여액 - 유엔 평화유지 신탁기금 잔여액 - UNECA 합동협력사업 잔여액
재외공관 반환수입금	4,047	- 재외공관 집행잔액, 불용품 매각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84	- KOICA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 여권대행 보조금 집행잔액 등
기타	713	- 한·아프리카재단 출연금 집행잔액 -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임차보증금 반환 등
합 계	16,042	

(자료: 외교부)

특히 국제분담금의 경우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분담금 역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바, 세출예산 규모가 증액됨에 따라 집행잔액 등이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전수입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최근 5년간 국제분담금 반납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제기구 분담금 총액	507,458	538,726	521,604	661,827	718,311
분담금 반납액(세입)	403	14	149,939	72,149	10,498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최근 5년간 수납실적 중 국제기구 분담금 등 특이소요로 발생한 반환금을 제외한 평균수납액은 약 56억원 정도로서, 최근 분담금 반납액의 대부분이 아프간군 신탁기금인데, 현재는 반납이 완료되어 세입예산 증액 편성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최근 5년간 분담금 제외 기타경상이전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수납액	9,957	4,736	160,020	78,282	16,042
분담금 제외 수납액	6,431	4,736	4,966	6,145	5,544

(자료: 외교부)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년도 예산주의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집행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외교부는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실제 수납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세입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온 것으로 보임.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국제기구 분담금 반납 등은 일회성 요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세출예산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향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반납금 등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입 추계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는 세입 실적의 연도별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세출예산 증액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세입예산안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ODA 총괄

가. ODA 개요

1) ODA 개념 및 추진체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한 국가의 중앙정부·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지정한 개발도상국(수원국)의 경제개발·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증여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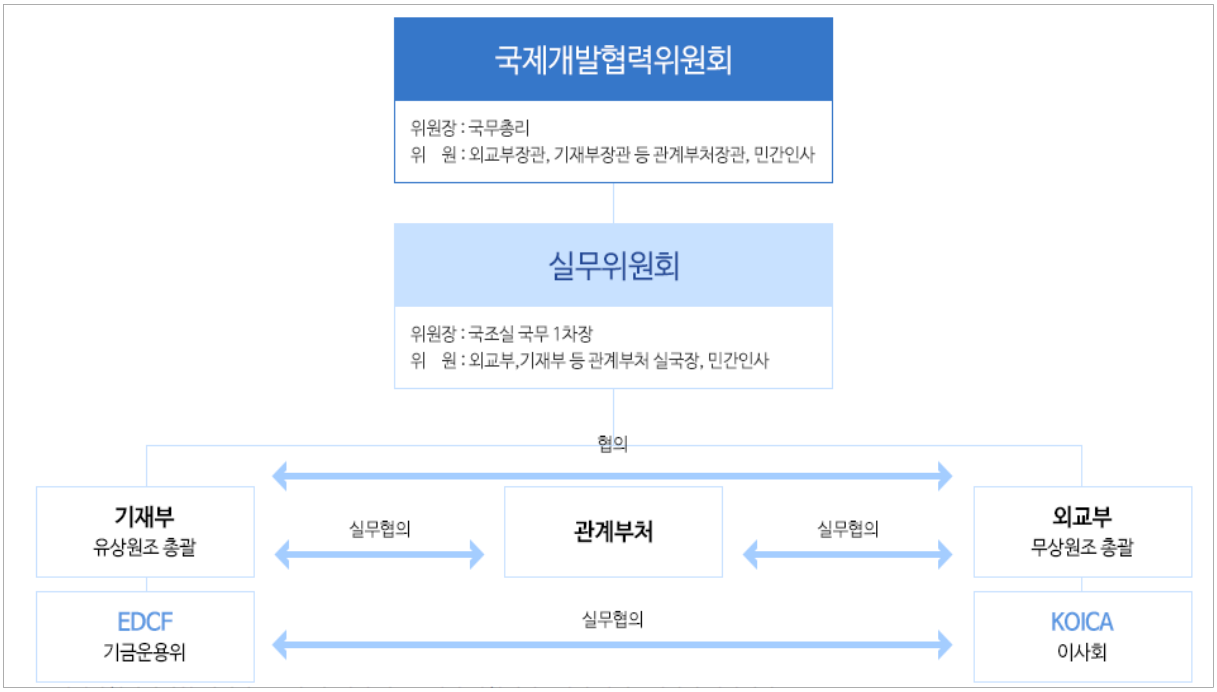
ODA의 유형은 전달경로(양자·다자) 및 수원국의 상환 의무(무상·유상)에 따라 구분됨. 양자원조는 공여국이 수원국에 지원을 직접 하는 방식이며, 다자원조는 공여국이 국제기구를 통하여 수원국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무상원조는 수원국의 상환의무가 없으며, 유상원조는 수원국의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함.

ODA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으로, 동 법률에 따라 ODA를 총괄하는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주관기관[8]으로 각각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있음.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라 함)은 동 법률에 따른 시행기관[9]이자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외교부 소관 ODA 사업을 실시함.

---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관기관"이란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ODA 추진체계 >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2) 무상 ODA 절차

무상 ODA는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및 1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기관이 되어 실시하는데, 체계적인 무상 ODA 추진을 위하여 거치는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N-2년) 수원국 요청서(PCP) 접수 및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ODA 예산 요구 전, 개별 시행기관은 사업 발굴 및 기획 절차를 거침. 수원국 정부 또는 우리 정부의 제안 등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수원국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며, 이 단계에서 수원국으로부터 신규 사업요청서

9) 8.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PCP; Project Concept Paper) 접수 및 사전타당성조사 등도 실시함.

② (N-1년 1분기) 차년도 무상 ODA 사업 시행계획안 외교부 제출

차년도에 무상 ODA를 실시하고자 하는 시행기관은 전년도 1분기 중 무상원조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인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함.[10] 시행기관이 제출하는 시행계획안에는 차년도에 필요한 예산, 사업 내용, 수원국 요청서(PCP), 성과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며,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추가로 작성함.

③ (N-1년 2분기)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외교부와 무상 ODA를 실시하고자 하는 시행기관으로 구성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11]를 개최하여 차년도 무상 ODA 후보사업에 대하여 협의하고 심의·조정함.

2025년에는 5월에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협의회 개최 전 주관기관과 시행기관 간 1:1협의,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분과협의회 개최 등을 진행하며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음.

---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시행기관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① 전략회의의 의장은 제3조 제2항의 사업의 심사 및 조정을 위해 외교부 제2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무상개발협력 시행기관으로 구성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 (N-1년 2분기)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 마련 및 전략회의 보고

무상 ODA 주관기관인 외교부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12]을 마련하고, 이를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13]에 보고함.

⑤ (N-1년 2분기)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잠정 의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제출한 종합시행계획안을 조정·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함.[14] 종합시행계획에는 정부

---

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이 포함된 시행계획안(이하 "분야별 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③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소속으로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전략회의의 기능) 전략회의는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무상개발협력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외정책과 연계한 주요 분야별·지역별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무상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과 사업간의 부합성 검토, 유사·중복사업 방지, 사업간 연계 등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조정
3. 효율적 무상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무상개발협력 분야 정책 및 전략의 통합
4. 무상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에 따른 사업의 발굴, 추진, 평가를 위한 이행 점검
5. 그 밖에 전략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의결 후 변경된 사정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ODA 사업 전반의 추진 실적, 성과, 추진 방향 등이 담겨있으며, 차년도에 추진할 개별 ODA 사업의 예산이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음.

⑥ (N-1년 3·4분기)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ODA 예산이 확정됨. 예산 확정 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차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의결하며, 이에 따라 개별 시행기관은 ODA 사업을 실시함.

나. 양자 무상 및 다자 ODA 현황 분석

첫째, 최근 10년간 무상 ODA 규모가 3.67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하여 42.6% 증가하였음.

최근 10년간 ODA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2조 3,782억원에서 2024년 6조 2,629억원으로 10년만에 약 2.6배 이상 규모가 확대되었음. 이 중 외교부가 총괄을 담당하는 무상 ODA는 세부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8,447억원에서 2024년에는 3조 962억원으로 3.67배 증가하였음.

특히 최근 2년동안 ODA 규모가 급증하였음. 총 ODA 규모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21.3%, 31.1% 증가하였으며, 무상 ODA 규모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5.2%, 42.6%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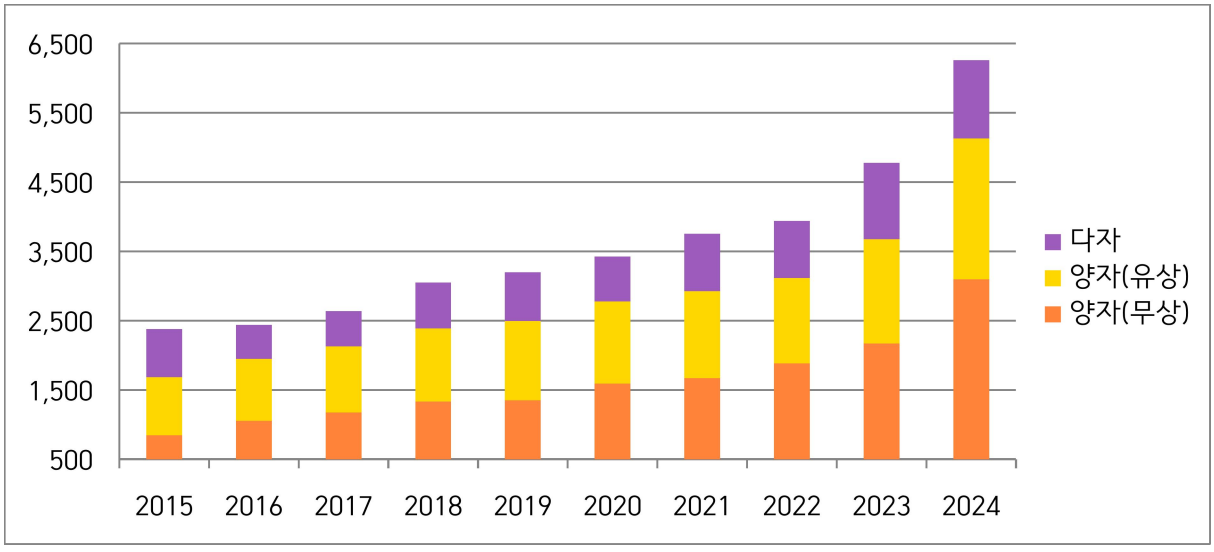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 ODA 규모(표) >

(단위: 십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양자	무상	844.7	1,054.2	1,175.5	1,329.6	1,352.6	1,590.1	1,667.9	1,885.2	2,170.9	3,096.2
	증가율	-	24.8	11.5	13.1	2.5	16.7	4.9	13.0	15.2	42.6
	유상	838.0	893.7	954.5	1,058.1	1,141.2	1,184.9	1,258.2	1,230.5	1,503.0	2,032
다자		695.5	491.5	505.9	660.5	706.5	651.9	828.2	822.6	1,103.2	1,134.7
계		2,378.2	2,439.4	2,635.9	3,048.2	3,200.3	3,426.9	3,754.3	3,938.3	4,777.1	6,262.9
	증가율		2.6	8.1	15.6	5.0	7.1	9.6	4.9	21.3	31.1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 최근 10년간 ODA 규모(그래프) >



둘째, ODA 중 외교부와 KOICA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양자 무상 ODA의 경우 전 부처 예산의 약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자 ODA의 경우에는 약 15~29% 수준임.

다자 ODA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금과

EDCF를 통한 양허성차관[15] 등으로 외교부와 KOICA의 역할이 양자 무상 ODA에서보다 낮은 상황임.

< 양자 무상 ODA 중 외교부와 KOICA 예산 현황 >

(단위: 십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A)	633.9	778.7	838.7	917.8	904.8	1,071.4	1,066.8	1,261.8	1,472.7	2,174.3
외교부	42.3	171.7	208.3	228.3	185.2	228	213.1	351.5	410.9	876.4
KOICA	591.6	607	630.4	689.5	719.6	843.4	853.7	910.3	1,061.8	1,297.9
전 부처(B)	844.7	1,054.2	1,175.5	1,329.6	1,352.6	1,590.1	1,667.9	1,885.2	2,170.9	3,096.2
A/B	75.0	73.9	71.3	69.0	66.9	67.4	64.0	66.9	67.8	70.2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 다자 ODA 중 외교부와 KOICA 예산 현황 >

(단위: 십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A)	199	77.6	93.1	105.6	102.3	124.8	165.6	184.3	289.3	328.9
외교부	157.6	77.6	93.1	105.6	102.3	124.8	165.6	184.3	289.3	328.9
KOICA	41.4	-	-	-	-	-	-	-	-	-
전 부처(B)	695.5	491.5	505.9	660.5	706.5	651.9	828.2	822.6	1,103.2	1,134.7
A/B	28.6	15.8	18.4	16.0	14.5	19.1	20.0	22.4	26.2	29.0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셋째, 최근 10년동안 외교부의 양자 무상 ODA는 2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KOICA의 양자 무상 ODA는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외교부와 KOICA의 주요 ODA 사업을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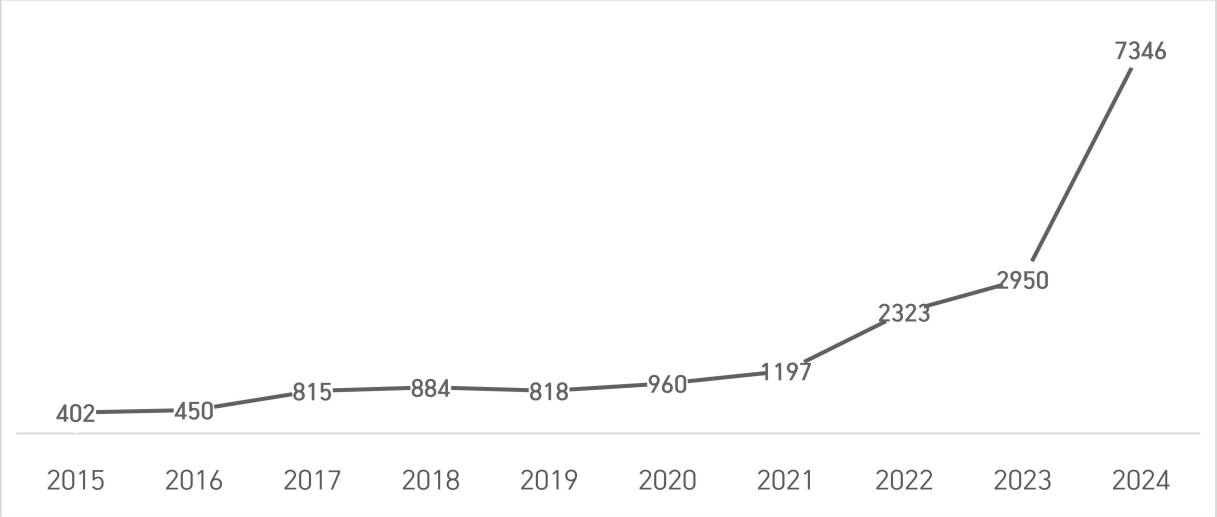
① 인도적지원(ODA) 사업의 해외긴급구호 예산이 2015년 402억원에서

15) 일반적으로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 3요소를 고려, 시중의 일반자금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에 의한 차관을 말함. 개도국에 대한 직접차관중 증여율이 25% 이상을 상회하는 양허성 차관을 공적개발원조(ODA) 차관이라고 부름.

2020년 960억, 2024년 7,346억으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해외긴급구호 예산 >

(단위: 억원)



※자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② KOICA에 대한 출연사업으로 운영되는 지역별 원조를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 원조 규모가 최근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사한 연 3,000억원 규모이며, 중남미지역과 중동·CIS 지역 원조는 각각 1,000억원 수준임.

< KOICA 지역별 원조 예산(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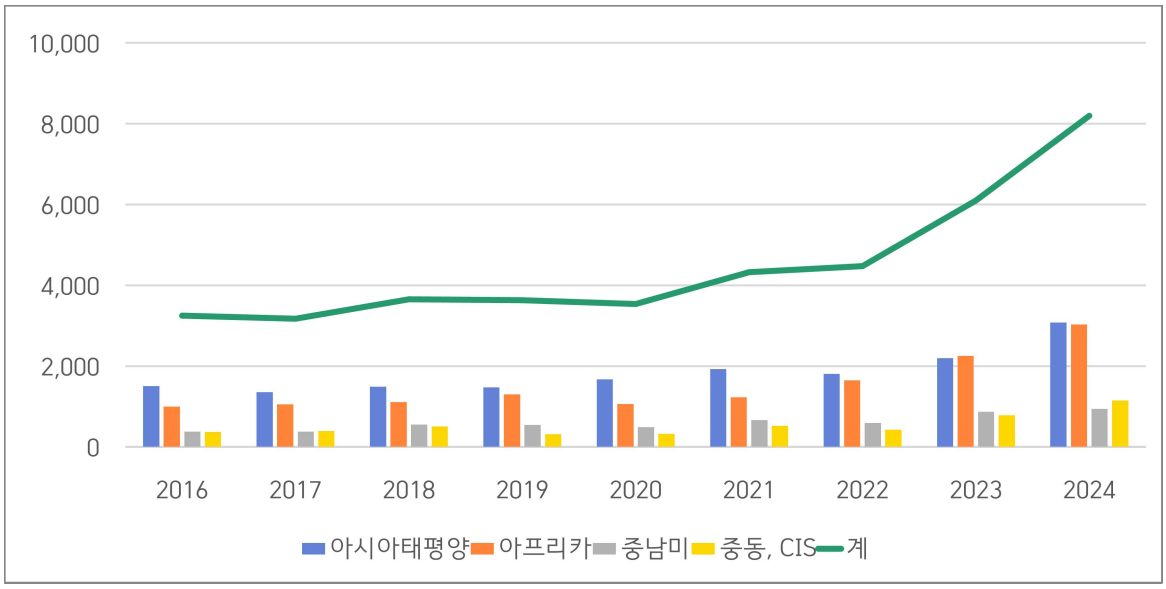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아시아 · 태평양	1,508	1,354	1,491	1,474	1,670	1,923	1,804	2,199	3,075
아프리카	993	1,051	1,108	1,300	1,062	1,224	1,649	2,249	3,029
중남미	380	380	553	542	486	661	595	872	944
중동 · CIS	369	389	503	316	320	518	428	781	1,151
계	3,250	3,174	3,655	3,632	3,538	4,326	4,476	6,101	8,199

※주: 결산 기준으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상의 예산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Ⅱ-1)을 바탕으로 재작성

< KOICA 지역별 원조 예산(그래프) >

(단위: 억원)



③ 그 밖의 KOICA 출연사업인 해외봉사단과 글로벌연수 사업은 전체 ODA 규모 증가에 비하여 큰 폭의 증가는 없음. 다만, 양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ODA 사업을 추진하는 '국제기구협력' 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음.

< 해외봉사단·글로벌연수·국제기구협력 사업 예산 >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해외봉사단	1,195	1,326	1,329	1,535	1,066	721	1,081	1,009	1,238
글로벌연수	593	586	529	529	412	584	558	519	670
국제기구협력	311	391	331	383	561	551	551	517	802
계	2,009	2,303	2,189	2,447	2,039	1,856	2,190	2,045	2,710

※주: 결산 기준으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상의 예산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Ⅱ-1)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 검토의견

□ 인도적지원 관련 결산 시정조치 이행 미흡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긴급구호를 비롯한 인도적지원 사업의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인도적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2023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2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음.

시정요구 사항은 각각 ① 인도적지원 예산에 대한 효과성 평가 메커니즘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의 체계적이고 적시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하며, ② 해외 긴급구호 사업 평가 보고의 시기를 조정하여 적절한 예산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임.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① 인도적지원의 효과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며, 인도적지원 예산 집행율을 상시 점검하고 있는 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② 해외 긴급구호 사업 평가 보고 시기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조치 중으로 보고하였음.

< 인도적지원 관련 시정요구 >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15)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집행 관리**	○ **[지적사항]** 인도적지원 예산 규모는 5년 사이 4배 가량 증가하여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뒤따르지 않을 위험과 체계적이고 시기적절한 예산집행이 어려울 수	제도개선	○ 우리 정부는 2024년 2월 무상개발전략회의 계기 의결된 「무상원조 사업 집행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우리 인도적지원의 효과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 중임. - 구체적으로는 ▲국제기구와의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강화 필요	있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인도적지원 계획과 인력, 조직 역량이 미흡할 수 있음 - 인도적지원 프로젝트별 성과지표 개발 및 정기적인 효과성 평가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 효과성 평가 메커니즘의 도입과 인도적지원 예산 사용에 대한 상세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 제3자 감사 시스템 도입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이 필요함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인도적지원 예산에 대한 효과성 평가 메커니즘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급격하게 증가된 인도적지원 예산이 체계적이고 적시에 집행되도록 주기적인 집행률 점검 등의 노력을 할 것		정책협의를 통한 사업 집행관리 강화 ▲국제기구 이사국으로서 기구 운영·활동에 대한 관여 확대 활성화 ▲현지 모니터링 등을 진행 중임. ○ 우리 정부는 인도적지원 예산 집행률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2023년 99% 이상의 집행률을 달성함. - 향후에도 우리 인도적지원 예산이 글로벌 인도적 위기 대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집행률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37) **해외긴급구호 (ODA) 사업 평가시기 조정**	○ **[지적사항]**「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교부는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고 있는바, 결산 심사와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 해당 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해외긴급구호 결과를 국회에 상반기에 보고하도록 시기를 조정해 적절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시정요구사항을 감안, '24년도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조치예정일 : 2025년 상반기	**조치중**

※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정부

그런데 외교부가 인도적지원 예산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집행방안 마련에 관하여 ‘조치완료’라고 보고했던 것과 달리, 긴급재난 및 만성재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정상 공약 이행에 사용되고, KDRT 관련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용역을 수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외교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긴급구호를 비롯한 인도적지원 예산의 집행 계기와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KOICA 출연금의 미교부 지양 필요

KOICA의 2024년도 출연금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96.9%이나, 본예산 대비 집행율은 92.6%임. 이와 같은 편차는 예산당국이 출연금을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함.

< 2024년 KOICA 출연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집행액 (B)	집행율	
	본예산 (A)	예산현액 (A')		본예산 대비 (B/A)	예산현액 대비 (B/A')
<출연사업>	1,246,796	1,191,865	1,154,650	92.6	96.9
1. 국별협력사업	789,200	748,676	724,346	91.8	96.8
①아시아태평양지역원조	275,641	257,816	249,271	90.4	96.7
② 아프리카지역원조	306,614	294,403	282,575	92.2	96.0
③ 중남미지역원조	73,671	74,682	72,893	98.9	97.6
④ 중동·CIS지역원조	133,274	121,775	119,607	89.7	98.2
2. 글로벌프로그램	313,652	306,494	298,342	95.1	97.3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128,756	123,805	119,778	93.0	96.7
글로벌연수	67,378	67,366	63,889	94.8	94.8
국제기구협력	81,915	80,207	80,193	97.9	100.0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35,603	35,116	34,481	96.8	98.2
3. 협력사업지원	73,644	70,187	66,983	91.0	95.4
협력사업지원	73,644	70,187	66,983	91.0	95.4
4. 전략적 협력강화	8,000	5,842	5,206	65.1	89.1
전략적 협력강화	8,000	5,842	5,206	65.1	89.1
5.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62,300	60,665	59,774	95.9	98.5
민관협력사업	57,000	55,365	54,487	95.6	98.4
인도적지원(출연금)	5,300	5,300	5,287	99.8	99.8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2024년도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출연금 미교부액 규모는 약 741억원이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의 미교부 규모가 257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174억원, 「중동·CIS 지역 국가원조」 138억원, 해외봉사단 등 「글로벌 프로그램」 76억원 순임.

< 2024년 출연금 미교부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미교부액
합 계		**-74,100**
(단위사업)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227,516[1)]	**-25,666**
베트남(ODA)	49,646	-3,314
인도네시아(ODA)	20,971	-5,955
캄보디아(ODA)	22,864	-525
필리핀(ODA)	31,043	-9,430
방글라데시(ODA)	13,790	-1,108
몽골(ODA)	17,122	-416
파키스탄(ODA)	9,239	-370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62,841	-4,548
(단위사업)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274,957	**-17,376**
에티오피아(ODA)	30,643	-1,839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87,826	-10,375
우간다(ODA)	14,501	-881
탄자니아(ODA)	18,927	-1,946
세네갈(ODA)	12,853	-486
이집트(ODA)	10,207	-1,849
(단위사업)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58,341	**-887**
페루(ODA)	9,964	-102
파라과이(ODA)	15,701	-663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32,676	-122
(단위사업)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132,574	**-13,825**
우즈베키스탄(ODA)	23,767	-2,306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88,688	-8,661
키르기스스탄(ODA)	12,950	-571
타지키스탄(ODA)	7,169	-2,287
(단위사업) 글로벌 프로그램	313,652	**-7,562**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	128,756	-4,951
글로벌연수(ODA)	67,378	-416
국제기구협력(ODA)	81,915	-1,708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	35,603	-487
(단위사업) [사업비] 협력사업 지원	73,644	**-4,222**
협력사업 지원(ODA)	73,644	-4,222

구분	예산액	미교부액
(단위사업) 전략적 협력강화	8,000	**-2,339**
전략적 협력강화(ODA)	8,000	-2,339
(단위사업)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출연금)	57,000	**-1,635**
민관협력사업(ODA)	57,000	-1,635
(단위사업) [예비비] 협력사업 지원	1,330	**-588**
협력사업 지원(ODA)	1,330	-588

※주: 1)단위사업의 예산액은 하위 세부사업 중 미교부가 있는 세부사업의 예산액 합계임.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2024년도 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출연금 미교부는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과 2024년의 출연금 미교부가 크게 발생하였음.

< 2016~2024년 출연금 미교부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미교부 발생 단위사업	미교부액
2016	아프리카 비중점 국가그룹	△5,703
2017	아프리카 비중점 국가그룹	△18,000
2018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전략적 협력강화	△4,266 △10,000
2019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전략적 협력강화	△2,198 △4
2020	전략적 협력강화	△4,720
2021	전략적 협력강화	△2,817
2022	전략적 협력강화 아시아 비중점 국가그룹	△2,415 △2,000
2023	전략적 협력강화 국별 협력사업 등	△4,075 △45,884
2024	전략적 협력강화 국별협력 사업 등	△2,339 △71,7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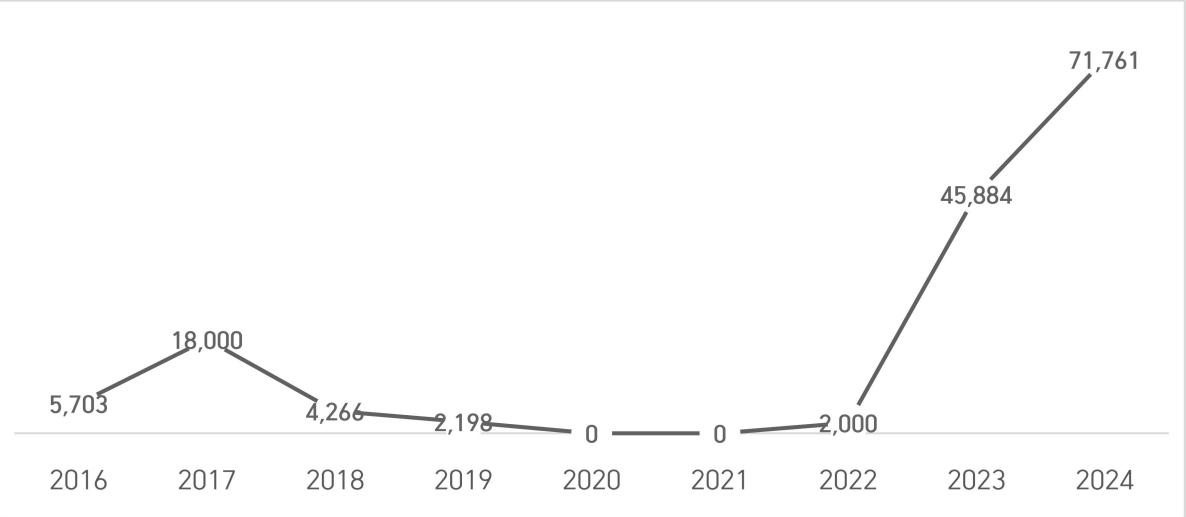
(자료: 외교부)

이 중 「전략적 협력강화」 사업은 정상 공약 후속조치를 위한 수시배정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해당 연도 사업 수요에 따라 미교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그 외의 단위사업에서의 출연금 미교부는 당초 예산 편성이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과도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수요 예측을 통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16)]

< 2016~2024년 출연금 미교부 현황(전략적 협력강화 제외) >

(단위: 백만원)



※주: 수시배정 사업 성격인 전략적 협력강화 사업을 제외한 규모임

(자료: 외교부)

16) 참고로, 2025년도 KOICA 출연금도 2025년도 제2차 추경을 통해 총 333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음.

< 2025년도 제2차 추경 감액 사업 현황(KOICA) >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25년 본예산	2차 추경		
			추경안(A)	국회감액(B)	계 (A+B)
합 계		475,783	△28,000	△5,370	△33,370
1	베트남(ODA)	57,293	△5,000	-	△5,000
2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83,648	△5,000	△1,370	△6,370
3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78,966	△5,000	-	△5,000
4	탄자니아(ODA)	17,931	△8,000	-	△8,000
5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69,972	-	△4,000	△4,000
6	글로벌 연수(ODA)	67,973	△5,000	-	△5,000

(자료: 외교부)

4. 한반도 평화 조성

가. 개 요

「한반도 평화조성」 프로그램은 대북 및 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및 공감대 확보,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 지속 추진, 동북아지역국가 및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5개의 단위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 예산액은 157억 1,200만원이고, 134억 7,000만원이 집행됨.

< 한반도 평화 조성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예산		2024 결산	2025 예산
					본예산	추경		
[1100] 한반도평화조성				22,523	15,712	15,712	13,470	22,101
	[1131] 북핵문제 협의지원			798	1,069	1,069	828	988
		[11] 일반	[401] 북한 핵문제 대처	490	530	530	361	988*
		[11] 일반	[402]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사업	308	539	539	467	
	[1132] 평화체제구축지원			2,667	3,097	3,097	2,636	3,090
		[11] 일반	[401]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513	647	647	517	647
		[11] 일반	[402]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1,134	878	878	878	834
		[11] 일반	[403]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1,020	1,572	1,572	1,241	1,609
	[1133]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5,175	5,298	5,298	5,188	5,133
		[11] 일반	[401]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5,175	5,298	5,298	5,188	5,133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34] 동북아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1,900	3,560	3,560	2,813	9,470
		[11] 일반	[401]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900	3,560	3,560	2,813	2,616
		[11] 일반	[402]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	-	-	-	6,854
	[1135] 아시아 · 태평양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11,983	2,688	2,688	2,004	3,420
		[11] 일반	[401] 아시아 · 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636	2,688	2,688	1,975	3,420
		[11] 일반	[404]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8,767	0	0	30	-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1131-401)로 통합

나.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은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중국정부 지도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중간 우호정서 강화를 위해 한·중 간 학술·인문,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며,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중국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등 대중국 외교기반 강화,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등을 수행하려는 것임.

<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560	3,560	9	-	-	3,569	2,813	-	756	79.0
- 중국정부 지도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897	897	-	△2	-	895	672	-	223	74.9
- 한중간 우호정서 강화	554	554	-	55	-	609	521	-	88	94.0
-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396	396	-	△47	-	350	251	-	99	63.4
- 대중국 외교기반 강화	877	877	9	△6	-	880	697	-	183	79.5
-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121	121	-	-	-	121	37	-	84	30.6
- 동북아시아지역 협력 증진	715	715	-	-	-	715	635	-	80	88.8

동 사업의 이·전용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현액은 35억 6,900만원으로, 이 중 28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고, 7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은 한·몽 고위급 간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정무 분야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은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여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4년도의 경우 집행률은 30.6%에 불과함.

< 최근 5년간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 집행률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0년	104	25	24.0
2021년	94	29	30.9
2022년	134	130	97.0
2023년	134	55	41.0
2024년	121	37	30.6

외교부는 동 사업의 집행 부진에 대해, 한몽 총리급 교류(1.17., 4.1.)와 외교장관 회담(9.27.)이 다자 또는 방한 계기로 이루어지면서 몽골측과의 협의 및 준비 과정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 예산 일부가 조정되며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이 몽골측의 일정을 고려하여 12월 초 추진을 위해 대표단 선발 및 행정 사항 등 준비를 추진하였으나 우리 국내 사정으로 순연되었다고 설명함.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몽골 내 지도자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인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친한화(親韓化)하여 장기적인 외교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부터 예산에 반영되어 연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사업이 개시된 2022년을 제외하고는, 2023년에 예산액 4,000만원 중 1,000만원(25.0%)만 집행되었고, 2024년에는 예산액 3,60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임.

<몽골 차세대리더 네트워크 구축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2년	40	30	75.0
2023년	40	10	25.0
2024년	36	-	0.0

(자료: 외교부)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우리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이며,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상주 공관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로, 향후 외교 다변화 및 북방외교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신뢰 구축과 협력이 요구되는 대상임. 특히 2025년은 한몽 수교 35주년을 맞는 해로, 양국 관계의 상징성과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임.

이러한 상황에서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양측이 12월초 대표단 방한 일정까지 사전 조율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의 사정으로 추진이 무산되어, 일방적인 연기로 인한 사업 신뢰도 저하가 우려됨.

동 사업은 양국 관계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인적 자산을 확보하고 교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일정 차질과 저조한 집행률은 사업의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음.

이에 외교부는 수교 35주년이라는 상징적 시점을 계기로,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해당 사업을 포함한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의 목표 및 기대성과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 내역사업 전반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한일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호혜적인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서남아태평양국가와의 포괄적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며, 아시아 태평양지역 내 주요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상생발전을 추구하고 우리 국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아시아 · 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688	2,688	21	△62	-	2,647	1,975	73	600	73.5
-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812	812	17	△34	-	795	537	-	258	66.1
-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680	680	-	△1	-	679	483	-	196	71.0
- 서남아태평양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	331	331	-	55	-	386	319	-	67	96.4
- 아프간 관련 국제협력	37	37	-	20	-	57	55	-	2	148.6
-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	82	82	-	△37	-	45	14	-	31	17.1
- 한-인도 카라반 사업	82	82	-	△38	-	44	26	-	18	31.7
-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 증진	113	113	-	△4	-	109	103	-	6	91.2
- 대태평양도서국 협력 강화	374	374	-	5	-	379	301	73	5	80.5

202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이·전용액을 포함하여 4,1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26억 4,700만원이고, 이 중 19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6억원을 불용하였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집행부진

동 세부사업의 집행률이 73.5%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내역사업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와 「한-인도 카라반 사업」은 각각 17.1% 및 31.7%에 불과하여 특히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편성 근거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 사업	서남아유력인사초청사업	70	14	20.0
	한-인-일 3자 협의체 참석	12	-	0.0
	합계	82	14	17.1
한-인도 카라반 사업	우호증진 세미나	34.5	10	29.0
	투자교역포럼 설명회	39	10	25.6
	문화교류 및 교육분야 설명회	8.5	6	70.6
	합계	82	26	31.7

(자료: 외교부)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 사업은 동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이 밀집한 서남아 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외교 다변화를 실현하고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주요 국가와의 양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임.

2024년도 예산 8,200만원 중 집행액은 1,400만원(집행률 17.1%)에 불과하였으며, 이 중 '한-인-일 3자 협의체 참석'의 경우 전액 미집행으로 나타남. 외교부는 초청 대상 인사와의 일정 조율 곤란 등을 집행 부진 사유로 설명하고 있으나, 예산의 적재적소 집행과 불용 방지 측면에서 동 사업을 서남아 유력인사 초청사업으로 통폐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한-인도 카라반 사업」은 인도의 주요 지방 도시를 직접 방문하여 정·재계 인사 면담, 문화행사, 투자교역 포럼 등을 통해 양국 간 지역협력과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현장 중심 외교활동인데,

외교부는 2024년 한-인도 외교·국방 차관회의(12월 예정)를 고려하여 사업비 일부를 유보하였으나, 해당 회의가 연말 국내 사정으로 취소되며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동 내역사업의 경우, 총 예산 8,200만원 중 국외여비 3,800만원을 사전에 감액하여 타 사업에 지출하고도 1,8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가 필요했음을 시사함.

이에 외교부는 향후 동 사업 추진 시, 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일정 차질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당초 사업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 간 유사성 및 중복성 고려한 통합·조정 필요

세부사업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는 총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사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사업들이 다수 분절되어 편성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남. 이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

< 2024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내역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사업개요	편성액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균형 있는 대응과 함께 분야별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	812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일본 현지 공관 주도로 일본 사회 전반과의 접점을 확대해 우호적 여론 기반과 대일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680
서남아태평양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	서남아 및 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역내 안보 및 경제안보 기반을 강화하려는 사업	331
아프간 관련 국제협력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관련한 지역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안보 국익과 경제안보 기반을 확대하려는 사업	37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	서남아 주요국과의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외교 다변화 및 양자관계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	82
한-인도 카라반 사업	인도 현지 우리 공관 주도로 인도 현지에서 양국 간 지역 차원의 관계 기반을 강화해 대인도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82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 증진	한중일 3국 협력 및 아태 다자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태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	113
대태평양도서국 협력 강화	태평양도서국과의 고위급 외교 채널을 운영해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응하는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	374
동아시아 협력포럼(신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한 소다자 외교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	-

먼저, 「아프간 관련 국제협력」 사업은 아프가니스탄 관련 외교 협력을 내용으로 하나, 예산 규모가 3,700만 원에 불과하여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분리 편성하기에는 사업의 범위와 중요도 측면에서 제한적임. 해당 사업은 보다 포괄적인 지역 협력 틀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또한, 「한-인도 카라반 사업」은 양국 간 지역 차원의 관계 기반을 강화

해 대인도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목적이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 사업과 상당 부분 중첩됨. 양 사업은 모두 서남아 주요국과의 관계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 사업을 통합 운영할 경우 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고 예산의 탄력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실제 두 사업의 예산 합계도 1억 6,400만 원 수준으로, 하나의 내역사업으로 통합·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내역사업 단위는 예산 운용의 실효성과 사업 성과 관리의 기준이 되는 만큼, 세부사업 내 구성은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는 동 세부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들의 사업 간 유사성과 중복성을 감안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체계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가. 개 요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은 아세안(ASEAN[17]) 및 유럽 내 각국과의 협력 확대, 대화채널의 확충 및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하여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액은 53억 3,400만원이고, 43억 9,700만원이 집행됨.

<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본예산	추경	결산	
[1300]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4,963	5,334	5,334	4,397	4,680
	[1331]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733	3,008	3,008	2,505	2,908
		[401]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733	3,008	3,008	2,505	2,908
	[1332]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330	2,326	2,326	1,892	1,772
		[401]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434	1,795	1,795	1,507	1,411
		[402] 유라시아 협력 추진	547	239	239	171	97
		[403] 대러전략외교강화	250	292	292	214	264

17)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동남아 국가연합) :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나.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각급 양자대화 실시 및 지원을 통한 한-동남아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아세안 관련 각급 회의 개최 및 참석을 통한 한-아세안 전략협력 강화, 역내 다자 및 안보협력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및 남방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확대 등으로 한-아세안외교를 강화하려는 사업임.

<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3,008	3,008	25	-	-	3,033	2,505	-	528	83.2

2024년도 예산액 30억 8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500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 30억 3,300만원 중 5억 2,800만원이 불용되고 25억 5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83.2%임.

□ 내역사업 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 목적 달성 필요

동 사업은 ① 「한-동남아국가 교류협력 강화」, ② 「베트남과의 협력기반 강화」, ③ 「한-아세안 전략협력 강화」, ④ 「동아시아 다자협력 강화」, ⑤ 「한-아세안 상생연대 기반 강화」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내역사업의 편성에 있어 주요 국가에 대한 개별 내역사업 편성 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재 해당 세부사업에는 베트남만 별개의 내역사업[18]으로 편성되어 있음. 베트남의 경우 2019년부터 별도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020년부터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음.

'베트남과의 협력기반 강화'는 베트남 당, 중앙·지방정부, 국회 등 각계와의 수시 양자협의, 현지방문, 정책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심화·확대를 통한 토대 공고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임.

2024년 기준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이며, 우리나라가 베트남 내 제1위 해외투자국이고, 개발 협력에 있어서도 베트남이 우리의 중점협력 대상 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베트남을 개별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여 관리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그러나, 해양동남아 국가 중 아세안 수장국이자 역내 최대 경제·인구 대

18) 2. 베트남과의 협력기반 강화

국(아세안 총 GDP의 37%, 아세안 인구의 41%(세계 4위 인구))인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실질협력 확대 예산의 별도 필요성도 고려할 수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개별 국가의 외교적 중요성 및 별도 사업 편성의 외교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사업 편성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예산 배정 시 면밀한 검토 및 비목에 맞는 예산 집행 준수 필요

특근매식비란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을 요하는 자에 대한 매식비[19]로, 사무용품 구입이나 소모성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와는 구분됨.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을 집행하는 아세안국의 경우 「아세안국 기본경비(총액)(7011-221)」에 2024년 특근매식비가 2,300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동 단위사업 예산에는 특근매식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아세안국은 기집행한 기본경비 내 특근매식비를 익월에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의 사업비 내 편성된 일반수용비로 과목정정 결의를 하고, 이를 재정정하여 다시 기본경비 내 특근매식비로 집행하였음. 이러한 집행은 8월, 9월, 10월 특근매식비 중 229만원 상당임.

19)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2023.5.

<아세안 국 내 과목정정 대상 건수 및 액수 현황>

(단위: 건, 원)

건명	건수	액수
특근매식비(8월)	24	341,450
특근매식비(9월)	60	1,300,400
특근매식비(10월)	48	652,900
계	132	2,294,750

(자료: 외교부)

또한, 아세안국은 '직원 격려' 및 '직원 송별회식' 등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기본경비 내의 업무추진비가 아닌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의 사업비 내 편성된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음.

부적합한 비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원인으로는, ① 예산 편성 당시 적정 비목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인해 비목을 잘못 편성한 경우, ② 기존 비목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례 답습적으로 예산을 변경 편성하지 아니한 경우, ③ 부족한 재원을 다른 비목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보충하여 집행하는 경우 등이 있음.

당시 아세안국의 지급 업무 증대, 월별 자금 부족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집행 건에 대하여 기본경비 내 특근매식비 및 관서업무추진비를 각각 사업비 내의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사후에 이를 다시 기본경비로 과목정정 조치한 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 월별·사업별 구분을 철저히 하라는 「국고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국고금 관리법」 제30조[20]는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7조[21]는 월별 자금계획서에는 세출예산에 정하는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세항(단위사업)의 구분을 명백히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월별 자금계획 작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적절히 배정되도록 하고, 배정된 예산의 집행이 비목에 맞게끔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0) 제30조(자금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제47조(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월별 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서: 세입예산에 정하는 관·항·목의 구분
2. 지출계획서: 세출예산에 정하는 장·관·항·세항의 구분

다.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유럽·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적극적인 고위급 교류를 실시하여 실질협력관계 증진 및 포괄적 협력을 통한 우리 외교 외연을 확장하고, 범유럽지역 회의체 및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이슈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다층적 외교를 심화하려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17억 9,500만원이고, 2억 8,800만원이 불용되고 15억 7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84.0%임.

<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1,795	1,975	-	-	-	1,795	1,507	-	288	84.0

□ 특정 내내역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 개선 필요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7개의 내역사업과 16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서유럽에서 동유럽,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 대한 세부사업임.

세부사업 내 내내역사업이 다양한 만큼, 세부사업 전체의 집행률이 84%임에 반해 일부 내내역사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집행이 부진하였음을 알 수 있음.

< 2024년 동 세부사업 내 집행 부진 내내역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편성액(A)	집행액(B)	집행률(B/A)
한-러 상호이해 및 협력 증진	301	253	84.0
한-러 정부간 정례협의회 및 외교활동	32	14	43.8
EU 주요회원국 및 확대가입대상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40	249	73.2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강화	87	8	9.2
민주주의 · 시장경제 기반 발전 경험 공유 협의	27	16	59.3
남동유럽, 흑해경제관권과의 실질협력 강화	46	25	54.3
남동유럽 · 흑해연안국 인사교류	7	0	0
한-EU 인태전략 강화방안 모색	510	361	70.8
국내외 유럽지역 전문가 아웃리치	210	98	46.7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상기 5개 내내역사업 중 '한-러 정부간 정례협의회 및 외교활동',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강화', '민주주의 · 시장경제 기반 발전 경험 공유 협의', '남동유럽 · 흑해연안국 인사교류'에 대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

세 등의 이유로 인해 집행이 저조했다는 입장이며, '국내외 유럽지역 전문가 아웃리치'의 경우 국내상황으로 인해 2024년 예정된 고위급 방문 및 방한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설명임.

그러나 해당 사업[22]들의 최근 5년간 집행률을 보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도 집행률이 낮았음을 알 수 있으며 관련 제반 사항이 2025년 현재 여전히 잔존하므로 집행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최근 5개년 집행부진 내내역사업의 집행률[23]>

(단위: %)

사업명	2020	2021	2022	2023	2024
한-러 정부간 정례협의회 및 외교활동	43.8	43.4	0	43.4	40.6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강화	1.2	33.3	203.6	15.5	9.2
민주주의·시장경제 기반 발전 경험 공유 협의[24]	0	0	55.2	31.0	59.3
남동유럽·흑해연안국 인사교류	100	0	0	0	0

(자료: 외교부)

이에 향후 외교부는 유럽지역 역내 정세 변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하고, 연도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2) '국내외 유럽지역 전문가 아웃리치'는 2024년 신규 편성 사업임.

23) 매년 외교부가 제출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내 본예산 대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함.

24) 해당 사업의 2023년 이전 사업명은 '체제전환 경험 공유 협의체'임.

6.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가. 개 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은 중남미·아중동지역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협력 강화 및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외교지평 확대, 아중동지역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통한 협력 내실화 및 포럼,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우리 외교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은 461억 4,700만원이고, 449억 4,500만원이 집행됨.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예산		2024 결산	2025 예산
					본예산	추경		
[1400]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4,158	46,147	46,147	44,945	11,501
	[1431]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694	3,695	3,695	3,471	3,337
		[11] 일반	[401]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694	3,695	3,695	3,471	3,337
	[1432]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0,464	42,452	42,452	41,474	8,164
		[11] 일반	[401]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669	3,288	3,288	3,139	3,515
		[11] 일반	[402]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4,771	4,425	4,425	4,425	4,649
		[11] 일반	[403] 2024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개최	3,023	34,739	34,739	33,910	-

나.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사업은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고위급 네트워크 구축 등 인적 교류 활성화 및 제반 분야 실질협력 확대를 통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 등을 위한 사업임.

<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288	3,288	-	-	-	3,288	3,139	-	149	95.5
- 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124	2,124	-	△305	-	1,819	1,686	-	133	79.4
- 아프리카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873	873	-	431	-	1,304	1,297	-	7	148.6
- 아중동 외교정책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291	291	-	△126	-	165	156	-	9	53.6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은 32억 8,800만원이고, 이 중 31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외교행사 연계 사업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예산 반영 미흡

외교부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별 개황 자료를 제작하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아프리카 국가별 개황 책자 디자인 및 발간 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음. 동 사업에는 총 1억 9,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외에도 개황 원고 작성 및 검수 사례비로 5,000만 원이 추가 지출되는 등 총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었음.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아프리카 개황책자 발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아프리카 국가별 개황 책자 디자인 및 발간 용역 대금	192	42개국
개황 발간을 위한 원고작성 및 검수 관련 사례비	50	20개국
기타 개황 발간	9	앙골라, 에티오피아
합계	251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아프리카 개황책자 발간을 위하여 동 세부사업 내 타 내역사업에서 일반수용비 1억 8,700만원을, 동 세부사업 내 세목조정을 통해 7,900만 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음.

<아프리카 개황책자 발간 경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변경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12.19.)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432-401)	210-14	79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432-401)	210-01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계기 아프리카 국가별 개황 발간

외교부는 통상 각 실국별로 1년에 5-7개국 정도 개황을 발간하는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5.)」 준비 과정에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개황책자

발간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총 44개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개황책자를 발간하였음.

당초 아프리카 개황책자 발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외교부는, 국가별 개황자료의 발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고, 주요 외교계기 및 수교 정주기 등 발간수요가 발생하면 실국별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발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또한 아프리카 대부분의 공관이 2-3개국 이상을 겸임하고 있어, 초판 개황자료를 자체적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으며, 이에 따라 학계 전문가에게 원고 작성 및 검수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함.

그러나,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는 이미 예고된 외교 일정이었고, 정상회의 개최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대한 개황자료 수요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

특히 역대 개황이 발간되지 않았거나 최근 수년간 업데이트되지 않은 국가들이 다수였음을 고려할 때, 초판 개황의 원고 작성 및 검수에 따른 외부 전문가 활용 필요성과 그에 따른 예산 수요 또한 사전에 인지 가능한 사항이었음.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타 사업의 예산을 충당하여 추진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 소지가 있고, 타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외교부는 향후 사업 추진 전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편성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사업은 아프리카와의 정상급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전략적 중요성이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은 당초 347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및 이·전용을 통해 5억 6,700만원이 증액된 353억 6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이 중 339억 1,000만원이 집행되고 13억 9,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34,739	34,739	947	△380	-	35,306	33,910	-	1,396	97.6
- 준비기획단 운영	2,938	2,938	-	△708	-	2,230	2,180	-	50	74.2
-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1,479	1,479	30	△85	-	1,424	1,413	-	11	95.5
- 정상회의 및 부대행사 개최	30,322	30,322	917	413	-	31,652	30,317	-	1,335	100.0

□ 행사 필수경비 미편성에 따른 예산운용계획 부실

외교부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사업에서 관리용역비(210-15), 시설장비유지비(210-09) 및 일반용역비(210-14)를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사업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1.24.)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	일반수용비 (210-01)	3.5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	관리용역비 (210-15)	관리용역비 미편성
세목조정 (2024.2.22.)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	일반수용비 (210-01)	61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시설장비유지비 미편성
세목조정 (2024.4.4.)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	일반수용비 (210-01)	15.3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	일반용역비 (210-14)	공관송금을 위한 일반용역비 미편성
세목조정 (2024.5.28.)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	일반수용비 (210-01)	26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432-403)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배정잔액 부족

시설장비유지비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사무실 확장을 위한 칸막이·전원시설·정보통신 공사에 집행한 것이고, 관리용역비는 준비기획단 사무실의 CCTV 유지비용임.

그리고, 공관에 송금한 일반용역비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다수 국가의 참석 확보를 위해 공관의 직접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한-아프리카 청년 토크쇼' 등 공관 자체 유

튜브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데 사용하였음.

외교부는 해당 비목 미편성 사유로 2023년 예비비 및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기획단 설치 장소 및 규모가 미확정 상태였고, 이후 외교부 본부 외 별도 공간을 임차하게 되면서 관련 경비 소요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정상회의와 같은 고위급 국제행사는 장소나 규모의 유동성이 있더라도 인력·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예산 편성 당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이며, 외교부내 청사 공간 부족이 지속돼 온 점을 감안해 준비기획단의 외부 임차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리용역비 등 필수 부대경비는 편성되지 않아 예산편성의 사전 준비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필수 경비의 누락은 집행 과정에서 반복적인 세목 조정과 전용을 초래하여 집행 시 행정 비용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외교부는 향후 유사한 대규모 국제행사 추진 시, 행사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 비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실효성과 준비 과정을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7. 국제기구분담금

가. 개 요

「국제기구분담금」 프로그램은 유엔 등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및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분담금을 납부하여 국제기구 회원국으로서 재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격에 걸맞은 사업분담금 지원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 예산액은 7,183억 1,100만원이고, 7,071억 7,300만원이 집행됨.

< 국제기구분담금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100] 국제기구분담금				660,366	718,311	718,311	707,173	826,224
	[2131] 국제기구분담금			660,366	718,311	718,311	707,173	826,224
		[11] 일반	[401]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	97,134	107,284	107,284	105,435	123,580
		[11] 일반	[402] 유엔 PKO 예산분담금 납부	203,096	212,377	212,377	203,709	216,784
		[11] 일반	[403]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	84,876	97,036	97,036	96,783	102,607
		[11] 일반	[404]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275,259	301,614	301,614	301,245	383,253

나. 기타 의무분담금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사업은 IAEA 헌장, UNESCO 헌장, 대한민국에 대한 OECD에 관한 가입 초청 협정 등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전문기구 및 정부간 기구 가입 협정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회원국으로서 의무이행 차원에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분담금의 적기 납부를 통하여 국제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97,036	97,036	-	-	-	97,036	96,783	-	253	99.7	99.7

2024년에 납부한 의무분담금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기타 의무분담금 내역사업별 납부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번	분담금 명	2023년		2024년			2025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3,590	99.9	3,642	3,562	97.8	3,957
2	국제사실조사위원회(IHFFC)	6	55	10	10	100.0	10
3	국제원자력기구(IAEA)	14,415	104	15,246	14,815	97.2	16,198
4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기금(TCF)	2,629	81.6	3,501	4,038	115.3	3,612
5	국제이주기구(IOM)	2,540	110	2,904	3,120	107.4	3,702
6	국제해사기구(IMO)	658	104	683	770	112.7	767
7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536	105	566	562	99.3	588
8	국제해저기구(ISA)	342	100	410	464	113.2	468

연번	분담금 명	2023년		2024년			2025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9	국제형사재판소(ICC)	11,242	111.6	13,442	13,361	99.4	13,470
10	국제형사재판소(ICC) 신청사 건축	323	103.5	337	328	97.3	343
11	남극조약사무국(ATS)	51	104.1	52	52	100.0	55
12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143	97.2	156	151	96.8	164
13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269	100	281	275	97.9	421
14	대인지뢰금지협약(APLC)	14.8	82.2	19	15	78.9	28
15	몬트리올의정서 신탁기금	105	68.1	178	125	70.2	203
16	무기거래조약(ATT)	46	131	43	36	86	48
17	바세나르체제(WA)	88	101	107	109	101.9	120
18	베니스위원회	81	119.1	87	96	111.3	112
19	불어권국제기구(OIF)	32	100	17	17	100.0	52
20	비엔나협약신탁기금	23	88.5	30	23	76.7	28
21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77	101.3	79	84	105.1	88
22	상설중재재판소(PCA)	29	100	39	47	120.5	43
23	생물무기금지협약(BWC)	71	122	72	67	93.1	79
24	세계무역기구(WTO)	7,185	99.9	8,148	8,682	106.6	8,547
25	세계박람회기구(BIE)	47	102.6	48	48	100.0	50
26	아시아· 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ALCO)	26	108.3	27	27	100.0	28
27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426	110.6	437	432	98.9	456
28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3,573	100	4,894	4,844	99.0	5,197
29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10,942	101.6	11,759	11,624	98.9	12,263
30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	266	101	274	280	102.2	288
31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1,743	100	1,861	1,861	100.0	2,172
32	중앙아시아학술연구소(IICAS)	108	100	116	122	105.2	123
33	콜롬보플랜	21	103	21	21	100.0	23
34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0[25]	0	48	32	66.7	48
35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3,865	100	5,488	5,369	97.8	5,260
36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	2,072	100	2,553	2,421	94.8	3,041
37	핵비확산조약(NPT)	53	176.7	60	50	83.3	53
38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125	88	182	221	121.4	192
39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2,401	100	2,719	2,838	104.4	3,165
40	OECD 개발센터	633	99.2	739	697	94.3	751
41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186	97.3	211	205	97.2	220
42	OECD 철강위원회	39	100	46	43	93.5	45
43	OECD Part I	13,866	98.8	15,504	14,947	96.4	16,129

(자료: 외교부)

25) 2022년도 CCW 분담금 납부잔액으로 2023년분 납부(2023년 CCW 배정 예산은 여타 의무분담금 예산 부족분에 활용)

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은 유엔 산하기구 및 회의체(UNICEF, UNDP, UNHCR 등)[26]의 사업운영 및 지역 국제기구(ASEAN, AU, OAS 등)[27]와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분담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적 기여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301,614	301,614	-	-	-	301,614	301,245	-	369	99.9	99.9

2024년에 납부한 사업분담금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내역사업별 납부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번	분담금 명	2023년		2024년			2025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1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 신탁기금	4,838	100	4,879	4,879	100	5,176
2	국제민간항공기구 공개키 디렉토리	30	71.4	42	29	69.0	43

26) UNICEF: UN Children's Fund, 유엔 아동기금
UNDP: UN Development Programme, 유엔 개발계획
UNHCR: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 난민 기구

27)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U: African Union, 아프리카연합
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기구

연번	분담금 명	2023년		2024년			2025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3	국제사법재판소(ICJ) 사법 펠로우십 신탁기금	40	100	40	40	100	39
4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109	99.1	111	122	109.9	118
5	국제해양법재판소 자발적기여금	239	99.6	426	426	100	421
6	국제형사재판소(ICC) 피해자 신탁기금	61	100	65	65	100	63
7	군축분야 인도적지원 신탁기금	929	100	883	883	100	883
8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지원	15,583	100	17,550	17,550	100	17,980
9	글로벌 보건기여	100,000	100	-	-	-	48,151
10	글로벌파트너십	747	100	911	911	100	996
11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P4G) 자발적 기여금	1,636	100.1	1,554	1,554	100	2,664
12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자발적 신탁기금	13	100	26	26	100	27
13	대아프간 지원 강화	16,178	98.9	-	-	-	-
14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154	100	146	146	100	142
15	메콩강 위원회(MRC) 분담금	-	-	1.300	1.300	100	1,380
16	민주주의증진협력기여금	387	100	397	401	101.0	357
17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국제기금	2698	100	2,838	2,838	100	2,824
18	비세그라드 펀드	-	-	650	650	100	645
19	세계식량계획(WFP) 정규재원기여금	5,888	100	26,000	26,000	100	24,885
20	시나이정전감시단(MFO) 기여금	310	100	325	325	100	315
21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65	100	65	65	100	63
22	아시아・유럽재단(ASEF)	258	99.6	261	261	100	261
23	아프리카연합(AU) 평화안보활동 분담금	1,290	100	6,500	6,762	104.0	4,918
24	엘시 기금	645	100	650	650	100	666
25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기금	1,015	100	2,600	2,596	99.8	2,587
26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기여	-	-	1,300	1,441	110.8	1,199
27	유엔개발계획(UNDP) 정규재원기여금	13,820	100	23,400	23,400	100	22,626
28	유엔개발시스템 선진화기금	2,028	100	1,927	1,927	100	1,864
29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공업개발기금(IDF)	457	100	434	434	100	652
30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서울투자기술진흥사무소(ITPO)	386	100	468	468	100	995
31	유엔 군축 사업분담금	1,548	100	1,601	1,563	97.6	1,387
32	유엔난민기구	4,906	100	23,266	23,266	100	23,149

연번	분담금 명	2023년		2024년			2025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33	유엔마약범죄사무소	134	100	260	260	100	253
34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	-	650	650	100	-
35	유엔아동기금(UNICEF) 정규재원기여금	5,157	100	19,500	19,500	100	18,663
36	유엔인구기금(UNFPA) 정규재원기여금	-	-	1,300	1,300	100	2,760
37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2,580	100	6,500	6,500	100	5,850
38	유엔자원봉사단(UNV)	4,717	97.1	5,832	5,789	99.3	5,829
39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분쟁예방기금	4,902	99.9	4,544	4,537	99.8	4,427
40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2,265	100	10,408	10,408	100	5,204
41	유엔평화구축기금	5,598	100	10,408	10,408	100	9,881
42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파트너십 기금	96	100	91	91	100	91
43	중동담수화연구소 협력기금	61	100	58	58	100	58
44	평화유지신탁기금	3,870	100	3,900	3,900	100	3,955
45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ECCC) 신탁기금	516	100	390	390	100	126
46	태평양산호초 국가 지원	259	100	390	423	108.5	-
47	테러리즘 대응 및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사업 지원	258	100	781	781	100	763
48	한-메콩 협력기금	8,178	100	10,400	10,400	100	11,040
49	한-미주기구(OAS) 협력기금	244	100	232	232	100	225
50	한-아세안 센터	7,600	100	7,600	7,600	100	7,600
51	한-아세안 협력기금	25,800	98.6	36,400	36,400	100	38,640
52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	382	100	651	651	100	-
53	한-아프리카연합(AU) 협력기금	1,832	100	9,758	9,758	100	8,018
54	한-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협력기금	358	100	663	663	100	626
55	한-중미통합체제(SICA) 협력기금	1,226	100	1,165	1,165	100	1,075
56	한-태평양도서국포럼(PIF) 협력기금	1,548	85.7	3,900	3,110	79.7	6,209
57	한-카리브공동체(CARICOM) 협력기금	818	100	3,900	3,900	100	3,681
58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3,870	100	5,200	5,200	100	5,388
59	한-ESCAP 협력기금(KECF)	191	100	390	390	100	378
60	한-UNDP 지속가능개발(SDG) 신탁기금	10,303	100	10,400	10,309	99.1	10,056
61	해적퇴치 관련 IMO 분담금	206	100	260	260	100	254
62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90	100	142	142	100	145

연번	분담금 명	2023년		2024년			2025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63	APEC 지원 기금(ASF)	903	100	911	932	102.3	966
64	APEC 정책지원부서(PSU) 분담금	241	100	229	229	100	472
65	IAEA 동물원성감염병 통합대응기금	1,032	100	980	980	100	-
66	IAEA 비확산핵안보기금	1,806	100	3,612	3,612	100	3,497
67	NATO 신탁기금	-	-	15,600	15,600	100	33,120
68	OECD 자발적 기여금	1,245	74.3	2,576	2,555	99.2	3,073
69	OECD DAC 자발적 기여금	387	100	368	368	100	377
70	WTO 대개도국 협력사업기여금(GTF)	390	100	650	628	96.6	547

(자료: 외교부)

□ 한국에 소재한 국제기구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외교부에서 분담금을 집행하고 있는 대상 국제기구 중, 해당 국제기구가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는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TCS),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GGGI), 한-아세안센터 등 4개임.

< 한국 소재 국제기구 대상 외교부 분담금 집행 현황 >

연번	국제기구명	소재지 (시/도)	2024 결산 (백만원)	우리나라 분담율	직원 수
1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부산시	1,861	91.5%	25명
2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TCS)	서울	2,421	33.33%	35명
3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GGGI)	서울	17,550	해당 없음	850명
4	한-아세안센터 (ASEAN-Korea Centre)	서울	7,600	93% (협약상 내용이 아닌 운영상 분담율)	40명

(자료: 외교부)

한국에 소재하는 국제기구의 경우 국제기구 예산의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구의 주요 재정 원천을 제공하는 국가로서

예산 집행 실적과 활동 실적에 대해 외교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 분담율은 재한유엔기념공원은 91.5%,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은 33.3%, 한-아세안센터는 93% 수준임.

상기 국제기구 중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의 경우, 사무국 운영비 등을 제외한 연간 예산 411만 달러 중 352만 달러가 집행되어 집행률은 85.7%이나, 이를 활동성 경비와 행정성 경비로 구분해 보았을 때 활동성 경비의 집행률이 82.1%로 비교적 낮은 상황이며 부서 간 집행률에서도 20%p 이상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28)]

이에 따라 사업 계획 대비 예산의 실효적 집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되며, 외교부 차원의 체계적 모니터링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023 회계연도 연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a)	결산(b)	집행률(b/a)
연간 예산(Annual Budget)	4,111,864	3,523,879	85.7
활동(Activities)	1,278,832	1,049,870	82.1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355,179	244,802	68.9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315,087	251,731	79.9
Department of Socio-cultural Affairs	345,538	309,584	89.6
Department of Management and Coordination	263,028	243,754	92.7
행정(Administration)	2,833,032	2,474,009	87.3
인건비(Personnel Expense)	2,616,342	2,297,837	87.8
사무실 운영비 (Office Management Cost)	216,690	176,171	81.3

※주: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의 2023 회계연도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임.
※자료: 「FY2023 ANNUAL FINANCIAL REPORT」, TCS를 바탕으로 재작성

28)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사업 구조의 다양성, 사업 착수 시기 차이 및 외부 환경 변수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부서 간 집행률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그 밖에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과 한-아세안센터도 국제기구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담금 집행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제한되는 상황임.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는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된 독립적인 국제기구로, 내부 회계자료의 국회 제출을 위해서는 국제관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한-아세안센터 또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회원국이 자국의 헌법과 국내법 절차에 따라 비준된 조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인바, 결산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처럼 국제기구 분담금의 경우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을 분담하더라도 분담금 집행에 대한 국회 검토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주요 재정 공여국으로서 예산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부가 보다 면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외교부의 「2023년도 국제기구분담금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국내 소재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사무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Ⅲ.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 **(국내 소재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사무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예산 지원 규모의 적정성, 해당 기구의 활동**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 제기

○ 우리나라 외 여타 국가의 재정 기여 규모 및 활동 현황, 외국인 채용 여부 등도 확인 필요

○ 설립협정 또는 MOU 상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및 기능 수행 여부 관련 지속 점검 필요

※자료: 「2023년도 국제기구분담금 종합보고서」, p. 8

□ 2024년도 신규 편성 분담금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 필요

외교부가 2024년부터 편성을 시작한 분담금은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기여, 비세크라드 펀드, NATO 신탁기금, 메콩강위원회,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유엔인구기금(UNFPA) 정규재원기여금 등 6건임.

< 2024년도 신규 편성 기여금 현황 >

분담금명	개요	납부 기간	지정/ 비지정	국제기구 실집행 현황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기여	우리 정부 주도로 제정한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 운영 및 세계시민교육활동 지원	2024~	지정	**2024년 활동 및 재정보고서 상금 미접수**
비세그라드 펀드	비세그라드 그룹(V4 /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4개국 협의체)의 공식 원조기구인 IVF 기여금 납부를 통해 V4와 V4 주변국(서발칸, 동방 파트너십 국가)에 대한 협력 강화	2024~	지정	72.6%
NATO 신탁기금	NATO 군 재활센터(Military Medical Clinical Treatment Rehabilitation Centre) 사업에 전액 기여	2024~	지정	**미확인**
메콩강 위원회(MRC) 분담금	MRC(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이 메콩강 수자원 관리를 위해 메콩협약을 통해 출범한 지역협력체)의 개발파트너로서 100만불 기여	2024~	비지정	**미확인**
유엔사회 개발연구소 (UNRISD)	유엔사회개발연구소 운영	2024	비지정	**확인 불가 (개별 국가의 기여에 대한 집행 현황 자료 미제공)**
유엔인구기금 (UNFPA) 정규 재원기여금	UNFPA에 대한 정규재원 기여를 통해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 및 SDG 이행에 기여하고 여성.평화.안보(WPS) 의제 선도	2024~	비지정	**미확인**

※주: 국제기구 실집행 현황은 2024년도 기여금에 대한 것으로, 2025. 6. 기준임
(자료: 외교부)

6건의 신규 분담금 중 비세그라드 펀드 집행율만 확인이 가능하며, 나머지 네 개 분담금의 국제기구 집행률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분담금별 집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정부 주도로 제정한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을 운영하는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기여'는 외교부와 유네스코 간 사업 지원의향서가 2024년 5월 27일에 체결되어 본격적인 사업이 2025년이 되어 시작됨에 따라, 2024년 활동 및 재정보고서가 2025년 말이 되어야 발간될 예정임.

<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기여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시기	주요 내용
25.2월	• 세계시민교육상 운영 방안 구체화
25.3~5월	• 세계시민교육상 운영 및 홍보계획 수립 •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 웹페이지 개설 (https://www.unesco.org/en/prizes/global-citizenship-education) •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 홍보물 제작 (https://trello.com/b/v50DXqHM/education-prizes-2025)
25.5월 ~25.9.1.	• 제1차 세계시민교육상 후보자 접수
25.6~9월	• 세계시민교육상 평가위원회 최종심사 진행
25.10월	• 제1차 세계시민교육상 시상식 개최

(자료: 외교부)

비세그라드 펀드[29]는 V4 역내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재원을, 비정부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집행하는 사업임. 2024년 말 기준 집행률은 52.3%이며, 2025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연내 전액 집행할 예정임.

29) 비세그라드펀드(IVF: International Visegrad Fund)는 V4(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회원국들이 동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문화, 과학, 교육분야 발전을 지원하고자 공동 창설한 국제기구로, V4 국가 간 및 서발칸/동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제고를 위해 매년 11백만 유로 규모의 기금 조성·운영중

한편, 메콩강위원회 분담금은 송금 시기가 2024년 11월 28일로, 지난해에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메콩강위원회는 동 기여금을 2025년에 집행하기로 하였다고 함.

이 밖에 유엔사회개발연구소에 대한 기여금과와 유엔인구기금 정규재원 기여금은 분담금의 용처를 지정하지 않는 '비지정기여'로 우리 정부의 기여금만 특정하여 집행률을 측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외교부의 의견임.

이처럼 2024년에 신규 편성된 분담금은 사업 초기단계로 인하여 국제기구의 집행현황을 파악할 수 없거나 집행 상황이 미진한 경우가 다수 있음. 향후에는 분담금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이전에 국제기구와의 협의 및 사업 일정 조율을 보다 면밀히 진행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다자관계 협력

가. 개 요

「다자관계 협력」 프로그램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와 공동 대처함으로써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액은 250억 1,300만원이고, 257억 3,300만원이 집행됨.

< 다자관계 협력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예산		2024 결산	2025 예산
					본예산	추경		
[2200] 다자관계협력				17,378	25,013	25,013	25,733	21,585
	[2231] 국제기구 협력강화			17,378	25,013	25,013	25,733	21,585
		[11] 일반	[401] 국제기구초급 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	9,284	14,115	14,115	14,048	16,072
		[11] 일반	[402] 테러 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1,823	1,880	1,880	1,757	-
		[11] 일반	[403]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3,148	3,943	3,943	3,489	3,751
		[11] 일반	[405] MIKTA 중견국 외교	147	160	160	137	244
		[11] 일반	[406]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409	475	475	425	451
		[11] 일반	[408] 유엔 행정예산 분야 제도 구축 및 운영 강화(정보화)	64	63	63	62	57
		[11] 일반	[411]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2,180	-	-	-	-
		[11] 일반	[41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	-	-	-	1,010
		[11] 일반	[421]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322	4,377	4,377	5,815	-

나.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사업은 글로벌 다자이슈 관련 회의 및 협의체 개최·참석, 국제회의 의장단·이사국 진출 및 활동 지원,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증진 활동을 통해 다자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기여 및 위상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39억 4,300만원이고, 이 중 34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000만원을 이월하였고, 2억 7,400만원을 불용하였음.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3,943	3,943	-		-	3,793	3,489	30	274	88.5
- 유엔 관련 다자협력 강화	1,026	1,026	-	58	-	1,084	985	30	69	96.0
- 국제인권 관련 다자협력 강화	211	211	-	121.3	-	332.3	308.3	-	24	146.1
- 국제안보 관련 다자협력 강화	99	99	-	60	-	159	157	-	1	158.6
- 아시아정당국제회의 (ICAPP) 사무국 지원	560	560	-	-	-	560	560	-	-	100.0
-2024-25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2,047	2,047	-	△390	-	1,657	1,478	-	179	72.2

□ 2024-25 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집행부진

내역사업 「2024-25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은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통해 국제평화·

안보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우리의 국제 영향력 및 위상을 제고하려는 사업임.

외교부는 동 사업을 위하여 2024년도에 2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14억 7,8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2.2% 수준에 그쳤음.

<2024년도 「2024-25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편성근거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우리 중점의제 성과 도출 관련 활동	○ 의장국 수임 시 중점의제 논의 관련 회의 개최(2회) ○ 세미나 및 행사 공동 개최 등 안보리 우리 중점의제 관련 전문연구기관과의 협업(3회) ○ 의장국 수임 관련 회의 참여 여비 및 중점의제 관련 전문가 초청 여비(5회) ○ 중점의제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2회)	610	540	88.5
한반도 문제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의 이해 제고 활동	○ 세미나 및 안보리 이사국 주유엔대사 현장 방문 등 행사 개최(2회) ○ 방한 초청 및 회의 참여(3회)	364	185	50.8
안보리 이사국 간 업무체계 구축	○ 이사국(상임 및 비상임이사국) 간 업무협의(20회)	62	76	122.6
안보리 관련 전문인력 확보	○ 주유엔대표부 전문직 및 일반직 행정직원 채용(4명) ○ 전문 스피치라이터 채용(1명) ○ 법률자문가 용역(1회)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4명)	573	375	65.4
안보리 회의 참석 및 이사국·관련국·사무국과의 협의	○ 회의 참석 및 업무협의(14회)	189	74	39.2
안보리 이사국 및 의장국 수임 지원 관련 연구	○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의제별 정책 연구비(3회)	240	219	91.3
대국민 공공외교 및 안보리 수임 관련 홍보	○ 이사국(상임 및 비상임이사국) 간 업무협의(3회)	9	9	100.0
합 계		2,047	1,478	72.2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동 사업의 집행률 부진에 대하여, 이사국 대표단 방한 무산, 전문인력 채용 지연 및 회의 참석 축소 등 외부 여건과 일정 조정의 어려움을 들고 있음. 실제로 안보리 관련 주요 행사는 주유엔대표부 주관으로 현지에

서 이루어졌고, 방한 초청은 일정상의 제약으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해당 사업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임기 개시 첫해에 해당하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핵심적 사업임을 고려할 때, 사전 준비와 기획 및 실행력 전반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었다고 판단됨.

특히, 회의·세미나 개최 횟수, 인력 운영 규모 등 실질적 활동이 계획 대비 축소되었으며, 국외업무여비의 집행률이 53.1%에 그친 점은 아쉬운 측면이 있음.

< 「2024-25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비목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비목)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B/A)
	본예산(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용임금(110-04)	391	391	-	△150	-	241	213	-	28	54.5
-일반수용비(210-01)	9	9	-	152	-	161	161	-	0	1788.9
-임차료(210-07)	40	40	-	4	-	44	44	-	0	110.0
-일반용역비(210-14)	510	510	-	△204	-	306	295	-	11	57.8
-국내여비(220-01)	-	-	-	3.5	-	3.5	3.5	-	0	-
-국외업무여비(220-02)	657	657	-	△209	-	448	349	-	99	53.1
-사업추진비(240-01)	68	68	-	14	-	82	82	-	0	120.6
-정책연구비(260-02)	340	340	-	-	-	340	319	-	21	93.8
-고용부담금(320-09)	32	32	-	-	-	32	12	-	20	37.5
합 계	2,047	2,047	-	△390	-	1,657	1,478	-	179	72.2

더욱이 2025년에도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5월 기준 집행률이 25%에 불과하여 2025년도 역시 집행부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외교부는 하반기에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질 예정이라 설명하지만, 전년도에도

실적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2024-25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집행률 >

(2025. 5월 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우리 중점의제 성과 도출 관련 활동	600	91	15.2
한반도 문제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의 이해 제고 활동	312	-	-
안보리 이사국 간 업무체계 구축	60	8	13.3
안보리 관련 전문인력 확보	619	248	40
안보리 회의 참석 및 이사국·관련국·사무국과의 협의	164	41	25
안보리 이사국 및 의장국 수임 지원 관련 연구	255	119	46.7
대국민 공공외교 및 안보리 수임 관련 홍보	20	-	-
합 계	2,030	507	25

(자료: 외교부)

이에 외교부는 사업의 목적과 상징성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 예산의 집행계획을 면밀히 설계·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9. 원자력 비확산 외교 강화

가. 개 요

「원자력 비확산 외교 강화」 프로그램[30]은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전략적 원자력 외교를 추진하고, 양자 및 다자 원자력 협력체제와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를 구축하며, 국제사회의 의무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외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은 52억 3,900만원이고, 47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원자력 비확산 외교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예산		2024 결산	2025 예산
					본예산	추경		
[2300] 원자력 비확산 외교 강화				2,680	5,239	5,239	4,795	4,848
	[2331] 원자력 및 군축·비확산 분야 양·다자 협력 강화			2,680	5,239	5,239	4,795	4,848
		[11] 일반	[40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2,680	2,127	2,127	1,965	3,005
		[11] 일반	[402]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	3,112	3,112	2,830	-
		[11] 일반	[403]사이버안보 외교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	-	-	-	1,843

30) 2022년 정부의 프로그램 성과목표제 시행으로 인해 종전의 종전 1500 프로그램(다자관계 협력) 내의 세부사업이 2300 프로그램으로 개편되었음.

나.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사업은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 군축·비확산 분야 모범국으로서 관련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인공지능(AI) 관련 국제적 논의 선도 및 인공지능(AI) 기반 강군 육성이라는 우리 국방전략과 부합하는 국제 규범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3,112	-	-	1	-	3,113	2,830	22	261	90.9
-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3,112	-	-	1	-	3,113	2,830	22	261	90.9

□ 부처 간 예산배분 미흡으로 인한 과다 전용 및 연구비 미집행 부적절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사업은 2022년 11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공동성명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2023년 제1차 고위급회의를 공동 개최한 데 이어, 2024년 제2차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임.

우리 정부는 제1차 회의(2023년, 네덜란드 개최)의 집행 규모(약 83억 원)를 감안하여, 제2차 회의 개최를 위해 총 6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외교

부와 국방부가 공동주최하도록 각 부처에 각각 31억원씩 배정하였음.

그런데, 외교부는 당초 준비기획단 인건비로 책정된 9,300만원에 1억 1,100만원을 전용 등을 통하여 추가로 집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제 발굴 및 논의 구체화를 위해 편성된 정책연구비 1억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음.

<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액	집행액
준비기획단 인건비	93	171
회의 물품 구입, 자료 제작, 자산 취득, 일반용역비 등 운영비	2,869	2,611
국내외 여비	30	28
오·만찬 및 업무협의 등 사업추진비	20	20
정책연구비 (의제·발굴 등)	100	-
총계	3,112	2,830

(자료: 외교부)

<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사업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7.19.)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최 (2331-402)	210-07	10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최 (2331-402)	320-09	준비기획단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
전용 (2024.7.19.)		260-02	100		110-04	준비기획단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
내역변경 (2024.6.19.)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2331-401)	110-03	1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최 (2331-402)	110-04	준비기획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024.3.15.)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최 (2331-402)	210-07	100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개최 (2331-402)	210-09	준비기획단 사무실 조성 및 시설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충당
세목조정 (2024.8.2.)		210-14	293		210-01	REAIM 고위급회의 홍보를 위한 광고료 지급

외교부는 인건비 전용 사유에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가 동 사업 예산을 분할 편성하였으나, 준비기획단이 외교부에 소속되어 있어 국방부 예산으로 외교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 외교부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전액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함.

동 사업은 국제 규범 창출을 위한 책임 있는 AI 개발·활용 논의를 주도하는 고위급 국제회의인 만큼, 행사 의제의 전문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연구비의 미집행은 향후 사업 성과와 국제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바, 연구비 예산 전액을 행정비용에 충당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이는 당초 외교부와 국방부 간 예산 배분 시 집행 역할에 대한 충분한 조정과 협의 없이 기계적으로 예산을 분할 편성함으로써, 공동주최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전용의 반복이라는 비효율을 초래한 것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준비가 미흡했다고 할 것임.

향후 유사한 형태의 부처 공동사업 추진 시에는, 부처 간 기능별 분담 및 세부 세출항목에 대한 실무 협의를 사전에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설계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10. 국제개발협력

가. 개 요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중 ⅰ)「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ⅱ)「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ⅲ)「중남미지역 국가원조」, ⅳ)「중동 CIS지역 국가원조」, ⅴ)「글로벌 프로그램」, ⅵ)「협력사업 지원」, ⅶ)「전략적협력 강화」, ⅷ)「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일부(「인도적지원」 일부[31] 및 「민관협력사업」[32]), 이상 8개 단위사업 예산은 외교부가 KOICA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 예산임.

외교부는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단위사업 중 「ODA 선진화」 세부사업과 「인도적지원(ODA)」 세부사업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있음.

전체 프로그램의 2024년 예산액은 1조 9,680억 3,500만원이고, 이 중 1조 8,938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음.

31) 2438-402 중 민관협력사업 인도적지원

32) 2438-403

< 국제개발협력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예산		2024 결산	2025 예산
					본예산	추경		
[2400] 국제개발협력				1,247,771	1,968,035	1,968,035	1,893,806	1,967,014
	[2431]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219,944	275,641	275,641	249,975	307,548
		[11] 일반	[401] 베트남(ODA)	32,381	49,646	49,646	41,869	57,293
		[11] 일반	[402] 인도네시아(ODA)	15,448	20,971	20,971	15,016	17,114
		[11] 일반	[403] 캄보디아(ODA)	22,636	22,864	22,864	22,339	21,232
		[11] 일반	[404] 필리핀(ODA)	18,137	31,043	31,043	21,613	30,470
		[11] 일반	[405] 방글라데시(ODA)	14,122	13,790	13,790	9,410	14,044
		[11] 일반	[406] 몽골(ODA)	14,848	17,122	17,122	16,706	20,937
		[11] 일반	[407] 라오스(ODA)	25,698	24,652	24,652	26,752	27,290
		[11] 일반	[408] 스리랑카(ODA)	11,044	12,232	12,232	18,842	7,975
		[11] 일반	[409] 네팔(ODA)	7,971	9,438	9,438	10,101	14,653
		[11] 일반	[410] 파키스탄(ODA)	7,337	9,239	9,239	8,869	11,315
		[11] 일반	[411]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49,742	62,841	62,841	57,955	83,648
		[11] 일반	[412] 인도(ODA)	415	853	853	190	250
		[11] 일반	[413] 미얀마(ODA)	165	950	950	314	1,327
	[2432]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224,943	306,614	306,614	289,238	302,087
		[11] 일반	[401] 가나(ODA)	9,548	15,943	15,943	15,943	20,583
		[11] 일반	[402] 에티오피아(ODA)	31,109	30,643	30,643	28,804	28,644
		[11] 일반	[403]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24,029	187,826	187,826	177,451	178,966
		[11] 일반	[404] 르완다(ODA)	15,640	15,714	15,714	15,714	17,733
		[11] 일반	[405] 우간다(ODA)	14,554	14,501	14,501	13,620	17,547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406] 탄자니아(ODA)	14,678	18,927	18,927	16,981	17,931
		[11] 일반	[407] 세네갈(ODA)	8,620	12,853	12,853	12,367	12,507
		[11] 일반	[408] 이집트(ODA)	6,765	10,207	10,207	8,358	8,176
	[2433]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87,242	73,671	73,671	72,784	94,432
		[11] 일반	[401] 콜롬비아(ODA)	9,861	7,306	7,306	8,306	11,229
		[11] 일반	[402] 페루(ODA)	6,917	9,964	9,964	7,101	9,497
		[11] 일반	[403] 볼리비아(ODA)	8,408	8,024	8,024	9,224	17,250
		[11] 일반	[404] 파라과이(ODA)	10,892	15,701	15,701	15,038	11,100
		[11] 일반	[405]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1,164	32,676	32,676	33,115	45,356
	[2434]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78,072	133,274	133,274	119,449	115,139
		[11] 일반	[401] 우즈베키스탄(ODA)	11,928	23,767	23,767	19,274	22,020
		[11] 일반	[402]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7,482	88,688	88,688	80,027	69,972
		[11] 일반	[403] 키르기스스탄(ODA)	8,661	12,950	12,950	17,566	12,653
		[11] 일반	[404] 타지키스탄(ODA)	1	7,169	7,169	1,882	5,439
		[11] 일반	[405] 우크라이나(ODA)	0	700	700	700	5,055
	[2435] 글로벌 프로그램			228,796	313,652	313,652	306,090	336,244
		[11] 일반	[401]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	100,858	128,756	128,756	123,805	143,026
		[11] 일반	[402] 글로벌연수(ODA)	51,917	67,378	67,378	66,962	67,973
		[11] 일반	[403] 국제기구협력(ODA)	51,725	81,915	81,915	80,207	80,015
		[11] 일반	[404]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	24,296	35,603	35,603	35,116	45,230
	[2436] 협력사업 지원			48,397	59,260	59,260	54,450	61,390
		[11] 일반	[401] 협력사업 지원(ODA)	48,397	59,260	59,260	54,450	61,390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437] 전략적 협력강화			3,925	8,000	8,000	5,661	6,400
		[11] 일반	[401] 전략적 협력 강화(ODA)	3,925	8,000	8,000	5,661	6,400
	[2438]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356,452	797,923	797,923	796,159	743,774
		[11] 일반	[401] ODA 선진화	1,149	812	812	714	1,271
		[11] 일반	[402] 인도적지원(ODA)	307,774	740,111	740,111	740,079	677,503
		[11] 일반	[403] 민관협력사업(ODA)	47,530	57,000	57,000	55,365	65,000

나. 인도적지원(ODA)

「인도적지원(ODA)」 사업은 해외재난 발생 시 피해국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 실시, 인도적지원 및 재난구호 분야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것임.

2024년 예산액은 7,401억 1,100만원이며, 이 중 7,400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인도적지원 (ODA)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대비(C/A)	현액대비(C/B)
740,111	740,111	-	-	-	740,111	740,079	-	32	100.0	100.0

「인도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결산은 아래와 같음.

< 2024년도 인도적지원 내역사업별 결산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 이월	이·전용	예비비				
해외긴급구호	734,624	734,624	-	-	-	734,624	734,600 (732,107)	-	24
재난대응 및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민간경상보조)	703,400	703,400	-	-	-	703,400	703,400 (700,907)	-	-
ACT-A 등 포함 긴급·만성재난 대응	434,700	434,700	-	2,283	-	436,983	436,983 (436,967)	-	-
우크라이나 지원	260,200	260,200	-	△200	-	260,000	260,000 (258,037)	-	-
KDRT 역량강화	8,500	8,500	-	△2,083	-	6,417	6,417 (5,902)	-	-
국제부담금	31,224	31,224	-	-	-	31,224	31,200	-	24
선진 인도적지원 역량강화	187	187	-	-	-	187	179	-	8
인도적지원 민관협력 (출연금)	5,300	5,300	-	-	-	5,300	5,300 (5,287)	-	-
계	740,111	740,111	-	-	-	740,111	740,079	-	32

(자료: 외교부)

「인도적지원(ODA)」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내역사업은 「해외긴급구호」인데, 동 내역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은 7,346억 2,400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2,993억 6,700만원 대비 약 2.5배 증액 편성되었음.

「해외긴급구호」 내역사업은 다시 KOICA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집행하는 '재난대응 및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사업과,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국제기구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국제부담금' 사업으로 나뉨.

□ 인도적지원 예산에서 정상공약 이행을 위한 지원 부적절

‘재난대응 및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내내역사업에는 ① ACT-A[33] 등 포함 긴급·만성재난대응, ② 우크라이나 지원, ③ KDRT 역량강화 사업이 있음.

이 중 ① ‘ACT-A 등 포함 긴급·만성재난대응’은 해외의 긴급한 재난 또는 만성재난에 대하여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해당 국가에 직접 현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긴급재난’과 ‘만성재난’ 성격으로 구분되며, 지원 내역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34]하도록 되어 있음.

< 해외긴급구호 지원 내역 >

1. 개 요

❑ 재난의 성격, 구호 제공방식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
△현금지원 △현물지원 △KDRT 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긴급구호를 제공

○ **(긴급재난) △피해 현황* △피해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지원 요청 △해당 재외공관 건의 △국제사회 지원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 여부, 지원 방식 및 규모 결정**
* 인적 피해(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이재민 등의 수) 및 물적 피해(가옥, 농경지, 기반시설 등의 파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만성적 재난)** 국제사회가 발표(UNOCHA Global Humanitarian Overview 등) 하는 인도적 수요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 및 규모 결정
- 재난 지역에 대한 접근성 및 분야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OCHA, WFP, 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

※자료: 「2023년도 해외긴급구호 활동 및 평가 결과」, 2024. 11. 4. 외교부

33) ACT-A는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의 약자로, 코로나19 시기 ▲백신, ▲치료제, ▲진단 분야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WHO를 중심으로 출범한 국제 공조 체제를 말함.

3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구호물품·장비 또는 현금 등 구체적인 지원내역

2024년도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긴급재난 지원액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천불)

연번	지원내용	금액(원화)	금액(미불)
1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	4,011	3,000
2	칠레 산불 피해	666	500
3	몽골 혹한 피해	268	200
4	대만 지진 피해	684	500
5	케냐 집중호우 피해	1,379	1,000
6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피해	684	500
7	브라질 홍수 피해	414	300
8	카리브 3개국 허리케인 피해 관련 인도적지원	416	300
9	남부 아프리카 4개국 가뭄 피해 관련 인도적지원	4,112	3,000
11	에티오피아 산사태 피해 관련 인도적지원	1,371	1,000
12	아르메니아 추가 인도적지원	1,342	1,000
13	베트남 태풍 피해 관련 인도적지원	2,661	2,000
14	레바논 인명 피해에 대한 인도적지원	4,118	3,000
15	네팔 폭우 피해 관련 인도적지원	695	500
16	쿠바 식량·전력난 관련 인도적지원	2,069	1,500
17	볼리비아 산불 피해 관련 인도적지원	83	60
18	에콰도르 산불 피해 관련 인도적지원	56	40
19	필리핀 태풍 피해 관련 인도적지원	695	500
20	라오스 홍수 피해 관련 인도적지원	699	500
21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에 따른 인도적지원**	**14,291**	**10,000**
22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활동비	69	50
23	2024년도 ACT-A 기여금	142,803	100,000
합 계		**183,583**	**129,450**

(자료: 외교부)

< 만성재난 지원액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천불)

연번	지원내용	금액(원화)	금액 (미불)
1	DR콩고	6,702	5,000
2	과테말라	3,144	2,200
3	나이지리아	1,333	1,000
4	남수단	4,021	3,000
5	니제르	2,681	2,000
6	레바논	6,439	4,500

연번	지원내용	금액(원화)	금액 (미불)
7	마다가스카르	1,340	1,000
8	말리	2,010	1,500
9	모잠비크	1,340	1,000
10	미얀마	17,350	13,000
11	방글라데시	13,346	10,000
12	베네수엘라	5,725	4,000
13	부르키나파소	2,681	2,000
14	소말리아	2,666	2,000
15	수단	12,063	9,000
16	시리아	17,170	12,000
17	아이티	8,575	6,000
18	아프가니스탄	25,931	18,000
19	에콰도르	1,429	1,000
20	에티오피아	9,382	7,000
21	엘살바도르	2,858	2,000
22	예멘	6,801	4,800
23	온두라스	4,296	3,000
24	요르단	5,729	4,000
2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340	1,000
26	차드	3,351	2,500
27	카메룬	1,340	1,000
28	케냐	1,333	1,000
29	콜롬비아	4,287	3,000
30	튀르키예	7,873	5,500
31	팔레스타인	51,915	38,000
32	페루	1,429	1,000
33	다년간 기여	14,175	10,100
34	다국가(방글라데시,동티모르)	1,329	1,000
합 계		**253,384**	**183,100**

(자료: 외교부)

그런데 동 사업에서 지원된 건 중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에 따른 인도적지원(1,000만불)'은 2024년 G20 의장국인 브라질이 G20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로 창설한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35]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임.

35) GAAHP는 기아·빈곤 퇴치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는 회원과 해당 전문 지식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하려는 파트너를 연결하는 플랫폼임.

동 지원은 지난 11월 우리 정상이 G20 정상회의 참석에서 우리나라의 GAAHP 가입을 선언하며 연내 1천만달러를 지원하기로 밝힘[36]에 따라 지원을 실시하게 된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첫째, 동 사업에서 정상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인도적지원의 독립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음.

인도적지원의 기본원칙은 인류애(humanity), 공평성(impartiality), 중립성(neutrality), 독립성(independence)으로, 이 중 '독립성'은 인도적지원이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목적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함.[37]

그런데 GAAHP에 대한 지원은 오로지 재난의 인도적 필요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기보다는, G20 정상회의라는 외교적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공약 이행이라는 정부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인도적지원의 핵심 원칙인 독립성의 원칙과 상충될 여지가 있음.

둘째, 동 지원은 일반적인 지원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긴급지원은 해외재난 발생 시 재외공관의 보고와 국제사회의 긴급 요청 접수에 따라 외교부 내에서 협의를 통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있으며, 만성지원은 연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지원함.

---

36) "아프리카 식량난에 1천만불 지원…尹, 기아퇴치연합 회원국 선언" (연합뉴스. 2024.11.19.)

37) https://www.icrc.org/en/our-fundamental-principles

ㅇ **자연재난 등 긴급 재난 지원**

▪ (지원 결정 절차) 재난 발생 시 수일 내에 지원 여부 결정

재난 발생 ⇨ 재외공관 보고 ⇨ 국제사회의 재난 평가 및 긴급 요청 접수 ⇨ 지원 계획(안) 수립 (지역국/재외공관 협의) ⇨ 지원 계획 확정

▪ (고려사항) △인적·물적 피해 현황, △피해국의 재난 대응 역량, △국제사회의 지원 요청 및 지원 현황·규모, △정무적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

ㅇ **난민 등 만성적 재난**

▪ (지원 결정 절차) 유엔합동지원요청을 바탕으로 연초 집행계획 수립

유엔합동 지원요청 발표 (연초) ⇨ 국별 지원계획(안) 수립 ⇨ 지역국/재외공관 협의 ⇨ 국별 지원계획 확정

▪ (고려사항) △국별 유엔합동지원요청 규모, △재난의 심각성,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우리의 인도지원 중점 추진 분야와의 부합성, △정무적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

※자료: 2024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2025.2.), 외교부

그런데, 동 지원은 정상의 공약 이행을 위한 결정에 의한 것으로 긴급재난이나 만성재난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는데,[38] 이러한 집행은 재원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저해할 여지가 있음.

다만,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인도적지원이 성격상 연초에 모든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며, GAAHP은 당시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브라질이 주도한 핵심 성과사업으로 모든 G20 회원국이 가입했다는 점에서 GAAHP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였다는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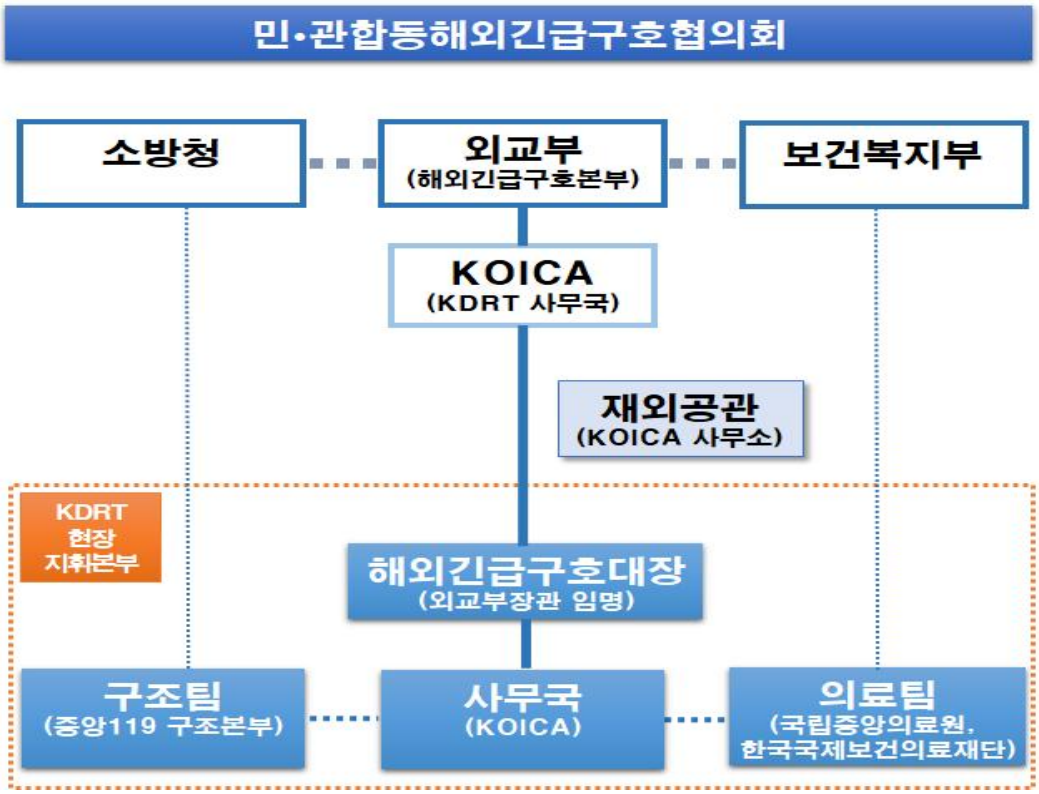
□ KDRT 관련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집행 부진 등

‘재난대응 및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내내역사업의 하위 사업인 ‘KDRT 역량강화’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운

38) 연초 작성하는 지원계획은 외교부 비공개 사항으로 이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확인 불가함.

영을 위한 사업임. KDRT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국가의 피해 감소, 인명구조, 의료구호, 조기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신속하게 파견하는 긴급구호대임.

KDRT 구성 및 지휘체계는 다음과 같음.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정이 필요함.

첫째, KDRT 역량강화 예산은 2023년 22억 7,500만원에서 2024년 85억원으로 약 4배 증액 편성되었는데, 집행액은 59억원으로 약 70% 수준에 그쳐 집행이 부진함.

KDRT 관련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 구조팀 운영, KDRT 사무국 운

영 등 '긴급구호 역량강화' 사업, ② 해외재난 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③ 비축창고 운영, ④ 긴급구호 전담인력 인건비로 구분되는데, 긴급구호 전담인력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용·조정을 통해 감액하였음.

< KDRT 역량강화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본예산	본예산	전용·조정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긴급구호 역량강화	1,823	7,578	△1,845	5,733	5,358	356	20
구조팀 운영	398	1,700	3	1,703	1,700	-	3
의료팀 운영	1,014	1,600	△233	1,367	1,367	-	-
사무국 운영	200	3,150	△1,157	1,993	1,623	356	14
교육훈련 및 네트워크 구축	60	765	△454	311	310	-	2
사무국 운영지원 용역(자회사)	151	363	△5	358	358	-	-
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160	300	△22	278	139	139	-
비축창고 운영	140	500	△216	284	284	-	-
긴급구호 전담인력 인건비	151	122	-	122	122	-	-
계	2,274	8,500	-	6,417	5,903	495	20

(자료: 외교부)

둘째, 구호물품 비축 관련 계약 체결이 지연되며 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계획 수립·추진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구호물품 비축과 관련하여, 비축을 위하여 구호물품을 구입하는 '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사업과 구입한 구호물품을 비축하기 위한 창고를 운영하는 '비축창고 운영' 사업이 있는데,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각각 46.3%와 56.8%에 그침.

우선, ‘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사업의 집행 부진은 패밀리텐트 구입을 위한 입찰 공고가 2024년 9월에, 계약 체결이 같은 해 11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이월이 발생함에 기인함. 당초 KOICA는 2024년 상반기 중 조달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39], 구매 수량 파악과 견적·사양 조사가 2024년 8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조달 계획에 지연이 발생하였음.

< 패밀리텐트 구매 계약 추진 경위 >

○ **(2024년 5월)** 패밀리텐트 구매 수량 등 파악
○ **(2024년 6~8월)** 패밀리텐트 구매 견적 및 사양조사 등 입찰 준비
○ **(2024년 9월)** 입찰 공고
○ **(2024년 11월)** 계약 체결

(자료: 외교부)

한편, ‘비축창고 운영’은 예산 5억원 중 비축물품 지원 운송비 2억원이 집행되지 않음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였으며,[40] 비축물자 확대를 고려하여 2024년 4월부터 비축창고를 확장하였으나 패밀리텐트 물품 반입이 늦어져 확대된 창고 공간 활용이 계획 대비 다소 제한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셋째, 평년에 비하여 지난해에 다수의 용역이 추진되었는데, 용역 급증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외교부와 KOICA는 긴급구호 역량강화 사업 중 사무국 운영 예산에서 ‘인도적지원 혁신제품 생산-활용 생태계 조성 컨설팅 용역’ 등 약 10여개의 용역을 실시하였음.

---

39) 「2024년도 인도적지원(ODA) 보조금 사업계획서」, p.4.

40) 2024년 긴급재난 발생으로 인한 비축물품의 현물 지원 사례가 없어 비축물품 운송비가 발생하지 않았음.

< 2022-2024년 '사무국 운영' 사업의 용역 실시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액
2022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홍보동영상 제작 용역	22.4.19.	22.6.30.	14,850
2023	2023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 백서 제작 용역	23.7.7.	23.10.31.	48,400
	2023 캐나다 산불 피해 대응 백서 제작 용역	23.10.30.	23.12.8.	25,630
2024	인도적지원 및 분쟁취약 지원사업 기획 모니터링 및 평가 개선방안 연구 용역	24.7.16.	24.12.15.	128,253
	인도적지원 국내 파트너십 발전 방안 연구	24.7.18.	24.12.31.	147,676
	2024년 인도적지원 홍보 용역	24.8.29.	25.2.28.	320,036
	우리나라의 인도적지원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	24.9.6.	25.4.3.	287,060
	2024년 HNPW 자료 발간집 디자인 제작 용역	24.9.25.	24.10.18.	4,950
	(장기계속)2024-2026 KOICA 인도지원처 회계정산 검토용역	24.10.7.	24.12.31.	35,497
	2024년 HNPW 자료 발간집 인쇄 용역	24.11.7.	24.11.19.	9,966
	인도적지원 혁신제품 생산-활용 생태계 조성 컨설팅 용역	24.11.8.	25.3.31.	221,504
	인도적지원 정보시스템 기본설계(ISMP) 용역	24.11.14.	25.3.31.	184,371

(자료: 외교부)

그런데 동 용역들이 집행된 '사무국 운영' 예산은 본래 KDRT 사무국[41]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나, 실제 수행된 용역들은 '인도적지원' 전반에 대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것으로 KDRT 사무국의 고유 기능을 벗어난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2024 인도적지원 홍보 용역」의 과업에는 '인도지원처 통합 홍보 발전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KOICA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신설[42]된 조직인 인도지원처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 관련 용역임.

41) KOICA가 KDRT 사무국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관 부서는 인도지원처 내의 긴급대응팀임.

42) **「직제규정」** (한국국제협력단)
제9조의5(글로벌연대·파트너십본부) 글로벌연대·파트너십본부는 인도지원, 분쟁 및 취약국 지원, 민관협력 사업, 혁신적개발협력프로그램,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 조달 및 기술평가 등을 담당하고 **산하에 인도지원처**, 파트너사업실, 조달실을 둔다. <개정 2018.07.12., 2020.06.26., 2021.05.13., 2023.12.22.>

그러나 해당 용역이 집행된 예산이 인도지원처 내 일부 부서인 긴급대응팀이 담당하는 'KDRT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도지원처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위한 용역에 KDRT 사무국 운영 예산이 사용된 것은 예산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KDRT 사무국 관련 조직 현황 >

부서명		분장업무
인도 지원처	인도 지원실	1. 인도적지원 추진 체계 구축 / 운영 2. 인도적지원 보조금 집행 총괄 3. 인도적지원 국제 규범 및 파트너십 관리 4. 인도적지원 관련 규정 및 제도 관리 5. 인도적지원 현금지원 6. 비축물자 관리 7. 소관 상임이사 성과관리 총괄 8. 소속 본부 내 업무 및 프로세스 조정 총괄 9. KDRT 파견 시 지원(물류, 예산, 행사 등)
	긴급 대응팀	**1. 인도적지원 현물지원** **2. KDRT 평시 업무 총괄** ㅇ **해외긴급구호대(KDRT) 사무국 운영** - KDRT 실무협의회 개최 및 운영협의회 지원 -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 및 표준매뉴얼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검토 - KDRT 파견 대비 사무국 운영 개선 등 - 국내 합동모의훈련(연간 1회) 실시 - 긴급대응 분야 공여국 협의 총괄(USAID, JICA 등) ㅇ **KDRT 구조팀 운영 관리** - 구조팀 연간 계획 검토 및 예산 관리 - 구조장비·물품 조달계약, 관리 지원 등(장비구매·폐기·기증 계획 협의, 검토 및 이행 후 자산등록 및 구호장비·비품 목록갱신, 창고관리 등) - 구조팀 국내외 회의/교육/훈련/등급분류 및 예방접종 등 지원(경비 정산 등) ㅇ **KDRT 의료팀 운영 관리** - 의료팀 약정 체결 및 관리 - 의료팀 연간 사업계획 및 변경 검토(예산교부) - e나라도움 집행점검 및 정산검토 - 의료팀 국내외 교육/훈련/등급분류 지원 - 장비·물품 관리 지원 등(구매·폐기·기증 절차 검토) ㅇ **KOICA 예비대원 관리** - 연간계획 수립, 제도개선 방안 수립 - 교육 및 훈련(IOM 협력, 합동모의훈련 등) - 인력풀 갱신 및 파견 대비(예방접종 등)

부서명		분장업무
		3. KDRT 파견 시 업무 총괄 ㅇ 재난발생 직후 - 피해상황 모니터링 및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 및 민관합동긴급구호협의회 참석 - (KDRT 파견 시) 선발대(사전조사단) 파견 지원. 인력 및 물류 준비, 사무국 업무분장 - (긴급구호물자 지원 시) 구매/조달 준비 ㅇ 파견계획 수립 및 파견 준비 - 상세 파견계획 및 인력(구성/보험/항공 등) 및 물자(필요물품 계약/조달/운송 등) 종합지원계획 수립 - KDRT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출정식 행사 지원, 출국 관련 행정 지원 ㅇ 현장 사무국 지원 - 상시 소통 및 현장 수집 정보 관리(일일상황보고서 접수) - 예산 및 물품 추가 수요 확인 및 지원 - 대원 건강 및 안전관리 ㅇ 귀국계획 수립 및 귀국 준비 - 상세 귀국계획 수립(건강검진,항공 등) - 본국 회수/기증 장비 목록 작성, 서류 점검, 운송 협의, 기증식 지원 - 귀국 행사 지원, 귀국 관련 행정 지원 ㅇ 귀국 후 지원 - 수당 및 경비 정산, 보상휴가 부여 요청 - 실적 취합 및 정리 - 평가회의 개최 및 언론홍보 대응 지원
	분쟁 취약 지원팀	1. 분쟁 및 취약국 사업 기획 및 총괄관리 2. 분쟁 및 취약국 사업 예산관리 3. 분쟁 및 취약국 사업 및 성과관리 4. 인도적지원 민관협력 사업(조기복구) 기획 및 관리 5. 인도적지원 출연금 집행 총괄 6. KDRT 파견 시 지원(구매/계약, 인력관리, 홍보 등)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직제규정 시행세칙

KDRT의 업무가 인도적지원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동 용역들과 KDRT 사무국 사업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향후에는 인도적지원 업무 전반을 위한 사업과 KDRT 사무국 관련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넷째, KDRT 관련 행정업무를 위한 용역업체 고용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KDRT 사무국 업무와 관련하여 ① KOICA 정규인력, ② KOICA 계약직 인력, ③ KOICA 자회사인 '코웍스'가 행정 업무를 나누어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KOICA의 조직인 긴급대응팀의 정원은 8명이며,[43] 이와 별도로 '긴급구호 전담인력 인건비' 예산을 통해 무기계약직 2인을 채용하고 있음.

이 외에, 코웍스는 KOICA로부터 KDRT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실무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 중임. 코웍스의 과업은 KDRT 장비의 점검·유지보수, 장비 운송 지원, KDRT 예비대원에 대한 예방접종 및 교육 실시 등임. KDRT 업무 관련하여 자회사에는 3명의 인력이 있으며, 코웍스의 KDRT 관련 예산 집행액은 3억 5,800만원임.

< 자회사 코웍스의 KDRT 관련 예산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집행액
인건비		134
직접경비	교육훈련(예비대원 교육, 예방접종, 합동훈련)	71
	장비(소모품비, 점검/유지보수, 차량임차 등)	50
	계	121
경상경비		71
계(부가가치세 제외)		**326**
총계(부가가치세 포함)		**358**

(자료: KOICA)

그런데 지난해 KOICA는 KDRT 사무국 업무 중 구조팀 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기 위한 위탁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음. 동 용역계약은 총 5억 7,000만원 규모로, 계약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임. 용역 업체의 주요 업무는 KDRT 구조팀 관련 ① 국외 출장 시 항공권 발권, 숙소 예약, 보험가입 및 정산, ② 국내 장비점검 출장 시 숙소 예약 및 정산, ③ 국내 교육·워크숍 시 숙소 예약, 국내여비 및 임차비 등 정산 등임.

43)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정원임.

< KDRT 구조팀 행정지원 위탁 용역 개요 >

○ **(용역명)** KDRT 구조팀 행정지원 용역
○ **(용역기간)** 2024. 7 ~ 2024. 12.
○ **(계약 금액)** 5억 7,000만원
- 직접경비 4.5억(여비, 숙박비, 교육경비 등)
- 인건비 0.6억, 일반관리비 0.23억, 이윤 0.23억 등
○ **(추진 경과)** 2024년 3월 조달 절차 시작 → 같은 해 7월 업체 선정 완료 및 계약 체결
○ **(과업 내용)**

1) 구조팀 국내외 출장 행정지원
- 항공권 예약을 위한 여행사 선정, 일정 확인, 항공권 전달 및 지출처리
- 숙소 선정, 예약, 정산
- 보험사 선정, 보험 및 International SOS 가입 의뢰, 비용 정산
- 국외 교육참가비 확인 및 송금
- 국외 출장비 지급 기준 확인 및 금액 산출, 출장비 개별 송금 및 안내
- 국내 장비점검 시 숙소 예약 및 지출
- 정산결과(집행액, 잔액) 및 현안사항 수시 보고 등

2) 구조팀 국내 교육・훈련・워크샵 행정지원
- 지원 세부사항 협의를 위한 회의 참석
- 숙소 선정, 예약, 정산
- 국내여비 정산 및 개별지급, 결과 안내
- 전문인력 및 업체 섭외(통역, 홍보, 강사 등) 및 정산
- 임차비, 외빈식대 등 정산
- 소모품, 물품 등 구매
- 정산결과(집행액, 잔액) 및 현안사항 보고 등

3) 출장비 정산 및 행정지원 업무 매뉴얼 제작 및 교육
- 구조팀 대원 및 증빙취합 담당자 대상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실시
- 구조팀 행정지원 업무 전반에 대한 매뉴얼 제작 등

4) 결산 및 회계정산 검토 협조
- 협력단 요청자료에 대해 작성 후 회신
- 회계법인 회계정산 검토를 위한 자료 작성·제출 등

(자료: KOICA)

KOICA는 지난해 구조팀 예산 확대로 인하여 행정 소요가 증가됨에 따라 사무국 인력만으로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행정지원용역 위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동 사업에서 KDRT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이미 무기계약직 2인 고용 및 3억 5,800만원 상당의 자회사 위탁을 실시하고 있고, 코웍스의 인력

또한 KDRT 예산 증액을 사유로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용역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특히, 용역의 주요 과업이 단순한 행정지원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1억원 이상을 인건비와 이윤 등으로 지급한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더욱이 긴급대응팀의 현원이 무기계약직 제외 4명으로 정원 8명에 미달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KOICA의 정규 인력을 충원하고, 보충적으로 자회사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KOICA는 예산 집행을 통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을 지양하여야 하며, 외교부는 보조사업자의 이와 같은 운영 방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11.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가. 개 요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문화교류 및 대(對) 유네스코[44] 외교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국가 이미지를 확립하고,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을 통해 국가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공공외교를 통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우호와 신뢰를 제고하여 국익을 증대하는 한편, 디지털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및 체계화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1개의 단위사업 및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 예산액은 231억 1,000만원이고, 208억 1,200만원이 집행됨.

<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60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26,111	23,110	23,110	20,812	22,475
	[2631] 공공문화외교 강화			26,111	23,110	23,110	20,812	22,475
		[11] 일반	[401]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2,517	2,693	2,693	2,254	2,423
		[11] 일반	[402]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5,272	2,470	2,470	2,338	2,346
		[11] 일반	[403] 공공외교 역량강화	14,189	16,103	16,103	14,429	15,754
		[11] 일반	[405]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3,519	1,844	1,844	1,791	1,952

44)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전문기구

나.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는 양자 간 문화교류 증진, 우리 문화·예술의 대외 홍보 및 유네스코(UNESCO) 등의 다자협력체를 매개로 한 국제적 협력기반 구축을 통하여 우리의 국격 제고 및 정치·경제 등 여타 분야의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네스코 등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對) 유네스코 외교강화」, 재외공관에 우리 미술품을 지원·전시하는 「국가이미지 제고 전시」등 총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전용·조정	미교부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대유네스코 외교강화	1,760	1,760	-	18	-	1,778	1,377	-	401	78.2	77.4
국가이미지 제고 전시	933	933	-	△18	-	915	877	-	38	94.0	95.8
계	2,693	2,693	-	-	-	2,693	2,254	-	439	83.7	83.7

2024년도 예산액은 26억 9,300만원으로 이 중 22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3,900만원을 불용함.

□ 대표성 및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성과지표 제시 필요

‘성과지표’란 프로그램 목표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45]로서, 대표성과 포괄성을 가지면서 객관적으로 설정되어야 함[46].

동 프로그램의 경우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체계에서 성과지표가 해당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대표하도록 성과지표 개선”이라는 기획재정부 방침[47]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성과계획서[48] 상 성과지표가 변경되었음.

<2021~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행사 참여 공관별 평균 참가자 수(명)	목표	1,800	-	-	-	신규지표로 대체	행사 표본 참가자수/공관 행사 표본 사업 수	자체통계 등
	실적	2,128	-	-	-			
	달성도	118.2	-	-	-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행사 수혜자 만족도(점)	목표	86.5	-	-	-	신규지표로 대체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행사 수혜자 만족도(점)	자체통계 등
	실적	87.09	-	-	-			
	달성도	100.7	-	-	-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공공외교 사업 만족도(점)	목표	-	80	86.5	-	신규지표로 대체	('한국주간행사' +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 만족도 조사 결과)/ 3 * 백점 만점으로 환산	현장 설문조사
	실적	-	92.3	92	-			
	달성도	-	115	106.4	-			

45) 2024년도 성과계획서 총괄편, 대한민국 정부, p.11

46)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47)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2024.1., 기획재정부

48)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지표	구분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소프트파워 지수(점)	목표	-	90	90	-	신규지표로 대체	해외 주요기관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소프트파워 순위	해외 주요기관 발표 자료
	실적	-	100	80	-			
	달성도	-	111	88.9	-			
공공문화외교 사업 추진 수(건)	목표	-	-	105	-	신규지표로 대체	공공문화외교국의 공공외교 사업 수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공외교 사업 수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실적	-	-	103	-			
	달성도	-	-	98.1	-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사업 만족도(점)	목표	-	80	88	92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조사결과 평균, 만족도 조사 결과 오차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한국주간' 만족도 조사 결과 +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 '디지털 공공외교' 만족도 조사 결과 / 3 * 백점 만점으로 환산	현장 설문조사
	실적	-	92.9	93.9	92.6			
	달성도	-	116.1	106.7	100.7			

(자료: 외교부)

현재 동 프로그램의 유일한 성과지표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사업 만족도'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변경이 필요함.

첫째, 프로그램 내 각 세부사업에 대한 대표성과 포괄성이 부족함. 현행 성과지표는 「공공외교 역량강화」 세부사업 내 내내역사업인 '한국주간행사', 세부사업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디지털 공공외교」[49]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단순 평균 산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동 프로그램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는 성과지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세부사업 「공공외교 역량강화」의

49) 세부사업명은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이나, 사업지표명은 디지털 공공외교임.

경우 11개의 내내역사업 중 하나만이 반영되어 있음. 집행액의 규모로 보면, 동 프로그램 전체 집행액 208억 1,200만원 중 성과지표에 반영된 것은 99억 7,500만원으로 집행액 대비 47.9%에 불과함.

이에 현행 성과지표는 성과계획서 상 나타난 성과지표 설정의 대표성과 포괄성 측면에서 부족함.

둘째, 현행 성과지표는 정성지표로만 구성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 개입 우려 및 산식의 객관성 부족의 문제가 있음.

성과지표는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가능한데, 각 지표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측정여부에 따른 지표 분류>

구 분	정량지표 (계량지표)	정성지표 (비계량지표)
정 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
특 성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음 반복측정 시 동일한 결과	평가자의 주관 반영
사례	- 우량농지조성면적 - 해외건설 수주액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인구10만명당 5대범죄 발생률	- 민원인 만족도 - 주요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정도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자료: 2024년도 성과계획서 총괄편

단순 만족도와 같은 정성지표의 경우 위와 같이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특성이 있고 양적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기획재정부는 '성과지표는 가급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 성과에 대한 정량지표로 설정'이라고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성과지표는 일부 사업만을 선별하여 비계량지표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가중치 없이 단순 평균으로 산출한 것을 내용으로 함. 이러한 방식의 성과지표 설정은 객관적 통계치보다는 주관적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성과지표 도출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으며, 하위지표를 나열하는 형태의 복합지표로서 이를 구상하는 지표간 단위가 상이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 성과가 변동되었는지 쉽게 알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성과지표 설정 시 대표성과 객관성을 가지는 성과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공공외교 역량강화」는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분야별 공공외교의 전략적·유기적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 및 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부사업으로,

문화, 지식, 정책 등 3개 연성자산(soft power)을 활용한 공공외교 추진 및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국의 다양한 매력 자산을 활용한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 추진으로 현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글로벌 친한 세력으로 양성을 도모하기 위한「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통합적 공공외교 메커니즘 운영 및 친한 외국인 기반 구축 사업 등을 통해 공공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공외교 전략 및 효율적인 수행체제를 개발하기 위한「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을 통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증진하고 차세대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등 총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공외교 역량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16,103	16,103	-	-	-	16,103	14,429	14	1,660	89.6

2024년도 예산액은 161억 300만원이었으나 이 중 144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6,000만원을 불용함.

□ 외국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정보 시정업무 관리체계 보완 필요

‘외국교과서 개선을 통한 차세대 대상 한국 지식 확산’ 사업은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의 내내역사업으로, 외국 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를 통해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고 이를 통해 해외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임.

< 외국교과서 개선을 통한 차세대 대상 한국 지식 확산 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368	291	368	331	513	448	487	431	438	433[50]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업하여 2014년부터 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교육부와 공동으로 ‘해외 한국 관련 오류시정 및 기술확대를 위한 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를 주관하면서 한국 관련 내용 기술 오류 등에 대한 기관별 활동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 시정의 경우 상술한 민관협력위원회 활동 외에도 2003년[51]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함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52]하고 있으며, 외교부의 최근 공공외교 기본계획[53]에도 외국

50) 2025. 6. 30. 기준으로, 향후 공관 반납 등으로 인한 변동 가능성이 있음.

51)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 2017.8.10., p.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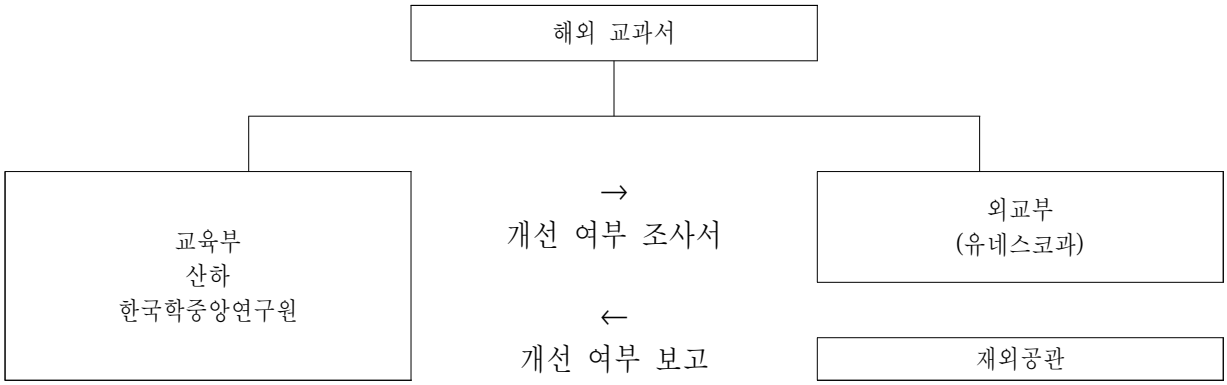
52) 「외국교과서 내 한국관련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 성과 도출」, 외교부, 2015.12.17.

53) 「제2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 2022.8.24., p.25

교과서 등에 나타난 한국 관련 오류 시정은 중점 추진 과제로 기술되어 있음.

외교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시정 사업」[54]에 협력하고 있는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매년 1회 해외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의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개선 여부 조사서를 외교부에 송부하여 재외공관이 오류 시정 활동을 하고 개선 여부를 보고하고 있음.

<해외 교과서 관련 오류정보 대응 업무 현황>



※자료: 감사원의 감사보고서[55]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2024년 감사원은 일부 재외공관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 시정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서도 외교적인 시정 활동 및 시정결과 회신 등 협조가 미흡하였다는 것을 지적[56]함.

외국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오류 시정은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중점

54)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외국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시정 사업」명칭하에 기존 오류를 발견·수정하는데 중점을 두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력 중임. 외교부는 이에 더해 「외국 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사업」을 주관하여 한국 관련 기술 확대를 추진을 통한 국제사회 내 한국에 대한 다양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

55)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감사원, 2025.4.15., p.69

56)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8개 재외공관(21개 국가 담당)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개선 여부 조사서 관련 오류시정 협조 요청을 받고도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는데, 이들 재외공관이 담당하는 국가 중 15개 국가의 교과서에는 "한국은 마약제조국" 등 한국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중대한 오류가 서술되어 있었음.

추진 과제 중 하나인 만큼, 향후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오류 시정을 위한 노력을 감독하는 한편, 인력 확충 등 오류 시정을 위한 제반이 각 공관에서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상위 내역사업 목적과 하위 내내역사업간의 정합성 제고 필요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사업은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의 내내역사업으로, 국제사회 주요 이슈를 문화적·사회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포럼 개최를 통해 글로벌 담론을 선도하는 문화 공공외교 추진을 목적으로 하며,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문화혁신포럼 개최 이후 2020년부터 정례화됨.

동 사업의 상위 내역사업인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의 사업목적은 “연성자산을 활용한 공공외교 추진 및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국의 다양한 매력자산을 활용한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 추진을 통해 현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갖는 글로벌 친한 세력으로 양성을 도모”하는 것임.

그러나, 동 사업의 주제 및 행사의 세부 내용은 현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글로벌 친한 세력을 도모하는 상위 사업의 목적과 다소 동떨어져 있음.

<연도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주제>

연도	주제
2020	코로나 디바이드: 경계를 넘어
2021	코로나19에 지친 전 세계, 스포츠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2022	메타버스 시대의 기회와 도전
2023	대중문화의 글로벌 가치
2024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글로벌 청년 대화

(자료: 외교부)

2024년의 경우 “기존 세대에 대한 反문화, 개인을 중시하는 이기주의적 특성이 부각 되어온 청년세대 문화의 여러 측면을 논의·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세계적 문제들의 해법과 방향성을 모색”[57]한다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행사가 진행되어 “한국의 다양한 매력자산을 활용한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 추진을 통해 현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상위 사업의 목적과는 차이를 보였음.

행사 참석자의 경우 유명 프로게이머 및 사진작가,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돌 멤버 등이 참여하여 행사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에서 밝힌 취지에는 맞으나,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호감”의 사업 목적과 행사의 주요 발언내용은 다소 거리가 있었음.

「공공외교법」 제2조는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이라고 공공외교를 정의하고 있어 공공외교의 다양한 폭은 인정이 되나, 동 사업이 상위 내역사업의 목적과는 정합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사의 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57) 「2024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행사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외교부, 2024.5.

참고로, 해당 내역사업의 다른 내내역사업의 경우[58] 재외공관에서의 행사, 혹은 특정 국가 및 권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네트워크 구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사업 편성 시 동 사업을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거나, 상위 내역사업의 목적과 정합성이 높도록 행사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재외공관의 비목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관행 시정 필요

'친한 외국인 기반구축' 사업은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의 내내역사업으로, 한류동호회, 한국문화단체, 한국전 참전용사, 해외 입양인 등 전 세계 한국 관련 기관 및 친한단체가 자발적으로 주관하는 한국문화 홍보행사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친한 외국인 기반구축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426	340	495	444	526	462	473	432	426	-

(자료: 외교부)

동 사업은 100여개 공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이며, 전체 집행액 중 약 4억 1,357만원이 공관에 지급되었고 외교부 본부에서는 약 1,879만원을 집행함.

58) 한국주간행사, 외국교과서 개선을 통한 차세대 대상 한국 지식 확산, 퀴즈 온 코리아, 정책공공외교 기반 구축, 주요국 대산 정책공공외교 외연확대

그런데, 각 공관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각 공관에서 행사 진행 시 비목에 맞지 않는 집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구체적으로, 외교부가 제출한 각 공관의 동 사업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31개 공관에서 아래와 같이 일반수용비를 타 비목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집행하였음.

<유형별 공관 내 비목에 맞지 않는 일반수용비 집행 현황>

(단위: 미불)

구분	식비로 집행	임차료로 집행	항공운임으로 집행	합계
건수	26건	7건	1건	34건
액수	25,016.67	3,442.49	301.3	28,760.46

(자료: 외교부)

또한, 이러한 예산 집행의 관행은 같은 국(局)내 다른 세부사업인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에서도 일반수용비로 행사에서의 식음료를 구입하거나 차량 등을 임차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하게 되어 있음. 그리고 재외공관 운영경비에 대하여 “재외공관 활동중 공개 가능한 재외공관 주요행사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다음의 경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소모성 행사물품 구입비, 연주비 등”으로 한하여 규정되어 있음.

또한, 재외공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행사 또는 오·만찬 경비로 사용시에는 집행일자, 장소, 참석자의 소속 및 성명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사용계획 및 결과분석’을 첨부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기타 사항은 본 집행지침의 비목별 지침 중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재외공관 역시 그 비목에 맞는 집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2는 지급원인행위 및 지출결의가 자금의 교부 목적 및 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59] 또한, 외교부훈령인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60]은 예산과목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목(目)에 해당하는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 이에 타 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로서 사업추진비와 여비로서 국외업무여비를 운영비인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관행은 시정이 필요함.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동 사업의 편성에 있어 사업의 특성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다소 늘리는 방향 등을 고려하여 비목에 맞게 집행하면서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예산 집행을 도모하여야 함.

---

59) 제33조의2(지금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급원인행위에 따라 지급결의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60) 제9조(목간전용 제한) 재외공관에 교부된 관서운영경비는 당해 예산과목에 따라 장관이 지시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12.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가. 개 요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은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영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며 1개의 단위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 예산액은 157억 4,400만원이고, 127억 1,100만원이 집행됨.

<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본예산	추경	결산	
[2700]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12,496	15,744	15,744	12,711	14,679
	[2731] 재외국민 보호			12,496	15,744	15,744	12,711	14,679
		[11] 일반	[401] 재외국민 보호	12,496	15,510	15,510	12,117	13,959
		[11] 일반	[402] 영사서비스 지원	-	234	234	594	720

나. 재외국민 보호

「재외국민 보호」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부사업으로,

재외공관의 영사조력 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지원하는 「재외공관 영사조력 역량 강화」,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 체제 유지 및 정비를 위한 「해외위난상황 대비 영사조력 제공」, 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콜센터를 통해 24시간 365일 재외국민 사건사고 초동대응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디지털 영사콜센터 운영」,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해외안전정보 전달 및 해외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예방 노력을 위한 「영사조력 및 해외안전여행 홍보 강화」등 총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외국민 보호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15,510	15,510	28	△655	-	14,883	12,117	137	2,629	78.1

2024년도 예산액은 155억 1,0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2,800만원이 증액, 이·전용으로 6억 5,5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 148억 8,300만원 중 1억 3,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6억 2,900만원이 불용되고 121억 1,7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8.1%임.

□ 사건사고 대응인력 심리치료 지원사업 확대 및 내실화 필요

‘사건사고 대응인력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재외공관 영사조력 역량 강화」 사업 내 내내역사업으로, 외교부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진단 검사수행 및 분석과 전문가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해외 공관 방문을 통한 고위험군 대상 대면 상담 및 강좌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해외안전 담당 인력의 직무 스트레스 및 정신적 충격(PTSD)에 대한 심리상담을 통해 인적자원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영사 조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시작되었으며 3년간 실적은 아래와 같음.

<사건사고 대응인력 심리치료 지원사업의 3년간 실적>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전문가 심리상담 케어	47(151회)	56(212회)	52(252회)
지역별 영사담당 회의 계기 상담 및 특강 프로그램	49	116	44
고위험군 케어	267(91회)	155(69회)	221(95회)
공관 맞춤형 상담/강의 프로그램	-	-	74(10회)

(자료: 외교부)

동 사업에 대한 2024년 최종 운영보고에 따르면 전체 서비스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8점[61]으로 전문가 심리상담을 통해 위험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인원의 비율이 일부 감소하기도 하였음. 반면 전문가 심리상담의 경우 8회로 횟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현지 공관을 방문하여 진행되는 고위험군 케

61) 전체 서비스 이용자 347명 중 276명 참여

어의 경우 해당 공관이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1년에 1회로 제한된다는 점에 대한 불만족이 동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62]를 통해 드러났음.

또한, 현재 심리상담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더라도 이어지는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임. 유사사업으로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의 경우 해당 센터 심리 상담 후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가진단 결과 고위험인 공무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실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추후 해당 사업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의 수요에 따른 지원 횟수 및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2) 2024년 외교부 해외안전 대응인력 심리상담 지원 최종 운영보고, 외교부, 2024.11.26., pp.14-21

13. 여권업무 선진화

가. 개 요

「여권업무 선진화」 프로그램은 품질 및 보안성이 우수한 여권 발급으로 우리 여권의 국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실무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 및 첨단 시스템 도입으로 신속, 정확한 여권 발급 체계를 유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액은 1,410억 3,000만원인데, 여권발급량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수입대체경비 수입액 일부를 지출함에 따라 집행액은 1,588억 9,900만원임.

< 여권업무 선진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900] 여권업무 선진화				109,482	141,030	141,030	158,899	123,893
	[2931] 전자여권발급및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109,482	141,030	141,030	158,899	123,893
		[11] 일반	[651]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109,482	141,030	141,030	158,899	123,893

나.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은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지원을 통해 대국민 여권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여권의 품질 제고 및 보안성 강화로 국제신뢰도를 향상하려는 사업임.

<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 2024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141,030	141,030	64	18,200	-	159,294	158,899	63	331	112.7
- 여권제조 및 발급	132,606	132,606	-	18,200	-	150,806	150,630	-	167	113.6
-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	7,642	7,642	-	-	-	7,642	7,478	-	164	97.9
- 여권품질 및 서비스 개선	782	782	64	-	-	846	846	63	-	108.2

이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은 1,410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400만원과 여권발급량 증가로 인한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182억을 합한 예산현액은 1,592억 9,400만원인데, 이 중 1,588억 9,900만원이 집행되었고, 6,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3,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교육·평가 사업의 동일 수탁기관 수임에 따른 공정성 우려

내내역사업인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 위탁운영'은 전국 여권발급기관 및 재외공관의 여권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여권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재 및 홍보콘텐츠 제작 등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5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음.

<최근 5년간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 위탁운영 사업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연도	예산	계약 내역				계약 유형	수의계약 사유
		발주금액 (제안요청서 기준)	낙찰액 (계약금액)	수탁 기관	계약기간		
2020	573	573	558	케이티 씨에스	20.1.-21.12	일반경쟁 →수의 장기계속사업 (24개월)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
2021	573	573	558	케이티 씨에스	21.1.-21.12		
2022	558	558	558	케이티 씨에스	22.1.-22.12	일반경쟁 장기계속사업 (24개월)	
2023	558	558	546	케이티 씨에스	23.1.-23.12		
2024	558	558	545	케이티 씨에스	24.1.-24.12	일반경쟁 →수의 장기계속사업 (24개월)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
2025	558	558	545	케이티 씨에스	25.1.-25.12		

(자료: 외교부)

동 사업은 실무교육 운영과 교재 개발 등 여권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업임. 그런데 해당 위탁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여권서비스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역시 중복으로 수임한 것이 확인됨.

<최근 5년간 여권서비스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계약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발주금액 (제안요청서 기준)	낙찰액 (계약금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유형	수의계약 사유
2020년	19	19	한국갤럽	20.10.-20.12.	수의	용역계약 2천만원 이하
2021년	19	19	한국갤럽	21.10.-21.12.	수의	용역계약 2천만원 이하
2022년	19	19	한국갤럽	22.11.-22.12.	수의	용역계약 2천만원 이하
2023년	20	19	케이티씨에스	23.9.-23.11.	수의	용역계약 2천만원 이하
2024년	40	37	케이티씨에스	24.6.-24.10.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2023년부터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 위탁운영'과 '여권서비스 만족도조사' 두 사업을 모두 동일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여권 실무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동일 기간 중 여권 서비스 만족도 평가 업무를 함께 수행할 경우, 교육 효과나 서비스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교육 위탁사업을 장기계속으로 수탁 중인 업체가 동일하게 평가 사업도 수임함으로써, 정책 평가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 저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또한, 교육과 평가 간 기능 분리가 미흡할 경우, 정책 평가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실질적 환류(feedback)가 어려워 여권서비스의 품질 개선 효과가

저하될 수 있음.

이에 외교부는 향후 여권 실무교육과 여권서비스 만족도조사 간 기능적 독립성과 정책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기관의 중복 수탁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교육과 평가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4. 경제외교

가. 개 요

「경제외교」 프로그램은 G20 정상회의 등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를 강화하고, 다자경제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 홍보 및 정책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양자 경제외교 진흥 및 해외진출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이익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경제외교 활동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 예산액은 128억 6,000만원이고, 이 중 111억 7,100만원이 집행됨.

< 경제외교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3000] 경제외교				10,461	12,860	12,860	11,171	112,566
	[3031] 다자 경제외교 강화			1,611	4,562	4,562	3,875	103,257
		[11] 일반	[401]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1,165	1,395	1,395	1,293	1,557
		[11] 일반	[402] G20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 강화	446	707	707	518	870
		[11] 일반	[403] 2025 APEC 의장국	-	2,460	2,460	2,064	100,830
	[3032] 지역 경제외교 강화			8,850	8,298	8,298	7,296	9,309
		[11] 일반	[401]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6,763	5,381	5,381	4,515	6,549
		[11] 일반	[402] 해외진출기업 활동 지원	2,088	2,917	2,917	2,781	2,760

나.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공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책 및 경제외교 협의 메커니즘 마련 등을 위한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53억 8,100만원이며, 이 중 45억 1,500만원이 집행됨.

<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5,381	5,381	2	△3	-	5,380	4,515	-	865	83.9	83.9

□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직제를 우회한 조직운영 개선 주의 필요 등

「주요국 경제안보정책 대응」 내역사업은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23억 2,200만원 중 18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음.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공급망,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의 모니터링, 분석, 우리 정부의 대응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22년 5월 30일 개소한 조직으로, 경제안보 현안 모니터링·분석을 통한 경제안보 Review 발간, 경제안보외교포럼 개최, 민관합동 전문가 간담회 개최, 유사입장국 싱

크탱크들과의 교류 등 업무를 수행 중임.[63]

경제안보외교센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의가 필요함.

첫째,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이 모두 공무직 근로자[64]로 구성되어 있는데,[65] 이는 직제상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업무 수행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로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적인 책임성을 지니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조직 운영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경제안보 외교센터 조직 현황(현원 기준)>

구분			인원	비고
센터장			1명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이 겸임
연구원	공무직	가급	2명	
		나급	6명	
		다급	1명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계약직		4명	미국, 애틀란타, 인도, 네덜란드
계			14명	

※주: 2025. 6월 말 기준

구체적으로 채용 절차와 성과관리 등 인사 체계 전반에 있어 공무직과 공무원은 차이가 있는데,

채용 절차의 경우 공무원은 직렬 등에 따라 일부 상이하긴 하나 「국가공

6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양자경제외교국) ⑨ 경제안보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운영**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의 관리

64)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

65) 재외공관 전문관 제외

무원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에 따라 필기시험과 면접 등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공무직의 채용은 소속 기관의 행정규칙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 등 공무원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됨.[66]

또한 공무직은 복종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등의 규정[67]을 적용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안보센터 소속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음.

외교안보연구센터와 같이 연구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조직인 '국립외교원'이나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에도 공무직으로만 구성되어 과를 운영하는 사례는 없으며, 전문적 분야의 공무원이 필요한 경우임기제공무원 등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직제를 개정하여 정원을 증원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통해 인력을

---

66)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채용) ① 근로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채용하며, 채용예정인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유사직종의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3. 채용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계약해지, 선발취소 등에 대해 예비 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⑤ 근로자 채용시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회는 2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심사위원은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제척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임명·위촉하며, 보안유지, 제척사유에 대한 회피, 공정한 시험관리 등을 위해 별지7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67)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보충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이와 같은 형태는 시정이 필요함.

둘째, 경제안보외교센터 공무직 인력이 외교부 본부 건물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경제안보외교센터의 공무직 인원 9명 중 6명은 외교부 본부에, 나머지 3명은 광화문에 위치한 사무실에 근무 중임.

광화문 사무실 임차를 위하여 2024년 1년 동안 약 1억 5천만원의 임차료가 집행되었는데, 상근 인원 및 조직 관리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별도 건물 임차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음.[68]

또한,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센터장인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교부가 동 센터의 역할을 '주요국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분석을 통하여 외교정책 수립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외교부 본부 내에 위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청사의 유휴 공간이 마련될 시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청사 내 입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채용 부진

외교부는 주요국의 경제안보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68)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동 센터 명의의 회의실이나 전용 공간이 외교부 청사 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제안보외교센터가 각종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별도 건물 임차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임.

진출 및 공급망 협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 경제안보전문관을 채용하고 있음. 경제안보전문관 채용 관련 2024년도 예산액은 5억원이며, 집행액은 2억 5,900만원임.

그런데 동 사업 예산이 일용임금(110-04) 비목으로 편성됨에 따라 1년 이내의 단기 계약직 형태로 채용이 되고 있고, 미국 이외 지역의 경우 외국 국적자만 채용이 가능한 한계가 있음[69]. 또한, 인력 충원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인원인 6명 중 일부만 채용된 상태로, 2024년에는 미국(워싱턴), 애틀란타, 인도, 네덜란드 공관에 각 1명씩 총 4명이 채용되어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였음.

<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채용 현황 >

연번	이름	근무기간	공관명	학위
1	A	25.04.28.-근무중	주미국(대)	국제학 학사
2	B	24.01.08-24.12.31		국제관계학 석사
3	C	23.04.03-23.10.30		정책학석사
4	D	24.03.25-근무중	주애틀랜타(총)	공공정책 및 개발학 석사
5	E	22.11.28-23.11.27		국제안보학 석사
6	F	23.09.01-근무중	주인도(대)	영문학 석사
7	G	22.11.28-23.11.27	주타이베이(표)	동아시아학과 석사
8	H	24.01.01-근무중	주네덜란드(대)	국제관계학 석사
9	I	22.11.24-23.11.23	주베트남(대)	정치국제관계학 석사

※주: 2025. 6월 말 기준

(자료: 외교부)

이와 같은 인력 운용으로는 경제안보와 관련한 정보 수집·축적 및 전문성 확보 측면에 한계가 있고, 외교부의 경제안보 역량 증대라는 중장기적인 전략

69) 미국 공관의 경우 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영주권자도 가능한 상황임.

추진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외교부는 재외공관이 전문적인 경제안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비목 변경을 비롯한 사업 방식 전반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음.

□ 경제외교 관련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 필요 등

동 세부사업에는 ① 「중국 경제동향 대응」 내역사업에서 중국 내의 10개 공관에서 경제안보 현안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예산 2억 1,400만원과 ② 「전략국가와의 경제외교 강화」 내역사업에서 일본 대사관을 통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예산 1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중국 내 공관과 일본 대사관을 통하여 수행하는 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양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므로,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① 중국 내 공관을 통한 경제안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 2억 1,400만원 중 1억 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47.2%였으며, ② 일본 대사관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 사업은 예산 1억 4,800만원 중 5,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9.2%임.

상세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① 중국 내 경제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는 주중국대사관, 주선양총영사관, 주시안총영사관, 주우한총영사관 등 6개 공관에서 유관부처와의 협력, 업계 접촉, 진출 기업 대상 법률 설명회, 전문가 면담 등을 실시하였음.

다음으로 ② 주일본대사관의 경제외교 사업에서는 한일 경제포럼 개최 및 각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의 등을 실시하였음.

양 사업의 집행이 미흡한 사유에 대하여 외교부는 여비 집행 저조, 임차료 절감 등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는데, 향후 공관의 사업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분기별 집행 현황 점검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중국 내 공관을 통한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국 경제동향 대응」 내역사업 사업은 동 세부사업 내의 다른 내역사업인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사업과 그 성격이 유사·중복적인 측면이 있음.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사업은 중국의 공관을 중심으로 중국 지방정부와 정례 경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내수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양 사업은 경제외교 관련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과 국익 증진을 한다는 점에서 그 목표에 유사성이 있으며, 중국 정부 등 유관부처와의 접촉, 중국 진출 한국 기업 간담회 등 그 사업 방식에도 유사성이 존재함.

예를 들어, 「중국 경제동향 대응」 내역사업에서 '후베이성 진출 한국기업과의 간담회(주우한총영사관)'를 실시하였는데,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내역사업에서도 지역이 상이할 뿐 '화남지역 진출 주요 지상사 등

기업 간담회(주광저우총영사관)'를 실시하는 등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두 개의 상이한 내역사업에서 중복하여 집행되고 있음.

< 중국 내 재외공관을 통한 경제외교 관련 사업 비교 >

내역사업 명	중국 경제동향 대응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사업 목적	중국 내 경제입법 및 정책 동향 모니터링 및 재외공관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우리 기업의 중국 정부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진출 적극 지원
추진 주체	주중국대사관 및 중국 공관	주중국대사관 및 중국 공관
주요 활동	유관부처 접촉, 전문가 면담, 진출기업 간담회 등	유관부처 접촉, 한국 기업 박람회 · 홍보관 등 지원, 진출기업 간담회 등
유사 사례	후베이성 진출 한국기업 간담회 (주우한총영사관)	화남지역 주요 기업 간담회 (주광저우총영사관)
예산 (2024년 기준)	2억 1,400만원 *중국 내 자문회사 계약 예산 제외	3억 5,100만원 *한중 우호주간 예산 제외

이와 같이 양 사업의 목적에 다소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국익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그 목표가 동일하며, 사업 방식과 수혜 대상 측면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이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사업의 성과 관리를 어렵게 하는바, 사업 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거나, 내역사업 간 통합·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5.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가. 개 요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프로그램은 글로벌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및 기술패권 경쟁 시대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개, 다자환경이슈에 대한 국제적 논의 참여 및 북극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북극 진축 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하며 1개의 단위사업과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 예산액은 98억 600만원이고, 103억 8,600만원이 집행됨.

<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본예산	추경	결산	
[3100]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4,244	9,806	9,806	10,386	2,698
	[2131] 에너지외교 및 기후변화녹색성장 국제협력강화			4,244	9,806	9,806	10,386	2,698
		[11] 일반	[401]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4,244	9,806	9,806	10,386	2,698

나.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는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하고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녹색성장 등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달성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부사업으로,

글로벌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등으로 국가 에너지안보에 기여하는 「공관 에너지협력 외교활동」과 「에너지 및 물 분야 국제협력 강화」, 과학기술외교 추진을 통해 국제 과학기술지형 변화에 대한 전략적·선제적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 외교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노력 강화 및 글로벌 리더십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기후변화 외교강화」, 대기오염 등 동북아 환경 현안의 외교적 대응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국제협력 강화」, 저탄소경제 관련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다자환경 이슈의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북극권 진출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는 「북극 국제협력 강화」등 총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전용·조정	미교부					예산액대비(C/A)	현액대비(C/B)
공관에너지협력 외교활동	1,497	1,497	-	-	-	1,497	1,355	-	142	90.5	90.5
에너지 및 광물분야 국제협력 강화	707	707	-	△704	-	634	494	-	140	69.9	77.9
과학기술 외교강화	1,809	1,809	-	△706	-	1,103	909	-	194	50.2	82.4
기후변화 외교강화	642	642	-	△188	-	454	416	-	37	64.8	91.6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국제협력 강화	152	152	-	△80	-	72	55	-	17	36.2	76.4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4,819	4,819	-	2,481	-	7,300	7,053	-	247	146.4	96.6
북극 국제협력 강화	180	180	-	△53	-	127	104	-	23	57.8	81.9
계	9,806	9,806	-	1,380	-	11,186	10,386	-	800	105.9	92.8

2024년도 예산액은 98억 600만원에서 이·전용으로 13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11억 8,600만원이며 103억 8,6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105.9%임.

□ 예산 편성 취지에 맞는 집행 필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사업은 저탄소경제 관련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나라 녹색·환경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다자환경이슈의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48억 1,900만원이었으나, 70억 5,300만원이 집행되었음.

동 사업은 하위 내내역사업의 집행률이 대부분 연례적으로 부진하며, 특정 내내역사업은 초과집행이 수차례 발생하여 이미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70]된 바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2022			2023			2024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녹색 경제 관련 다자협력	46	22	47.8	46	38	82.6	46	45.2	98.3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참여	31	160	516.1	31	61	196.7	92	177.7	193.2
녹색성장주간행사 개최 지원	48	7	14.6	48	25	52.1	42	-	-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운영	75	40	53.3	75	65	86.7	75	45	60.0
해외환경프로젝트 발굴 및 환경시장개척 지원	62	0	0	62	26	41.9	-	-	-
그린라운드테이블	50	32	64.0	50	36	72.0	50.5	34.5	68.3
P4G 이사회 의장국 활동 및 참여	120	28	23.3	120	40	33.3	40	11	27.5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5)	-	-	-	-	-	-	4,473	6745.9	150.8
합 계	**432**	**289**	**66.8**	**432**	**291**	**67.4**	**4,819**	**7,053**	**146.4**

70)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외교통일위원회, 2024.8.

2023년도 예산의 경우,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5)’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참여’ 사업을 통해 이미 초과 집행하였음. 이에 “회의 참석·개최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하게 발생한 예산 소요로 보이지 않는바 편성 단계부터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2024년에는 44억 7,3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액 부족분 22억 7,290만원을 다른 내내역 사업의 감액 등을 통해 조달하였음.

이에 외교부는 INC-5 개최에 앞서 전차 행사(INC-4) 참석, 국제 동향 파악 및 INC-5 개최를 위한 회기간 회의 참석 등을 위한 출장 소요 증가로 최초 배정된 예산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INC-5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그로 인해 동 세부사업에서 기존보다 감액된 내내역사업이 아래와 같이 20개, 감액 총액이 11억 3,100만원이며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6개에 이르는 것은 기존 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INC-5 개최 및 운영을 위해 기존보다 감액된 내내역사업 목록 >

(단위: 백만원)

내내역명	본예산	감액규모
물 분야 국제협력 강화	55	9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활동 지원(기후협력센터)	279	36
한미우주포럼개최	285	252.2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운영	83.2	50.6
과기외교 전략국/국제기구와의 정책공조	175	70
국제과기외교포럼 개최	404.8	290
과기 거점공관 과기외교 사업 추진	661	63.2
기후변화협상 진전을 위한 우리 입장 제고 활동	200	108
NEASPEC 등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강화	22	3
한·미, 한·중, 한·일, 한·러 환경협력공동위 등 참여	40	20
탄소중립 국제협력 강화	88	36
동북아 해양환경협력 강화	72	20
P4G 이사회 의장국 활동 및 참여	40	9
그린라운드테이블	50.5	11
녹색 경제 관련 다자 협력	46	16
북극회의 참여 및 개최	180	104
동북아 월경성 대기오염 포럼	100	50
대기오염 대응 국제공조 제고 활동	52	23
유엔 기후변화협상회의 참석	220	13
지속가능발전목표(환경-해양) 이행 참여	92	1

(자료: 외교부)

따라서 외교부는 특정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다른 사업들을 지나치게 감액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편성 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 관행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16.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가. 개 요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은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및 비전 제시,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회의 개최, 외교인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무공무원의 역량검증 및 개발, 외교인재 양성을 위한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개의 단위사업 및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액은 159억 6,400만원이며, 130억 5,700만원이 집행됨.

<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3500]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12,524	15,964	15,964	13,057	14,945
	[3531] 외교전략 연구 및 교육훈련			11,456	13,051	13,051	11,102	12,388
		[11] 일반	[401]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2,793	3,498	3,498	2,880	3,304
		[11] 일반	[402] 국내외 교육훈련	6,723	7,433	7,433	6,252	7,132
		[11] 일반	[403] 외교역량 평가 및 개발교육	394	463	463	427	417
		[11] 일반	[404]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387	414	414	400	393
		[11] 일반	[405]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904	1,059	1,059	970	959
		[11] 일반	[407] 국민 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255	184	184	173	183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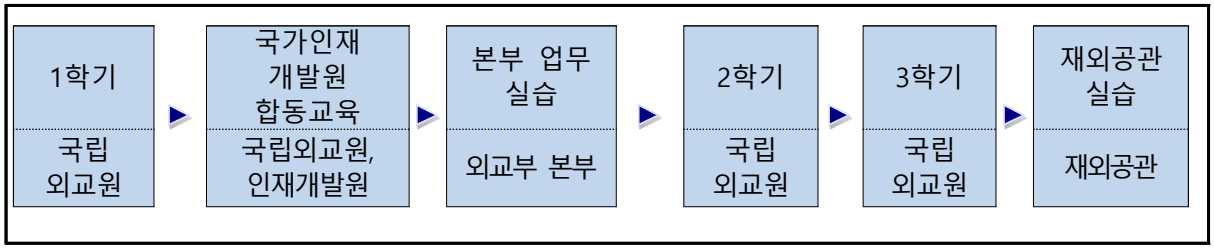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3532] 외교전략 수립			1,068	2,913	2,913	1,955	2,557
		[11] 일반	[401]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총론 수립	1,068	1,067	1,067	780	1,067
		[11] 일반	[402]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	846	846	389	100
		[11] 일반	[403]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	1,000	1,000	786	1,390

나.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71] 강화」 사업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임 외교인력 양성과 원활한 외교정책 추진을 위한 인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함.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 외무공무원의 공직 소명의식을 높이고, 외교역량과 전문성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재외공관에서의 실습을 통해 정무·경제·외교·영사 등 현장맞춤형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있음[72].

2024년도 예산액은 10억 5,900만원이었으며, 9억 7,000만원이 집행됨.

71)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Ⅱ-1)



72) 2024년도 재외공관 현장실습은 상반기(4.22.~5.11.)에 외무영사직 교육생(7급 상당) 34명을 대상으로, 하반기(11.11.~11.29.)에는 외교관후보자(5급 상당) 44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함.

<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외교관후보자 등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 강화	1,059	1,059	-	-	-	1,059	970	-	89	91.6
- 신규 외무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579	579	-	△37	-	542	461	-	81	79.6
- 재외공관 현장실습	480	480	-	37	-	517	509	-	8	106.0

□ 재외공관 현장실습 관리·감독관 출장비 집행의 정상화를 통한 필수적 교육관리 기능 회복 필요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함)에서 실시하는 외교관후보자 및 신임 외무영사직 공무원 교육과정은 크게 국내 교육과 해외 재외공관 현장실습으로 구성됨.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강사료 등을 포함한 국내 교육과정 운영비용과 해외 실습에 소요되는 국외교육여비 등으로 구분됨.

외교원은 2024년 교육생 증가(73명→78명)와 항공료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해 국내 현장학습 여비와 재외공관 현장실습 비용의 부족이 예상되자, 같은 세부사업 내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강사초청', '해외우수 외교관훈련기관 벤치마킹' 및 '재외공관 현장실습 감독' 사업의 여비 중 6,000만원을 세목 조정을 통해 추가로 마련하였음.

이로 인해 세 사업의 집행률은 각각 0%, 16%, 5.9%에 그침.

이에 대해 외교원은 2022~2023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외출장 제한

과 2024년 환율·항공료 상승으로 인한 여비 부족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세목 조정 등을 그 원인으로 설명하면서, 교육생 인원의 증가와 환율 및 항공료 상승 등으로 인해 여비 소요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환율 및 항공료 상승 등의 외부 변수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생 수의 증가는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그에 영향을 미치는 '입교유예'는 합격자의 학년 등 객관적 정보를 통해 사전에 일정 수준 파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외공관 현장실습 감독' 및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해외 우수 외교관 훈련기관 벤치마킹' 사업 등 다른 사업 또한 미실시되거나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함.

특히, '재외공관 현장실습 감독'은 교육생의 실습을 관찰·지도하고, 교육생 및 실습 멘토와의 면담을 통해 실습 현황을 점검하며, 공관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파악하는 사업인데, 최근 3년간 해당 출장비의 집행 실적이 1건에 불과하여 사업 목적 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재외공관 현장실습 감독관 여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명)

연도	내역	편성액	집행 세부 내역		
			인원(직급)	장소/일자	집행액
2022	재외공관 현장실습 감독	17	-	-	-
2023	재외공관 현장실습 감독	17	-	-	-
2024	재외공관 현장실습 감독	17	1 (행정관)	중국 칭다오 4.28.-4.30.	1

동 사업은 교육의 질 관리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이를 대폭 축소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향후에는 교육생 인원에 대한 보다 정밀한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재외공관 현장실습 관리·감독관 출장비 집행의 정상화를 통해 필수적 교육관리 기능이 회복되어야 할 것임.

17. 재외공관 운영

가. 개 요

「재외공관 운영」 프로그램은 외교부 재외공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운용과 제반 공관 운영에 필요한 재외공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지원하고, 노후화된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의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대(對) 테러 보안시설 설치 및 강화를 통한 안전 도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것임. 동 프로그램은 5개의 단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 예산액은 7,763억 9,400만원이고, 이 중 7,447억 6,500만원이 집행됨.

< 재외공관 운영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3 결산	2024 예산		2024 결산	2025 예산
					본예산	추경		
[4000] 재외공관운영				712,023	776,394	776,394	744,765	801,182
	[4001] 재외공관 인건비			264,524	284,188	284,188	274,222	299,243
		[11] 일반	[101] 재외공관 인건비	264,524	284,188	284,188	274,222	299,243
	[401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94,135	144,805	144,805	141,154	148,954
		[11] 일반	[25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94,135	144,805	144,805	141,154	148,954
	[4012] 재외공관 운영			21,409	21,000	21,000	20,524	22,099
		[11] 일반	[251]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17,151	17,063	17,063	16,663	18,042
		[11] 일반	[252]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4,258	3,937	3,937	3,861	4,057
	[4021]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84,858	208,655	208,655	192,743	224,367
		[11] 일반	[401]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84,858	208,655	208,655	192,743	224,367
	[4031] 재외공관 안전확보 및 시설개선			47,098	117,746	117,746	116,122	106,519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3 결산	2024 예산		2024 결산	2025 예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401]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27,244	28,180	28,180	24,706	5,926
		[11] 일반	[402] 재외공관 안전강화	19,853	23,466	23,466	22,930	25,082
		[11] 일반	[405] 재외공관 업무환경 개선	-	66,100	66,100	68,486	75,511

나.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사업은 재외공관 근무자들에 대한 정착지원금, 차량보험료, 신변안전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공관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2024년 예산액은 170억 6,300만원이며 이 중 166억 6,300만원을 집행함.

<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17,063	17,063	84	1,358	-	18,505	16,663	-	1,842	97.7	90.0

□ 정착지원금 근거 규정 마련 필요 등

외교부는 재외공관 부임직원의 부임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정착지원금은 특수지 공관과 비특수지 공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됨.

2024년에는 '가'공관 21명, '나'공관 48명, '다'공관 70명, 나머지 비특수지 공관 443명에 대하여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가' 공관은 인당 $4,000, '나'와 '다' 공관은 $3,000, 비특수지 공관은 $2,000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총 17억 7,4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정착지원금 집행 현황 >

구분	인당 정착지원금액 (미불)	인원 (명)	종 지출액 (미불)	종 지출액 (백만원)
'가' 공관	4,000	21	84,000	113
'나' 공관	3,000	48	144,000	193
'다' 공관	3,000	70	210,000	280
비특수지	2,000	443	886,000	1,188
계		512	1,114,000	1,774

※ 주: 급지 구분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와 동일함.

(자료: 외교부)

정착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정착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소요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공무원 개인에 대한 금전 지급 성격이므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재외공무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나 차량보험료 지원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73]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바 동 수당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세목조정이나 전용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정착지원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착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세목조정, 전용 등을 통하여 예산을 증액하였음.

< 최근 5년간 정착지원금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0	1,727	△226	1,501	1,464	37
2021	1,871	-	1,871	1,485	386
2022	1,512	199	1,711	1,704	7
2023	1,671	177	1,848	1,841	6
2024	1,671	126	1,797	1,796	1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여 정착지원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73)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20조(개인차량의 공적 사용)** ① 공관의 공용 차량 운용 관리 여건 상 공관원이 개인차량을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상기 제1항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차량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상기 제1항, 제2항의 '개인차량 공용 사용비'와 '차량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은 재외공관 외교활동 수행의 필수 지원인력인 행정직원을 위한 인건비, 교육훈련, 전지의료검진비, 외국적 행정직원 방한연수, 이부임여비 등의 예산 확보를 통하여 재외공관의 외교활동 지원하려는 사업임.

2024년 예산액은 2,086억 5,500만원이었으며, 이 중 1,927억 4,300만원을 집행함.

<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대비(C/A)	현액대비(C/B)
208,655	208,655	-	△4,086	-	204,569	192,743	-	11,826	92.4	94.2

□ 재외공관 행정직원 인력 운용 개선 필요

재외공관 행정직원 증원 및 처우개선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정직원 정원은 2021년 3,467명에서 2025년 5월 초 3,52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원되고 있음.

또한, 행정직원 기본급도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인상률도 매년 높아지고 있음. 2025년 행정직원 기본급은 3.05% 인상되었음.

<행정직원 기본급 인상 현황 >

(단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상율	1.1	1.5	1.8	2.5	3.05

이러한 개선 노력으로,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증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2023년 결산 시정조치에 대하여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음.

< 재외공관 증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시정조치 결과 >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증원 및 처우개선 필요	○ [지적사항]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증원 및 처우개선 필요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증원과 인건비 현실화 및 주거보조비 지원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 개선	○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증원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오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기본급 2.9% 인상 및 △60여 개 공관 주거보조비 인상, △행정직원 운영지침 상 기본급 초임 인상 등의 처우개선 조치를 시행하였음. 또한, 금년 대비 2025년 정원이 23명 증원되었으며, 7.5% 예산 증액을 통해 내년도 처우 개선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 완료

그럼에도 매년 100명 규모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력 충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결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는 99명, 올해 5월 기준으로는 100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음.

< 재외공관 행정직원 최근 5년간 정/현원>

(단위: 명)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5.8. 기준
정원(A)	3,467	3,484	3,489	3,502	3,525
현원(B)	3,373	3,383	3,378	3,403	3,425
결원(A-B)	94	101	111	99	100

※주: 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자료: 외교부)

이와 같은 결원은 행정직원 근속연수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정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8.7년에 불과하여 퇴직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공석을 대체하기 위한 채용 소요기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상시적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임.

< 재외공관 행정직원 평균 근속연수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근속년수	7.9년	8.7년	8.6년	8.6년	8.7년

(자료: 외교부)

2024년 기준 행정직원 교체채용 공관 수는 151개로 전체 공관 수 173개의 87.3%이며, 교체된 행정직원은 490명에 달함.

< 공관별 행정직원 교체채용 현황 >

지역	교체채용 공관 수 (개소)	교체채용 직종 및 인원 수(명)	
북미	15	전문직	3
		일반직	49
		관저요리사	3
중남미	15	전문직	3
		일반직	39
		관저요리사	7
유럽	30	전문직	10
		일반직	102
		관저요리사	10
중앙아시아	4	전문직	2
		일반직	14
		관저요리사	2
아시아	50	선임연구원	2
		전문직	6
		일반직	133
		관저요리사	16

지역	교체채용 공관 수 (개소)	교체채용 직종 및 인원 수(명)	
아프리카	19	전문직	3
		일반직	37
		관저요리사	8
중동	18	전문직	2
		일반직	30
		관저요리사	9
총계	151	-	490

(자료: 외교부)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매년 인건비의 전용과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지난해의 경우 행정직원 상용임금과 고용부담금이 각각 약 90억원과 18억원 불용되었음.

< 최근 5년간 행정직원 인건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본예산 (A)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2020	상용임금	156,833	△18,800	138,033	137,110	923	87.4
	고용부담금	10,273	△4,000	6,273	6,075	198	59.1
2021	상용임금	170,998	△1,340	169,658	148,990	20,668	87.1
	고용부담금	11,113	-	11,113	7,538	3,575	67.8
2022	상용임금	170,998	△650	170,348	164,551	5,797	96.2
	고용부담금	11,113	-	11,113	9,425	1,688	84.8
2023	상용임금	185,724	△7,000	178,724	171,240	7,484	92.2
	고용부담금	11,440	△1,210	10,230	9,883	347	86.4
2024	상용임금	192,655	△2,728	189,927	180,880	9,047	93.9
	고용부담금	11,886	△1,383	10,503	8,636	1,867	72.7

(자료: 외교부)

따라서 행정직원 증원 및 처우개선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

록 근속연수가 짧고 교체가 잦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력운용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임.

18. 외교행정지원

가. 개 요

「외교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외교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운용과 제반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외교정책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부 인건비 및 기본경비 외에 외교정보화, 정책연구개발, 본부 및 재외공관의 외교활동 업무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2024년도 기준, 8개의 단위사업 및 6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은 2,172억 6,800만원이고, 이 중 2,127억 2,7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외교행정지원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7000] 외교행정지원				213,435	217,268	217,268	212,727	235,305
	[7001] 본부인건비			87,730	94,669	94,669	90,218	97,277
		[11] 일반	[101] 본부 인건비	87,730	94,669	94,669	90,218	97,277
	[7002] 소속기관 인건비			8,573	9,064	9,064	9,258	9,403
		[11] 일반	[101] 국립외교원 인건비	8,573	9,064	9,064	9,258	9,403
	[7011] 본부 기본경비			44,733	44,704	44,704	45,217	50,261
		[11] 일반	[201]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9,520	10,072	10,072	9,364	10,757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202] 국가외교통신 운영(총액)	17	19	19	21	19
		[11] 일반	[203] 의전장실 기본경비(총액)	31	32	32	21	33
		[11] 일반	[204] 국제기구국 기본경비(총액)	31	32	32	36	31
		[11] 일반	[205] 외교전략기획관실 기본경비(총액)	17	20	20	17	19
		[11] 일반	[206] 동북아시아국 기본경비(총액)	23	35	35	18	35
		[11] 일반	[207] 북미국 기본경비(총액)	30	41	41	34	43
		[11] 일반	[208] 북핵외교기획단 기본경비(총액)	23	24	24	20	35
		[11] 일반	[209] 중남미국 기본경비(총액)	18	24	24	14	24
		[11] 일반	[210] 유럽국 기본경비(총액)	29	28	28	30	25
		[11] 일반	[211] 아프리카중동국 기본경비(총액)	34	41	41	31	34
		[11] 일반	[212] 국제법률국 기본경비(총액)	21	24	24	20	24
		[11] 일반	[213] 공공문화외교국 기본경비(총액)	27	32	32	25	32
		[11] 일반	[215] 영사안전국 기본경비(총액)	26	35	35	32	34
		[11] 일반	[216] 여권발급 기본경비(총액)	154	173	173	172	173
		[11] 일반	[217] 국제경제국 기본경비(총액)	18	18	18	18	18
		[11] 일반	[218]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총액)	34	29	29	22	33
		[11] 일반	[219]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본경비(총액)	24	27	27	26	25
		[11] 일반	[220] 개발협력국 기본경비(총액)	40	39	39	29	39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221] 아세안국 기본경비(총액)	28	30	30	28	30
		[11] 일반	[222] 평화외교기획단 기본경비(총액)	24	24	24	20	0
		[11] 일반	[223] 원자력비확산외교 기획관실 기본경비(총액)	18	24	24	21	25
		[11] 일반	[224] 아시아태평양국 기본경비(총액)	34	33	33	29	33
		[11] 일반	[225] 외교정보기획국 기본경비(총액)	-	0	0	6	18
		[11] 일반	[251] 기관운영 기본경비	24,458	22,303	22,303	23,186	27,266
		[11] 일반	[252] 국가외교통신 운영	3,003	3,980	3,980	3,815	4,047
		[11] 일반	[253] 의전장실 기본경비	460	329	329	2,205	325
		[11] 일반	[254] 인천공항연락실 운영	72	74	74	77	74
		[11] 일반	[255] 국제기구국 기본경비	433	508	508	380	415
		[11] 일반	[256] 외교전략기획관실 기본경비	598	503	503	454	518
		[11] 일반	[257] 동북아시아국 기본경비	215	234	234	188	230
		[11] 일반	[258] 북미국 기본경비	169	242	242	154	279
		[11] 일반	[259] 북핵외교기획단 기본경비	106	138	138	61	210
		[11] 일반	[260] 중남미국 기본경비	208	254	254	181	290
		[11] 일반	[261] 유럽국 기본경비	437	427	427	317	411
		[11] 일반	[262] 아프리카중동국 기본경비	321	347	347	311	375
		[11] 일반	[263] 국제법률국 기본경비	578	712	712	623	261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264] 공공문화외교국 기본경비	429	502	502	356	485
		[11] 일반	[266] 영사안전국기본경비	313	336	336	259	398
		[11] 일반	[267] 여권발급 기본경비	858	915	915	912	902
		[11] 일반	[268] 국제경제국 기본경비	203	202	202	179	206
		[11] 일반	[269]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	400	440	440	308	486
		[11] 일반	[270]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본경비	244	276	276	215	274
		[11] 일반	[271] 개발협력국 기본경비	310	318	318	280	344
		[11] 일반	[272] 아세안국 기본경비	166	272	272	170	265
		[11] 일반	[273] 평화외교기획단 기본경비	117	160	160	101	-
		[11] 일반	[274]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기본경비	132	166	166	150	251
		[11] 일반	[275] 아시아태평양국 기본경비	169	210	210	199	216
		[11] 일반	[276] 외교정보기획국 기본경비	-	0	0	82	194
	[7018] 소속기관 기본경비			6,666	7,043	7,043	6,562	7,231
		[11] 일반	[201] 국립외교원 기본경비(총액)	2,381	2,588	2,588	2,437	2,653
		[11] 일반	[251] 국립외교원 기본경비	4,285	4,455	4,455	4,126	4,578
	[7031] 외교 정보화			44,111	36,662	36,662	36,582	47,020
		[11] 일반	[501] 외교정보전용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20,225	20,882	20,882	19,739	22,049
		[11] 일반	[502]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정보화)	10,684	10,989	10,989	12,151	9,916
		[11] 일반	[504] 재외공관 회계 및 행정업무 고도화(정보화)	7,131	2,125	2,125	2,124	1,801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505] D.N.A 기반 외교업무환경 지능화(정보화)	4,313	2,666	2,666	2,569	13,254
	[7032] 외교정책연구(R&D)			401	356	356	355	338
		[11] 일반	[401] 정책연구개발	401	356	356	355	338
	[7033] 외교활동 업무지원			19,718	22,502	22,502	22,468	21,734
		[11] 일반	[401] 외교네트워크 구축	4,628	5,472	5,472	6,611	5,325
		[11] 일반	[402] 재외공관 주요행사비	6,770	7,649	7,649	6,894	7,445
		[11] 일반	[403]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379	1,802	1,802	1,139	1,617
		[11] 일반	[404]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 대응	2,807	2,303	2,303	2,914	2,188
		[11] 일반	[405] 대한민국 외교사료집 편찬	317	301	301	294	286
		[11] 일반	[406] 외교타운 안전정비사업	884	900	900	655	500
		[11] 일반	[408] 재외공관 국경일행사 개최지원 및 내실화	3,933	4,075	4,075	3,962	4,373
	[7034] 외교정책 대내외 이해제고			1,503	2,268	2,268	2,067	2,041
		[11] 일반	[401] 외교홍보역량강화	1,503	2,268	2,268	2,067	2,041

나. 기관운영 기본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외교부 본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공무직 보수를 포함한 행정지원 경비, 기획조정실·대변인실·감사관실 등의 운영 기본경비 등임.

< 기관운영 기본경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32,375	32,375	131	1,493	-	33,997	32,550	209	1,239	95.7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7011-201) 및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1)의 합산액

2024년도 예산액 323억 7,5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억 3,100만원 및 이·전용액 14억 9,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39억 9,700만원 중 2억 900만원은 이월되고 12억 3,9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325억 5,000만원은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7%임.

□ 연례적 예산변경 최소화를 위한 면밀한 집행계획 마련 필요

외교부는 2024년 기관운영 기본경비 중 국외여비로 11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산을 초과한 148억 4,700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예산액의 28.4%인 32억 8,900만원이 부족하여 예산 전용과 다른 사업의 국외업무여비의 내역변경 등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였음.

국외업무여비 예산 초과의 주요 요인은 재외공관 발령 직원의 이부임 항

공료, 이전비 등 교체여비의 증가에 따른 것임. 2024년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의 부족분은 35억 2,000만원으로, 3차례에 걸친 예산 전용(26억 4,400만원), 기존 여비의 내역변경(5억 5,600만원), 세목변경 등으로 충당하였음.

< 교체여비 관련 국외업무여비 전용 등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조정 세부사업	금액
자체전용	12.9.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9개 사업	1,400
승인전용	12.27.	본부 인건비 등 1개 사업	800
자체전용	12.30.	국가외교통신 운영 등 6개 사업	444
내역변경	12.30.	국제국 기본경비 등 14개 사업	556
합 계			3,200

(자료: 외교부)

2024년의 경우, 국제물류 불안 요소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해 교체여비 지원기준액이 인상된 점[74], 환율 인상에 따른 환차손 발생, 편성인원 대비 실제 이동 인원 간의 차이[75] 등이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의 상승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음.

< 2024년 교체여비 편성액 대비 집행액 현황 >

편성액	집행액
104억원 항공료: 1,500명 x 3.63백만원 = 54.5억원 이전비: 580명 x 8.19백만원 = 47.5억원 일 비: 1,500명 x 0.09백만원 = 1.3억원 준비금: 100명 x 0.95백만원 = 1.0억원	139억원 항공료: 2,223명 x 1.79백만원 = 39.7억원 이전비: 842명 x 11.7백만원 = 98.2억원 일 비: 2,223명 x 0.05백만원 = 1.1억원 준비금: 120명 x 0.3백만원 = 0.4억원

(자료: 외교부)

74) 2024년 상반기 홍해 사태, 파나마운하 가뭄 이슈로 우회 통항 및 물류 처리 지연이 발생하여 해운비용이 상승됨.

75) 국외이전비 편성인원은 580명이나 실제 이전비 지급대상자는 842명임.

그러나,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관련 예산이 실집행액에 대비하여 상당 부분 부족하게 편성되어 이전용을 통한 예산 충당이 관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국회에서도 교체여비의 과소편성에 따른 연례적인 예산변경에 대하여 지적해왔음.

< 연도별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부족액(B-A)	부족률[(B-A)/A]
2020	7,880	10,029	2,149	27.3
2021	7,804	11,749	3,945	50.6
2022	8,105	14,996	6,891	85.0
2023	9,736	14,946	5,210	53.5
2024	10,417	13,937	3,520	33.8

(자료: 외교부)

이에 대해 외교부는, 그간 이·부임 관련 교체여비 등 부족현상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업무여비의 대폭적인 증액에 한계가 있어 예산 이전용 등이 불가피하였으나,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 및 예산 당국과의 적극적인 예산증액 협의로 2025년의 경우 교체여비를 예년 대비 상당 규모로 증액[76]함에 따라 과도한 이·전용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설명함.

향후 외교부는 동 사업 예산에 대한 면밀한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이전용 등 예산변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액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76) 2025년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는 139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6% 증가한 35억원이 증액 편성됨.

다. 국립외교원 기본경비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함)은 외교관 후보자 및 재외공관 직원 등 대한민국의 외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 정세 및 외교 환경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며, 외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분석을 제공함.

외교원 내에는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 연구를 담당하는 '외보안보연구소'와, 외교 관련 정보자원을 수집·제공하여 교육 및 연구 기능을 지원하는 '국립외교원 도서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 국립외교원의 '학술지 구독' 및 '온라인 DB 구독' 계약 체결 및 집행 시 법령 및 지침 준수와 공정성·효율성 제고 필요

외교원 도서관은 해외학술지의 신속·연속적인 구독을 통해 최신 연구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외교·안보 분야 전문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해외간행물 및 온라인 자료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교원은 2023.11.27. 조달청 나라장터에 계약방법을 소액수의견적제출[77]로 한 '2024년도 해외학술지 구독 대행'[78]입찰 공고문을 게시하

---

7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가목7), 같은 호 마목·사목· 아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였으며, 2023.11.30. 개찰을 실시하여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엘아이에스코리아와 2023.12.6.에 계약을 체결함.

소액수의(少額隨意) 견적제출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적격심사를 하지 않고 입찰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이는 일반적인 '수의계약'과 달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해외)학술지·간행물 및 온라인자료 구독 관련 지출내역 >

건명	비목	계약업체	계약 방법	자금이체일	자금이체액 (지출결의액, 원)
해외간행물 구독료 집행 (wall street journal, 인민일보, Le Figaro)	일반 수용비	㈜엘아이에스 코리아	수의	2024-01-16	2,689,800
온라인 DB 구독료 집행 (Stratfor Worldview)			수의	2024-01-17	6,930,000
온라인 DB 구독료 집행			**수의**	**2024-01-17**	**86,248,500**
해외학술지 구독 대행			**소액수의**	**2024-01-18**	**94,900,000**
해외간행물 구독계정 추가 집행 (Economist 외 2종)			수의	2024-02-05	2,504,820
해외간행물 구독료 집행 (LE MONDE)			수의	2024-03-07	275,000
온라인DB 구독료 집행 (Devex Pro)			수의	2024-04-19	2,093,380
온라인 자료 그룹구독료 집행 (New York Times)			수의	2024-06-19	3,095,360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78) 소요예산 : 약 96,621,266원 (US$71,704.09, 부가가치세 포함)

건명	비목	계약업체	계약 방법	자금이체일	자금이체액 (지출결의액, 원)
온라인 DB 구독료 집행 (WORLD POLITICS REVIEW)			수의	2024-07-29	249,200
해외간행물 구독료 집행 (Financial Times)			수의	2024-11-25	2,923,49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지출결의대장, ㈜엘아이에스코리아 기준)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해외학술지 구독 대행' 계약의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입찰참가자는 온라인 저널 전문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외교원이 별도로 구매한 온라인 저널과 DB를 포함하여 인쇄 및 온라인 저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공고문에 첨부된 '2024년도 구독 학술지 목록'에는 서양서 76종, 중국서 11종, 일본서 15종, 시사교양지 3종 등 총 100여 종의 해외학술지가 포함되어 있음.

동 계약은 외교원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학술지의 정기 구독, 납본, 문제발생시 대응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용역계약임. 이는 단순 물품 구매가 아닌 업무 대행의 성격을 갖는 계약으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79]'에 따라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원은 '2024년도 해외학술지 구독 대행' 계약을 '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하였으며, 이러한 예산과목 설정상의 문제가 시정

79)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일반수용비(210-01)	일반용역비(210-14)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되지 않은 채, ‘2025년도 국립외교원 도서관 해외학술지 구독 대행’[80] 사업 또한 전년도와 같이 ‘일반수용비’로 약 1억 8백만원의 소요예산(안)을 편성하고, 2024.11.11.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게시함.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2024.12.11. 전년도와 동일한 업체인 (주)엘아이에스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함.

이와 더불어, 매년 계약공고문상 구독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나, 납품기간은 다음 연도 6월 말까지로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다음 연도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는 전년도 11월 또는 12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원활한 구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음[81]. 다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계약체결[82]은 반드시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연초에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향후에는 계약(지출원인행위)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일정 관리가 요구됨.

한편, 외교원은 ‘해외학술지 구독’계약과 ‘온라인 DB 구독’계약을 분리하

---

80) 소요예산(안) : 약 108,378,590원 (US $77,891.76, 1$=1,391.4원 환율 적용)

81) 조달청 계약공고 관련 지침상 예산 미확정 상태에서도 공고는 가능함.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여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분리계약에 대해 외교원은 '온라인 DB'는 외교·안보 전문 분야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DB이며, 학1술지는 상기 온라인 DB가 제공하지 않는 출판사별 중요 논문을 수록한 자료로서 별개의 자료이며 이에 따라 별도로 구독하고 있다고 설명함.

< 온라인 DB 구독 관련 지출내역 >

건명	계약업체	자금이체일	자금이체액 (지출결의액, 원)
온라인 DB 구독료 지급 건의(누리미디어)	(주)누리미디어	2024-01-16	5,935,000
온라인 DB 구독료 지급 건의 (한국학술정보)	(주)한국학술정보	2024-01-16	3,200,000
온라인 DB 구독료 지급 건의 (CNKI 신원데이터넷)	(유)신원데이터넷	2024-01-17	2,919,180
온라인DB 구독료 집행 건의 (Stratfor Worldview)	(주)엘아이에스 코리아	2024-01-17	6,930,000
온라인 DB 구독료 지급 건의 (JSTOR 신원데이터넷)	(유)신원데이터넷	2024-01-17	3,045,240
온라인 DB 구독료 지급 건의 (엘아이에스 코리아)	(주)엘아이에스 코리아	2024-01-17	86,248,500
온라인 DB 구독료 송금	EBSCO	2024-01-19	27,913,410
온라인 DB(DNSA) 구독료 송금	ProQuest	2024-01-19	4,515,100
온라인 DB 구독료 집행 건의(Devex Pro)	(주)엘아이에스 코리아	2024-04-19	2,093,380
온라인 DB 구독료 지급 건의 (WORLD POLITICS REVIEW)	(주)엘아이에스 코리아	2024-07-29	249,20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지출결의대장, 온라인 DB 구독 기준)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온라인 DB 구독' 의 경우 5개 이상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콘텐츠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계약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임. 온라인 DB는 독점적·전속적 유통 구조를 띠는 경우가 있어, 각 업체가 특정 콘텐츠의 국내 독점권 또는 전속 유통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외교원의 DB 구독 계약은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우려됨.

이에 따라, DB별 이용률 분석과 사용자 평가, 단가의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외교원의 '해외학술지 구독 대행' 및 '온라인 DB 구독' 계약을 검토한 결과,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과목으로 집행이 이루어졌고, 2023년부터 3년간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이 체결되는 등 특정 업체에 편중된 양상이 나타남. 계약방식 또한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83]인 점은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아울러, '온라인 DB 구독' 계약은 다수 업체와 분산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과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집행하고, 유사·동종 계약의 경우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 다변화를 적극 모색하며, 회계연도에 맞는 계약 체결 시기를 준수하는 등 계약의 체결 및 집행 전 과정에서 적법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83) 2024년도 소액수의견적 제출 결과 1순위는 ㈜엘아이에스코리아, 2순위는 저널피아였으며, 2025년도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엘아이에스코리아와 저널피아가 업체로 참여함.

라.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는 외교부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직원 간의 소통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행정역량 강화, 산하기관 평가, 외교역량 강화 정책연구, 재외공관 행정협조 체제 강화, 청년인턴 채용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C/B)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1,802	1,802	-	△195	-	1,607	1,139	-	468	70.9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당초 18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전용을 통해 1억 9,500만원이 감액된 16억 7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 이 중 11억 3,9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6,8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0.9%임.

□ 청년인턴 채용 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용 방안 모색 필요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의 내역사업인 「청년인턴 채용」 사업은 청년들의 국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4년도부터 최초로 정규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어 추진된 것으로, 2024년에는 14억 5,400만원이 책정되었음.

동 내역사업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4억 5,400만원 중 10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30.6%인 4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음.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는 편성 계획 대비 단기(2~3개월) 근무 인턴 채용 규모의 확대에 따른 일용임금(3억 1,700만원) 및 고용부담금(4,500만원) 집행액 축소, 인턴 사업에 편성된 국내여비(800만원) 절감 등에 따른 것임.

<청년인턴 채용 내역사업 비목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청년인턴 채용	1,454	1,454	-	-	-	1,454	1,009	-	445
-일용임금(110-04)	1,224	1,224	-	-	-	1,224	907	-	317
-일반수용비(210-01)	11	11	-	△4	-	7	7	-	-
-임차료(210-07)	-	-	-	4	-	4	1	-	3
-국내여비(220-01)	82	82	-	-	-	82	2	-	80
-고용부담금(320-09)	137	137	-	-	-	137	92	-	45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2024년 청년인턴[84]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총 110명 채용을 목표로 하여 6개월 근무 장기 인턴 80%(88명)와 2~3개월 단기 인턴 20%(22명)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종적인 채용 규모가 115명으로 증원되었던 반면, 단기 인턴의 채용 규모가 59%(65명)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 불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함.

84) 외교부 청년인턴 근무조건
-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2~6개월
- (보 수) 월 2,060,740원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2023년 1월부터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시행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청년들에게 중앙부처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청년에게 국정운영 참여와 직무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적 목적으로 하고 있음.

외교부는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2024. 4. 23. 제정)[85]을 선도적으로 마련하여 청년인턴 채용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인턴 근무가 2~3개월의 단기로 운용될 경우 정책적인 업무나 능력개발 업무를 경험할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와 같은 단기 인턴 위주의 채용방식으로는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역량 강화라는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해 외교부는 다수의 단기 인턴들이 우리나라가 2024년 국내에서 주관, 개최한 주요 국제행사[86]에 참여하면서 국가별 연락관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는 등 실무 외교 경험을 축적하였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의미는 있다고 설명함.

향후 외교부는 청년 인턴십이 단순한 체험이 아닌, 정책역량을 키우는 실질적 참여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 장기 인턴 비중 확대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85) 현재 청년인턴 운영을 위한 법령을 시행 중인 중앙행정기관은 외교부 외에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가 있음.

86)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24.3월), 「2024 한-아프리카정상회의」(24.6월), 「제2차 인공지능의책임있는군사적이용에관한 고위급회의」(24.9월) 등

마.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은 전체 재외공관장이 참석하는 「재외공관장회의」를 주된 내역사업으로 하고, 그밖에 겸임국 출장, 특사 파견, 대외직명대사 활동, 재외공관원 전문분야 역량강화 등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짐.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2,303	2,303	-	984	-	3,287	2,914	-	373	88.7

2024년도 예산액 23억 300만원에서 이·전용액 9억 8,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2억 8,700만원 중 29억 1,400만원은 집행되고 3억 7,300만원은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7%임.

□ 재외공관장회의 사업 예산의 현실화 필요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의 내역사업인 「재외공관장회의」 사업은 세계 주요국에서 근무하는 재외공관장이 참석하여 재외공관장들의 국내정세 인식 제고, 주요 외교정책 및 지침의 직접 하달,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협의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본부와 재외공관 간 유기적인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동 내역사업의 2024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은 15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책정된 예산의 63%에 해당하는 9억 8,400만원을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1)에서 자체전용하여 집행액은 24억 6,000만원임.

< 재외공관장회의 내역사업 비목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재외공관장회의	1,553	1,553	-	984	-	2,537	2,460	-	77
- 일반수용비(210-01)	15	15	-	10	-	25	23	-	2
- 임차료(210-07)	25	25	-	42	-	67	67	-	0
- 일반용역비(210-14)	30	30	-	107	-	137	137	-	0
- 국내여비(220-01)	228	228	-	105	-	333	311	-	22
- 국외업무여비(220-02)	1,129	1,129	-	720	-	1,849	1,799	-	50
- 사업추진비(240-01)	126	126	-	-	-	126	123	-	3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동 내역사업의 과도한 전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회의 참석 인원의 증가, 항공료 및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관련 예산 부족으로 설명하고 있음.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근거 대비 집행 세부내역을 볼 때, 참석자의 국내 체제비 및 항공료와 회의장 조성 용역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 2024년 재외공관장회의 예산 편성근거 및 집행내역>

편성근거	집행내역
■ 재외공관장회의(1회) : 1,553백만원 - 일정안내서 등 회의자료 제작/사무용품 구입/차량, 회의실 및 토론장 임차 : 40백만원 - 회의장 조성 용역 : 30백만원 - 참석자 국내체재비 및 항공료 : 1,356백만원 - 대통령 및 총리, 장관 주최 연회비, 지역별·그룹별 Catering : 126백만원	■ 재외공관장회의(1회) : 2,460백만원 - 일정안내서 등 회의자료 제작/사무용품 구입/차량, 회의실 및 토론장 임차 : 90백만원 - 행사장 조성 용역 : 137백만원 - 참석자 국내체재비 및 항공료 : 2,109백만원 - 대통령 및 총리, 장관 주최 연회비, 지역별·그룹별 Catering : 123백만원

(자료: 외교부)

그런데, 동 내역사업의 경우 2023년에도 항공료 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예산부족을 이유로 편성 예산 15억 100만원의 57%에 해당하는 8억 5,4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국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시정을 요구받은 바 있음.

재외공관장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회의 참석·개최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부는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시 예산의 초과 집행과 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

19. 한국국제협력단

가. 개 요

KOICA는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으로 설립된 외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KOICA는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예산을 출연·보조받아 운영함.

KOICA의 2024년 예산액은 2조 26억 4,100만원이며, 이 중 1조 9,067억 3,100만원을 집행함.

< 한국국제협력단 2024년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항 목 명	예 산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총 합 계	2,002,641	△55,946	1,946,695	1,906,731	10,065	29,898	97.9
□ 인건비	48,439	742	49,181	48,957	-	223	99.5
협력사업지원(인건비)	47,783	742	48,525	48,512	-	12	100.0
기금운영비(인건비)	656	-	656	445	-	211	67.9
□ 경상운영비	1,960	-	1,960	1,937	-	23	98.8
협력사업지원(경상비)	1,960	-	1,960	1,937	-	23	98.8
□ 사업비	1,950,912	△55,358	1,895,554	1,855,837	10,065	29,652	97.9
<출연사업>	1,246,796	△54,931	1,191,865	1,154,650	7,608	29,606	96.9

항 목 명	예 산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①아시아태평양지역원조	**275,641**	**△17,825**	**257,816**	**249,271**	**3,140**	**5,406**	**96.7**
베트남(ODA)	49,646	△6,872	42,774	41,413	-	1,361	96.8
인도네시아(ODA)	20,971	△5,855	15,116	12,966	1,527	624	85.8
캄보디아(ODA)	22,864	△290	22,574	22,310	-	263	98.8
필리핀(ODA)	31,043	△9,223	21,820	21,414	339	68	98.1
방글라데시(ODA)	13,790	△4,290	9,500	9,349	-	150	98.4
몽골(ODA)	17,122	△36	17,086	16,772	225	89	98.2
라오스(ODA)	24,652	2,100	26,752	26,369	-	383	98.6
스리랑카(ODA)	12,232	6,653	18,885	18,821	-	64	99.7
네팔(ODA)	9,438	694	10,132	10,123	-	9	99.9
파키스탄(ODA)	9,239	△370	8,869	8,810	-	59	99.3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62,841	963	63,804	60,440	1,050	2,315	94.7
인도(ODA)	853	△663	190	189	-	1	99.3
미얀마(ODA)	950	△637	314	295	-	18	94.1
② 아프리카지역원조	**306,614**	**△12,211**	**294,403**	**282,575**	**2,416**	**9,412**	**96.0**
가나(ODA)	15,943	70	16,013	15,613	-	400	97.5
에티오피아(ODA)	30,643	△1,839	28,804	28,186	548	70	97.9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87,826	△5,424	182,402	174,739	1,685	5,978	95.8
르완다(ODA)	15,714	-	15,714	15,475	-	239	98.5
우간다(ODA)	14,501	△737	13,764	13,159	100	505	95.6
탄자니아(ODA)	18,927	△1,946	16,981	16,448	-	533	96.9
세네갈(ODA)	12,853	△486	12,367	11,262	-	1,105	91.1
이집트(ODA)	10,207	△1,849	8,358	7,693	83	582	92.0
③ 중남미지역원조	**73,671**	**1,011**	**74,682**	**72,893**	**127**	**1,662**	**97.6**
콜롬비아(ODA)	7,306	1,000	8,306	8,243	-	63	99.2
페루(ODA)	9,964	△2,863	7,101	6,970	-	131	98.2
볼리비아(ODA)	8,024	1,200	9,224	9,101	-	123	98.7

항 목 명	예 산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파라과이(ODA)	15,701	△663	15,038	14,873	-	165	98.9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32,676	2,337	35,013	33,706	127	1,180	96.3
④ 중동CIS지역원조	**133,274**	**△11,499**	**121,775**	**119,607**	**496**	**1,672**	**98.2**
우즈베키스탄(ODA)	23,767	△4,309	19,458	19,130	-	328	98.3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88,688	△6,714	81,974	81,235	496	242	99.1
키르기스스탄(ODA)	12,950	4,812	17,762	16,767	-	995	94.4
타지키스탄(ODA)	7,169	△5,287	1,882	1,775	-	107	94.3
우크라이나(ODA)	700	-	700	700	-	-	100.0
2. 글로벌프로그램	**313,652**	**△7,158**	**306,494**	**298,342**	**1,214**	**6,938**	**97.3**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128,756	△4,951	123,805	119,778	-	4,027	96.7
글로벌연수	67,378	△12	67,366	63,889	1,214	2,262	94.8
국제기구협력	81,915	△1,708	80,207	80,193	-	14	100.0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	35,603	△487	35,116	34,481	-	635	98.2
3. 협력사업지원	**73,644**	**△3,457**	**70,187**	**66,983**	**214**	**2,990**	**95.4**
협력사업지원	73,644	△3,457	70,187	66,983	214	2,990	95.4
4. 전략적 협력 강화	**8,000**	**△2,158**	**5,842**	**5,206**	**-**	**636**	**89.1**
전략적 협력 강화	8,000	△2,158	5,842	5,206	-	636	89.1
5.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62,300**	**△1,635**	**60,665**	**59,774**	**-**	**891**	**98.5**
민관협력사업	57,000	△1,635	55,365	54,487	-	878	98.4
인도적지원(출연금)	5,300	-	5,300	5,287	-	13	99.8
<보조사업>	**703,400**	**-**	**703,400**	**700,907**	**2,457**	**36**	**99.6**
6.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703,400**	**-**	**703,400**	**700,907**	**2,457**	**36**	**99.6**
인도적지원(보조금)	703,400	-	703,400	700,907	2,457	36	99.6
<수탁사업>	**716**	**△427**	**289**	**280**	**-**	**9**	**96.9**
7.질병퇴치기금사업	**624**	**△384**	**240**	**232**	**-**	**8**	**96.4**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159	△132	27	26	-	-	98.4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	295	△88	207	199	-	8	96.2

항 목 명	예 산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170	△163	7	7	-	-	95.9
8. 기금운영비	**92**	**△44**	**48**	**48**	**-**	**-**	**99.0**
기금운영비	92	△44	48	48	-	-	99.0
□ 예비비	**1,330**	**△1,330**	**-**	**-**	**-**	**-**	**-**
협력사업 지원(경평성과급)	**1,330**	**△1,330**	-	-	-	-	-

※ '증감'은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미배정액을 포함한 금액임

나. 국별 협력사업

「국별 협력사업」은 양자무상원조를 위한 것으로, 2024년도 본예산은 7,892억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및 전용액 등으로 인한 감액분 405억 2,400만원을 고려한 예산현액은 7,486억 7,600만원임.

이 중 96.8%에 해당하는 7,243억 4,600만원이 집행되고, 61억 7,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81억 5,200만원이 불용됨.

이에 국별협력사업의 집행률은 본예산 대비 91.8%, 예산현액 대비 96.8%로 나타나고 있음.

< 2024년도 국별협력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항 목 명	예 산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국별협력사업 (지역원조) 총괄	**789,200**	**△40,524**	**748,676**	**724,346**	**6,179**	**18,152**	**91.8**	**96.8**
① 아시아태평양지역원조	275,641	△17,825	257,816	249,271	3,140	5,406	90.4	96.7
② 아프리카지역원조	306,614	△12,211	294,403	282,575	2,416	9,412	92.2	96.0
③ 중남미지역원조	73,671	1,011	74,682	72,893	127	1,662	99.0	97.6
④ 중동CIS지역원조	133,274	△11,499	121,775	119,607	496	1,672	89.7	98.2

※ '증감'은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미배정액을 포함한 금액임

□ 신규사업의 초년도 예산 집행 저조 및 착수 지연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국별 협력사업을 새로 편성할 때, KOICA는 '기획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제반 여건 및 타당성 분석 등을 조사한 후, '협의의사록(RD: 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해 수원국/수원기관과의 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관리기관(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을 선정해 KOICA의 위탁에 따라 사업관리를 총괄하도록 함. 이에 따라 선정된 사업관리기관은 협의의사록에 따른 사업에 착수함.

그런데 2024년도 신규 국별 협력사업의 초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총 집행액은 130억 900만원으로 71개의 신규 사업 중 33건의 집행액이 전혀 없으며,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세네갈 등 9개 국가[87]의 경우 해당 국가의 신규 국별 사업 중 집행액이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음.

<2024년 집행률이 0%인 신규 국별 협력사업>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예산액
베트남 6개 지역 이주여성과 아동을 위한 효과적 재정착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강화사업(IOM)('24-'29/350만불)	989
베트남 법원 아카데미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역량강화사업 ('24-'28/1,470만불)	347
인도네시아 보건인력 관리 체계 개선사업('24-'27/500만불)	347
인도네시아 국가데이터센터 통합 운영지원 및 역량 강화 사업('24-'28/550만불)	347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맹그로브 숲 복원 모델 수립사업('24-'28/850만불)	347
필리핀 중부 루손지역 한계농가의 생계 및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개발 사업('24-'29/600만불)	346
방글라데시 선진시장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차토그램 한방직업훈련원 직업훈련 체계 현대화('24-'27/1,000만불)	346

87)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DR 콩고, 세네갈, 이집트, 페루, 파라과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내역사업명	예산액
라오스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24-'29/500만불)	346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 대응체계 및 정책역량 강화 2차사업(UNFPA)('24-'28/431만불)	350
동티모르 딜리 지역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24-'30/1,120만불)	346
동티모르 영유아 교육사업(UNICEF)('24-'27/600만불)	1,417
DR콩고 북카탕가주 감염병 감시 역량 강화사업('24-'27/600만불)	500
케냐 청년 생산적 고용 및 소득 증대를 위한 국가산업훈련청 아띠리버 센터 역량강화사업('24-'28/700만불)	346
수단 모든 아동을 위한 양질의 학습 기회 보장 사업(UNICEF)('24-'27/650만불)	1,009
세네갈 중부지역 모자보건체계 강화사업 2단계('24-'28/1250만불)	800
이집트 직업훈련원 친환경 자동차 정비기술 고도화 사업('24-'30/1000만불)	773
페루 ICT 수사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사업(`24-`28/610만불)	383
페루 전역 조세제도 개편 및 전자세정 구현 사업('24-'27/1,076만불)	200
페루 아마존 지역 원헬스 기반 매개체 감염병 대응역량 및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24-'30/1,280만불)	225
볼리비아 쌀 생산성 증대 및 사회적 경제 체계 강화를 통한 중소농민 포용적 지원사업('24-'28/963만불)	387
볼리비아 감자생산 선진화를 위한 스마트팜 적용 시범사업('24-'28/1,200만불)	178
파라과이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진단 및 감시 역량강화 사업('24-'29/1,450만불)	100
과테말라 경찰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고등교육원 개선 사업('24-'29/800만불)	200
엘살바도르 원격협진을 통한 소아보건 개선사업('24-'27/760만불)	400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 및 활용 역량강화 사업('24-'28/849만불)	346
아제르바이잔 숨가이트시 및 해방 지역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24-'28/1,000만불)	346
키르기스스탄 농산물 수확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가치사슬 강화사업('24-'27/600만불)	346
타지키스탄 정부기능 디지털 전환 이행 지원사업('24-'27/650만불)	346
타지키스탄 시설원예농업 현대화 기반 구축 사업('24-'29/800만불)	346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 전력망 통합자동관리시스템 구축 사업('24-'28/1,450만불)	50
우크라이나 정부 효율성 및 책무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사업(UNDP)('24-'26/533만불)	50
우크라이나 키이우-국경구간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24-'27/800만불)	50
우크라이나 오데사-이즈마일-레니구간 철도용량 증대를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24-'26/600만불)	50
합 계	13,009

(자료: 외교부)

71개의 신규 협력사업 중 사업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연내 계획된 사업 추진 예정인 사업은 34건에 불과한데, 이 중 13개의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선

정이 2025년에 이루어져 초년도 사업 착수에는 차질이 있었음. 다른 37개 사업들은 협의의사록 미체결(17건) 또는 사업관리기관 미선정 단계이거나(13건), 사업이 취소된 경우 등(7건)도 있음.

KOICA의 신규 국별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저조 및 착수 지연의 관행에 대한 지적은 국회의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수년간 있었음. KOICA는 N-2년부터 사업을 계획하고 심의·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2차년도 7월 중순까지 협의의사록 체결 및 사업관리기관 선정이 지연되어 착수 사업이 과반에 못 미치는바,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KOICA는 초년도 예산 집행 저조 및 착수 지연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제반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통해 사업의 기대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미얀마 · 우크라이나 대상 국별협력 사업의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미얀마와 우크라이나는 국가협력전략(CPS)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으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과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2024년 KOICA의 미얀마 대상 국별 협력사업은 본예산이 9억 5,000만원이고, 6억 3,650만원이 전용감되어 예산현액 3억 1,350만원 중 2억 9,507만원 집행된바,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31.1%이고, 우크라이나 대상 국별 협력사업은 본예산 7억원 전액 집행됨.

< 미얀마·우크라이나 국별협력사업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사업명	예산액	전용·조정	예산현액(B)	집행액(C)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A)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미얀마	950,000	△636,500	313,500	295,065	18,434	31.1	94.1
미얀마 직업기술교사 교육원 설립사업	200,000	△190,500	9,500	6,578	2,922	3.3	69.2
미얀마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사업	600,000	△366,000	234,000	230,522	3,478	38.4	98.5
미얀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촌지도 역량 강화 사업	-	-	-	-	-	-	-
미얀마 자동차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	-	-	-	-	-	-
미얀마 ICT를 활용한 개발소외지역 참여적 농촌개발 사업: 사업취소	-	-	-	-	-	-	-
미얀마 라카인 마나웅섬 2.5MW 태양광전력시스템 구축사업: 사업취소	-	-	-	-	-	-	-
미얀마 교량 안전관리 기술 역량강화사업: 사업취소	-	-	-	-	-	-	-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100,000	△100,000	-	-	-	-	-

사업명	예산액	전용·조정	예산현액(B)	집행액(C)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A)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건립 및 역량강화사업							
미얀마 철도 역량강화 사업 : 사업취소	-	-	-	-	-	-	-
미얀마 농식품 안전 및 식물검역 역량강화 사업 : 사업취소	-	-	-	-	-	-	-
미얀마 개발연구원 설립사업	50,000	20,000	70,000	57,966	12,034	115.9	82.8
우크라이나	**700,000**	**-**	**700,000**	**700,000**	**-**	**100.0**	**100.0**
우크라이나 키이우주 재활의료 역량강화 사업	450,000	△350,000	100,000	100,000	-	22.2	100.0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 전력망 통합자동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50,000	△50,000	-	-	-	-	-
우크라이나 정부 효율성 및 책무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사업	50,000	△50,000	-	-	-	-	-
우크라이나 항공운송 안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보리스필공항 현대화 사업	50,000	550,000	600,000	600,000	-	1,200.0	100.0
우크라이나 키이우-국경구간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사업	50,000	△50,000	-	-	-	-	-
우크라이나 오데사이즈마일-레니구간 철도용량 증대를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	50,000	△50,000	-	-	-	-	-

미얀마의 경우 국별협력사업 11개 중 5개가 취소되었으며, 취소되지 않은 6개의 사업 중 2개의 사업[88]은 본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1개의 사업[89]은 전액 전용감되었으며 1개의 사업[90]은 95% 이상 전용감되었음. 그 외의 2개 사업 중 '미얀마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사업'은 본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38.2%로 집행이 저조한 상황임.

88) 미얀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촌지도 역량강화 사업, 미얀마 자동차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89)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건립 및 역량강화사업

90) 미얀마 직업기술교사 교육원 설립사업

이에 대해 KOICA는 2021년 미얀마 내 군부 쿠데타 이후 국가비상사태 선포 기간 연장이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등 정세불안으로 사업추진이 제한되고 있다는 설명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외교통일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검토 과정[91]에서 '미얀마 생물다양성센터 건립 및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 "KOICA는 최소 예산만을 제외한 채 사업 예산을 감액하도록 하고, 미얀마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지적하여 정부제출안에 비해 최종 본예산이 10% 수준으로 감액되었으나, 그마저도 2024년에 집행되지 못하였음.

우크라이나의 경우 국별협력사업 6개 중 4개의 사업[92] 예산 전액과 '우크라이나 키이우주 재활의료 역량강화 사업' 예산(4.5억원) 중 3.5억원 등 총 5.5억원이 '우크라이나 항공운송 안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보리스필공항 현대화 사업'으로 전용되었음.

동 사업은 본예산(0.5억원) 대비 집행액(6억원)이 12배 수준인데, 이에 대해 KOICA는 2024년 12월 PMC 선정 이후 선금 지급 과정에서 다른 사업과 달리 기자재 투입을 바로 요하는 해당 사업의 특성상 선금의 지급 비율[93]이 높아

91) 2024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회외교통일위원회, 2023.11., p.199

92)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 전력망 통합자동관리시스템 구축사업(0.5억원), 우크라이나 정부 효율성 및 책무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사업(0.5억원), 우크라이나 키이우-국경구간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0.5억원), 우크라이나 오데사-이즈마일-레니구간 철도용량 증대를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0.5억원)

93) '우크라이나 키이우주 재활의료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PMC와의 총 계약 금액이 약 9억 7,000만원으로 그 중 약 10% 수준인 1억원이 선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우크라이나 항공운송 안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보리스필공항 현대화 사업'은 PMC와의 총 계약 금액 13억 2,000만원 중 약 45%인 약 6억원이 선금

불용이 불가피한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특성은 사업 계획 과정에서 기초조사를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판단됨. 특히 다른 사업에서 전용감되지 않았을 경우 선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었던바, 이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을 고려할 때 더욱 유의했어야 할 것임.

향후 외교부와 KOICA는 정세가 불안한 지역인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에서 추진하는 ODA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으로 지급됨.

다. 글로벌 프로그램

「글로벌 프로그램 」은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과 파트너십을 통한 개도국 인적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 「글로벌연수(ODA)」, 「국제기구협력(ODA)」,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등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액은 3,136억 5,2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4억 400만원, 미교부액은 75억 6,200만원이며, 집행액은 2,983억 4,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95.1%임.

< 글로벌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전용·조정	미교부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 인재사업	128,756	128,756	-	-	△4,951	123,805	119,777	-	4,027	93.0	96.8
글로벌연수	67,378	67,378	404	-	△416	67,366	63,889	1,214	2,262	94.8	94.8
국제기구협력	81,915	81,915	-	-	△1,708	80,207	80,193	-	14	97.9	100.0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35,603	35,603	-	-	△487	35,116	34,481	-	635	96.8	98.2
합 계	313,652	313,652	404	-	△7,562	306,494	298,342	1,214	6,938	95.1	97.3

□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의 목표와 실적의 일치 필요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는 월드프렌즈코리아(WFK)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들이 해외개발협력 현장 등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파견사업과 함께 원격봉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임. 2024년 기준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총 5,255명이 활동하였으며, 예산액은 1,287억 5,600만원, 미교부액은 49억 5,100만원이고 집행액은 1,197억 7,700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집행률은 93.0%임.

<최근 5개년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실적>

항목 구분 (시행기관)		파견 인원 실적 · 목표('20~'24)(명)						합계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실적	'23년 실적	'24년 실적	'25년 목표	
WFK 해외 봉사단	KOICA 봉사단	1,647	762	1,195	1,159	1,531	1,700	6,294
	ㄴ일반봉사단	1,465	370	585	726	844	1,000	3,990
	ㄴNGO봉사단	134	143	311	231	231	250	1,050
	ㄴ청년중기봉사단	4	197	248	151	406	400	1,006
	ㄴUNV 봉사단	44	52	51	51	50	50	248
	KOICA 자문단	48	3	8	12	25	35	96
	NIPA 자문단	11	28	32	14	29	69	114
	청년봉사단	-	824	1,002	1,528	1,960	2,220	5,314
	IT 청년봉사단	-	94	170	208	249	400	721
	과학기술지원단	30	21	5	6	12	25	74
	한방봉사단	-	33	56	52	54	72	195
개발 협력 인재	영프로페셔널(YP)	466	408	626	654	1,052	1,048	3,206
	코디네이터	176	146	230	179	240	298	971
	다자협력전문가	49	66	64	70	91	80	340
	글로벌의료진	21	12	14	13	12	22	72
합 계		2,448	2,397	3,402	3,895	5,255	5,969	17,397

(자료: 외교부)

그런데 KOICA가 제출한 최근 각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의 목표 인원과 실적을 비교해보니 사업현장에서의 수요와 파견 계획간의 불일치로

인해 인원 파견의 달성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였음.

<인원 파견의 달성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봉사단/해외개발인재 현황>

(단위: 명)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월드프렌즈코리아 NIPA 자문단	77	32	41.6%	69	14	20.3%	69	29	42.0%	69
월드프렌즈코리아 과학기술지원단	34	5	14.7%	25	6	24.0%	25	12	48.0%	25
글로벌협력의료진	23	14	61.0%	22	13	59.0%	22	12	55.0%	22

(자료: 외교부)

상술한 3개의 사업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의 달성률이 최근 3개년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의 목표도 예년과 유사하여 달성률의 저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상황임.

상기 사업 중 '월드프렌즈코리아 NIPA 자문단'과 '월드프렌즈코리아 과학기술지원단'은 각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연구재단(NRF)을 시행기관으로 하며, '글로벌협력의료진'은 KOICA가 직접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KOICA는 시행기관이 별도로 있는 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과 긴밀히 협의, 협조하여 개발도상국의 맞춤 수요(특정분야, 적격자 등)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파견 현장에서의 인력 수요 및 선발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파견 목표에 맞게 파견이 이루어지게 노력해야 할 것임.

□ 학위과정연수에서의 연례적 이월액 발생 관행 시정 필요

「글로벌 연수(ODA)」는 협력국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한국의 개발 경험을 다른 국가에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국별/다국가연수를 통칭하는 '일반연수'와 다수의 수원국을 대상으로 연수생의 석·박사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연수인 '학위연수'로 이루어져 있음.

동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94]와 「글로벌연수사업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2024년 예산액은 673억 7,800만원, 차년도 이월액이 12억 1,400만원, 불용액이 22억 6,200만원이며, 집행액은 638억 8,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94.8%임.

<2024년 글로벌 연수 과정 수 및 인원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계획		실적		계획대비 참가율 (C=B/A)
		과정 수	인원(A)	과정 수	인원(B)	
일반연수	국별연수	198	3,704	192	3,105	83.8%
	다국가연수	44	880	43	1,413	160.6%
	특별연수	5	100	5	76	76.0%
학위연수	석사	43	1,270	43	1,244	98.0%
	박사	12	36	12	34	94.4%
계		302	5,990	295	5,872	98.0%

(자료: 외교부)

KOICA는 '학위연수'를 운영함에 있어 최근 이월액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 규모는 점차 늘어나 최근 3개년 누적액이 약 16억 6,300만원임.

94)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연수 사업

<최근 3개년 학위연수의 이월액 발생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이월액(석사)	이월액(박사)
2022년	45,000	-
2023년	395,000	9,000
2024년	1,179,070	35,084
계	1,619,070	44,084

(자료: KOICA)

이에 대해 KOICA는 '학위연수'는 계약 기간 5년 동안 석사과정별 17개월, 박사과정별 36개월로 운영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연수기관(대학)의 학사일정 및 회계 정산으로 인해 이러한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임.

그런데, 장기계속계약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95]에 따라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 이월액을 발생시키지 않는 취지의 제도로, KOICA의 이러한 설명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학위연수'의 경우 계획 대비 참가율이 매년 90%대 중반 이상으로 사전에 회계연도와 대학의 학사일정 간 불일치에 따른 정산 과정에서의 잔금 예상이 충분히 가능함.

95)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 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최근 3개년 학위연수의 계획대비 인원 참가율 현황>

(단위: %)

구분	석사	박사
2022년	97.6	93.3
2023년	96.3	95.2
2024년	98.0	94.4

(자료: KOICA)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은 「국가재정법」 제3조[96]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반복적인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내 사업 일정 관리를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향후 KOICA는 '학위연수' 운영에 있어 다음연도 이월이 반복되는 관행이 지속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 아래에 사업 예산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96)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라. 전략적 협력강화

「전략적 협력강화」는 정상급 외교 공약사업 및 기타 중요 국정과제 지원 등의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적 협력강화(ODA)」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세부사업 내에 「전략사업비」와 「융합 ODA 연계 지원」사업이 있음.

2024년도 예산액은 80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억 8,100만원, 미교부액은 23억 3,900만원이며, 집행액은 52억 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65.1%임.

「전략사업비」는 60억원이 편성되고 40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융합 ODA 연계지원」은 20억원이 편성되고 11억 6,046만원이 집행되었음.

< 전략적 협력 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전용·조정	미교부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전략적 협력강화	8,000	8,000	181	-	△2,339	5,842	5,206	-	636	65.1	89.1
전략사업비	6,000	6,000	181	-	△1,949	4,232	4,046	-	186	67.4	95.6
융합 ODA 연계 지원	2,000	2,000	-	-	△390	1,610	1,160	-	450	58.0	72.0

□ 전략사업비 효과성 제고 필요

「전략사업비」는 정상급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예산임. 일반적인 ODA 사업이 사업 시작 1년 전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를 거치는 것에 반하여, 전략사업비는 사업 수행 당해연도(N년도)에 예산을 바로 배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수시배정 성격의 예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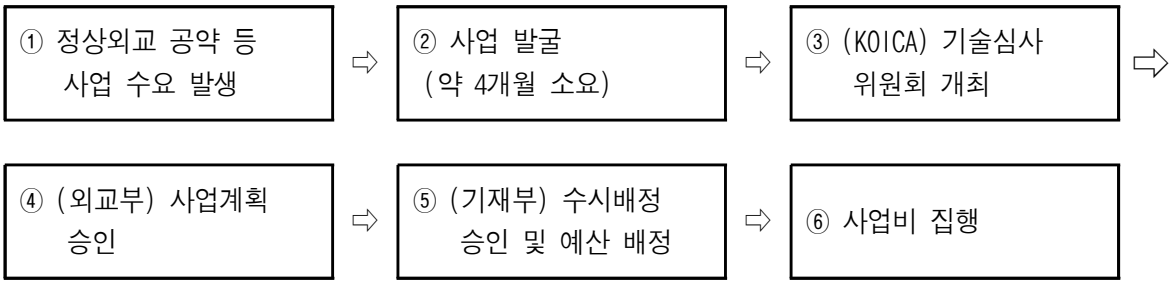
이에 따라 사업 수행 절차도 일반 사업에 비해 다소 상이한데, 일반적인 ODA 사업이 예비조사(N-2), 사업심사(N-1), 예산심의·국회승인(N-1), 집행계획 수립(N년 초)의 절차를 걸쳐 추진되는 반면, 전략사업비를 통하여 집행되는 사업은 사업이 우선 선정된 후 공식사업요청서(PCP)를 접수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됨.

< 일반적인 국별협력사업 수행 절차 >



※자료: KOICA 홈페이지

< 전략사업비 추진 절차 >



(자료: 외교부)

2024년에는 전략사업비를 통하여 7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40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고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략사업비를 통한 사업 추진 내역(2024) >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추진경위	2024년도 예산		진행단계 (2025.6.)
			배정액	집행액	
1	우크라이나 전쟁피해 아동 긴급지원을 위한 지역거점 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23-'24/125만불)	'23년 한-우 정상회담 계기 추진	1,463	1,227	종료
2	우크라이나 전쟁피해지역 긴급 식수 지원 사업('23-'24/150만불)		1,683	1,344	종료
3	우크라이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바실키브 직업학교 재건 사업('24-'27/1,490만불)		50	41	사업수행자(UNOPS) 약정체결 완료
4	우크라이나 온라인교육 플랫폼 개선 지원사업(UNICEF)('24-'26/500만불)		610	858	사업수행자(UNICEF) 약정체결 완료
5	아이티 안전한 통학을 위한 스쿨버스 지원사업('23-'25/155만불)	'23년 한-아 총리 간 양자회담(CARICOM) 계기 추진	245	575	스쿨버스(26대) 지원완료
6	콜롬비아 다목적 지적을 위한 공간 정보 역량강화 체계 구축사업('24-'26/600만불)	'23년 UN총회시 한-콜 정상회담 계기 추진	-	-	PMC선정 입찰완료
7	베트남 R&D 및 이노베이션을 위한 한-베 미래 파트너십 사업('24-'33/3,000만불)	'23년 대통령 베트남 순방 계기 추진	-	-	R/D체결 협의중

(자료: 외교부)

전략사업비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피해 아동 긴급지원을 위한 지역거점 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은 소규모 단순 물자지원 사업으로 효과에 대한 검증이 미흡할 우려가 있음.

‘우크라이나 전쟁피해 아동 긴급지원을 위한 지역거점 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과 ‘우크라이나 전쟁피해지역 긴급 식수 지원 사업’은 2023 한-우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이티 안전한 통학을 위한 스쿨버스 지원사업’은 2023 한-아 총리 간 양자회담 계기로 추진된 사업임.

그런데 동 사업들은 단순 물자지원 사업으로 KOICA의 「물자 및 자금지원 지침」의 절차에 따르게 되는바 연차점검과 종료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연차점검과 종료평가는 사업의 진행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는 절차인데, 소규모 단순 물자지원 사업들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게 됨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할 우려가 있음.

둘째, ‘콜롬비아 다목적 지적을 위한 공간 정보 역량강화 체계 구축사업’과 ‘베트남 R&D 및 이노베이션을 위한 한-베 미래 파트너십 사업’은 2023년에 이루어진 정상회담 및 순방을 계기로 추진된 사업이나, 2024년에도 본격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콜롬비아 다목적 지적을 위한 공간 정보 역량강화 체계 구축사업’은 집행

계획 수립 및 협의의사록(RD) 체결을 위한 수원국 측 협의가 당초 계획보다 길어지며 집행이 순연된 측면이 있고,

‘베트남 R&D 및 이노베이션을 위한 한-베 미래 파트너십 사업’은 수원국인 베트남의 조직개편으로 사업계획 재조정이 필요하여 협의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KOICA의 설명임.

전략사업비의 취지가 사업 수행 당해년도에 예산을 바로 배정받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사업 수행 초년도인 2024년에 예산을 배당받지 못한 것은 해당 취지와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함.

셋째, ‘우크라이나 온라인교육 플랫폼 개선 지원사업’은 2024년도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기간 동안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동 사업은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 주도 하에 추진 중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All Ukrainian School Online; AUSO)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며, 교사와 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실시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① AUSO 교육콘텐츠 활용자 수와 ② AUSO 회원가입자 수가 있음. 그런데 사업 첫해인 2024년의 성과달성률이 ① AUSO 교육 콘텐츠 활용자 수는 17.4%, ② AUSO 회원가입자 수는 12.8%에 그침.

< 정량 평가지표 >

구분	지표	2024 목표치	2024 성과	달성률(%)
성과 (Outcomes)	1. AUSO 교육콘텐츠 활용자 수	100,000	17,448	17.4
	2. AUSO 회원가입자 수	80,000	10,200	12.8
산출물 (Outputs)	1. W3C 웹접근성 지침 준수율	N/A	N/A	-
	2. 개발된 컨텐츠 수 (학교급별/교과별)	200	219	109.5
	3.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수자 수	N/A	N/A	-
	4. 인식제고 활동 참여자 수	200,000	0	0

(자료: 외교부)

KOICA는 이와 같은 저조한 성과에 대해, 사업 예산이 4분기에 교부되어 실제 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여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향후에는 사업 기간 중 추진이 순연되지 않도록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당국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전략사업비가 적기에 수시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마. 인도적지원(ODA)

「인도적지원(ODA)」은 긴급재난 지역 및 만성위기 지역에 대한 현금·현물 지원,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장비 구매 및 역량강화 실시,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이 중 출연금으로 실시되는 사업은 「인도적지원 파트너십 구축」 사업으로, 동 사업에서는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을 수행함.

2024년도 예산액은 53억원이고 이 중 52억 8,700만원을 집행함.

< 인도적지원(ODA)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전용·조정	미교부					예산액대비(C/A)	현액대비(C/B)
인도적지원(ODA)-출연	5,300	5,300	-	-	-	5,300	5,287	-	13	99.8	99.8
인도적지원 파트너십 구축	5,300	5,300	-	-	-	5,300	5,287	-	13	99.8	99.8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이란 국내 민간단체(NGO)들의 인도적지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 사업·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해당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KOICA 분담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2024년 동 사업의 참여 단체와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참여 현황 >

(단위: 백만원)

단체명	수행 연도	사업명	사업구분	사업 지역	총 사업비
아디	'22 ~'24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및 수용 공동체 여성 심리사회적 회복역량강화 사업 5단계	만성재난 (성장형/ 3년)	방글라 데시	675
팀앤팀	'22 ~'24	우간다 라이노 및 임베피 난민 정착촌 교육 환경에서의 WASH 개선사업	만성재난 (성장형/ 3년)	우간다	1,040
더 멋진세상	'22 ~'24	우간다 북부 팔로리냐 남수단 난민 정착촌 WASH 및 보건 위생환경 개선사업	만성재난 (성장형/ 3년)	우간다	1,170
굿 네이버스	'22 ~'24	우간다 차카II 난민정착촌 내 젠더기반폭력 위험 경감 및 난민 여성 역량 강화 사업	만성재난 (성장형/ 3년)	우간다	1,299
월드비전	'22 ~'24	케냐 칼로베예이 정착촌 난민 및 수용공동체의 가뭄 대응 역량 강화 사업	만성재난 (성장형/ 3년)	케냐	1,413
굿 네이버스	'23 ~'24	2023-2024 튀르키예 임시 정착촌 조성 및 이재민 지원 사업	긴급재난	튀르키예	3,945
세이브더 칠드런 코리아	'23 ~'24		긴급재난	튀르키예	5,214
한국국제 기아대책 기구	'23 ~'24		긴급재난	튀르키예	3,945
한국국제 기아대책 기구	'24	2024 마다가스카르 남부지역 기근 대응 긴급구호 사업	긴급재난 (RAPID)	마다가 스카르	452
굿 네이버스	'24	2024 말라위 시콰와, 발라카 군 기후변화로 인한 급성식량위기 긴급구호 사업	긴급재난 (RAPID)	말라위	464
세이브더 칠드런 코리아	'24	2024 부르키나파소 북부 누르드 지역 분쟁으로 인한 춘궁기 식량위기 대응 사업	긴급재난 (RAPID)	부르키 나파소	453
월드비전	'24	2024 앙골라 남서부지역 엘니뇨 기반 식량위기 대응 식량 바우처 지원 사업	긴급재난 (RAPID)	앙골라	464
어린이 재단	'24	2024 잠비아 루사카 및 중부 주 식량위기 대응 영양지원 긴급구호사업	긴급재난 (RAPID)	잠비아	464

(자료: 외교부)

□ 잦은 사업 유형 변경 지양 필요 등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은 사업 유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사업 신설 이후 연도별 사업 유형 변경이 잦은데,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2021년은 만성재난 사업만 공모를 실시하였고, 2022년은 긴급재난과 만성재난 모두, 2023년은 긴급재난 사업만 공모를 실시하였음.

2024년은 사업 구조를 개편하여, 이전의 ① 긴급재난지원사업과 ② 만성재난지원사업을 ① 긴급재난대응사업, ② 긴급재난(RAPID) 사업, ③ 만성재난(HDP-NEXUS) 사업으로 재편하고, 재편 첫 해로 RAPID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RAPID'와 'HDP-Nexus'라는 사업을 시작하였음.

< 연도별·유형별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추진 현황 >

사업 시작 연도	사업 유형	사업 수	참여 기관 수
2021	만성재난	3	3
2022	긴급재난	6	5
	만성재난	7	7
2023	긴급재난	8	5
2024	RAPID	5	5
2025	RAPID	5	5
	HDP-Nexus	8	9

(자료: 외교부)

기존 사업과 변경된 사업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유형별 비교 >

사업명	만성재난지원사업	HDP-Nexus 사업
사업 내용	국가 간 전쟁이나 내전, 혹은 기근 등 장기화된 재난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내 최취약계층(난민, 국내실향민, 호스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사업 기간	다년도(2~3년)	
지원 규모	- 2021년도 사업당 연간 4억원 - 2022년도 사업당 연간 2~4억원 - 2023년, 2024년 공모 진행 X	- 진입형 사업 연간 3억원(신규기관 1억원) - 성장형 사업 연간 5억원(컨소시엄 7억원)
예산 구성	- KOICA 및 파트너 분담금 예산 항목별 별도 구성	- KOICA 및 파트너분담금 통합 구성 - 사업현장파견인력 체재비 편성
사업명	**긴급재난지원사업**	**RAPID 사업**
사업 내용	재난 발생 이후 이재민의 존엄성 유지 및 기본적인 필요 충족, 고통 경감을 위해 긴급성을 가지고 수행되는 사업	
사업 기간	단년도(1년 이내)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KOICA, 사업수행기관(NGO)	민관협력 공동 대응 플랫폼 구축 (KOICA, 신한은행, 대한적십자사, RAPID 사업 수행 NGO 5개 기관)
수행 단체 자격유지기간	1년	2년(자격 유지 조건 신설)
분담금 구성	KOICA 분담금 100%	신한은행 지원금, KOICA 분담금, 수행기관(NGO) 분담금 (KOICA 분담금의 최소 20% 이상)

(자료: 외교부)

동 사업과 같이 민간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에서 그 유형이 빈번히 조정되는 것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파트너들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어 민간의 준비와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업의 변동성에 대하여 외교부와 KOICA는 예산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예를 들어, 만성재난은 사업 기간이 2~3년인 다년도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2021년과 2022년에 시작된 만성재난 사업이 2023년, 2024년까지 계속되며 2023년과 2024년에는 만성재난 사업을 공

모하지 않았다는 설명임.

그러나 예산 사정에 따른 사업 유형 변경은 사업의 연속성 약화, 민간 파트너의 역량 강화 저해, KOICA 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속사업과 신규 사업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 파트너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동 사업의 위탁 수행기관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도 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사업 구조의 반복적이고 단기적인 변경은 사업 참여자 간 혼란, 행정 비효율, 인수인계 오류 등을 초래해,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음.[97]

둘째, 2024년도에 RAPID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그 준비가 철저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사업 공모 시점인 2024년 1월까지도 RAPID 사업의 분담금 규모, 사업관리 지침, 공동 성과지표 등 핵심 운영 요소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

97)

2. 향후 과제

나. RAPID 및 HDPN 사업의 안정적 운영 체계 정립

- 인도적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은 2012년 이후 운영 구조와 명칭, 세부사업 형태의 지속적인 변화를 겪으며 발전해왔음. 그러나 **사업 구조의 반복적이고 단기적인 변경은 사업 참여자 간 혼란, 행정 비효율, 인수인계 오류 등을 초래해,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냄.
- 향후 RAPID 및 HDP-N 사업이 지속 가능한 구조 속에서 전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 간 역할과 책임(예: KOICA의 정책·관리 감독, KCOC의 실행관리, NGO의 현장 실행 등)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에 따른 표준 운영지침 및 성과관리 기준의 통합이 필요함.
- 또한 **연례 단위의 사안별 조정보다는 중장기 사업 틀 내의 유연한 조정과 안정적인 사업환경 제공이 중요하며,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자료: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 위탁 운영관리 용역 결과보고서」, KCOC

또한, 사업 공모 당시에는 긴급재난지원사업을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긴급재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중 원하는 단체에 한하여 RAPID 사업(공모 당시 'K-HAND' 사업)에 참여하도록 공지하였는데, 2024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긴급재난지원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RAPID 사업만 추진되는 등의 변경도 발생하였음.

< RAPID(당시 K-HAND 트랙) 사업 공모 계획 >

구분	긴급재난대응사업	
	긴급재난대응 트랙	**K-HAND 트랙**
사업분야	긴급하게 발생하는 재난 상황(Rapid Onset) 식량안보 및 영양, 식수위생, 보건, 주거, 생계 및 물자지원, 보호 활동	
사업대상	재난 피해 지역 내 피해 인구(Affected People)	
자격유지 조건	인도적지원 전담팀의 50%이상 인도적지원 사업 수행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전담팀의 70% 이상이 인도적지원 교육 이수 경험 있어야 함 *자격유지 못하는 경우 즉시 통보해야 하며, 진행중인 사업 종료까지만 자격 임시 유지 **임시자격 기간 동안 K-HAND 사업 참여 불가 ***차기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재평가 시 감점 1점 부여	
지원규모	2024년 10억원 1개 기관당 2억원, 총 5개 단체 *2025년은 예산규모에 따라 변경	재난대응 규모에 따라 유동적
사업발굴 방식	자격기관의 우선순위, 수요 발굴 방식에 따라	KOICA가 정하는 재난에 대응하며, 사업 수요 조사 및 기획은 자격기관과 공동 수행
사업 신청기간	24년 약정 체결시부터 9월까지	유동적
사업기간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24년12월31일까지 사업 종료 필요	
지급방식	일괄 지급 *단,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회 분할 지급	
지원비율	NGO 매칭 불요	KOICA 분담금의 20%를 매칭 필요, 매칭 산정시 기업 등 외부 유치 재원은 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

※동 공모는 기관의 자격 심사를 통해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공모를 통해 선발된 단체에게 부여되는 자격 유지 기간은 2년임. **선발된 단체는 긴급재난대응사업 참여 및 (가칭)K-HAND 사업 참여 자격을 동시에 부여받게 됨.**

※**(가칭)K-HAND의 브랜드명 및 세부 운영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확정 예정**.

이러한 상황은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들이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혼선을 유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민간 파트너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을 준비하지 않도록 핵심 운영 요소가 사전에 충분히 마련된 상태에서 공모를 진행해야 하며, 성급한 사업 추진은 지양해야 함.

□ 참여 기관의 일반관리비 과다 지출 부적절

일반관리비는 직접사업비 외에 사업 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동 사업의 일반관리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첫째, 사업수행 연도 중 일반관리비 상한에 관한 근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 RAPID 사업에 한하여 일반관리비 상한이 없도록 하였음.

동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 규정은 KOICA의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지침」에, 일반관리비의 비율 등 보다 상세한 규정은 「인도적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 수행안내서」에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지난해 두 차례의 규정 개정을 거치며 RAPID 사업에 대한 일반관리비 규정이 변경되었음.

<RAPID 사업에 관한 일반관리비 규정>

구분	일반관리비 상한	비고
2024. 1. 개정규정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분담금의 6%**	전체사업비 대비 약 6% 수준
2024. 7. 개정규정	**상한 없음**	나머지 사업(만성재난, RAPID 외 긴급재난)은 일반관리비 상한 유지
2024. 10. 개정규정	**전체 사업비의 10%**	

※주: 직접사업비 3억원 초과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자료: 「인도적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 수행안내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 공모가 시작될 시기인 2024년 초 사업 공모 시점에는 사업 유형과 무관히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분담금의 6~9%'[98]로 상한이 설정되었음.

98) 이는 전체 사업비 대비 5.6~8.2%에 해당함.

그러나 사업 연도 중인 2024년 7월 규정을 개정하여 RAPID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 편성에 상한이 없도록 하였음. 이후 같은 해 10월 규정을 재개정하여 일반관리비 상한을 전체 사업비의 10%까지로 확대하며 RAPID 사업도 다른 유형의 사업과 동일한 일반관리비 상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였음.

< 일반관리비 규정 상세 >

2024. 1. 개정규정

	일반관리비 편성 상한선	
수행단체 분담금으로 편성	연차별 KOICA 분담금	수행단체
	1억원 이하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분담금) * 9%한도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분담금) * 8%한도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분담금) * 7%한도
	3억원 초과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분담금) * 6%한도
* 일반관리비는 수행단체 분담금으로 편성(수행단체 분담금이 없는 경우 제외) * 연간 예산 기준이며, 연간 일반관리비 배정 비율은 자율 조정 가능 * 동일기관이 동일한 국가에서 2개 이상의 사업 수행시, KOICA와 일반관리비 편성 비율 사전협의 필수		

자료: 「인도적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 수행안내서(v.3.1)」, 코이카, 2024.1., p.56

2024. 7. 개정규정

○ RAPID 사업 일반관리비의 경우, 예산편성 기준은 지침을 준용하되, 정산 규정은 단체 내부 규정을 따라도 무방함

	일반관리비 편성 상한선	
수행단체 분담금으로 편성	연차별 KOICA 분담금	수행단체
	1억원 이하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분담금) * 9%한도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분담금) * 8%한도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분담금) * 7%한도
	3억원 초과	(직접사업비로 편성된 KOICA 분담금) * 6%한도
* 일반관리비는 수행단체 분담금으로 편성(수행단체 분담금이 없는 경우 제외) * 연간 예산 기준이며, 연간 일반관리비 배정 비율은 자율 조정 가능 * 동일기관이 동일한 국가에서 2개 이상의 사업 수행시, KOICA와 일반관리비 편성 비율 사전협의 필수 * RAPID 사업의 경우, KOICA 분담금의 최소 20% 이상을 수행단체 부담금으로 편성하며, 일반관리비 편성에 대한 상한 없음.		

자료: 「인도적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 수행안내서(v. 3.2)」, 코이카, 2024.7., p.56

2024. 10. 개정규정

다. 간접사업비 편성 기준 및 관리규정

1) 일반관리비 : 직접사업비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으로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경비
2) 지급(이행)보증보험: KOICA 분담금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입(계약)하는 보험

1) 일반관리비

○ 편성 기준 :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초과불가) 연차별 자율 편성

○ RAPID 사업 일반관리비의 경우, 예산편성 기준은 지침을 준용하되, 정산 규정은 단체 내부 규정을 따라도 무방함

자료: 「인도적지원 민관협력프로그램 수행안내서(v. 4.0)」, 코이카, 2024.7., p.56

일반관리비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경비가 아닌, 사업의 간접비 성격으로, 이를 과도하게 계상할 경우 과다 이윤 추구 및 사업의 효과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일반관리비 상한을 확대하거나 이를 없애는 것은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

참고로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잦은 변경, 특히 사업공모가 완료된 이후 일반관리비의 상한을 변경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둘째, 지난해 RAPID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의 일반관리비 비율이 과다한 측면이 있음.

지난해 RAPID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의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월드비전은 직접사업비 대비 일반관리비가 15% 이상이며, 다른 단체들도 모두 10%를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 RAPID 참여 기관의 일반관리비 비율 >

(단위: 백만원, %)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세이브더 칠드런	한국국제기아 대책기구
일반관리비(A)	61	62	61	53	52
직접사업비(B)	399	385	400	400	400
총사업비(C)	460	447	461	453	452
A/B	15.4	16.1	15.2	13.3	13.0
A/C	13.3	13.9	13.2	11.7	11.5

※주: 집행액 기준임
※자료: 외교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지난해 추진된 RAPID 사업에 한시적으로 일반관리비 상한이 폐지된 데 따른 결과로, 사업 공모 당시의 규정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개정된 규정의 상한보다도 일반관리비가 많이 집행되었음.

일반관리비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체 예산 중 ODA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자금 비중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할 때, 상한 없이 과다하게 집행된 일반관리비는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적정한 관리가 필요함.

20. 한·아프리카재단

가. 개 요

한・아프리카재단은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임.

나. 수 입

2024년도 한·아프리카재단의 수입예산은 정부출연금 44억 2,500만원, 이자수입 및 잡수익을 합한 자체수입 1,000만원 등 총 44억 3,500만원임.

< 한·아프리카재단 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증 감	예산현액 (A)	실 적 (B)
1. 정부출연금	4,425	-	4,425	4,425
2. 자체수입 (이자수입, 잡수익)	-	10	10	10
계	**4,425**	**10**	**4,435**	**4,435**

다. 지 출

2024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 17억 1,800만원, 경상운영비 4억 6,100만원, 사업비 22억 4,600만원으로 총 44억 2,500만원이었으며, 그 중 4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500만원을 불용하여 전체 집행률은 93.8%임.

< 한·아프리카재단 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증감	전년이월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D=A-B-C)	집행률 (E=(B+C)/A)
1. 인건비	1,718	-	-	1,718	1,530	-	188	89.1
2. 경상운영비	461	-	-	461	460	-	1	99.8
3. 사업비	2,246	-	-	2,246	2,160	-	86	96.2
가.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802	-	-	802	793	-	9	98.9
나.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882	-	-	882	816	-	66	92.5
다.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562	-	-	562	551	-	11	98.0
계	**4,425**	-	-	**4,425**	**4,150**	-	**275**	**93.8**

< 한·아프리카재단 사업비 등 세출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C)	집행률 (B/A)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사업출연금 합계	**2,246**	**-**	**2,246**	**2,160**	**-**	**86**	**96.2**	**96.2**
1.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802**	**-**	**802**	**793**	**-**	**9**	**98.9**	**98.9**
1.1 아프리카 경제 비즈니스 세미나/포럼	153	32	185	185	-	-	120.9	100
1.2 창업아이디어대회 및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교류	444	57	501	492	-	9	110.8	98.2
1.3 한-아프리카 중소기업 협력 강화	205	△89	116	116	-	-	56.6	100
2.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882**	**-**	**882**	**816**	**-**	**66**	**92.5**	**92.5**
2.1 한-아프리카 청소년캠프 및 청년교류 활성화	312	△30	282	264	-	18	84.6	93.6
2.2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 육성 교육	270	30	300	291	-	9	107.8	97.0
2.3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 (아프리카동창회,Af-PRO)	39	-	39	15	-	24	38.5	38.5
2.4 아프리카주간(Africa Week) 등 사회문화 인식제고	261	-	261	246	-	15	94.3	94.3
3.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562**	**-**	**562**	**551**	**-**	**11**	**98.2**	**98.2**
3.1 아프리카관련 정보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축적	291	△36	255	250	-	5	85.9	98.0
3.2 연례국제학술회의(서울아프리카 대화) 및 연구증진	271	36	307	301	-	6	111.1	98.0

라. 검토의견

1) 총괄

□ 결산보고서 상 감사의견서 미첨부에 따른 투명성·신뢰성 저해

한·아프리카재단은 「한·아프리카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교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동법 제19조[99]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한-아프리카재단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는 재단 감사의 의견서가 누락[100]되어 있음.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101] 하고 있으며, 감사는 「한·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9조제3호[102]에 따라 결산보고서에 첨부하는 감사 의견을

---

99) **「한·아프리카재단법」**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0) 한·아프리카재단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 Ⅶ. 감사의견서 부분(55p)
- 감사의견서는 비상근감사가 2024년 1월 31일자로 사직한 이후 후임 감사가 임명되지 않아 현재 비상근 감사직이 공석인 관계로, 한・아프리카재단의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01) **「한·아프리카재단법」**
제8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한·아프리카재단 정관」
제12조 (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상근이사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② 이사장 및 상근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작성하여야 함.

재단에 따르면 직전 감사가 2024년 1월 31일자로 사직한 이후 현재까지 감사직이 공석 상태임.

감사 의견서의 누락은 재단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감사 임명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회계연도 동안 감사가 궐원(闕員) 상태로 유지되어 결산 시 감사의견서를 첨부할 수 없었던 것인바, 명백한 임명 지연에 따른 관리 책임이 외교부에 있으며,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검증받는 핵심 절차가 결여된 것으로, 공익법인으로서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한편, 재단의 「감사규정」은 감사의 보조기관으로 검사역을 두도록 규정[103]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감사 공백 기간 동안 검사역 또한

---

102) **「한·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9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103) **「감사규정」**
제7조(감사의 보조기관 등) ①이사장은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검사역을 두며, 비상근감사는 결산검사 및 중요사항을 제외한 업무는 검사역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검사역의 임용 및 전보 시에는 감사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검사역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보하여야 한다.
1. 재단의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 및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2. 기타 감사가 검사역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검사역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수습 또는 조건부로 임용 중인 자
4. 기타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결산 검토를 보완할 수 있는 내부 감사 기능이 전무한 상태에서 결산보고가 이루어진 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외교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 임명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고, 결산 시기 이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체계를 철저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재단 차원에서도 검사역 등 내부 감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인력 운용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특근매식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방식 개선 필요

2024회계연도 한-아프리카재단의 특근매식비 배정액 및 집행액은 총 4만원으로 초과근무 실적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편성 및 집행액이라고 하겠음.

<최근 5년간 특근매식비 배정액 집행액>

(단위: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배정액	집행액	배정액	집행액	배정액	집행액	배정액	집행액	배정액	집행액
1,000	152	1,000	702	1,000	829	2,000	1,109	40	40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2024년도 재단 초과근무 현황>

부서명	인원(명)	초과근무 인정시간 계	비고
경영기획실	4	460시간 14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 등
운영지원실	5	260시간 33분	2024 국정감사 준비, 계약/입찰 관련 업무 등
교류협력부	4	481시간 35분	결산업무, 출장 및 포럼 준비 등
조사연구부	6	307시간 21분	아프리카 통신원 자료 작성, 서울-아프리카대화 준비 등
교육홍보부	7	665시간 43분	2024 한-아프리카 청소년캠프 개최, 아프리카 외교관 역량강화 특별연수 실시 등
합 계	26	2,175시간 26분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단은 직원이 시간외 근무를 위해 특근매식비(1만원)를 사용하면, 30분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재단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집행방식은 재단 설립 초기부터 관행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특근매식비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함.

특근매식비 집행액이 저조한 데 대해 재단은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 공제를 피하기 위해 식사를 하지 않고 특근매식비를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함.

실제 제도상으로는 특근매식비를 지급받을 경우 공제되는 시간외 수당은 30분 분량으로, 총 보상 측면에서 특근매식비 수령이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식사를 생략하고 수당 전액을 수령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특근매식비 예산이 연말에 불용되고, 이를 근거로 차년도 배정 예산이 대폭 축소(2024년 4만원 편성)되는 악순환

이 이어지고 있음. 이는 본래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 복지를 위한 특근매식비 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 운영 왜곡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짐.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경우 특근매식비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해당 기관은 직원이 식사를 위해 특근매식비를 수령한 경우,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 복지 제공과 예산 집행의 일관성을 모두 확보하고 있음.

이에 재단은 특근매식비 제도의 실질적 취지가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직원 대상 안내 강화 및 내부 운영지침 정비, 실제 수요 기반의 예산편성 기준 마련, 유사기관의 운영사례 검토를 통한 합리적 집행방식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 사업의 집행 부진 개선 필요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아프리카동창회, Af-PRO)' 사업은 국내 아프리카 관련 전문가 및 유경험자들을 분야별로 조직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프리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간담회 개최, 에세이집 발간, 강연회 등으로 구성되며, 매년 정례적으로 편성·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의 집행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예산액 대비 53.6%, 38.5%의 낮은 집행률을 기록함.

<최근 5년간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전년이월	전용 등					
2020	67	-	-	67	44	-	23	65.7
2021	67	-	-	107	99	-	8	147.8
2022	67	-	-	210	183	-	27	273.1
2023	67	-	-	67	36	-	31	53.7
2024	39	-	-	39	15	-	24	38.5

재단에 따르면, 2024년에는 사업 추진방식을 개편하면서 에세이집 발간을 중단하고 파일럿 형태의 강연회를 실시하였으며,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연례간담회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

그런데, 2024년 강연회는 12월 18일 아프리카 관련 도서 저자 2인을 패널로 초청해 현지 경험과 아프리카 가치·철학, 한-아프리카 관계 등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온라인 참석자 35명, 오프라인 참석자 25명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으며, 연간 1회 개최가 전부임.

<2024 국내아프리카전문가(Af-PRO) 강연회 프로그램>

시간	주요내용
17:00 - 17:30	▶ 참가자 등록 및 온라인 접속 확인 - 현장 조기 등록하는 선착순 20명 대상 금번 강연회 패널 2인의 도서 제공
17:30 - 18:20	▶ 본인 소개 및 아프리카 경험담 공유 - (사회) 설재우 스몰데이즈 대표 / EBS 세계테마기행 "나미비아 대장정" 편 출연 - (패널) 강행구 前 나이지리아 라고스 총영사 / 저서 "아프리카에서 희망을 찾다" - (패널) 김성진 연합뉴스 우분투추진단 우분쿠콘텐츠팀장(前 연합뉴스 요하네스버그 특파원) / 저서 "아프리카의 미래를 읽다"
18:20 - 18:30	▶ 질의응답 및 폐회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또한 자체 평가 결과에서도 강연회 운영 방식 확정이 지연되며 일정관리와 사업수행에 차질이 있었다고 지적된바, 향후에는 강연회 개최 시기, 방식 및 협업 기관 등을 보다 조기에 확정하고,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 전략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 사업'의 집행 부진은 단순한 추진방식 전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동창회원 등 대상자 관리의 미흡, 콘텐츠 활용 계획 부족, 낮은 대국민 접근성과 파급력, 홍보전략 부재 등 기획과 운영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이에 재단은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자 관리 체계 정비, 프로그램 기획력 강화, 사전 홍보 확대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강연회 일정 및 협업 방식의 조기 확정,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 등 체계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Ⅲ. 국제교류기금 결산

1. 총 괄

국제교류기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104]에 따라 설치되어 재단에 의해 운용·관리되고 있으며, 재단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공외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공공외교의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음.

가. 수 입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재원[105]은 국제교류기여금[106],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과 그 밖의 기금운용 수

---

10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기금의 설치·운용)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③ <삭 제>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10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익금으로 조성됨.

2024년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은 총 1,565억 6,700만원이었으나, 계획 대비 153.4% 수준인 2,401억 9,300만원이 수납되었음.

< 수입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B)	계획액 대비 수납액 비율 (B/A)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56,567**	**240,193**	**240,193**	**153.4**	**-**	**-**
자체수입	74,838	101,393	101,393	135.5	-	-
정부내부수입	28,840	-	-	-	-	-
차입금	-	-	-	-	-	-
여유자금회수	52,889	138,799	138,799	262.4	-	-

당초 계획대비 수입이 초과 발생한 주요 원인은 자체수입 및 여유자금회수의 증가에 있으며, 자체수입[107](국제교류기여금, 기부수입,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은 계획 대비 135.5% 수준인 1,013억 9,300만원이 수납되었음. 특히 자체수입 중 민간출연금이 당초계획액 20억 1,300만원 대비 1,501.2%에 해당하는 302억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 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107) 자체수입액

구분	내용	금액
국제교류기여금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으로부터 모금(법정부담금)	683억 1,300만원
기부수입	국내법인 또는 개인이 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품	302억 1,800만원
이자수입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입	18억 8,600만원
기타 잡수입	재단이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 판매대, 구독료 및 행사 관련 지원금 환입액 등	9억 7,500만원
합 계		1,013억 9,300만원

1,800만원으로 크게 증가[108]하면서, 자체수입 초과의 주된 요인이 되었음.

재단은 2022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음에 따라 그에 따른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은 발생하지 않음.

나. 지 출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지출부문 현황을 보면, 총 지출액은 2,401억 9,300만원으로 계획대비 153.4%를 집행하였고, 사업비는 810억 1,300만원으로 계획대비 150%를 집행하였으며, 기금운영비[109](기관운영 경비)는 146억 3,200만원으로 계획대비 99.6%를 집행하였음.

< 지출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지출계획액 (A)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56,567	185,244	240,193	153.4	-	71,739
사업비	54,017	82,694	81,013	150.0	-	1,681
기금운영비	14,690	14,690	14,632	99.6	-	58
정부내부지출[110]	70,000	70,000	-	-	-	70,000
차입금원금상환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	-
여유자금운용	17,860	17,860	144,548	809.3	-	-

108) 한국 미술 전시 및 프로그램 사업($7,000,000, 이○○), 한국학 교수직 설치 사업($7,500,000, 정○○) 등에 총 29건, $21,410,204.69 규모의 기부 수입 발생

109) 기금운영비 : 임직원 인건비, 국제교류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110) 동 지출항목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액임. 재단의 설명에 따르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재단의 기금적립금 상황을 고려하여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공자기금 예탁금액을 편성함. 단, 실제 예탁계획 제출 시 기금 상황에 따라 예탁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여유자금 운용액은 1,445억 4,800만원으로 계획액 178억 6,000만원 대비 809.3%를 집행하였음. 집행률 증가의 주요 원인은 재단의 2022년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111]에 따른 자산 이관 등의 사유에 의한 것임.

111) '완전위탁형'이란 말 그대로 기금 운용을 전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자산운용사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재단이 일부 직접 운용, 일부는 외부에 위탁하는 혼합형 구조였음. 재단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으로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연기금투자풀(Government Reserve Fund Pool)에 기금의 여유자금을 전면 위탁(완전위탁)함.

※ 완전위탁형 도입 관련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 및 결과

- (2021.7-9월) (KF) 완전위탁형 도입 관련 내부 검토
- (2021.9월) (기재부) 완전위탁형 참여 여부 조사
- (2021.10월) (KF) 기금운용심의회(이사회) 개최를 통한 제도 도입 의결

※ 관련 조문

「국가재정법」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훈령)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여유자금"이라 함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사업성 대기자금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가. 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
   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4. "연기금투자풀"이라 함은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기구로구성된 투자체계를 말한다.

다. 기금 재정 변동 상황

국제교류기금의 2024년도 자산은 889억 9,200만원으로 전년 839억 3,400만원 대비 50억 5,800만원(6%)이 증가하였음. 자산 증가의 주요인은 국제교류기금 운용 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기금 재정상태[112] 변경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 감	
			증감액(A-B)	전년도 대비 증감 비율 (A-B)/B
자산[113]	88,992	83,934	5,058	6.0 %
부채[114]	238	243	(5)	(2.1 %)
순자산[115]	88,754	83,691	5,063	6.0 %

2024년도 부채는 2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4,300만원 대비 500만원(△2.1%)이 감소하였음. 부채 감소의 주요인은 법인카드 미지급금[116]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112)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 지침」**, 기획재정부, p4
재정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국가회계실체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재정상태표는 민간기업의 경우 재무상태표와 같은 것이며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재무제표이다.

113) 자산(Assets) :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국가회계실체 등에 의하여 소유 또는 통제되고, 미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거나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114) 부채(Liabilities)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하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구분됨.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115) 순자산(net assets) :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을 말하며,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함.

116) 법인카드는 당월 사용분이 익월 15일에 결제되므로, 12월 사용분은 익년 1월 15일에 결제되며, 이에 따라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미지급금으로 계상됨. 당해 연도 12월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여, 미지급금 역시 소폭 감소한 것임.

2024년도 순자산은 887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836억 9,100만원 대비 50억 6,300만원(6%)이 증가하였음. 순자산 증가는 국제교류기여금 운용 수익 증가에 따른 것임.

라. 재정운영 변동 상황

국제교류기금의 2024년도 프로그램 순원가[117]는 전년도 733억 6,800만원 대비 179억 3,600만원이 증가(24.4%)한 913억 400만원이었고, 증가사유는 민간 지정 기부금 사업 집행의 증가 때문임.

<기금 재정운영[118] 변경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 감	
			금 액(A-B)	증감 비율 (A-B)/B
Ⅰ.프로그램순원가	91,304	73,368	17,936	24.4
Ⅱ.관리운영비	4,998	4,868	130	2.7
Ⅲ.비배분비용	9	22	(13)	(59.1)
Ⅳ.비배분수익	6,945	2,363	4,582	193.9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89,365	75,895	13,470	17.7
Ⅵ.비교환수익 등	96,192	78,169	18,023	23.1
Ⅶ.재정운영결과(Ⅴ-Ⅵ)	(6,827)	(2,274)	(4,553)	(200.2)

관리운영비[119]는 전년도 48억 6,800만원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가(2.7%)

117) **「원가계산준칙」**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14호,
제14조(프로그램순원가) ①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② 프로그램순원가는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순원가**를 말하며, 징수하여야 할 국세나 부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18)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119) 제15조(관리운영비) ①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② 기업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그 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한 관리업무비**를 말함.

한 49억 9,800만원이었고, 증가사유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것임.

비배분비용[120]은 전년도 2,200만원 대비 1,300만원이 감소(△59.1%)한 900만원이었고, 감소사유는 연말 환율상승으로 인해 외화평가손실이 전년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임.

비배분수익[121]은 전년도 23억 6,300만원 대비 45억 8,200만원이 증가(193.9%)한 69억 4,500만원으로, 이는 국제교류기금의 운용 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비교환수익[122]은 전년도 781억 6,900만원 대비 180억 2,300만원이 증가(23.1%)한 961억 9,200만원으로, 민간의 지정 기부금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임.

재정운영결과는 △22억 7,400만원 대비 △45억 5,300만원 증가한 △68억 2,700만원임.

---

* 항목 :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여비 등

120) 제17조(비배분비용) ①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② 비배분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평가손실, 2. 자산감액손실, 3. 자산처분손실, 4. 이자비용, 5. 기타비용 등**

121) 제18조(비배분수익) ①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을 말한다.**
② 비배분수익에는 다음 각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이자수익, 2. 평가이익, 3. 감액손실 환입, 4. 자산처분이익 등**

122)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 지침」**, 기획재정부, p.59
비교환수익이란 국가회계실체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말함.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

마. 주요사업 개관

재단의 주요사업인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글로벌 한국학 진흥」, 「국제협력네트워킹」, 「문화교류협력강화」, 「지정기부금 운영」, 「국제교류정보화」로, 총 5개의 단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총 계획액 1,565억 6,700만원 중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등 외교행정지원 계획액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통화금융기관 예치 등 여유자금 운용 계획액을 제외한 재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주요사업인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계획액은 540억 1,700만원이고, 이 중 계획액의 150%에 해당하는 810억 1,300만원이 집행됨.

주요사업 계획액 집행내역(총액 대비 비율)은 '지정기부사업' 303억 8,300만원(37.5%), 인적교류 관련사업 및 정책연구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된 「국제협력네트워킹」 사업 202억 7,500만원(25%),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 및 한국전문가 육성 등 한국학 관련 사업 177억 3,700만원(21.9%), 「문화교류협력강화」 사업 98억 400만원(12.1%), '국제교류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28억 1,200만원(3.5%) 순으로 각각 지출되었음.

< 국제교류기금 주요사업 개관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 결산	2024			2025 계획액
				계획액(A)	결산(B)	B/A	
계			63,126	54,017	81,013	150.0	42,363
[260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63,126	54,017	81,013	150.0	42,363
	[2632] 글로벌 한국학 진흥		17,947	19,634	17,737	90.3	14,773
		[401] 한국학기반확대	17,947	19,634	17,737	90.3	14,773
	[2633] 국제협력네트워킹		21,162	19,497	20,275	104.0	15,339
		[401] 글로벌인적교류	5,430	3,850	3,996	103.8	2,200
		[402] 정책공공외교강화	9,239	8,474	10,626	125.4	7,343
		[403] 공공외교기반확대	2,167	2,048	1,219	59.5	1,342
		[404] 글로벌 협력 강화	4,326	5,125	4,434	86.5	4,454
	[2634] 문화교류협력강화		12,055	10,361	9,804	94.6	7,683
		[401] 한국문화해외확산	6,572	5,507	5,413	98.3	3,765
		[402] 글로벌문화교류	5,482	4,854	4,390	90.4	3,918
	[2635] 지정기부금운영		9,196	1,759	30,383	1,727.3	1,802
		[401] 지정기부사업	9,196	1,759	30,383	1,727.3	1,802
	[2636] 국제교류정보화		2,766	2,766	2,812	101.7	2,766
		[401] 국제교류정보시스템 운영	2,766	2,766	2,812	101.7	2,766

2. 검토의견

가. 수 입

□ **기여금 요율 인하에 따른 법정부담금 및 적립금 감소에 선제적·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재단의 주요 수입원인 국제교류기여금(법정부담금)은 기여금 요율 인하[123]로 인하여 향후 수입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 회복의 영향으로 2023년도 기여금 수입은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되어 전년 대비 소폭(1.16%) 상승하였음.

< 최근 10년간 법정부담금 권종별 수납건수 및 금액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복수여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합계	
	10년 (15,000원권/$15)		5년 (12,000원권/$12)		1년이내 (5,000원권/$5)		임시 여권 (2000원권/$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	2,106,229	31,620	434,713	5,226	155,051	777	6,277	13	2,702,270	37,636
2015	2,672,060	40,132	568,884	6,849	152,751	767	6,222	13	3,399,917	47,761
2016	2,944,374	44,277	555,874	6,708	131,402	663	5,921	13	3,637,571	51,661
2017	3,661,835	55,048	756,548	9,109	141,051	711	6,742	15	4,566,176	64,883

123)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024.3.27.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개정(2024.6.4.)

※ 시행령 개정(2024.7.1.시행) 전·후 비교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복수여권 10년	15,000원	**12,000원**
복수여권 5년	12,000원	**9,000원**
단수여권	5,000원	**면제**
여행증명서	2,000원	**면제**

구분	복수여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합계	
	10년 (15,000원권/$15)		5년 (12,000원권/$12)		1년이내 (5,000원권/$5)		임시 여권 (2000원권/$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3,461,947	52,032	695,101	8,363	116,405	586	7,885	17	4,281,338	60,998
2019	3,416,277	51,484	617,310	7,445	93,060	472	8,763	20	4,135,410	59,421
2020	1,035,431	15,738	182,181	2,223	22,596	117	3,856	9	1,244,064	18,087
2021	515,083	7,891	84,055	1,050	4,260	23	803	2	604,201	8,966
2022	1,721,317	26,090	224,042	2,764	12,841	68	773	2	1,958,973	28,924
2023	4,037,946	60,821	524,888	6,365	65,784	339	1,237	3	4,629,855	67,528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 2024회계연도 법정부담금 권종별 수납건수 >

복수여권(10년)		복수여권(5년)		단수 여권*	여행 증명서*	건수 합계	금액 (백만원)
요율 인하前	요율 인하後	요율 인하前	요율 인하後				
2,451,359	1,641,976	646,075	394,151	41,812	751	5,176,124	**68,313**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2024.7.1.이후 면제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편, 2024년에는 민간출연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지정기부사업 형태로, 예측이 어려운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임. 민간출연금은 외부 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재단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정부담금 수입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함. 여권 수요에 따라 산정되는 기여금 수입은 일정 수준의 예측 가능성이 있으며, 여전히 재단 수입 구조의 중심축이자 재정 건전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 수입결산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결산	2023결산	2024년				2025계획
			계획		결산(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총 계	210,812	199,318	156,567	185,244	240,193	129.7	**105,908**
기타재산이자수입	818	2,208	2,730	2,730	1,886	69.1	2,730
법정부담금	28,924	67,528	69,595	69,595	**68,313**	98.2	**54,470**
민간출연금	6,811	8,970	2,013	30,690	**30,218**	98.5	**2,013**
기타잡수입	654	712	500	500	975	195.0	50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5,077	119,899	52,889	52,889	138,799	262.4	45,860
기금예탁원금회수	78,070	-	28,000	28,000	-	-	-
기금예탁이자수입	458	-	840	840	-	-	335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최근 10년간 기금 적립금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전년도인 2019년(186,339백만원)을 정점으로 4년 연속 감소하다가 2024년에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함. 2024년에는 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고, 지출은 다소 감소하면서 적립금이 2023년보다 소폭 증가함. 다만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기금운용 전략 마련이 필요함.

과거 코로나19 이전(2015~2018년)에는 수입액이 지출액을 상회하여 적립금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면서 적립금이 감소세로 전환됨. 특히 코로나19 기간(2020~2022년)은 수입액이 급감한 반면 지출액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적립금이 급격히 줄었음.

< 최근 10년간 기금 수입, 지출 및 적립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	51,675	53,703	76,811	67,215	64,372	24,326	16,993	30,855	70,449	71,175
지출	45,884	46,680	49,581	57,415	65,556	55,886	62,421	65,564	68,704	65,261
적립금	**142,746**	**155,701**	**176,218**	**183,631**	**186,339**	**154,540**	**108,382**	**72,471**	**68,396**	**76,369**

※ 작성기준
- 수입: 자체수입(국제교류기여금, 운용 이자수입, 잡수입, 단, 지정기부금(민간출연금) 제외)
- 지출: 사업비(지정기부사업 제외), 기금운영비
- 적립금: 여유자금운용 기말 잔액(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포함)

이러한 재정상황의 근본 원인은 수입 급감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전면적인 재정비와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기여금 요율 인하에 따라 법정부담금의 감소가 예상되는바, 제한된 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출 구조의 면밀한 점검과 조속한 개편 방안 마련이 요구됨.

나. 지 출

1) 총 괄

□ 조속한 지출 구조 조정 방안 마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노력 필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20% 이내 변경시에는 국회의 심의·의결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 변경시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 이는 예산에 비해 지출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국가재정법 시행령」[124]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125]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이 과다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재단은 2024년 총 5차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음.

---

12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125)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 유의사항
◦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주요항목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을 과다하게 확대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증액하여 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

연번	변경 보고 사유	변경 보고일
1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사업 구체화에 따른 실소요를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5.29.
2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사업 구체화에 따른 실소요를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8.27.
3	민간출연금 초과수입이 예상되어 관련된 수입 및 지출액 변경	11.19.
4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사업 구체화에 따른 실소요를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12.13.
5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사업 구체화에 따른 실소요를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12.23.

※자료: 재단 제출공문을 바탕으로 재작성

5차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중 4차례는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사업 구체화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변경이며, 1차례는 민간출연금 초과 수입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소요 반영을 위한 것으로, 수입 및 지출 규모를 조정한 것임.

이러한 변경 중 제3차 변경을 제외하고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26)에서 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재단은 기여금 수입 감소와 적립금 급감이라는 재정 여건 악화에 직면하여, 2024년도에 사업별로 빈번한 자체변경을 실시하였으며, 그 사유 대부분이 사업 구조조정 또는 사업 내용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126)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준수사항
◦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사전에 검토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해당되는지 여부
-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긴급한 소요인지 여부
-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 사업의 추진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기타 다른 사업과 중복 여부 등

이는 재단이 지출 구조 조정 및 사업 재설계 등을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중이라고 보여짐.

따라서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확대·유지·축소·폐지 등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기획과 심층 검토를 강화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도 함께 제고하여야 함.

2) 국제협력네트워킹

「국제협력네트워킹」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글로벌 인적교류」는 해외유력인사 초청을 통해 각국 고위급 인사와의 교류 및 지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차세대지도자교류를 통해 미래 지도층 청년과의 상호 교류로 양국 간 우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정책공공외교강화」는 해외정책연구소 지원을 통해 한국 및 동아시아 관련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해외 연구기관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한미미래비전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한미 동맹 발전과 대미 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공공외교 기반확대」는 국민공공외교활동을 통해 국민의 공공외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공공외교아카데미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국민의 이해도 및 참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며, 「글로벌 협력강화」는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해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소통과 인적 네

트워크를 강화하고,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운영을 통해 對중앙아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외교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도 계획액은 194억 9,700만원이었으나, 자체변경으로 14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계획현액은 209억 2,000만원이고, 202억 7,500만원이 집행됨.

< 국제협력네트워킹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자체변경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글로벌 인적교류	3,850	4,062	-	212	-	4,062	3,996	-	66	2,200
정책공공외교강화	8,474	10,656	-	2,182	-	10,656	10,626	-	30	7,343
공공외교 기반확대	2,048	1,530	-	△518	-	1,530	1,219	-	311	1,342
글로벌 협력강화	5,125	4,672	-	△453	-	4,672	4,434	-	238	4,454
계	19,497	20,920	-	1,423	-	20,920	20,275	-	645	15,339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 과거 유사 사업의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IISS 코리아체어'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 및 효과성 제고 필요

재단은 세부사업「정책공공외교강화」내 '해외정책연구소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12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에 코리아체어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127]하기 위해 총 175만달러를 집행하였음.

127)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국방·안보 분야 싱크탱크로서, 핵 억지 및 군비 통제 분야 연구 전문기관임. 1958년 영국에서 설립되어 현재는 런던 본부를 중심으로 워싱턴, 바레인, 싱가포르에 지부를 두고 있음. 2025.1.20. 싱가포르에서 IISS 코리아체어 설치를 위한 기관 간 서명식이 개최되었으며, 재단의 IISS 코리아체어는 유럽 정책연구소 내 최초로 설치되는 영구 석좌직임. 앞으로 한국과 영국 및 유럽간 군사·안보 분야 정책 연구,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 초청 행사, 마나마대화, 샹그릴라대화 등 주요 국제안보회의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KF 보도자료, 2025.1.23.)

< 영국 IISS 코리아체어(한국 연구 석좌식) 설치 및 운영 예산집행 내역 >

지출일자	집행내역	금액
2024.12.16.	체어 설치 기금(1/3차)	$800,000
	초기 운영비	$150,000
2024.12.24.	체어 설치 기금(2/3차)	$800,000
합계		**$1,750,000**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해외정책연구소지원' 사업의 비목별 예산은 아래 표와 같으며, 재단은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128]을 통해 해당 사업의 재원을 마련함.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계획액 당초	2024년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5년 계획액
· 해외정책연구소지원	2,398	5,262	5,262	5,251	11	2,249
-해외경상이전(340-01)	**2,110**	**5,047**	5,047	**5,039 (96%)**	8	2059
-국외업무여비(220-02)	157	134	134	133	1	119
-일반수용비(210-01)	49	42	42	42	-	29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	1	1	1	-	5
-임차료(210-07)	10	11	11	10	1	10
-일반용역비(210-014)	40	-	-	-	-	-
-국내여비(220-01)	6	20	20	19	1	6
-사업추진비(240-01)	21	7	7	7	-	21

이와 같이, 재단은 2024년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코리아체어를 신규 설치하면서 175만달러의 예산을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을 통해 확보한 뒤 해외경상이전[129] 방식으로 집행하였는데,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

128) 타 사업(한국학강좌운영, 한국전문가육성, 한국이해저변확대, 한국지식문화보급)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절감 재원을 해당 코리아체어 설치·운영에 전환하여 집행함.(2024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1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

침」[130]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재단은, 예산 편성 이후인 2024년 하반기에 영국 IISS 내 코리아체어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양 기관(KF, IISS) 간 합의가 타결되었고, 이에 따라 지원금이 확정되어 12월에 지급되었다고 설명함. 이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예산 편성과 사업 확정 간의 시차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임.

한편, 재단은 2017년 12월 미국 랜드연구소에 코리아체어를 설치하였으나, 석좌 채용절차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2019년 6월 채용된 초대 석좌가 1년여 만에 사임함에 따라 공석이 발생하였고, 후임자 임용도 2021년에야 이루어지는 등 사업 운영에 지속적인 차질이 있었던바[131], 신규사업 추진에 앞서 과거 유사 사업의 한계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이 선행되었어야 할 것임.

< 美 랜드연구소 내 한국 석좌 현황 >

	구분	임용 기간
1	1대 석좌	2019.9.~2020.8.
2	2대 석좌	2021.7.~2023.7.
3	3대 석좌	2024.5.~現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또한, 랜드연구소의 실제 석좌 임용 현황을 보면, 10개월 및 9개월간 각각

130)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315
2.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준수사항
② 기금운용계획변경시 내용 관련 유의사항
·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주요항목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131) 2020회계연도 외교통일위원회 결산검토보고서, p291~292

공석이 지속되었고, 후속 인선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였음. 이처럼 장기간의 공백이 반복되면서 사업의 지속성과 정책적 연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성과의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IISS 코리아체어 사업의 경우, 재단은 24년 12월 집행예정이던 1차 기금 및 운영비에 더하여, 당초 2026년 2월 지급 예정이던 2차 기금까지 조기집행하였는데, 이는 2024년 3월 정부 부담금 정비로 인해 재단의 전체 사업예산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사업비 절감분 일부를 활용하여 조속히 집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나, 동 사업이 조급히 추진된 데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향후 재단은 IISS 코리아체어 설치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 사업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관리 체계를 갖추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3) 문화교류협력강화

「문화교류협력강화」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문화해외확산」은 재외공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 한국 문화예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한국문화교류확대' 사업, 해외 주요 박물관에 한국 소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해외박물관 한국문화 활성화' 사업, 한국을 소개하는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작·배포하여 한국에 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는 '한국소개자료발간' 사업, 해외 대학, 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한국 관련 연구 자료 및 '한국문화 복합홍보관' 코리아코너 개설 등을 지원하는 '한국지식문화보급' 사업으로 구성됨.

< 문화교류협력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한국문화해외확산	5,507	5,501	-	△6	-	5,501	5,413 (98.3%)	-	88	3,765
글로벌문화교류	4,854	4,668	-	△186	-	4,668	4,390 (90.0%)	-	278	3,918
계	**10,361**	**10,169**	**-**	**△192**	**-**	**10,169**	**9,803 (96.4%)**	**-**	**365**	**7,683**

「글로벌문화교류」는 글로벌센터에서 주한공관, 외국 문화원 등과의 협력을 통한 쌍방향 문화예술사업을 시행하는 '글로벌센터' 사업, 한국과 아세안을 잇는 문화 플랫폼으로서 한-아세안간 문화·학술·인적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아세안문화원' 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 계획액은 총 103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자체변경으로 1억 9,200만원을 감액하여 계획현액은 101억 6,900만원이고, 98억 300만원이 집행됨.

□ 「거리의 서」 전시 사업 관련 동일사업 내 용역계약 분할 및 집행 부적정에 따른 계약관리 개선 필요

재단은 2024년 광주비엔날레(GB) 30주년을 계기로 한·아세안 문화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KF-GB 한·아세안 작가 협력 기획전「거리의 서(書)」'[132]를 추진하였음. 동 전시는 서울 KF갤러리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파빌리온에서 동시 개최되었으며, 이후 부산 아세안문화원에서의 순회전으로 연계됨.

< 「거리의 서」 전시 개요 >

사업명	주최	기간	장소	집행액(원)
KF-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거리의 서> Part 1	KF, 광주비엔날레	9.6.-10.18.	KF갤러리	85,127,220
KF-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거리의 서> Part 2	KF, 광주비엔날레	9.7.-12.1.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	67,737,756
KF-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거리의 서> Part 3	KF, KF아세안문화원, 광주비엔날레	'24.12.13.-'25.3.14.	KF아세안문화원	69,836,060

(자료: 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32) 재단과 (재)광주비엔날레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주제로 한 협력 기획전 「거리의 서(書), The Book of Distance」를 공동 주최함. 양 기관 간의 업무협약 체결(2024.7.31.)을 바탕으로 기획된 동 전시는, KF갤러리(서울)와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광주)에서 각각 한·아세안 현대미술 작가(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총 13팀의 작품을 선보였음.(출처: KF 보도자료, 2024.9.4.)

2024년 9월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 개최되고, 12월에 부산에서 순회 개최된 「거리의 서」 전시 사업은 동일한 기획 의도, 출품진, 행사 목적 및 운영 방식 등을 공유하는 계속성·일련성 있는 단일 사업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동일 기획 하에 출품진과 주요 내용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수의계약보다는 통합계약 또는 일괄공모 방식의 추진이 행정 효율성과 계약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업체와 연속하여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용역계약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분할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입찰을 통한 경쟁·심사·공개 절차를 회피하려는 취지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며, 사업 관리에 비효율 초래, 책임소재 불명확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거리의 서」 전시를 위한 용역계약체결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	계약 방법	비목	계약기간	계약 금액	계약업체	수의사유
1	<거리의 서> 전시 작품 설치 용역	수의	**일반 수용비**	8.29. - 9.6.	21,900	에이비군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	<거리의 서> 전시 공간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위탁용역	수의	**일반 수용비**	8.29. - 9.13.	40,000	㈜프론트킷	여성기업.
3	<거리의 서> 전시 진행 위탁용역	수의	**일반 수용비**	9.2. - 9.11.	45,730	**㈜아인아**	여성기업
4	<거리의 서> 부산 순회전시 조성 및 설치 용역	수의	일반 용역비	12.5. - 12.13.	33,750	**㈜아인아**	여성기업
5	<거리의 서> 부산 순회전시 작품 운송 및 설치 용역	수의	일반 용역비	12.5. - 12.13.	9,745	㈜아트 스퀘어무빙	추정가격2 천만원이하
합 계					151,125		

※자료: 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재단은, 「거리의 서」 일련의 전시는 서울·광주 전시와 부산 전시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담당 부서도 상이하고 구성 작품에도 일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함. 또한 부산 전시는 아세안문화원의 2025년 사업으로 별도 기획되어 2024년 12월에 미리 개막한 것이라고 함.

이에 따라, 동일 업체와 연속으로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예산 집행 주체가 달라 계약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일부 전시 내용이 중복되어 기존 시행사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는 설명임.

그러나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기존 업체의 이해도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반복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용역 계약 각각의 업무 수행범위를 살펴보면, 과업 구분이 모호하거나 일부는 중첩됨을 확인할 수 있음.

< 「거리의 서」 전시 관련 용역 수행 범위 비교 >

전시 작품 설치	전시 공간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전시 진행	부산 순회전시 조성 및 설치	부산 순회전시 작품 운송 및 설치
·작품 설치(230여점) ·시트지 작업 ·재료 준비 및 폐기물 처리	·전시 홍보물 디자인 ·전시 디자인 ·구조물(벤치, 가벽 등) 제작	·작품 설치(18점) ·전시 공간 조성 (암실 조성 및 현장 시공) ·위탁 운영(전시 연계행사 등)	·작품 픽업 ·전시실 조성 ·작품 및 장비 설치 (철거 포함)	·국내외 작품 운송 (광주-서울-부산, 부산-서울-필리핀 등) ·작품 포장, 운송, 반입 및 설치

※자료: 재단 제출자료(계약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산 순회전시를 위한 두 건의 계약도 ‘조성 및 설치’와 ‘운송 및 설치’라는 작업 단위별로 각각 계약하였는데, 하나의 전시 행사 완성을 위한 용역으로서 본질적으로 연계된 용역을 인위적으로 작업 단위별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재단은 ‘조성 및 설치’는 서울·광주 전시의 동일한 전시품 조성과 미디어 장비 설치 등 전시 실행에 관한 계약이며, ‘운송 및 설치’는 서울·광주 전시에 포함되지 않은 국내 작가의 별도 작품들을 일괄 보험 적용하여 운송 시점부터 설치, 철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과업을 맡은 사안으로, 구체적으로는 상호 간 명확히 내용이 구분된 계약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운송 및 설치 대상이 서로 다른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작품 운송’과 ‘전시 설치’라는 동일한 유형의 용역 수행에 있으며, 작품의 구성 차이 자체가 계약을 분리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려움.

또한, 「거리의 서」 서울·광주 전시의 경우, 예산과목을 일반용역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여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였음.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및 적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Ⅳ. 국제질병퇴치기금 결산

1. 총 괄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음.

동 기금은 한국국제협력단(국제질병퇴치기금팀)에서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질병 예방·퇴치를 위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었음.

가. 수 입

「국제질병퇴치기금법」[133]에 따른 기금은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134]과 기금운용수익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정부출연금도 그 재원으로 명시되어 있음.[135]

---

133) 폐지되었음.

134)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등) 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천원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항공기 좌석 등급에 구분이 있는 경우 상위 등급의 좌석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좌석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5)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생 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이하 “출국납부금”이라 한다)
3. 기금운용수익금

< 수입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징수 결정액	수입액		계획액 대비 수입액비율
			24년	23년	
합 계	102,236	96,828	96,542	41,622	94.4
기타재산수입	130	541	541	330	416.2
법정 부담금	41,035	40,625	40,339	29,383	98.3
기타 경상이전 수입	14	-	-	110	-
기금 예수금	52,010	52,010	52,010	10,000	100.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136]	9,047	3,652	3,652	1,799	40.4

2024년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은 총 1,022억 3,600만원, 징수결정액은 968억 2,800만원이며, 계획액의 94.4% 수준인 965억 4,200만원이 수납되었음.

136) 2019년 연중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수입과목을 신설한바, 이는 2017년도 외교통일위원회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지적에 대한 조치로 2019년 1/4분기 자산운용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여유자금을 중장기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조치임.

나. 지 출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지출부문 현황을 보면,

총 지출액은 965억 4,200만원으로 지출계획 대비 94.4%를 집행하였고, 사업비는 912억 1,300만원으로 지출계획 대비 99.9%를 집행하였으며, 기금운영비[137]는 4억 9,300만원으로 지출계획 대비 65.9%를 집행하였음. 여유자금 운용은 지출계획 대비 43.0%인 32억원임.

< 지출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지출계획액 (A)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집행률 (B/A)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4(B)	2023년			
합계	102,236	102,236	96,542	41,622	94.4	-	2,941
사업비	91,333	92,816	91,213	36,095	99.9	-	1,603
기금운영비	748	748	493	555	65.9	-	255
기금간거래	2,719	2,719	1,636	1,320	60.2	-	1,083
여유자금운용	7,436	5,953	3,200	3,652	43.0	-	

※ 여유자금운용(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과목은 불용을 특정하지 않는 예산과목임.

137) 기금운영비: KOICA 국제질병퇴치기금팀 인건비 및 기금 운용 위한 행정성 경비

다. 기금 재정상태 및 운영현황

2024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자산은 75억 2,600만원, 부채는 1,115억원이고, 순자산은 △1,039억 7,300만원임.

기금 재정운영순원가(929억 9,300만원)에서 부담금수익(409억 2,9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520억 6,400만원임.

< 2024년도 기금 재정상태 >

(단위: 백만원)

자산	부채	순자산
7,526	111,500	△103,973

< 2024년도 기금 운영현황 >

(단위: 백만원)

과 목	총원가	수 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138]	91,324	-	91,324
Ⅱ.관리운영비[139](인건비)	-	-	247
Ⅲ.비배분비용[140]	-	-	1,957
Ⅳ.비배분수익[141](이자수익)	-	-	534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	-	92,993
Ⅵ.비교환수익[142](부담금수익)	-	-	40,929
Ⅶ.재정운영결과(Ⅴ-Ⅵ)	-	-	52,064

138)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2호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②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139) ③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더하고, 제3호의 수익은 빼서 표시한다.
1. 관리운영비: 기관운영비와 같이 기관의 여러 정책이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관리업무비를 말한다)

140) 2. 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141) 3. 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142)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①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

라. 사업 개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사업은 「국제개발협력」 1개 프로그램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바, 동 프로그램은 국제질병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수수료 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에는 당초 계획 913억 3,300만원의 99.9%에 해당하는 912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음. 각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NGO 등과의 민관협력사업을 위해 2,700만원,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위해 150억 8,200만원,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에 744억 4,000만만원,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으로 16억 6,400만원이 각각 집행됨.

<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 개관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계획
				계획(A)	결산(B)	B/A	
[2400] 국제개발협력			36,095	91,333	91,213	99.9	-
	[2439] 질병퇴치사업		36,095	91,333	91,213	99.9	-
		[401]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92	159	27	17.0	-
		[402]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	11,388	16,427	15,082	91.8	-
		[403]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23,254	73,026	74,440	101.9	-
		[404]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1,361	1,721	1,664	96.7	-

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②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

2. 검토의견

□ 환율 변동으로 인한 GAVI 지원 미흡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은 국제감염병 퇴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국제보건기구(감염병혁신연합(CEPI), 글로벌펀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글로벌소아마비퇴치기구(GPEI)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 감염병 예방 및 퇴치에 기여하는 사업임.

한편,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동 사업을 통해 정부가 기여하고 있는 국제보건기구에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개별 국제기구들의 조달 절차를 통해 공급하고 있음[143].

외교부는 동 사업에 730억 2,600만원의 지출을 계획하였고, 744억원을 집행하였음.

<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A)	수정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	73,026	74,440	-	74,400	-	-	100.0

143) 감염병백신연합(CEPI)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대조백신 확보 등을 위해 2.6억불 상당을 지원하였고, 셀트리온, SD바이오센서 등은 글로벌펀드 제6위 필수 의료품목 공급자이자 제3위 진단키트 공급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LG화학은 글로벌소아마비근절이니셔티브(GPEI)와 8천만불 상당의 소아마비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GAVI에 대한 지원은 당초 계획한 500만불 대비 23.6%인 118만불만 지원되었음.

<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만불 %)

세사업 명	사업 내용	원화 기준			미화 기준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계획액)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계획액)
UNITAID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 활동	HIV/AIDS, 결핵, 말라리아를 중심으로 한 진단방법 간소화, 백신 및 의약품 보급, 의약품 가격 인하, 질병 발생 모니터링 등	6,505	6,505	100.0	500	469	93.8
GAVI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 활동 (`21-`25/3,000만불)	**어린이들의 생명보존에 필수적인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의약품 시장 형성, 의약품의 가격 인하, 의약품 및 백신 보급 등**	**6,505**	**1,734**	**26.7**	**500**	**118**	**23.6**
Global Fund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활동	공공·민간 재원 공동 조성을 통해 ATM(AIDS(에이즈),Tuberculosis(결핵), Malaria(말라리아)) 치료 및 예방약·물품 관련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하여 저가로 물품을 구매한 뒤 지원 대상 국가에 조달	32,525	36,216	111.3	2,500	2,500	100.0
CEPI 백신개발 및 비축을 통한 신종감염병 대비 사업	메르스·라싸열 등 신종감염병 백신·플랫폼 기술 개발, 비축 지원을 통한 신종감염병 대비	23,418	26,075	111.3	1,800	1,800	100.0
GPEI 소아마비퇴치활동	소아마비 발병 모니터링, 정기적 소아마비 예방접종 및 백신 보급 등	3,903	3,903	100.0	300	273	91.0
합 계		**72,856**	**74,433**	**102.2**	**5,600**	**5,160**	**92.1**

※ 자료: 2024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2025.2.), 외교부

이는 편성환율(1,300원) 대비 시장환율이 급등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외교부가 환율 변동에 대응하고자 기금 계획을 일부 조정하였으나 GAVI에 대한 지원이 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 반영되지 못하여 당초 지원 계획을 온전히 달성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으

로 생각됨.

< 환율 변동으로 인한 계획 변경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협의변경 (2024.12.2.)	340	02	국제부담금	958	편성환율(1,300원) 대비 시장환율 급등으로 인해 1,400원/USD 적용
자체변경 (2024.12.12.)	210	01	일반수용비	△64	편성환율(1,300원) 대비 시장환율 급등으로 인해 1,430원/USD 적용
	240	01	사업추진비	△3	
	260	01	일반연구비	△96	
	340	02	국제부담금	642	
자체변경 (2024.12.20.)	340	02	국제부담금	△24	편성환율(1,300원) 대비 시장환율 급등으로 인해 1,460원/USD 적용

※ 자료: 2024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2025.2.), 외교부

환율 위험에 대한 대비 미흡은 국회의 시정 요구가 있었던 사안으로, 외교부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144] 여전히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 운용과 같은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함.

144)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정부, p. 628

Ⅴ. 외교부 통합 재무결산 분석

1. 총 괄

국가재정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을 근간으로 한 「국가회계법」이 제정(2007. 9)되고, 결산보고서의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한 「국가회계법」ㄴ이 개정(2008. 12) 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는 2009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모든 기금에 대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의 국회제출이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의무화되었음.

이하에서는 외교부 일반회계, 국제교류기금 및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통합재무제표를 분석하고자 함.

2. 재정상태표[145]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4(A)	2023(B)	증 감 (A-B)	
				금 액	비 율
자산	일반회계	5,359,453	5,252,750	106,703	2.0
	국제교류기금	88,992	83,934	5,058	6.0
	국제질병퇴치기금	7,526	7,411	115	1.6
	계	5,455,971	5,344,095	111,876	2.1
부채	일반회계	57,115	55,698	1,417	2.5
	국제교류기금	238	243	△5	△2.1
	국제질병퇴치기금	111,500	59,319	52,181	88.0
	계	168,853	115,260	53,593	46.5
순자산	일반회계	5,302,338	5,197,052	105,286	2.0
	국제교류기금	88,754	83,691	5,063	6.0
	국제질병퇴치기금	△103,973	△51,909	△52,064	100.3
	계	5,287,118	5,228,834	58,284	1.1

가. 자 산[146]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자산은 전년도 5조 2,527억 5,000만원 대비 1,067억 300만원(2.0%)이 증가한 5조 3,594억 5,300만원이며, 그 주요 증가요인은 재평가이익 증가 등으로 인해 유형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자산은 889억 9,200만원으로 전년 839억 3,400

145)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146)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하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성자산으로 구분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만원 대비 50억 5,800만원(6.0%)이 증가하였음. 자산 증가의 주요인은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펀드 전환에 따라 유동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자산은 75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74억 1,100만원 대비 1억원 1,500만원(1.6%)이 증가하였음. 자산 증가의 주요원인은 출국납부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임.

나. 부 채[147]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부채는 전년도 556억 9,800만원 대비 14억 1,700만원(2.5%)이 증가한 571억 1,500만원이며, 그 주요 증가사유는 퇴직급여충당금 추정액 증가에 따른 것임.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부채는 2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4,300만원 대비 500만원(△2.1%)이 감소하였음. 부채 감소의 주요인은 법인카드 미지급금 감소로 미지급금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임.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부채는 1,115억원으로 전년도 593억 1,900만원 대비 521억 8,100만원(88.0%)이 증가하였음. 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자금 예수에 따른 것임.

147)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하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등으로 구분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다. 순자산[148](=자산-부채)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순자산은 전년도 5조 1,970억 5,200만원 대비 1,052억 8,600만원(2.0%)이 증가한 5조 3,023억 3,800만원으로 재정운영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따른 것임.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순자산은 887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836억 9,100만원 대비 50억 6,300만원(6.0%)이 증가하였음. 순자산 증가는 주로 투자증권평가손익에 따른 것임.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순자산은 △1,039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519억 900만원 대비 520억 6,400만원(△100.3%) 감소하였음. 순자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자금 예수에 따른 것임.

148)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으로 구분함.

3. 재정운영표[149]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4(A)	2023(A)	증 감 (A-B)	
				금 액	비 율
Ⅰ.프로그램 순원가	일반회계	3,603,081	2,831,015	772,066	27.3
	국제교류기금	91,304	73,368	17,936	24.4
	국제질병퇴치기금	91,324	36,416	54,908	150.8
	계	3,785,709	2,940,799	844,910	28.7
Ⅱ.관리운영비	일반회계	242,283	233,528	8,755	3.7
	국제교류기금	4,998	4,868	130	2.7
	국제질병퇴치기금	247	277	△30	△10.8
	계	247,527	238,673	8,854	3.7
Ⅲ.비배분비용	일반회계	51	1	50	5,000.0
	국제교류기금	9	21	△12	△57.1
	국제질병퇴치기금	1,957	1,444	513	35.5
	계	2,017	1,466	551	37.6
Ⅳ.비배분수익	일반회계	236,474	274,716	△38,242	△13.9
	국제교류기금	6,945	2,363	4,582	193.9
	국제질병퇴치기금	534	334	200	59.9
	계	243,953	277,413	△33,460	△12.1
Ⅴ.재정운영 순원가(Ⅰ+Ⅱ+Ⅲ-Ⅳ)	일반회계	3,608,941	2,789,827	819,114	29.4
	국제교류기금	89,365	75,895	13,470	17.7
	국제질병퇴치기금	92,993	37,804	55,189	146.0
	계	3,791,300	2,903,526	887,774	30.6
Ⅵ.비교환수익 등	일반회계	-	-	-	-
	국제교류기금	96,192	78,169	18,023	23.1
	국제질병퇴치기금	40,929	30,925	10,004	32.3
	계	137,121	109,094	28,027	25.7
Ⅶ.재정운영 결과(Ⅴ-Ⅵ)	일반회계	3,608,941	2,789,827	819,114	29.4
	국제교류기금	△6,827	△2,274	△4,553	△200.2
	국제질병퇴치기금	52,064	6,879	45,185	656.9
	계	3,654,178	2,794,432	859,746	30.8

149)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임.(「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가. 프로그램순원가

프로그램순원가[150]는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 자원의 소모액을 의미하며 정부회계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원 소요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외교부 프로그램순원가 산출단위는 총 17개의 프로그램임.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도 2조 8,310억 1,500만원 대비 7,720억 6,600만원(27.3%)이 증가한 3조 6,030억 8,100만원이며, 이는 주로 국재개발협력 프로그램에서 6,459억원, 여권업무 선진화 프로그램에서 520억원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도 910억 400만원 대비 179억 3,600만원이 증가(24.4%)한 913억 400만원이었고, 증가사유는 주로 지정기부사업이 증가한데 기인함.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도 364억 1,600만원 대비 549억 800만원 증가(150.8%)한 913억 2,4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해외보조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150)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나.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정부행정기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경비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각종 수수료, 제세공과금, 교육훈련비, 여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연구개발비 등이 이에 해당함.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2,335억 2,800만원 대비 87억 5,500만원(3.7%)이 증가한 2,422억 8,3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인건비 증가 및 감가상각비 증가 등에 의한 것임.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48억 6,800만원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가(2.7%)한 49억 9,800만원이었고, 증가사유는 주로 인건비 증가요인으로 인한 것임.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2억 7,700만원 대비 3,000만원이 감소(10.8%)한 2억 4,700만원이었고, 감소사유는 주로 출연비 감소에 따른 것임.

다.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국가의 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자산처분 손실과 같이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과 직접적·간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비용을 의미함.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비배분비용은 전년도 100만원 대비 5,000만원

(5,000.0%)이 증가한 5,100만원이며, 이는 주로 대손상각비 증가 및 기타비용 증가에 따른 것임.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비배분비용은 전년도 2,200만원 대비 1,300백만원이 감소(△57.1%)한 900만원이었고, 감소사유는 전년도 대비 외화평가손실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비배분비용은 전년도 14억 4,400만원 대비 5억 1,300만원 증가(35.5%)한 19억 5,700만원이었고, 증가사유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자금 예수에 따른 이자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라.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자산처분이익, 평가이익 등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발생하거나 프로그램 외의 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의미함.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비배분수익은 전년도 2,747억 1,600만원 대비 382억 4,200만원(13.9%)이 감소한 2,364억 7,4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지출금 반납금 감소에 따라 기타수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비배분수익은 전년도 23억 6,300만원 대비 45억 8,200만원이 증가(193.9%)한 69억 4,500만원으로, 이는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펀드 전환에 따른 투자증권평가손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비배분수익은 전년도 3억 3,400만원 대비 2

억원이 증가(59.9%)한 5억 3,400만원으로, 이는 여유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이 증가한데 따른 것임.

마. 비교환수익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의미함.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의 비교환수익은 2024년과 2023년 모두 발생하지 않았음.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비교환수익은 전년도 781억 6,900만원 대비 180억 2,300만원이 증가(23.1%)한 961억 9,2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국제교류기여금 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비교환수익은 전년도 309억 2,500만원 대비 100억원 400만원 증가(32.3%)한 409억 2,9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출국납부금 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바.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151]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뺀 것을 의미함.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2조 7,898억 2,700만원 대비 8,191억 1,400만원(29.4%)이 증가한 3조 6,089억 4,100만원이며,

151)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은 더하고 비배분수익은 뺀 액수를 의미함.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22억 7,400만원 대비 45억 5,300만원 감소한 △68억 2,700만원임.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68억 7,900만원 대비 451억 8,500만원 증가(656.9%)한 520억 6,400만원임.

4. 순자산변동표[152]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4(A)	2023(B)	증 감 (A-B)	
				금 액	비 율
Ⅰ.기초순자산	일반회계	5,197,052	5,084,243	112,809	2.2
	국제교류기금	83,691	78,530	5,161	6.6
	국제질병퇴치기금	△51,909	△45,030	△6,879	15.3
	계	5,228,834	5,117,743	111,091	2.2
Ⅱ.재정운영 결과	일반회계	3,608,941	2,789,827	819,114	29.4
	국제교류기금	△6,827	△2,274	△4,553	△200.2
	국제질병퇴치기금	52,064	6,880	45,184	656.7
	계	3,654,178	2,794,433	859,745	30.8
Ⅲ.재원의 조달 및 이전	일반회계	3,613,551	2,817,787	795,764	28.2
	국제교류기금	-	-	-	-
	국제질병퇴치기금	-	-	-	-
	계	3,613,551	2,817,787	795,764	28.2
Ⅳ.조정항목	일반회계	100,676	84,848	15,828	18.7
	국제교류기금	△1,765	2,887	△4,652	-
	국제질병퇴치기금	-	-	-	-
	계	98,912	87,735	11,177	12.7
Ⅴ.기말순자산(Ⅰ-Ⅱ+Ⅲ+Ⅳ)	일반회계	5,302,338	5,197,052	105,286	2
	국제교류기금	88,754	83,691	5,063	6
	국제질병퇴치기금	△103,973	△51,909	△52,064	△100.3
	계	5,287,118	5,228,834	58,284	1.1

152) 순자산 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임.

가. 기초순자산

기초순자산은 전기(前期)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 금액임.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기초순자산은 5조 1,970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28억 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 기초순자산은 836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억 6,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임.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은 △519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68억 7,900만원 감소한 규모임.

나.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표에서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에서 재정운영에 대한 원가회수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지표로 앞의 재정운영표에서 증감요인을 설명하였음.

다. 재원조달 및 이전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년도 2조 8,177억 8,700만원 대비 7,957억 6,400만원이 증가한 3조 6,135억 5,100만원이며 이는 국고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임.

라. 조정항목

조정항목은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의 조정항목은 전년도 848억 4,800만원 대비 158억 2,800만원 증가한 1,006억 7,600만원으로, 그 주요 증가원인은 유형자산재평가이익의 증가에 따른 것임.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조정항목은 전년도 28억 8,700만원 대비 46억 5,200만원이 감소한 △17억 6,500만원으로, 주요 감소 원인은 투자증권평가손익 감소에 따른 것임.

마. 기말순자산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빼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과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출하는 개념임.

2024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기말순자산은 전년도 5조 1,970억 5,200만원 대비 1,052억 8,600만원이 증가한 5조 3,023억 3,800만원이며,

2024년도 국제교류기금의 기말순자산은 전년도 836억 9,100만원 대비 50억 6,300만원이 증가한 887억 5,400만원임.

2024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기말순자산은 △1,039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9억 900만원 감소한 규모임.

Ⅵ. 외교부 성과관리 분석

1. 총 괄

「성과관리제도」란 기존의 투입 · 통제 중심의 방식을 벗어나 성과관리를 통해 획득된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예산의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위주로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함.

「국가재정법」 제85조의5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제6호에서는 성과관리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 · 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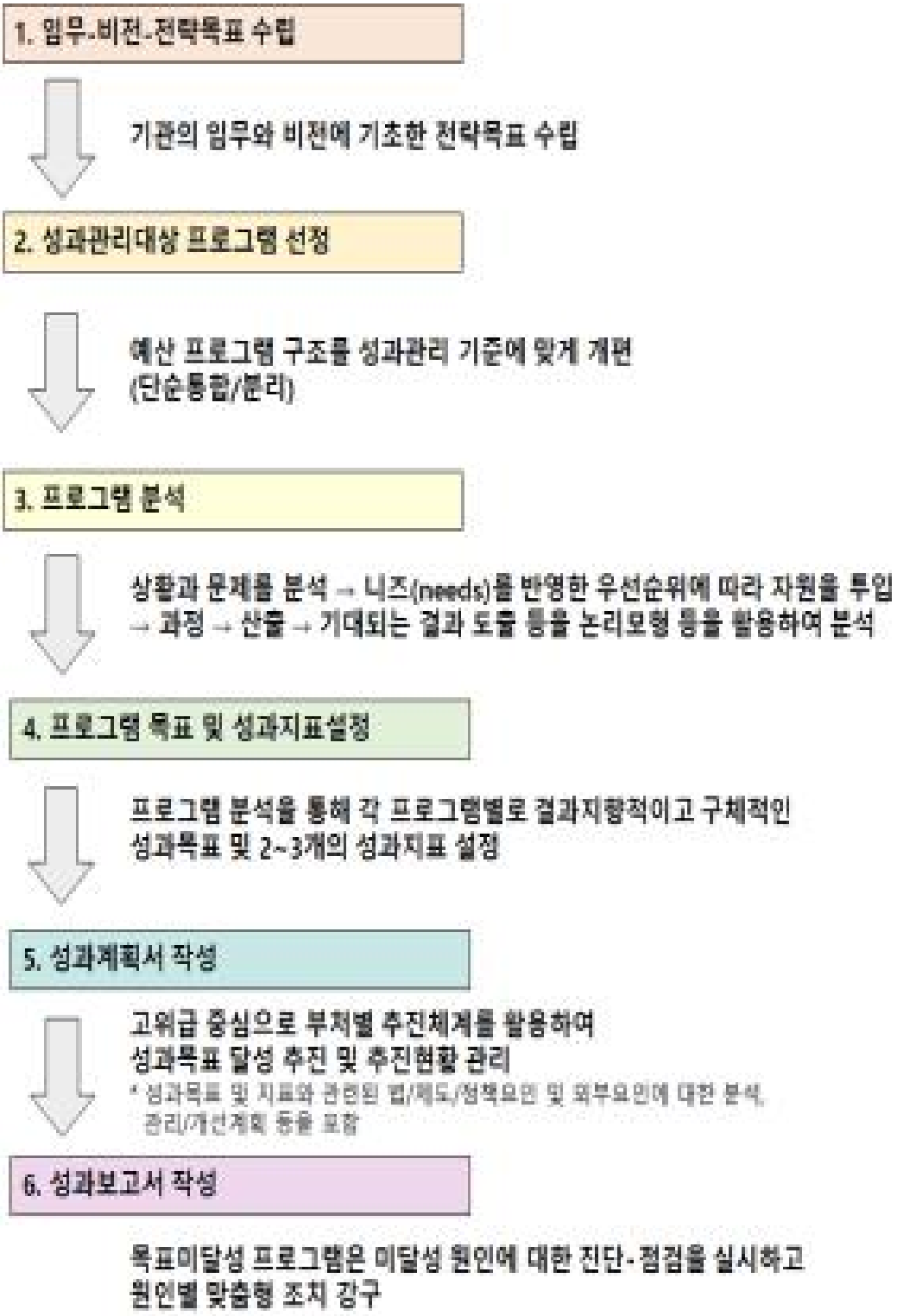
즉, 성과관리란 각 기관이 그 임무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후,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이나 자원배분, 개인의 성과보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 각 정부기관은 성과계획서에 그간의

정책성과, 해당연도의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의 조직, 인원 등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성과목표체계에 따라 임무, 비전,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표를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순차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프로그램 목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임무,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및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 및 성과 달성률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목표달성 기여도와 목표달성 과정 및 성과미달성 원인분석과 향후 성과이행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성과목표관리 주요 절차 >


1. 임무-비전-전략목표 수립
기관의 임무와 비전에 기초한 전략목표 수립
2. 성과관리대상 프로그램 선정
예산 프로그램 구조를 성과관리 기준에 맞게 개편
(단순통합/분리)
3. 프로그램 분석
상황과 문제를 분석 → 니즈(needs)를 반영한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투입
→ 과정 → 산출 → 기대되는 결과 도출 등을 논리모형 등을 활용하여 분석
4. 프로그램 목표 및 성과지표설정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각 프로그램별로 결과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목표 및 2~3개의 성과지표 설정
5. 성과계획서 작성
고위급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체계를 활용하여
성과목표 달성 추진 및 추진현황 관리
* 성과목표 및 지표와 관련된 법/제도/정책요인 및 외부요인에 대한 분석,
관리/개선계획 등을 포함
6. 성과보고서 작성
목표미달성 프로그램은 미달성 원인에 대한 진단-점검을 실시하고
원인별 맞춤형 조치 강구

2. 성과체계 현황

외교부의 임무는 “외교부는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고, 전 세계의 자유, 평화,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한다.”이며,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체계는 6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프로그램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 외교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

전략목표 (Strategic Goal)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6	12	29	92

외교부의 2024회계연도 예산 4조 3,645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 예산 총액은 2조 2,776억원이며, 결산액 기준으로는 2조 1,868억원임.

< 외교부 사업별 재정운용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 액(A+B)		35,059	34,028	43,645	42,646
성과관리 대상	일반재정	15,603	14,928	22,775	21,867
	정보화	0	0	1	1
	R&D	0	0	0	0
	소계(A)	15,603	14,928	22,776	21,868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	3,865	3,717	3,982	3,845
	기본경비	2,797	2,714	2,242	2,177
	교부금	0	0	0	0
	예비비	0	0	0	0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294	13	727	16
	보전지출	616	1,251	238	1,477
	기타	11,884	11,405	13,680	13,262
	소계(B)	19,456	19,100	20,869	20,778

2024년도 결산의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전략목표 3 :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에 2조 104억원(91.9%), “전략목표 4 :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에 813억원(3.7%) 등 외교부의 6개의 전략목표 중 상위 2개 전략목표에 전체 재원의 95.6%인 2조 917억원을 투입하였음.

<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결산액	비중
□ 전략목표 1 : 한반도 평화 · 번영 및 동북아 안정 · 협력에 기여한다.	131	0.6
□ 전략목표 2 : 상생 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493	2.3
□ 전략목표 3 :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20,104	91.9
□ 전략목표 4 :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813	3.7
□ 전략목표 5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216	1.0
□ 전략목표 6 :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111	0.5

< 외교부 2024년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외교부는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고,
전 세계의 자유, 평화,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전략목표 Ⅰ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 Ⅰ-1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

전략목표 Ⅱ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프로그램목표 Ⅱ-1
아세안·동남아·유럽지역 및 중앙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한다.

프로그램목표 Ⅱ-2
중남미·아중동지역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협력 강화 및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외교지평을 확대한다.

전략목표 Ⅲ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프로그램목표 Ⅲ-1
UN 등 주요 국제기구에 적극적인 참여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역할 강화를 통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 구축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외교지평을 확대한다.

프로그램목표 Ⅲ-2
원자력·비확산·군축 분야 국제협력강화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 Ⅲ-3
SDG 달성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선진적·전략적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한다.

프로그램목표 Ⅲ-4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하고,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전략목표 Ⅳ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Ⅳ-1
글로벌 중추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 공공외교를 확대한다.

프로그램목표 Ⅳ-2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영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전략목표 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프로그램목표 Ⅴ-1
다자경제외교 및 주요국과의 지역경제외교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한다.

프로그램목표 Ⅴ-2
기후·환경·에너지·과학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략목표 Ⅵ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프로그램목표 Ⅵ-1
외교연구와 교육을 강화하여 역량있는 외교인재를 양성한다.

3. 2024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외교부의 2024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를 보면, 12개의 프로그램 목표에 총 15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15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130% 이상)은 2개, 달성(100~130%)은 13개, 미달성(100% 미만)은 0개임.

< 외교부 2024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6	12	15	2	13	-
		100%	13.3%	8%	-

< 전략목표별 달성 현황 >

전략목표	사업규모 (억 원)	성과지표 실적	
Ⅰ.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152	성과지표 수	2
		달성 / 미달성	2 / 0
Ⅱ. 상생 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521	성과지표 수	2
		달성 / 미달성	2 / 0
Ⅲ.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20,855	성과지표 수	4
		달성 / 미달성	4 / 0
Ⅳ.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881	성과지표 수	2
		달성 / 미달성	2 / 0
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241	성과지표 수	3
		달성 / 미달성	3 / 0
Ⅵ.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125	성과지표 수	2
		달성 / 미달성	2 / 0

<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연번	예산/기금	사업명	예산(억원)		최종 평가	
			'24년	'23년	점수	등급
1	일반회계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53	56	95.7	우수
2	일반회계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67	74	95.5	우수
3	일반회계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98	55	95.1	우수
4	일반회계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3	31	94.8	보통
5	일반회계	국내외 교육훈련	74	80	89.8	보통
6	일반회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	141	95	89.7	보통
7	일반회계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30	33	89.3	보통
8	일반회계	공공외교 역량강화	161	163	89.1	보통
9	일반회계	인도적지원(ODA)	7,401	2,994	88.9	보통
10	일반회계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7	41	88.8	보통
11	일반회계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36	37	86.9	보통
12	일반회계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54	80	86.7	보통
13	일반회계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5	33	85.2	미흡
14	일반회계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39	33	80.8	미흡
15	일반회계	글로벌 프로그램	3,137	2,296	96.8	우수
16	일반회계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737	972	93.3	보통
17	일반회계	민관협력사업(ODA)	570	479	93.0	보통
18	일반회계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3,066	2,385	91.8	보통
19	일반회계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2,756	2,426	88.9	보통
20	일반회계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1,333	816	87.3	미흡
21	일반회계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44	48	88.6	미흡
22	기금	한국문화해외확산	55	66	99.7	우수
23	기금	정책공공외교강화	85	93	96.9	보통
24	기금	글로벌 협력 강화	51	44	94.0	보통
25	기금	글로벌문화교류	49	55	93.9	보통
26	기금	한국학기반확대	196	181	92.4	보통
27	기금	글로벌인적교류	39	55	90.6	보통

Ⅶ.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시 외교부는 총 53건의 시정, 주의, 제도개선을 받은 바, 이에 대해 조치완료 47건 및 조치 중 6건이라는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음.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총괄표 >

조치 결과	구분					소계
	제도개선	주의	시정	징계	변상	
조치완료	15	21	11	-	-	47
조치 중	4	2	0	-	-	6
소 계	19	23	11	-	-	53

통일부 소관 : 전문위원 김 사 우

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2024년도 세입은 전년 대비 32.9% 감소한 13억원이 수납되었고, 예산액 14억 4,800만원 대비 89.8%가 수납되었음.

2024년도 세출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2,986억 5,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3,221억 3,700만원 대비 92.7%가 집행되었음.

남북협력기금전출금(예산 1,000억원 집행) 제외 시 일반예산은 1,986억 5,7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2,220억 2,700만원 대비 89.4%가 집행되었음.

<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전년도 결산액	전년 대비 증감율
	예산현액(A)	결산액(B)	수납률 또는 집행률(B/A)		
세 입	1,448	1,300	89.8	1,937	△32.9
세 출	322,137	298,657	92.7	256,247	△16.6
-일반예산	222,027	198,657	89.4	256,247	△22.5
-기금전출금	100,000	100,000	100	57,200	74.8

자료: 통일부

2. 세입 결산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7.8% 감소한 14억 4,8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14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6% 감소하였음.

2024년도 수납액은 13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7.0%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 9,400만원임.

< 2024년도 세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2024년	1,448	1,494	1,300	89.8	87.0	-	194
2023년	2,006	2,185	1,937	96.5	88.6	-	249
증감률	△27.8	△31.6	△32.9	-	-	-	△22.1

자료: 통일부

3. 세출 결산

가. 총괄 내역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3,220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1억 1,000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3,221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으며, 이 중 집행액은 2,986억 5,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7%임.

< 2024년도 세출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4년	322,027	322,137	298,657	92.7	92.7	3,448	20,032
-일반예산	222,027	222,137	198,657	89.5	89.4	3,448	20,032
-기금전출금	100,000	100,000	100,000	100	100	-	-
2023년	323,340	327,447	256,247	79.3	78.3	110	71,090
증감율	△0.4	△1.6	16.6	13.4	14.4	3,034.5	△71.8

자료: 통일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작년에 비해 14.4%p 증가하였고 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일반예산의 집행률 역시 전년 보다 11.1%p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이 계획 대비 저조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2300) 프로그램의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액(80억 5,300만원 불용)과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비(13억 7,400만원 불용)에서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조달청 심의절차 등으로 시공업체 계약이 지연되어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31억 6,000만원

이월) 등 34억 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2024년도 일반회계 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1000 통일정책	14,788		14,788	13,639		1,149
1031 평화통일기반조성	14,788		14,788	13,639		1,149
1500 북한정세분석	13,998		13,998	10,633	3,160	206
1533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4,159		4,159	3,963		196
1535 북한자료센터 운영	9,839		9,839	6,670	3,160	10
2100 인도적 문제해결	13,167		13,167	12,141	143	882
2133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1,326		1,332	1,269		63
2135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10,422		10,416	9,473	143	799
2137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1,419		1,419	1,399		20
230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83,897		83,897	74,014		9,883
2331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52,838		53,161	52,705		456
233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31,059		30,736	21,309		9,427
3000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4,399		4,319	3,734		585
3031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3,417		3,337	2,995		342
3032 개성공단 사업 지원	733		733	573		160
3036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249		249	166		83
4000 남북회담	2,355		2,355	2,152		203
4031 남북회담 추진	305		305	192		113
4032 남북회담본부 운영	2,050		2,050	1,960		90
5000 통일교육	22,861		23,948	22,818		1,129
5002 국립통일교육원 인건비	5,691		6,765	6,334		431
5018 국립통일교육원 기본경비	1,397		1,410	1,278		132
5031 통일교육추진	14,308		14,308	13,778		529
5033 통일교육원 시설운영	1,465		1,465	1,428		37
7000 통일행정지원	66,562	110	65,665	59,525	145	5,994
8400 회계기금간거래	100,000		100,000	100,000		
합 계	322,027	110	322,137	298,657	3,448	20,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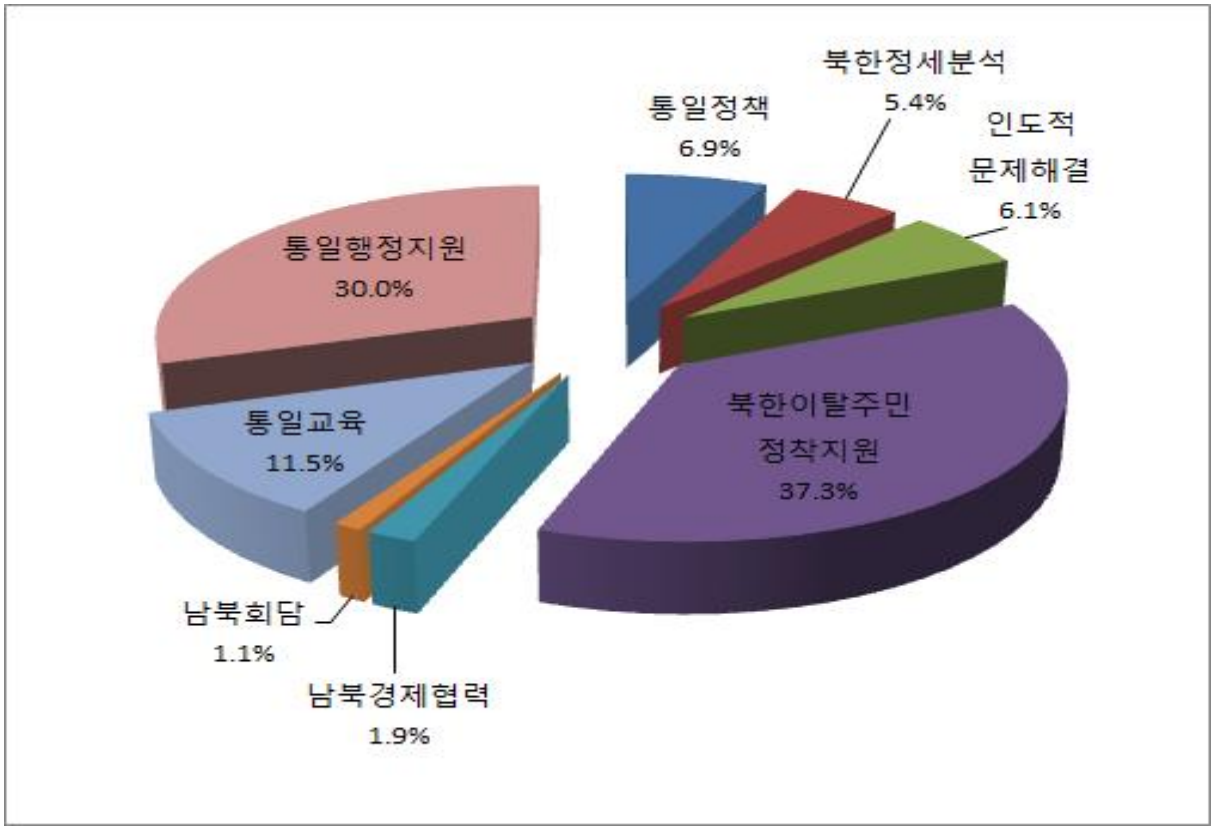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일반예산에서 각 프로그램별 결산 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약 3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통일행정지원 프로그램이 약 30.0%,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약 11.5%의 비중이며, 통일정책 프로그램이 약 6.9%,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약 6.1%, 북한정세분석 프로그램이 약 5.4%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예산의 총 지출액에서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남북회담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1~2%임.

<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프로그램별 결산 지출액 비중 >



자료: 통일부

나. 이월·불용 내역

2024년도 이월액은 34억 4,800만원으로, 총액인건비 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의 이월에 따른 것임.

< 2024년도 주요 이월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내 역	이월액
합 계		3,448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조달청 심의절차 등으로 시공업체 계약 지연	3,160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이월(건축·전기 계약기간 : ~25년)	143
총액인건비 대상·비대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하나원 기본경비	기본경비 이월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15% 범위 내 이월 가능)	145

자료: 통일부

2024년도 불용액은 200억 3,200만원으로, 주요 불용 내역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집행잔액 80억 5,300만원,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집행잔액 13억 7,400만원,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으로 인한 출연금 4억 7,500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55억 2,500만원 등임.

< 2024년도 주요 불용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불용액
합 계		20,032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주거지원금 등 각 분야 정착금 지급액 감소	8,053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하나원 교육생 구호교정비 등 관련 교육훈련비	1,374
북한인권재단 운영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으로 인한 출연금 전액	475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으로 관련 인건비 등 집행잔액	453
기타	인건비 집행잔액, 사업 집행잔액	9,677

자료: 통일부

다. 이용·이체·전용 내역

2024년도 이용은 11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체 내역은 없었으며, 전용액은 5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700만원(35.9%)이 감소하였음.

< 2024년도 이용·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감(A-B)	증감률
이용	합 계	1,167	125	1,042	833.6
	일반회계	1,167	125	1,042	833.6
전용	합 계	583	910	△327	△35.9
	일반회계	583	910	△327	△35.9

자료: 통일부

주요 전용 내역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 등 3억 500만원, 에듀테크(실감형 콘텐츠) 개발 용역 관련 일반연구비 1억원 등임.

< 2024년도 주요 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전용액
합 계		583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일반용역비	305
통일교육 지원체계 및 구축	에듀테크(실감형 콘텐츠) 개발 용역 관련 일반연구비	100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2024북한인권보고서 발간비 관련 일반수용비	40
납북피해자 문제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전금	10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북한방송 위성 수신용 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	10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정보화)	사이버안전센터 CCTV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7
기본경비	기본경비 부내 재조정 등	111

자료: 통일부

라. 예비비 사용

2024년도 예비비 사용 실적은 없음.

4. 2024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 주요 검토내용

가. 총괄검토

□ 통일부 예산 구조의 불안정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 필요

통일부의 2024년도 일반예산 중 북한인권/남북교류협력/통일정책추진 관련 예산은 각각 104억원(5.7%), 68억원(3.7%), 148억원(8.1%)인데, 최근 10년간 예산 규모 및 통일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음.

< 최근 10년간 북한인권/남북교류협력/통일정책추진 예산 변동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일반회계 예산액								비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계획금액 전체)[4]
	통일부	사업비 계	북한인권 관련[1]		남북교류협력 관련[2]		통일정책추진[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5년	229,983	182,467	-	-	6,510	3.6	12,572	6.9	1,234,777
'16년	243,072	193,700	-	-	9,956	5.5	11,193	6.1	1,255,042
'17년	244,762	193,122	13,451	7.4	9,470	5.2	10,769	5.9	958,754
'18년	227,498	172,937	13,826	7.6	5,167	2.8	6,744	3.7	959,266
'19년	219,875	160,640	3,066	1.7	7,268	4.0	7,550	4.1	1,103,583
'20년	218,569	156,423	2,135	1.2	6,527	3.6	8,938	4.9	1,202,991
'21년	229,355	165,477	2,040	1.1	7,997	4.4	13,287	7.3	1,243,070
'22년	230,881	167,407	1,996	1.1	8,468	4.6	14,950	8.2	1,269,046
'23년	223,340	160,675	4,081	2.2	7,633	4.2	15,774	8.6	1,210,118
'24년	222,027	157,874	10,422	5.7	6,754	3.7	14,788	8.1	872,235

주1) 북한인권 관련 : 북한인권 개선 기반구축(단위사업) 예산 합계임
- '16년 북한인권법 제정,'19년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국회 재단 이사 미추천)으로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 감액 편

성, '23년 신규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예산 편성, '24년 신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편성
주2) 남북교류협력 관련 : 남북관계 기반구축(舊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프로그램)+개성공단지원(프로그램)+남북회담본부 운영(단위사업)+남북회담(프로그램) 예산으로 구성
- '18년 회담본부 리모델링 완료(△42억원), '19~'20년 판문점 자유의집 개보수 편성 및 완료, '19년 남북회담 추진 예산 증액, '22년 통일교육원의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 교류협력실로 이관, '23년 교류협력실 폐지로 DMZ평화의길 활성화(걷기)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재이관
주3) 통일정책 추진 : 통일정책(프로그램) 예산 합계
- '18년 통일준비위원회 폐지에 따른 사업 폐지, '21년 통일+센터 지역별 설치 예산 편성
주4)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기금 사업비 전체가 교류협력 지원 예산임. '16년 개성공단 중단으로 '17년 대출수요, 개성공단 지원 관련 경협기반(융자), 경제교류협력대출, 개성공단지원 예산 감액 편성됨.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남북관계 관리, 통일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등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 국가과제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인 기관임.

그러나 통일부의 지난 10여 년간 예산 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북한 인권, 남북교류협력, 정착지원 등 주요 사업 예산 항목의 증감 폭이 매우 크고,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연도별 예산 규모와 중점사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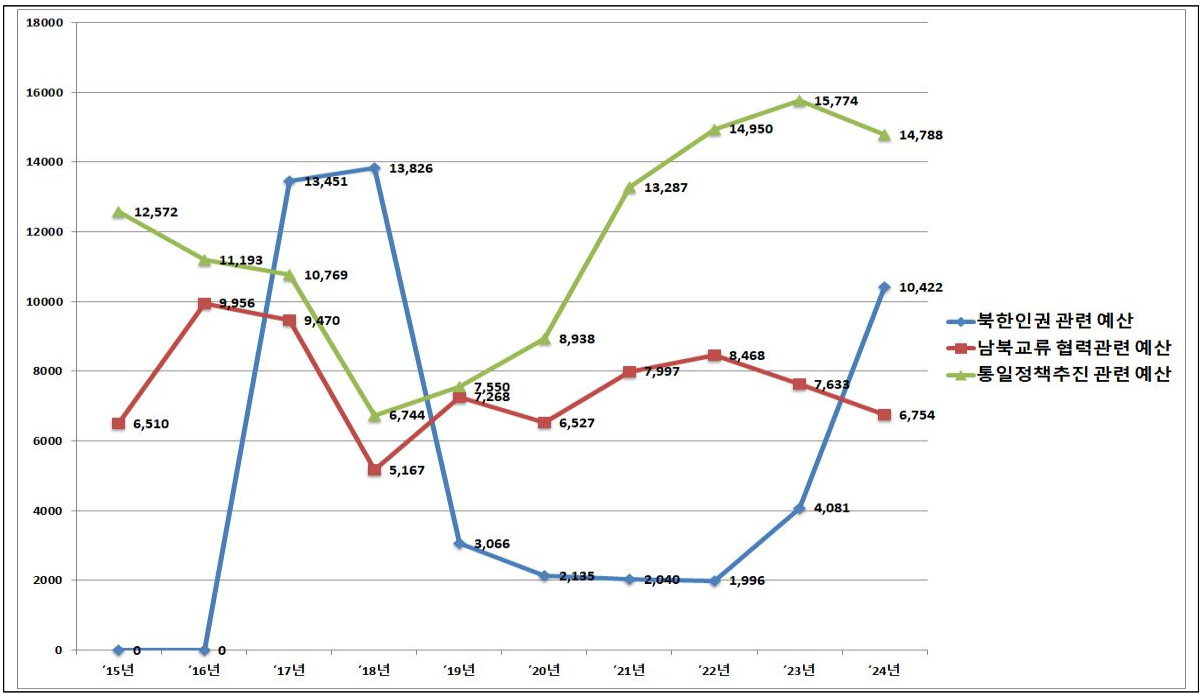
예를 들어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제도 정비와 기록센터 설립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시기가 있었으나, 그 직후 예산이 대폭 축소되거나 사실상 집행되지 않는 시기가 있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도 특정 시기에는 대규모 사업 계획이 편성되었으나,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기금의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남북협력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흐름을 보였음.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책 우선순위 조정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연속적인 사업 운영과 축적된 정책 효과의 축소를 초래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 기반 형성과 국민 신뢰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연결되

고 있다고 할 것임.

< 최근 10년간 북한인권/남북교류협력/통일정책추진 예산 변동추이 그래프 >

(단위 : 백만원)



이와 함께 부처 내부적으로도 잦은 조직 변동으로 인해 정책의 장기 목표 설정과 계획적 집행이 어려워지고, 예산의 집행 효율성 및 사업성과 평가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실·국·과 조직 직제 및 인원 변동 현황 >

(단위 : 명)

구분	본부			소속기관			계
	현황		소계	현황		소계	
2015	직속부서	45	238	남북회담본부(6과)	77	304	542
	기획조정실(4과)	41		통일교육원(6과)	65		
	통일정책실(7과)	6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3팀)	89		
	정세분석국(3과)	28		남북출입사무소(3과)	31		
	교류협력국(5과)	39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9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2과 1팀)	2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8		
				한반도통일미래센터(3과)	25		

구분	본부			소속기관			계
	현황		소계	현황		소계	
2016	직속부서	52	239	남북회담본부(6과)	75	312	551
	기획조정실(4과)	41		통일교육원(6과)	65		
	통일정책실(5과)	4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3팀)	89		
	정세분석국(3과)	28		남북출입사무소(3과)	30		
	교류협력국(4과)	31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7		
	공동체기반조성국(4과)	35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7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1과 1팀)	10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한반도통일미래센터(3과)	25		
2017	직속부서	52	245	남북회담본부(6과)	75	317	562
	기획조정실(4과)	41		통일교육원(6과)	66		
	통일정책실(5과)	3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3팀)	91		
	정세분석국(3과)	28		남북출입사무소(3과)	30		
	교류협력국(4과)	34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7		
	인도협력국(4과)	4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7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1과 1팀)	10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한반도통일미래센터(3과)	27		
2018	직속부서	52	251	남북회담본부(6과)	75	350	601
	기획조정실(4과)	43		통일교육원(6과)	67		
	통일정책실(5과)	3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3팀)	100		
	정세분석국(3과)	28		남북출입사무소(3과)	30		
	교류협력국(4과)	35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3부)	30		
	인도협력국(4과)	4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7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1과 1팀)	10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한반도통일미래센터(3과)	27		
2019	직속부서	52	253	남북회담본부(6과)	75	351	604
	기획조정실(4과)	44		통일교육원(6과)	67		
	통일정책실(5과)	3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3팀)	101		
	정세분석국(3과)	29		남북출입사무소(3과)	30		
	교류협력국(4과)	35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3부)	30		
	인도협력국(4과)	4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7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1과 1팀)	10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한반도통일미래센터(3과)	27		
2020	직속부서	52	272	남북회담본부(5과)	72	335	607
	기획조정실(4과 1팀)	47		통일교육원(6과)	68		
	통일정책실(5과)	4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2팀)	97		
	교류협력실(7과)	52		남북출입사무소(2과)	25		
	정세분석국(3과)	31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3부)	30		
	인도협력국(4과 1팀)	43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7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1과 1팀)	7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한반도통일미래센터(2과)	22		

구분	본부			소속기관			계
	현황		소계	현황		소계	
2021	직속부서	52	277	남북회담본부(5과)	72	336	613
	기획조정실(4과 1팀)	49		국립통일교육원(6과 1팀)	69		
	통일정책실(5과)	4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2팀)	97		
	교류협력실(7과)	52		남북출입사무소(2과)	25		
	정세분석국(3과)	31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3부)	30		
	인도협력국(4과 1팀)	4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7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1과 1팀)	7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한반도통일미래센터(2과)	22		
2022	직속부서	53	300	남북회담본부(5과)	71	316	616
	기획조정실(4과 1팀)	48		국립통일교육원(6과 1팀)	69		
	통일정책실(6과)	4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2팀)	95		
	통일미래전략기획단	9		남북출입사무소(2과)	25		
	교류협력실(6과)	49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2부)	20		
	정세분석국(3과 1팀)	35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인도협력국(4과 2팀)	47		한반도통일미래센터(2과)	22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2과)	10					
2023	직속부서	58	282	남북관계관리단(4과 1팀)	64	254	536
	기획조정실(4과)	45		국립통일교육원(6과 1팀 1센터)	85		
	통일정책실(5과 1팀)	4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2팀)	91		
	인권인도실(6과 1팀)	57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정보분석국(5과 2팀)	50					
	통일협력국(3과 1팀)	30					
2024	직속부서	58	280	남북관계관리단(4과 1팀)	63	251	531
	기획조정실(4과)	44		국립통일교육원(6과 1팀 1센터)	84		
	통일정책실(5과 1팀)	4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3과 2팀)	90		
	인권인도실(6과 1팀)	56		북한인권기록센터(2과)	14		
	정보분석국(5과 2팀)	50					
	통일협력국(3과 1팀)	30					

자료: 통일부

물론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외부 환경 및 대북정세에 따라 예산 배분이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기본 방향은 일관된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중장기 예산 구조 또한 정권 변화에 따른 급격한 증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통일부는 향후 정책 방향 설정 시, 외교안보 등과 함께 중장기적 정책성과 축적과 국민적 공감 형성의 관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도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획기능 강화, 사업평가 기반 예산 운영, 국회와의 정책협의 활성화 등을 통해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통일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153] 등에 따라 작성한 '2024회계연도 통일부 성과계획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임무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2개)-프로그램 목표(8개)-성과지표(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음.

< 통일부 성과관리체계도 >

임 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비 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실현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 표	■전략목표 Ⅰ. 남북간 대화와 교류,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하여 원칙과 실용성·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를 만들어간다 - 프로그램 목표 Ⅰ-1. 원칙에 입각한 남북대화 여건 조성 및 재개, 남북회담 대비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Ⅰ-2.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을 도모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Ⅰ-3. 질서있는 남북 교류를 통해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Ⅰ-4. 질서있는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전략목표 Ⅱ. 통일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을 향한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Ⅱ-1. 통일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Ⅱ-2. 정세분석 역량 강화 및 북한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Ⅱ-3. 2030 통일미래세대 대상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공감대를 확산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Ⅱ-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통하여 자립·자활 기반을 강화한다

153)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통일부가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2024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여 작성한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8개 성과지표 중 목표를 달성한 지표를 6개(75%)임.

< 전략목표 달성 현황 >

전략목표	사업규모 (억 원)	성과지표 목표달성 실적	
Ⅰ. 남북간 대화와 교류,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하여 원칙과 실용성·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를 만들어간다.	413	지표 수	4
		달성/미달성	3/1
		달성률	75%
Ⅱ. 통일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을 향한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1,163	지표 수	4
		달성/미달성	3/1
		달성률	75%
총 계	1,576	지표 수	8
		달성/미달성	6/2
		달성률	75%

< 재원현황 및 비중 >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비중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전략목표Ⅰ : 남북간 대화와 교류,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하여 원칙과 실용성·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를 만들어간다.	12,145	260	8,847	413	26.2
전략목표Ⅱ : 통일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을 향한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1,433	1,207	1,316	1,163	73.8

전략목표Ⅰ은 남북간 대화와 교류,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하여 원칙과 실용성·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이고,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대화 추진 및 회담 대응 역량 강화, 북한 인권증진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 및 원칙있는 인도적 지원, 북한의 변화 유도 및 동질성 회복, 질서있는 교류협력 기반 구축 마련에 중점을 두었음.

전략목표Ⅱ는 통일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을 향한 정책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통일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국내외 공감대 형성, 정세분석 역량 강화 및 북한 정보제공 확대, 2030 대상 통일교육 활성화와 통일 공감대 확산,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음.

이 중 통일부의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략목표Ⅰ의 성과지표 4개 중 3개는 목표를 달성(목표달성률 75.0%)하였으나, 1개(25%)는 그 목표를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북한인권에 대한 인지도 개선'은 예년에 비해 국내 인권단체 지원보다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 증진 활동에 집중하여 일반 국민의 인지도가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그 사유를 들고 있음.

'북한인권에 대한 인지도 개선'은 2024년도에 신규로 도입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인데, 통일부가 그 사유로 들고 있는 것과 같이 국제사회 대상 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다른 이유들도 아울러 작용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그에 따라 대책을 조속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전략목표Ⅱ의 경우도 성과지표 4개 중 3개는 목표를 달성(목표달성률 75.0%)하였으나 1개(25%)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고객만족도' 지표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동 지표는 23년도에 이어 2024년도에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임.

동 프로그램 목표를 위한 세부사업들의 예산 집행률은 약 92%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불안한 국제정세, 북한의 도발 지속 등 대·내외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국민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사업 수행을 통해 전략목표인 고객만족도 제고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외교부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외교부 성과계획서'에서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고, 전세계의 자유, 평화,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한다'를 임무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6개)-프로그램목표(12개)-성과지표(1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외교부 성과관리체계도 >

임 무	외교부는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고, 전 세계의 자유, 평화,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한다
비 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 표	■전략목표 Ⅰ.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Ⅰ-1.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
	■전략목표 Ⅱ.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Ⅱ-1. 아세안·동남아·유럽 및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Ⅱ-2. 중남미·아중동지역 국가와의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외교다변화를 실현한다
	■전략목표 Ⅲ.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Ⅲ-1. UN 등 주요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무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Ⅲ-2. 원자력·비확산·군축 분야 국제협력강화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국제군축·비확산체제강화에기여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Ⅲ-3. SDG 달성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선진적·전략적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Ⅲ-4.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한다
	■전략목표 Ⅳ.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 활동을 지원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Ⅳ-1. 글로벌 중추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 공공외교를 확대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Ⅳ-2.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영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전략목표 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Ⅴ-1. 다자경제외교 및 주요국과의 지역경제외교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Ⅴ-2. 기후·환경·에너지·과학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략목표 Ⅵ.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 프로그램 목표 Ⅵ-1. 외교연구와 교육을 강화하여 역량있는 외교인재를 양성한다

통일부와 유사하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그 임무의 일부로 내세우면서도 그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표체계를 가진 외교부는 전체 15개 성과지표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통일부가 8개 성과지표 목표 중 6개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친 것은 향후 통일부가 그 성과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임.

<전략목표 달성 현황 >

전략목표	사업규모 (억 원)	성과지표 목표달성 실적	
Ⅰ.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131	지표 수	2
		달성/미달성	2/0
		달성률	100%
Ⅱ. Ⅱ. 상생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한다	493	지표 수	2
		달성/미달성	2/0
		달성률	100%
Ⅲ.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20,104	지표 수	4
		달성/미달성	4/0
		달성률	100%
Ⅳ.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813	지표 수	2
		달성/미달성	2/0
		달성률	100%
3.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216	지표 수	3
		달성/미달성	3/0
		달성률	100%
Ⅵ.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111	지표 수	2
		달성/미달성	2/0
		달성률	100%
총 계	21,868	지표 수	15
		달성/미달성	15/0
		달성률	100%

□ 1억원 이상 보조단체의 회계검사 비용 기준 마련 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제2항[154]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외부 회계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42조[155]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2024년도 통일부 소관의 민간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회계검사 비용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단체와 자부담으로 처리한 단체가 혼재되어 있고, 단체별 회계검사 지출액과 보조금 교부액 대비 비율이 다소 편차가 있음.

< 통일부 소관, 1억원 이상 보조사업 및 회계검증 지출 금액 등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보조단체명	보조금 교부액	회계검증 지출 금액	비용지출 (-에서)
납북피해자문제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지원(2133-306)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185	0.9	보조금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	뉴코리아여성연합	140	2.1	보조금

15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6. 2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세부사업명	보조단체명	보조금 교부액	회계검증 지출 금액	비용지출 (-에서)
일 공론화(2135-306)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북한인권정보센터	110	1.7	보조금
	(재)원음방송	102	1.5	자부담
	(사)북한인권	105	1.6	보조금
	(사)유엔인권정책센터	147	2.2	보조금
	(사)탈북자동지회	172	2.6	보조금
	(재)북한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	172	2.6	보조금
	(사)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172	2.6	보조금
	(사)북한개발연구소	150	2.3	보조금
	(사)북한인권시민연합	114	1.7	보조금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2137-301)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100	0.4	자부담
학교 통일교육 강화 (5031-308)	국민대학교	220	0.9	자부담
	이화여자대학교	185	0.7	자부담
	강릉원주대학교	160	1.1	자부담
	동아대학교	185	1	자부담
	한양대학교	180	1.7	자부담
	고려대학교(세종)	180	0.8	자부담
	원광대학교	180	1	자부담
	공주교육대학교	150	0.5	자부담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5031-309)	중앙통일교육센터	183	0.9	보조금
	서울통일교육센터	162	1	보조금
	경인통일교육센터	129	1	보조금
	경남통일교육센터	129	1	보조금
	경북통일교육센터	122	1.1	보조금
사회문화교류 지원 (2040-40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2,398	4	보조금
	남북역사학자협의회	1,088	7	보조금
개성공단 기반조성(3041-40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 (무상)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5,168	15	보조금

자료: 통일부

예를 들어 소규모 단체(탈북자동지회, 보조금 대비 약 1.5%)는 보조금 규모가 큰 단체(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보조금 대비 약 0.17%)에 비하여 회계검사 비용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큼.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2023. 6.)으로 인하여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이 기존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그 대상이 대폭 늘어났지만,

회계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 여부에 대한 사항은 2018년도부터 매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민간보조사업' 항목에서 '보조사업자가 자체 재원으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도 승인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여 왔다고 설명함.156)

하지만, 2024년도 연초 각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보조단체에 개별 통보하는 '보조금 지침'에서는 회계검사 비용 부담에 대해 명시하지 아니한 채 통보하였는 바, 이에 따라,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4년의 경우 단체별로 보조금 또는 자부담 처리 방식이 상이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임.

회계검사는 단순한 보고 절차가 아니라, 보조금 집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사후 통제수단인 동시에 관련 법령에 명시된 공적 의무사항인

156)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pp. 100-107.
나. 보조사업자의 책무
(8)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제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이하 같음)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체재원으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만큼, 통일부는 1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단체별 규모·사업의 복잡성 등을 고려한 회계검사 비용과 그 부담 재원에 관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부서 및 담당자가 이를 숙지하는 한편, 개별 보조단체에 통보하는 보조금 지침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단체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나. 일반회계

(1) 과태료 세입(수납액 100만원)과 관련하여, 2024년도 과태료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한 바, 통일부는 집행 절차와 체납자 관리 강화를 통해 과태료 수납률을 제고하는 등 징수 관리의 실효성 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2) 통일정책추진의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9억 800만원 집행)은 예산 세목별 집행의 불균형과 반복적인 수의계약 집행,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의 집행 투명성·활용방안 부족 등이 확인되어 예산 편성의 정확성, 계약·집행 절차의 엄정성, 조사결과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9억 4,000만원 집행)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당초 사업계획과의 불일치, 세목 조정 등 운영·집행상의 미흡함이 드러나 향후 성과관리 체계와 집행기준의 투명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선 조치가 필요함.

(3) 국내통일기반조성(93억 8,4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내역사업별 예산의 초과집행·불용 및 계획과 실제 집행 간 불일치가 반복되어 예산 집행관리 내실화가 필요함.

(4) 국제통일기반조성의 내역사업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3억 7,300만원 집행)와 관련하여, 고위급 주요국 협력대화는 예산 대비

초과 집행된 반면, 실무급 협력대화가 불용되었는 바, 예산 집행의 탄력성, 협력국 다양성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 실효성 제고와 사업 환류체계 마련,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또한, 동 세부사업에서 단독 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이 반복되어 실질적 경쟁과 공정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기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업 설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계약 구조의 경쟁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봄.

(5)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사업(18억 7,2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북한정보포털의 자료 등록과 업데이트가 수작업 위주로 이루어져 정보의 신속성·시의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인력 보강 또는 AI 기반 자동화 및 데이터 정제 기능 고도화 등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을 통해 정보 제공의 범위와 정확성, 이용자 편의성 제고가 필요함.

(6) 전후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사업(1억 8,5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인 보조금 집행 변경과 내부 회원에 대한 사례비 지급,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생계지원비 집행 등이 나타나 사업계획 관리의 엄정성, 집행의 목적 적합성,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정비가 필요함.

(7)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의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2억 8,4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영상’ 북한인권보고서 제작과 잦은 세목 조정·전용 등으로 예산이 초과 집행되어 사업계획의 충실성 확보와 정규 예산 반영, 보고서 발간의 내실화 방안 검토가 필요함.

(8)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의 내역사업 ‘인도지원 정책개발’(1,900만원 집행)에서 예산이 당초 목적과 달리 소송비용으로 집행되었는 바, 불가피한 돌발 상황에 대비한 예산 구분 및 엄정한 집행 관리로 사업 내실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내역사업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6,000만원 집행)에서도 집행 부진과 전용이 반복되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춘 현실적인 수요 예측과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 내실화 및 집행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9)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12억 9,9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매년 세목조정과 특정 항목의 불용 등 예산 집행의 부적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전년도 실집행 실적을 반영한 적정예산 편성으로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강화가 필요함.

(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사업 중 정착금 지급 사업(85억 4,6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률이 2022년 99.5%, 2023년 83.6% 및 2024년 72.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금 프로그램을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새로운 정책 대상자들에게 제도개선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동 사업이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국내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결산잉여금 규모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결산잉여금이 2022년 28억 600만원 대

비 약 50%(14억원)가 증가한 42억 600만원에 달하였는 바, 향후 동 재단에 대한 과도한 출연금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각 사업의 실제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출연금 예산 편성에 임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12)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사업(5억 8,7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회계년도 개시 약 10일 만에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사업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연수 예산 4억 2,700만원을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사업으로 내역변경하였는 바, 향후 통일부는 신규 예산 편성시 새로운 정책대상 발굴 등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편성된 예산이 소극적·편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13)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46억 1,600만원)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예산 2,000만원을 2023년 및 2024년에 전액 집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한정된 국가 예산이 집행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14)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파견관 행정비용(1,900만원)이 사업 재개 없이 매년 반복 편성 및 불용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바, 통일부는 파견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예산을 기계적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인력 계

획 수립 등 실현 가능성에 기반한 예산 운영과 관리 강화가 필요함.

(15)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2억 9,400만원 집행)와 관련하여, 집행액 2억 9,400만원 중 7,800만원을 2023년에 사업이 종료된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주요사업비) 소요 경비로 집행하였는 바, 통일부는 기본경비의 성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주요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기본경비 등의 예산이 활용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다. 남북협력기금

(1)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사업(35억 3,1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업무를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157]에 위탁하였으나, 권한의 위탁은 법률이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의 근거 법률(모법)에 명시적인 위탁 근거를 두어야 하는 바,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사업(90억 9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지급한 자재·장비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여 통일부는 원고에게 원금의 1.3배에 달하는 지연손해금 51억 4,200만원 등 총 90억 900만원의 배상금을 집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통일부 및 예산당국의 소극행정으로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점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DMZ 통합시스템 운영 사업(4억 7,4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DMZ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소요경비가 4억 8,3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어도 2023년 10월 5일 이전에 인지하였음에도 국회의

157)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상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함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를 감액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소요액을 과다편성(7억 6,100만원)하여, 나머지 금액 2억 8,700만원이 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향후 통일부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4) 판문점견학 통합운영 사업(11억 9,2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2023년 7월 미군 병사 무단월북 사건 직후 판문점 견학이 전면 중단 이후 그 재개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최근 5년 내 최고 금액을 2024년 계획액으로 편성하여 대규모 불용액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는 바, 향후 통일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국회의 심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변화된 상황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소요경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Ⅱ.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별 검토

1. 세 입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14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6% 감소한 14억 9,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3억원이 수납(징수결정액 대비 87.0% 수납)되었으며, 1억 9,400만원은 미수납됨.

< 2024년도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2024	1,448	1,494	1,300	89.8	87.0	-	194
2023	2,006	2,185	1,937	96.5	88.6	-	249
증감율	△27.8	△31.6	△32.9	-	-	-	△22.1

자료: 통일부

수납액 세부내역은 건물대여료 등 재산수입 4억 3,1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경상이전수입 8억 3,000만원, 오두산통일전망대 입장료수입 등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3,900만원임. 오두산통일전망대는 2024년부터 입장료가 무료화되었으나, 2023.12월 입장료 3,000만원이 2024.1월에 세입처리되었음.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체납자 재력 부족 및 거소 불명, 지자체 국고보조금 반납절차 지연 등 1억 9,400만원임.

< 2024년도 세입 미수납액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명		내 용	미수납액
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보조금 등 발생이자	0.2
	과태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9.7
	가산금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0.9
	기타경상이전수입	소송비용 및 지자체 국고보조금 반납절차 지연	183
합 계			194

자료: 통일부

□ 수납률이 저조한 과태료의 수납률 제고 필요

통일부의 2024년도 과태료(56-563) 세입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1,1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000만원이 미수납 되었음.

< 최근 4년간 과태료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21	10	10	-	10	46	38	380.0	82.6	8	-
'22	10	10	-	10	8	6	60.0	75.0	2	-
'23	10	10	-	10	10	4	40.0	40.0	6	-
'24	10	10	-	10	11	1	10.0	9.1	10	-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158]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2024년도의 과태료 부과 내역은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에 대한 200만원 등 총 11건 1,120만원이며, 이 가운데 9건 970만원이 미수납된 것임.

15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2024년 과태로 부과 내역 >

구 분	납부자(단체)	금 액	부과사유	미수납사유
과태료	윤○○	50만원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
	양○○	100만원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
	진○○	50만원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과태료 재판 진행중
	손○○	200만원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과태료 재판 진행중
	권○○	100만원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과태료 재판 진행중
	김○○	100만원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과태료 재판 진행중
	이○○	100만원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과태료 재판 진행중
	한○○	100만원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과태료 재판 진행중
	조○○	100만원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과태료 재판 진행중
	이○○	200만원	재외국민 방북신고의무 위반	단순 미납
	동○○○	20만원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단순 미납

자료: 통일부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서,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 확립과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수단인바, 이에 대한 징수 실적이 저조할 경우 제재의 실효성 저하 및 행정질서 이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통일부는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하나,

징수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납이 이행되지 않고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 상황은 징수 관리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부서의 수납 독려 및 체납자 관리, 필요시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실질적인 후속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통일부는 과태료 징수에 있어 징수결정 이후 집행 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추징 노력을 통해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통일정책(1000 프로그램)

가. 개 요

통일정책 프로그램은 통일 및 통합 대비 정책 개발·연구, 북핵·평화구축 정책 수립 등 통일대비 중장기 통일정책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국민·국제사회 대상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반사업 추진 등 국내외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화통일기반조성 1개 단위사업에 3개 세부사업(통일정책추진, 국내통일기반조성, 국제통일기반조성)으로 이루어져 있음.

< 2023년도 통일정책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15,537	14,788	14,788	14,789	13,640	13,574
□평화통일기반조성(1031단위사업)	15,537	14,788	14,788	14,789	13,640	13,574
○ 통일정책추진(300)	3,090	2,049	2,049	2,049	1,848	1,756
○ 국내통일기반조성(301)	9,726	10,144	10,144	10,143	9,384	8,741
○ 국제통일기반조성(302)	2,721	2,595	2,595	2,597	2,408	3,077

자료: 통일부

평화통일기반조성 단위사업에서 각 세부사업이 차지하는 결산 지출액 비중을 보면,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이 68.8%,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이 17.7%, 통일정책추진 사업이 12.9%를 차지하고 있음.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통일정책추진(1031-300)

통일정책추진 사업은 남북 통합을 위한 중장기적 통일정책을 마련하고, 통합과정에 필요한 법·제도 준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0억 4,900만원 중 18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고, 2억 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통일정책추진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49	2,049	-	±75	2,049	1,848	201	90.1	90.1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통일 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사업에 9억 800만원,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에 9억 4,0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통일정책추진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통일정책추진	2,049	2,049	±75	2,049	1,848	201
· 통일 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999	999	±27	999	908	91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50	1,050	±48	1,050	940	110

자료: 통일부

(1)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 세목별 초과집행·불용 등 예산 집행의 불균형 해소 필요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은 통일 이후 통합까지 대비하기 위한 제도·법제 마련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여론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2024년도 집행률은 90.9%로 양호한 편이나, 세부 항목별로 초과집행 또는 불용이 반복되어 편성의 정확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미흡한 측면이 확인됨.

<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의 예산(편성) 및 집행 실적 >

(단위: 백만원, %)

사업내용		예산계획	집행실적	집행률
1. 대북·통일전략 기획 및 법제 체계화 추진		**425**	**389**	**91.5**
	남북 통일·통합 정책·법제개발 및 해외사례 연구용역	259	221	85.3
	통일·통합 관련 연구 네트워크 구축	93	109	117.2
	심사·평가비 및 회의 준비비 등	33	39	118.2
	통일연구DB 유지보수 및 전산장비 구입	40	20	50.0
2. 통일·통합 준비 및 공론화		**164**	**164**	**100.0**
	전문가 네트워크	32	30	93.8
	통일·통합 준비 확산	130	133	102.3
	관계부처 유관기관 협의 등	2	1	50.0
3. 북핵·평화체제 구축 정책 수립		**80**	**77**	**96.3**
	전문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	12	18	150.0
	북핵·평화체제 조성 관련 연구용역	30	50	166.7
	평화·공감대 확산	38	9	23.7
4. 남북관계발전 정책포럼		**30**	**12**	**40.0**
5.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300**	**266**	**88.7**
계		**999**	**908**	**90.9**

자료: 통일부

세부적으로 ‘통일·통합 관련 연구 네트워크 구축’(집행률 117.2%), ‘심사·평가비 및 회의 준비비’(118.2%) 등은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집행된 반면, ‘통일연구DB 유지보수 및 전산장비 구입’(50.0%), ‘남북관계발전 정책포럼’(40.0%) 등은 집행이 저조한 바, 계획과 실집행 간 괴리가 발생하였음.[159]

주요 세목별로도 여비 및 자산취득비는 전액 또는 대부분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세목 간 예산 운용이 계획과 달리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

<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의 주요 세목별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계획액 대비)
	계획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일반수용비(210-01)	**132**	21	153	**153**	115.9
임차료(210-07)	**35**	6	41	**40**	114.3
일반용역비(210-14)	**159**	△26	133	**133**	83.6
국내여비(220-01)	**4**	-	4	**2**	50.0
국외여비(220-02)	**17**	-	17	**1**	5.9
사업추진비(240-01)	**22**	-	22	**22**	100.0
자산취득비(430-01)	**20**	-	20	**0**	0.0

자료: 통일부

일반용역비(1억 5,900만원) 중 2,600만원은 일반수용비 등으로 세목조정 후 집행되었고, 국외여비의 경우 당초 ‘통일·통합 관련 연구 네트워크 구축’

159) 통일부는 중장기 통일·대북정책 수립, 미국 대선 및 미중 갈등 등 한반도 정세 변화로 인한 자문이 증가하였고, 글로벌 통일인식조사(2024년 신규사업) 관련 자문 필요, 학술회의 다수 개최 등으로 인해 관련 사업비가 초과 집행된 반면, ‘남북관계발전 정책포럼’의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지원·보강하고 남북관계발전 사항에 필요한 자문을 수행하고자 편성되었는데, 자문 수요 감소로 인한 사례비 집행이 저조하였고, 회의개최 장소를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 등 부내 시설 이용으로 임차료 절감 등으로 예산대비 집행액이 저조하였다는 설명임.

의 해외사례 조사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출장 취소[160]로 인해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불용되었으며,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도 '통일연구DB의 기능 개선 및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다가 물품 구매 수요가 없어 전액 불용됨.

이러한 집행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소요 예측이 면밀하지 못했고, 연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세목 조정이 이루어져 집행관리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을 시사함.

따라서 통일부는 불용되거나 초과 집행되는 세목(자산취득비, 국외여비 등)은 면밀히 분석하여 실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일반용역비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부터 세부 계약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요구 및 편성의 근거자료를 관리하여 편성과 집행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60) 당초 통일연구원 및 서울대학교와의 공동 일정(2024. 4.20.-4.28. 이탈리아)으로 계획되었으나, 동 기간 중 주요 현안 업무(글로벌 통일인식조사,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수립)와 일정이 중첩됨에 따라 일정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장을 취소하고, 이후 다시 해외사례 조사를 시도하지 않은 바, 그 긴요성이 떨어지는 국외출장을 편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반복적인 수의계약 집행 지양 및 수의계약 요건 사전점검 필요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에 편성된 일반용역비(210-14) 1억 5,900만원 중 83.6%에 해당하는 1억 3,300만원이 총 6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됨.

<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의 일반용역비(210-14)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계약명	발주금액	계약금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 유형	수의계약 사유
통일부 장관-4대 연구원장 특별좌담회 행사 대행	22	22	스피언스	'24.2.~ '24.2.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제5호가목2)
통일부 장관-4대 연구원장 무대 환경 조성	22	22	린커	'24.2.~ '24.2.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제5호가목2)
'새로운 통일담론'의견 수렴을 위한 청년캠프 행사 대행	49	49	컨빈인 코리아	'24.5.~ '24.7.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제5호가목 5)가)
제77회 세계여론조사학회 연례 국제학술회의 세션 운영	10	10	성균관 대학교	'24.7.~ '24.8.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제5호가목2)
한국정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세션 운영	10	10	한국 정치학회	'24.8.~ '24.9.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제5호가목2)
통일부-대한변협 공동 학술세미나 관리,운영	20	20	국민 대학교	'24.11.~ '24.12.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제5호가목2)
계	**133**	**133**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161] 등을 근거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이

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은 집행상의 편의를 우선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용역 규모는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900만원이었으며, 특히 연초에 실시한 <통일부장관-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이하 '신년 좌담회')의 경우, 하나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무대환경 조성'과 '행사대행' 용역을 각각 2,200만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음.

신년 좌담회는 2024년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계획에 없던 사업으로, 2024년 1월 중순 사업추진이 보고된 후 약 보름만인 2월 5일에 실시되었는데, 통일부는 2023년 12월말 북한이 기존의 남북 합의를 파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것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새로운 통일담론' 마련 등을 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시급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피했으며, 용역의 내용과 성격이 상이하여 각각 분할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그러나, 단일 목적의 행사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의 '분할계약 금지' 원칙에 따라 일괄계약 및 일괄집행이 타당하고,[162] 인위적 분리계약은 경쟁입찰의 회피이자 수의계약 남용으로 보여질 수 있음.

---

1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6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및 각종 집행기준 등에서는 "동일 또는 밀접 일체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일괄 발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신년 좌담회'처럼 하나의 행사 수행을 위해 무대조성과 운영 전반(행사진행/지원/프로그램 등)이 한 세트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계약 형식보다 실제 실체(행사 전체의 단일 목적)가 더 우선한다고 봄.

또한 일반용역비(4,400만원)와 함께 장소 임차료(2,200만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된 바, 이와 같은 수의계약 방식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긴급성' 요건 역시 「국가계약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불가피·예측불가한 긴급사유, 위기발생 등)에 부합해야 하며, 단순히 행사 일정이 촉박하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통일부장관-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 >

1. 행사 개요

o (일시·장소) '24. 2. 5.(월),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6층)

o (행사명) 통일부장관 - 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o (주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2024년 정세환경 평가 및 전략 구상

o (진행 순서) 좌담 및 질의응답 * 영어 동시통역 지원

14:30~15:00	**사전 환담**	
15:00~15:10	**개회식**	* 사회 : 이영아 아나운서(UniTV)
	개회선언,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장관 모두말씀	
15:10~16:30	**특별 좌담회**	
15:10~15:50	[1세션] 2024년 정세환경 평가	
15:50~16:30	[2세션] 2024년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16:30~17:00	**국민과의 대화**	* 사전 질문 취합

2. 홍보 계획

o (對언론) △보도자료 배포(1.29.) △현장 취재 지원

o (온라인) △통일부·4대 연구원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당일 유튜브 생중계 △촬영분 편집 및 추후 활용

o (행사 초청) 총 100석 규모

- △내·외신 기자 △주한대사관 관계자 △유관단체(평통, 민통, 자총 등) △통일부 관련 청년세대(20·30자문단, 대학생기자단 등)
- URL을 통한 사전 참석자 등록 및 질문 접수 실시

자료: 통일부

< '통일부장관-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비 목	사업 내용	집행액
일반수용비(210-01)	사례비(4대 연구원장)	2
임차료(210-07)	포시즌스호텔	22
일반용역비(210-14)	린커(무대환경 조성 용역)	22
	스피언스(행사대행 용역)	22
합 계		68

자료: 통일부

따라서 신년 좌담회의 경우 단순히 '긴급성'이 요구되어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기보다는, 계약금액 분할을 통한 입찰절차 회피 등 관련 규정과 계약 투명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처리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향후 통일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도 법령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의계약 사유별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 등 사업 실무자가 긴급성·소액계약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실효성 확보 및 활용방안 모색 필요

내내역사업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는 세계 주요 8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 북핵, 북한인권 등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파악하고 통일 공공외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2024년 신규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의 일반연구비 3억원 중 2억 6,600만원이 집행됨(집행률 88.7%).[163]

<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사업 개요 >

o 조사 목적: 세계 시민의 한반도 통일 인식 및 지지 여론 파악
o 조사 대상: 8개국 18세 이상 성인 9,223명(△미국 2,000명 △미국 외 각 1,000명 기준) * 미국·영국·호주·일본·독일·프랑스·베트남·폴란드
o 조사 일시 및 횟수: 2024.9.13.~10.4. 국가별 1회
o 조사 방식: 국가별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온라인 웹 조사
o 조사 주관: 통일연구원
o 조사 수행: ㈜한국갤럽조사연구소
o 표본추출 방식: 각 국가별로 해당 국가의 18세 이상 인구 모집단 정보를 반영, 성·연령·권역별 할당 추출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파악하고 통일공공외교의 글로벌화를 위한 첫 시도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함.

163) 8개국 총 9,223명의 응답자 중 한국을 방문한 비율은 15.4%로 대다수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한국의 위치를 인지한 비율(73.2%)로 미루어볼 때, 한국의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한 기본적 상식을 가진 응답자로 파악됨. 동 조사결과의 요약은 붙임 [참고자료] 참조.

동 사업은 총 사업비를 일반연구비로 계약하여 집행한 바, 인건비, 조사비, 회의비, 자문사례비, 임차료 등 다양한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각 항목별 산출 근거와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행의 투명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전체 예산의 65.8%에 해당하는 조사비(1억 7,500만원)는 국가별 응답자 1인당 단가, 문항별 비용 등 산출근거가 불명확하여 그 적정성 검토가 곤란하고, 책임연구원 등 인건비(2,400만원), 수용비(1,700만원) 등과 한국갤럽의 조사수행비, 기타 비용 간의 관계 및 구조도 모호함.

<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 분	산출내역	집행액	세부 집행 내역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인건비	책임연구원 등	24	책임연구원 등 인건비
	경비	수용비	17	조사수행비(한국갤럽)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결과발표회 개최 (사례비, 통역, 임차료, 다과비 등) 보고서 발간 및 인쇄비 출장비 자문사례비 등
		사업인건비	5	
		임차료	5	
		여비	4	
		자문사례비 등	15	
		회의비	9	
		조사비	175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11	(인건비+경비)의 6% 이내
합 계			**266**	

자료: 통일부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조사비에 국가별 조사 단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온라인 웹조사의 특성상 국가별 조사 인프라 및 조사 환경 등이 상이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한편, 베트남의 경우 고학력 응답자가 과대 표집되는 등 표본 설계가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해 통일부는 조사과정에서 국가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성별·연령별·권역별 비례 표본 추출을 하였지만, 베트남의 경우 온라인 접근성에 학력 격차가 존재하여 고학력(고졸 및 대졸) 비율이 모집단에 비해 과표집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설명함.

아울러, 조사 결과는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의 글로벌화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나, 향후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단순한 국제 여론조사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계획과 활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조사비, 인건비 등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에 대한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표본 설계와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결과의 정책 반영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국회 예산심의 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봄.

[참고자료] 2024글로벌 통일인식조사

< 국가별 조사인원, 문항 내용 등 >

구분	표본		국가별 문항	공통 문항(4)
	배분	완료주)		
미국	2,000	2,024	미북대화 및 북한의 공격 가능성	- 통일에 대한 국제여론(남북한 통일의 당위성, 가능성, 바탕이 되어야 할 체제 등) - 북핵문제 및 비핵화 이슈(북한의 핵개발, 비핵화 실현가능성, 핵개발의 위협인식 등) - 북한인권 문제 및 탈북민 사안(인권 침해상황 및 탈북민에 대한 인식 등) - 유관국 인식 및 국가이미지(남북한에 대한 인식 등)
일본	1,000	1,087	북일 관계 현안	
호주	1,000	1,002	한국과의 관계, 한국의 다자안보협력체 참여	
영국	1,000	1,019	대북 제재, 북아일랜드 분쟁의 시사점	
프랑스	1,000	1,015	한-나토 협력, 남북단일팀에 대한 의견	
독일	1,000	1,030	독일 통일요인 및 통일 이후 사회발전정도, 통일 경험에 대한 의견	
폴란드	1,000	1,025	체제전환 경험,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의견	
베트남	1,000	1,021	한국에 대한 지식, 한-베트남·아세안 협력에 대한 의견	
계	9,000	9,223		

주: 조사결과 품질 제고를 위해 표본을 초과 확보하고 오류 및 불완전 데이터를 정제한 후 성/연령/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표본수에 맞춤.
자료: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요약

< 국가별 주요 결과 요약 >

국가	통일 지지율	통일가능성 긍정	북핵위협 인식	북핵포기 필요성	북한인권 인식	한국이미지 긍정	북한이탈주민 인식
베트남	65.3% (최고)	65.3% (최고)	59.5%	59.9% (최저)	37.9%	65.2% (최고)	78.4% (최고)
독일	57.2%	44.5%	51.2%	60.9%	25.9%	37.7%	49.1%
프랑스	56.0%	44.5%	59.2%	62.9%	54.2%	52.0%	53.9%
폴란드	52.6%	40.3%	61.9%	69.2%	46.1%	42.6%	64.7%
영국	48.6%	33.6%	60.8%	70.9%	29.3%	57.4%	51.2%
호주	48.5%	33.6%	63.2%	71.7%	26.1%	58.7%	50.3%
미국	47.1%	39.4%	69.7%	66.9%	28.0%	45.0%	44.7% (최저)
일본	27.4% (최저)	13.3% (최저)	71.7%	74.6% (최고)	13.7%	16.4% (최저)	55.8%

자료: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요약

< 국가별 특징 및 시사점 >

조사국	국가별 특징	시사점
베트남	통일 지지율·가능성 모두 1위, 북한이탈주민 인식도 매우 높음, 자유민주주의 체제 선호는 가장 낮음.	- 남북한 통일의 글로벌 지지율은 약 50%. - 통일 장애요인: 사회·문화적 이질감(39.5%), 북한 핵개발(33.8%). - 통일의 핵심 가치: 자유·인권 증진(39.1%), 안보위협 해소(21.7%), 세계평화 기여(14.6%). - 통일 필요요소: 북한 핵개발 포기(33.4%), 남북 군사적 대치 완화(23.4%), 자유주의 가치 확산(17.5%). -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57%가 부정적, 북핵 대응방안으로 외교적 협상(39.0%)과 경제제재(26.3%) 선호. - 한국의 핵무기 개발·도입에 대해 과반(50.2%)이 반대. - 북한인권 인식은 정부 비판 불허(74.8%), 언론 자유 침해(73.5%)에 대해 높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베트남(78.4%), 폴란드(64.7%) 높고, 미국(44.7%), 독일(49.1%) 상대적 낮음. -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베트남, 호주, 영국 순 -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본, 영국, 호주 순
독일	분단 경험국, 통일에 대한 공감대 높음, 세대·지역별 인식 차 존재.	
프랑스	통일 지지율·가능성, 북핵 위협 인식 모두 높음, 인권 인식도 높음.	
폴란드	체제전환 경험국, 북한 및 통일 문제 이해도 높음, 북한이탈주민 인식 높음.	
영국·호주	통일 지지율 50% 내외, 북핵 위협 인식 높음, 인권 인식은 낮음.	
미국	통일 지지율 47.1%, 북핵 위협 인식 매우 높음, 북한이탈주민 인식은 최저.	
일본	통일 지지율 27.4%로 최저, 북핵 위협·비핵화 필요성 인식 가장 높음,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81%.	

자료: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요약

(2)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통일 미래전략의 구상 및 수립,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직속의 민간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2024년도에는 10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9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고(집행률 89.5%), 1억 1,000만원이 불용됨.

동 사업은 ①위원회 및 분야별 전략그룹 운영, ②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및 1.5트랙(민관 협력) 운영, ③정책연구용역 과제, ④정책 공감대 형성, ⑤운영비 등 5개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고, 세부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4년도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 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위원회 및 분야별 전략그룹 운영	264	258	97.7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및 1.5트랙 운영	451	366	81.2
정책연구용역 과제 위촉	150	147	98.0
정책 공감대 형성	150	147	98.0
운영비	35	22	62.9
계	**1,050**	**940**	**89.5**

자료: 통일부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의 실질적 성과 제고 필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전체회의 2회(3.15, 9.6.), 위원장단 회의 5회(2.13., 3.29., 4.29., 6.10., 9.13.), 특별위원회 회의 3회(4.24, 5.2., 5.20.), 각 분과위원회별 3회(4.3~4.12., 7.23.~8.29., 10.10~10.23.) 등을 개최하고, 회의비로 총 6,459만원을 집행함.

2024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통일담론'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8.15 통일 독트린> 발표 이후에는 국내외 공론화를 위해 위원회가 개최한 회의 및 예산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 '8.15 통일독트린' 수립 이전,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일자	참석위원	회의 내용	집행액
1차 전체회의		**3.15.**	**위원장 등 35명**	**· 새로운 통일담론 관련 논의 · 2기 위원회 운영방향 등**	**14,093**
위원장단 회의		3.29.	위원장 등 6명	·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 방향 등	2,050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정치·군사	4.3.	분과위원장 등 8명	· 새로운 통일담론 위원회 자문 등	2,100
	경제	4.12.	분과위원장 등 5명		1,526
	사회·문화	4.9.	분과위원장 등 8명		2,470
	인권·인도	4.12.	분과위원장 등 7명		2,465
	국제협력	4.12.	분과위원장 등 6명		1,570
특별위원회 회의		4.24.	특위위원장 등 11명	·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3,520
특별위원회 회의		5.2.	특위위원장 등 11명	·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1,650
특별위원회 회의		5.20.	특위위원장 등 8명	·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2,500
위원장단-특위 합동회의		5.29.	위원장 등 11명	·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2,931
위원장단 회의		6.10.	위원장 등 6명	·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1,695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정치·군사	7.29.	분과위원장 등 4명	· 향후 통일담론 공론화 방향	1,605
	경제	8.8.	분과위원장 등 8명		2,155
	사회·문화	7.25.	분과위원장 등 6명		2,615
	국제협력	7.23.	분과위원장 등 7명		1,158
				계	**46,103**

자료: 통일부

< '8.15 통일독트린' 수립 이후,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일자	참석위원	회의 내용	집행액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인권·인도	8.29.	분과위원장 등 7명	· 향후 통일담론 공론화 방향	1,620
2차 전체회의		**9.6.**	**위원장 등 28명**	**·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 위원회 운영방향 등**	**6,220**
위원장단 회의		9.13.	위원장 등 5명	·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및 공론화 방향	1,319
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정치·군사	10.16.	분과위원장 등 7명	· 통일 독트린 공론화 및 후속조치 추진방향	2,277
	경제	10.10.	분과위원장 등 6명		1,986
	사회·문화	10.16.	분과위원장 등 7명		2,277
	인권·인도	10.23.	분과위원장 등 6명		1,651
	국제협력	10.21.	분과위원장 등 5명		1,188
				계	**18,488**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위한 의견수렴 및 <8.15 통일 독트린> 수립[164] 이후 활동에 총 6억 8,100만원(회의비 6,459만원 포함)을 집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을 위하여 장관 주재 '수요포럼', '통일이 있는 저녁' 등의 간담회를 포함하여 3억 2,800만원,[165] <8.15 통일 독트린> 수립 이후에는 국내외 공론화 및 후속조치를 위하여 지역순회 공론화 5,000만원, 학술세미나 8,600만원, 국외 출장 1억 9,800만원 등 3억 5,300만원을 집행함.

164) 2024년 윤 前 대통령은 '3.1절 기념사' 발표 직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됐다면서 '새로운 통일관'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통일부장관도 대통령 업무보고(2024. 3. 8.)에서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음.이후 1994년 김영삼 정부 시기 이후 30년째를 맞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대체에 방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견해를 수렴하는 각종 행사를 추진하였는 바, 통일부 장관은 각계각층과의 만남에서 새 담론의 키워드로 '자유'와 '인권'을 제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165) 붙임 참고자료 <2024년도 '8.15 통일독트린' 수립 이전, 의견수렴 및 공론화 추진을 위한 집행> 참조.

이와 같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음.

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8.15 통일독트린> 내 정책 항목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증빙 등과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즉, 회의 개최 실적만으로는 질적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공론화 활동(지역순회 공론화 용역, 학술세미나, 국외출장 등) 추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국민적 공감대가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이 부족함.

따라서 정책 완성도 제고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를 갖추고, 행사 참여자 수, 언론보도 분석, 정책 전후의 여론 변화 등을 종합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향후 실질적인 통일정책 개발 및 공론화의 중심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첫째, 위원회의 활동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지표(예: 정책 반영 실적률, 국민 공감도, 국제지지 확보 정도 등)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성과 평가와 피드백 과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둘째, 각 분야별 전문가 논의가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오프라인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 활용, 주요 오피니언 리더와의 전략적 협력 등 공론화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항목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그 필요성과 규모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 관리의 엄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자문기구 예산의 집행 적정성 제고 필요

2024년 상반기에 통일부는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을 위하여 '수요포럼'과 '통일이 있는 저녁' 등 다양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추진하였는데,

붙임 <참고자료: 2024년도 '8.15 통일독트린' 수립 이전, 의견수렴 및 공론화 추진을 위한 집행>과 같이, 제5차 통일이 있는 저녁(5.2) 및 별도 용역사업인 '청년들이 그리는 통일미래 캠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동 내역사업 예산에서 집행됨.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수요포럼'은 정책자문위원, 정치외교 전문가, 북한인권단체, 언론사 정치부장, 경제·법조·교육계 주요 인사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수요일[부처님오신날(5월 15일)과 장관 외부행사(5월 22일, 6월 19일) 제외], 총 14차례에 걸쳐 주로 특정 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일부 회차는 조찬 비용 외에 호텔 임차료, 전문가 사례비가 포함되어 회당 집행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기도 하였음.

< '8.15 통일 독트린' 수립을 위한 '수요포럼' 계획(안) >

날짜	대상	날짜	대상	날짜	대상
3.13.	정책자문위원(시니어급)	4.3.	언론사 정치부장	4.24.	통일 원로
3.20.	탈북민	4.11.	4대 연구원장	5.1.	국회 외통위 여야 간사단
3.27.	북한인권 단체	4.17.	청년	5.8.	…

자료: 통일부

< '8.15 통일 독트린' 수립을 위한 '수요포럼'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차수	날짜	외부 주요 참석자	장소	집행 금액
제1차	3.13. (수)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김○호(정책자문위원장, 국방대 부총장), 김○수(서강대 명예교수), 서○구(前 대통령실 비서관), 이○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훈(前 통일연구원장)	코리아나 호텔	2,194[주1)]
제2차	3.20. (수)	▪ 정치·외교분야 주요 학회장 : 조○순(한국정치학회장), 마○윤(한국국제정치학회장), 김○호(한국정치사상학회장), 박○호(한국정당학회장), 조○현(차기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	달개비	1,330[주2)]
제3차	3.27. (수)	▪ 외교안보 주요 원로 : 김○우((사)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하○선(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최○석(이화여대 명예교수), 유○열(고려대 명예교수), 김○한(前 국가안보실장)	코리아나 호텔	2,845
제4차	4.3. (수)	▪ 전직 언론인 : 김○기(조선일보), 박○균(동아일보), 박○희(중앙일보), 이○희(서울신문), 오○석(연합뉴스)	코리아나 호텔	2,127
제5차	4.12. (금)	▪ 북한학 전문가 : 박○철(대전대 객원교수), 고○환(동국대 명예교수), 동○승(굿파머스 사무총장), 이○현(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현(북한연구학회 회장)	코리아나 호텔	2,280
제6차	4.17. (수)	▪ 외교안보 전문가 : 이○조(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한○섭(국방대 명예교수), 이○종(성균관대 특임교수), 강○영(한국외대 교수), 안○현(서울시립대 교수)	코리아나 호텔	2,104
제7차	4.24. (수)	▪ 외교안보 전문가 : 남○욱(고려대 교수), 이○현(세종연구소 소장), 전○성(서울대 교수), 박○휘(이화여대 교수), 성○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코리아나 호텔	2,280
제8차	5.1. (수)	▪ 정치 원로 : 유○수(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 정○철(대한민국헌정회 회장), 황○여(법무법인 황앤씨 대표변호사), 이○제(이○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코리아나 호텔	1,849
제9차	5.8. (수)	▪ 경제6단체 부회장단 : 김○범(한국경제인협회), 박○준(대한상공회의소), 이○호(한국무역협회), 정○모(중소기업중앙회), 이○근(한국경영자총협회), 이○준(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리아나 호텔	1,480
제10차	5.16. (목)	▪ 법조계 인사 : 문○남(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안○호(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김○훈(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지○우(한국헌법학회 회장), 송○호(한동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코리아나 호텔	2,104
제11차	5.29. (수)	▪ 교육계 단체장 등 : 여○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직무대행), 오○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 이○원(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이○봉(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권○희(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코리아나 호텔	1,480

차수	날짜	외부 주요 참석자	장소	집행 금액
제12차	6.5. (수)	▪ 인문·사회 전문가 : 윤○중(한신대 명예교수), 함○희(이화여대 교수), 이○우(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김○섭(연세대 교수), 박○희(이화여대 교수)	코리아나 호텔	2,131
제13차	6.12. (수)	▪ 통일·북한 관련 대학 총장·부총장 : 정○렬(국민대), 김○미(이화여대), 이○규(고려대), 정○철(한양대), 윤○웅(동국대), 양○진(북대)	코리아나 호텔	1,480
제14차	6.26. (수)	▪ 외교안보 전문가 : 김○현(중앙대 명예교수), 진○수(세종硏 일본연구센터장), 이○남(고려대 교수), 신○식(서울대 교수), 신○철(前 국방부 차관)	코리아나 호텔	2,131
	계			27,815 (평균 1,986.8)

주 1) 임차료 70만원, 간담회 49만 4천원, **사례비 100만원**
주 2) 간담회 33만원, **사례비 100만원**
자료: 통일부

또한, 통일부 장관 주재 만찬 모임 “통일이 있는 저녁”은 4월부터 7월까지 당초 12회를 계획하였다가 제13차까지 진행되어 총 885만원(평균 68만원)이 집행됨.

< ‘통일이 있는 저녁’ 계획(안) >

날짜	대상	날짜	대상	날짜	대상
4.9.	북한인권 전문가	5.2	남북관계발전委 위원	6.10.	과학기술/IT 전문가
4.16.	통일정책/남북대화 전문가	5.1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전문가	6.13.	문화/예술 전문가
4.25.	인도지원/보건의료 전문가	5.16.	북한경제/교류협력 전문가	6.20.	청년/신진학자
4.29.	통일미래기획委 위원장단	5.20.	유관기관/단체 인사	7.4.	여성전문가

자료: 통일부

< ‘8.15 통일 독트린’ 수립을 위한 ‘통일이 있는 저녁’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차수	날짜	외부 주요 참석자	장소	집행액
제1차	4.9. (화)	▪ 북한인권 전문가 : 김○주(탈북민 작가), 김○훈((사)북한인권 이사장), 손○주(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순(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제○호(중앙대 교수)	달개비	464

차수	날짜	외부 주요 참석자	장소	집행액
제2차	4.16. (화)	▪ 통일정책 및 남북대화 전문가 : 이○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박○원(한국경총 명예회장), 홍○호(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문○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달개비	539
제3차	4.25. (목)	▪ 인도지원·보건의료 전문가 : 곽○광(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권○란(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창(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 김○윤(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등	달개비	554
제4차	**4.29. (월)**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단 : 이○훈(위원장), 차○현(정치군사 분과), 홍○직(경제 분과), 현○애(사회문화 분과), 원○천(인권인도 분과), 김○천(국제협력 분과)**	**아리연**	**2,280**
제5차	5.2. (목)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 이○옥(성균관대 교수), 신○대(북한대학원대 교수), 왕○택(서강대 대우교수), 김○엽(북한대학원대 교수)	달개비	515
제6차	5.13 (월)	▪ 북한이탈주민 및 정착지원 전문가 : 김○민(자유북한방송 대표), 박○선(북한이탈주민학회 회장), 김○남(경기서부하나센터 센터장), 모○홍(한양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김○혁(방송인, 前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	달개비	581
제7차	5.16. (목)	▪ 북한경제, 교류협력 전문가 : 조○식(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원장), 권○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근(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이○준(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달개비	603
제8차	5.20. (월)	▪ 유관기관·단체 인사 : 권○철(자유총연맹 사무총장), 유○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조○환(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 홍○표((사)시대정신 상임이사), 도○윤(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박○기(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	달개비	596
제9차	5.30. (목)	▪ 유관기관·단체 인사 : 이○우(자유민주아카데미 원장), 김○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김○환(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이○관(대구광역시 대외협력특보), 송태호(지식인연대 대표)	달개비	509
제10차	6.10. (월)	▪ 과학기술/ IT 전문가 : 이○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배(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용(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이○전(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 김○선(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외교안보단)	달개비	489
제11차	6.13. (목)	▪ 문화·예술 전문가 : 김○운(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설○아(탈북민 작가), 김○곤(성악가), 최○석(프로젝트 렌트 대표), 하○희(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	달개비	450
제12차	6.20. (목)	▪ 청년/ 신진학자 : 권○현(연세대 정치학 박사과정), 김○연(산업은행 선임연구원), 이○효(숭실평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황○희(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박○규(한반도청년미래포럼 대표), 유○재(홍익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초빙교수), 유○연(가톨릭대 국제학부 재학), 김○혁(북한연구소 연구원), 전○린(한반도정책컨설서스 대표), 김○((재)통일과 나눔 프로그램 매니저)	H라운지	689
제13차	7.4. (목)	▪ 여성 전문가 : 오○숙(前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김○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권○영(민주평통자문회의 여성부의장), 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김○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달개비	582
	계			**8,851 (평균 680.8)**

자료: 통일부

조찬모임 ‘수요포럼’과 만찬모임 ‘통일이 있는 저녁’의 구체적 집행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바, 조찬모임의 경우 총 14차례 중 11차례[166]는 사례비(20만원/인)가 별도 지급되었고,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호텔[167]에서 개최되어 임차료가 집행됨.

반면, 만찬모임의 경우에는 총 13차례 중 한 차례(제4차)만 사례비가 지급되고 임차료가 대부분 집행되지 아니하였던 바, 집행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또한 외교안보 원로 및 전직 장·차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와의 오찬에도 위원회 예산을 활용하였는데, 반기문 전 총장 오찬(4.15)에는 약 293만원, 전직 장·차관 모임(5.13 등)에도 200만원 이상을 집행하였음.

< ‘외교안보 원로와의 오찬’ 등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날짜	외부 주요 참석자	장소	집행액
4.8. (월)	▪ 외교안보 원로 오찬 모임 : 이○우(신아시아연구소 이사장), 라○일(동국대 석좌교수), 김○준(단국대 석좌교수)	한국 프레스센터	972
4.15. (월)	▪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오찬 모임 : 반기문 전 총장, 반기문 재단 관계자 3명 배석	롯데호텔 서울	2,931
5.13 (월)	▪ 前 통일부장관(정○현, 홍○표) 오찬 모임	롯데호텔 서울	2,311
6.3. (월)	▪ 前 외교부장관(송○순, 유○환, 윤○세) 오찬 모임	롯데호텔 서울	1,361

자료: 통일부

166) 제9차, 제11차 및 제13차 ‘수요포럼’의 경우, 사례비 지급 없음.

167)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23.5.) p. 222에 따르면,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으로 명시하고 있음.

청년층 의견 수렴을 위해 정부부처 청년보좌역, 통일부 2030 자문단, 외교안보 부처 청년인턴 등과도 간담회를 진행함.

< '청년층 의견 수렴'을 위한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날짜	외부 주요 참석자	장소	집행액
4.24. (수)	▪ 청년보좌역 대상 의견수렴 (정부부처 청년보좌역, 12명)	남북관계관리단 회의장	872
5.16. (목)	▪ 청년층 의견수렴 (통일부 2030 자문단, 14명)	HJ비즈니스 센터	1,153
6.10. (월)	▪ 청년층 의견수렴 (외교안보 부처 청년인턴, 42명)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	1,576

자료: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통일부장관 직속의 자문기구임을 감안하더라도,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만이 참석·주재하였음에도 그 경비를 내내역사업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및 1.5트랙 운영'으로 집행한 것은 해당 사업의 본래 취지(위원회 정책 자문)와의 정합성이 부족한 집행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이러한 집행방식은 「국가재정법」 제45조[168]가 규정한 예산 집행의 목적성 원칙과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집행 근거와 사업 간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예산(안) 편성지침 및 집행지침을 준수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68)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세목 조정 및 용역비 집행 관리 강화 필요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세목 조정이 이루어졌음.

< 2024년도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주요 세목별 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세목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대비)
일반수용비(210-01)	213	△27	186	171	80.3
임차료(210-07)	93	△10	83	52	55.9
일반용역비(210-14)	214	48	262	251	117.3
사업추진비(240-01)	51	-	51	46	90.2

자료: 통일부

예컨대, 10월 추진된 지역순회 공론화 용역비(5,000만원)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수용비·공공요금 및 임차료에서 4,800만원을 전용하였고, 이로 인해 일반수용비 등이 불용된 반면, 일반용역비는 초과 집행(117.3%)되었음.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운영 필요성에 대한 사전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함.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지역순회 공론화’ 용역을 위한 세목조정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10.4.)	통일정책추진 (1031-300)	210-01	27	통일정책추진 (1031-300)	210-14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지역순회 행사** 관련 **용역비** 집행
		210-02	11			
		210-07	10			

자료: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 통일전략 수립 및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므로,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역할을 분담하고, 위원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① 위원회 예산이 장관의 일반 업무추진성 경비로 전용되지 않도록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② '수요포럼'과 같은 장관 주재 간담회는 일반행정경비 또는 별도 정책사업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구조를 정비하며, ③ 세목 간 조정이 없도록 연초 사업계획 수립 시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④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식 및 예산 운영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자료]

<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시행 2024. 2. 28.] [**통일부훈령** 제680호, 2024. 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미래 전략·구상의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사항
2. 통일미래 전략·구상의 이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과제 발굴·연구에 관한 사항
4. 통일미래 전략·구상의 국내외 공감대 형성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미래 전략·구상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권인도, 국제협력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관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복수의 분과위원회에 속하는 사항 등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통일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부 통일기획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안건의 정리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보관 및 배포
3.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관련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 또는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2024년도 '8.15 통일독트린' 수립 이전, 의견수렴 및 공론화 추진을 위한 집행 >

(단위: 천원)

날짜	외부 주요 참석자	장소	집행액	비고
3.13. (수)	▪ 제1차 수요포럼(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김○호(정책자문위원장, 국방대 부총장), 김○수(서강대 명예교수), 서○구(前 대통령실 비서관), 이○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훈(前 통일연구원장)	코리아나 호텔	2,194	
3.20. (수)	▪ 제2차 수요포럼(정치·외교분야 주요 학회장) : 조○순(한국정치학회장), 마○윤(한국국제정치학회장), 김○호(한국정치사상학회장), 박○호(한국정당학회장), 조○현(차기 한국정치외교사학회장)	달개비	1,330	
3.22. (금)	▪ 한국정치학회 2024년 춘계학술대회	연세대	13,800	
3.27. (수)	▪ 제3차 수요포럼(외교안보 주요 원로) : 김○우((사)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하○선(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최○석(이화여대 명예교수), 유○열(고려대 명예교수), 김○한(前 국가안보실장)	코리아나 호텔	2,845	
4.3. (수)	▪ 제4차 수요포럼(전직 언론인, '94년 당시 소속 기준) : 김○기(조선일보), 박○균(동아일보), 박○희(중앙일보), 이○희(서울신문), 오○석(연합뉴스)	코리아나 호텔	2,127	
4.8. (월)	▪ 외교안보 원로 오찬 모임 : 이○우(신아시아연구소 이사장), 라○일(동국대 석좌교수), 김○준(단국대 석좌교수)	한국 프레스 센터	972	
4.9. (화)	▪ 제1차 통일이 있는 저녁(북한인권 전문가) : 김○주(탈북민 작가), 김○훈((사)북한인권 이사장), 손○주(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순(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제○호(중앙대 교수)	달개비	464	
4.12. (금)	▪ 제5차 수요포럼(북한학 전문가) : 박○철(대전대 객원교수), 고○환(동국대 명예교수), 동○승(굿파머스 사무총장), 이○현(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현(북한연구학회 회장)	코리아나 호텔	2,280	
4.15. (월)	▪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오찬 모임 : 반기문 전 총장, 반기문 재단 관계자 3명 배석	롯데호텔 서울	2,931	
4.16. (화)	▪ 제2차 통일이 있는 저녁(통일정책 및 남북대화 전문가) : 이○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박○원(한국경총 명예회장), 홍○호(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문○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달개비	539	
4.17. (수)	▪ 제6차 수요포럼(외교안보 전문가) : 이○조(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한○섭(국방대 명예교수), 이○종(성균관대 특임교수), 강○영(한국외대 교수), 안○현(서울시립대 교수)	코리아나 호텔	2,104	
4.19. (금)	▪ 2024 한국국제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프레스 센터	12,600	
4.24. (수)	▪ 제7차 수요포럼(외교안보 전문가) : 남○욱(고려대 교수), 이○현(세종연구소 소장), 전○성(서울대 교수), 박○휘(이화여대 교수), 성○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코리아나 호텔	2,280	
4.24. (수)	▪ 청년보좌역 대상 의견수렴 (정부부처 청년보좌역, 12명)	남북관계관리단 회의장	872	

날짜	외부 주요 참석자	장소	집행액	비고
4.25. (목)	▪ 제3차 통일이 있는 저녁(인도지원·보건의료 전문가) : 곽○광(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권○란(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창(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 김○윤(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등	달개비	554	
4.29. (월)	▪ 제4차 통일이 있는 저녁(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단) : 이○훈(위원장), 차○현(정치군사 분과), 홍○직(경제 분과), 현○애(사회문화 분과), 원○천(인권인도 분과), 김○천(국제협력 분과)	아리연	2,280	
5.1. (수)	▪ 제8차 수요포럼(정치 원로) : 유○수(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 정○철(대한민국헌정회 회장), 황○여(법무법인 황앤씨 대표변호사), 이○제(이○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코리아나 호텔	1,849	
5.2. (목)	**▪ 제5차 통일이 있는 저녁(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 이○옥(성균관대 교수), 신○대(북한대학원대 교수), 왕○택(서강대 대우교수), 김○엽(북한대학원대 교수)**	**달개비**	**515**	**※**
5.8. (수)	▪ 제9차 수요포럼(경제6단체 부회장단) : 김○범(한국경제인협회), 박○준(대한상공회의소), 이○호(한국무역협회), 정○모(중소기업중앙회), 이○근(한국경영자총협회), 이○준(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리아나 호텔	1,480	
5.10 (금)	▪ 충청지역 전문가 간담회 : 평통 위원, 대학 교수 등 11명	대전	6,284	
5.13 (월)	▪ 前 통일부장관(정○현, 홍○표) 오찬 모임	롯데호텔 서울	2,311	
5.13 (월)	▪ 제6차 통일이 있는 저녁(북한이탈주민 및 정착지원 전문가) : 김○민(자유북한방송 대표), 박○선(북한이탈주민학회 회장), 김○남(경기서부하나센터 센터장), 모○흥(한양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김○혁(방송인, 前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	달개비	581	
5.14 (화)	▪ 통일연구원 통일 대토론회	프레스 센터	20,000	
5.16. (목)	▪ 제10차 수요포럼(법조계 인사) : 문○남(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안○호(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김○훈(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지○우(한국헌법학회 회장), 송○호(한동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코리아나 호텔	2,104	
5.16. (목)	▪ 제7차 통일이 있는 저녁(북한경제, 교류협력 전문가) : 조○식(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원장), 권○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근(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이○준(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달개비	603	
5.16. (목)	▪ 청년층 의견수렴(통일부 2030 자문단, 14명)	HJ비즈니스센터	1,153	
5.20. (월)	▪ 제8차 통일이 있는 저녁(유관기관·단체 인사) : 권○철(자유총연맹 사무총장), 유○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조○환(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 홍○표((사)시대정신 상임이사), 도○윤(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박○기(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	달개비	596	
5.27 (월)	▪ 전라지역 전문가 간담회 : 평통 위원, 대학 교수 등 13명	광주	8,193	
5.29. (수)	▪ 제11차 수요포럼(교육계 단체장 등) : 여○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직무대행), 오○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 이○원(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이○봉(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권○희(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코리아나 호텔	1,480	
5.30. (목)	▪ 제9차 통일이 있는 저녁(유관기관·단체 인사) : 이○우(자유민주아카데미 원장), 김○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김○환(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이○관(대구광역시 대외협력특보), 송○호(지식인연대 대표)	달개비	509	
5.31 (금)	▪ 경상지역 전문가 간담회 : 평통 위원, 대학 교수 등 14명	대구	6,888	
6.3. (월)	▪ 前 외교부장관(송○순, 유○환, 윤○세) 오찬 모임	롯데호텔 서울	1,361	

날짜	외부 주요 참석자	장소	집행액	비고
6.5. (수)	▪ 제12차 수요포럼(인문·사회 전문가) : 윤○중(한신대 명예교수), 함○희(이화여대 교수), 이○우(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김○섭(연세대 교수), 박○희(이화여대 교수)	코리아나 호텔	2,131	
6.10. (월)	▪ 청년층 의견수렴(외교안보 부처 청년인턴, 42명)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	1,576	
6.10. (월)	▪ 제10차 통일이 있는 저녁(과학기술/ IT 전문가) : 이○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배(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용(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이○전(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 김○선(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외교안보단)	달개비	489	
6.12. (수)	▪ 제13차 수요포럼(통일·북한 관련 대학 총장·부총장) : 정○렬(국민대), 김○미(이화여대) 이○규(고려대), 정○철(한양대), 윤○웅(동국대), 양○진(북대)	코리아나 호텔	1,480	
6.13. (목)	▪ 제11차 통일이 있는 저녁(문화·예술 전문가) : 김○운(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설○아(탈북민 작가), 김○곤(성악가), 최○석(프로젝트 렌트 대표), 하○희(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	달개비	450	
6.20. (목)	▪ 제12차 통일이 있는 저녁(청년/ 신진학자) : 권○현(연세대 정치학 박사과정), 김○연(산업은행 선임연구원), 이○효(숭실평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황○희(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박○규(한반도청년미래포럼 대표), 유○재(홍익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초빙교수), 유○연(가톨릭대 국제학부 재학), 김○혁(북한연구소 연구원), 전○린(한반도정책컨센서스 대표), 김○((재)통일과 나눔 프로그램 매니저)	H라운지	689	
6.24 (월)	▪ 경기지역 전문가 간담회 : 평통 위원, 대학 교수 등 14명	수원	7,207	
6.26. (수)	▪ 제14차 수요포럼(외교안보 전문가) : 김○현(중앙대 명예교수), 진○수(세종硏 일본연구센터장), 이○남(고려대 교수), 신○식(서울대 교수), 신○철(前 국방부 차관)	코리아나 호텔	2,131	
6.27. (목)	▪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강릉	10,000	
6.28.(금) ~ 6.29.(토)	**▪ 청년들이 그리는 통일미래 캠프**	**연천**	**49,000**	**※**
7.2. (화)	▪ 북한대학원대학교-동아시아연구원 국제세미나	북한대학원대	78,600	
7.4. (목)	▪ 제13차 통일이 있는 저녁(여성 전문가) : 오○숙(前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김○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권○영(민주평통자문회의 여성부의장), 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김○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달개비	582	
7.10. (수)	▪ 통일과 헌법가치 세미나	프레스센터	15,000	
7.12 (금)	▪ 강원지역 전문가 간담회 : 평통 위원, 대학 교수 등 13명	춘천	6,777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 (A)		**소계**	**49,515**	**※**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B)		**소계**	**232,676**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회의 (C)[주2)]		**소계**	**46,103**	
(A+B+C)		**총계**	**328,294**	

주 1) 비고란 ※는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에서 집행을 의미함.
2) p. 52, 표 < '8.15 통일독트린' 수립 이전,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집행 내역 > 참조
자료: 통일부

2)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은 통일정책 홍보 및 의견수렴, 지역사회 통일관련 서비스 종합지원 및 민간-정부 간 소통·협력 거점 마련, 통일문화행사, 국민적 합의 형성,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등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01억 4,300만원 중 93억 8,4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5,9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0,144	10,144	-	±26 △1.5	10,143	9,384	-	759	92.5	92.5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에 21억 3,700만원, 통일$^{+}$센터 설치·운영에 47억 1,700만원, 통일문화진흥에 9억 4,400만원,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형성에 4억 6,300만원,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에 11억 2,3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국내통일기반조성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국내통일기반조성	10,144	10,144	±26 △1.5	10,143	9,384	759
·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2,639	2,639	△131.5	2,508	2,137	371
· 통일+센터 설치·운영	4,885	4,885	-	4,885	4,717	168
· 통일문화진흥	894	894	130	1,024	944	80
·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500	500	-	500	463	37
· 통일인식 · 북한이해 제고	1,226	1,226	-	1,226	1,123	103

자료: 통일부

□ 사업예산 집행관리 내실화 필요

2024년도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은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제외한 4개 내역사업 모두 집행률이 90%를 넘었으나, 내내역사업 기준으로 초과집행 및 불용이 나타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국내통일기반조성'의 내역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명	사업 내용(내내역사업)	예산액	집행액	불용	집행률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통일정책 홍보사업 운영	1,298 (1,168)	955	342 (213)	73.6 (81.8)
	뉴미디어 소통 강화	289	206	83	71.3
	공보기능 강화	112	79	33	70.5
	인터넷 통일방송 운영	940	897	43	95.4
	소 계	**2,639 (2,509)**	**2,137**	**502 (372)**	**81.0 (85.2)**
통일문화진흥	통일문화행사 운영	631	571	60	90.5
	통일문화 콘텐츠 창작활성화	263 (393)	373	110초과 (20)	141.8
	소 계	**894 (1,024)**	**944**	**50초과 (80)**	**105.6**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24신규)	국민대상 합의 형성	393	358	35	91.1
	오피니언 리더 대상 합의 형성	77	57	20	74.0
	청년 대상 합의 형성	30	48	18 초과	160.0
	소 계	**500**	**463**	**37**	**92.6**
통일인식·북한 이해 제고 ('24신규)	구술채록 연구용역	100	86	14	86.0
	탈북민 토크콘서트 개최	361	330	31	91.4
	통일인식 제고 콘텐츠 제작·확산	765	707	58	92.4
	소 계	**1,226**	**1,123**	**103**	**91.6**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인천통일+센터 운영	379	372	7	98.2
	지역센터 설치·운영	4,200	4,050	150	96.4
	센터 총괄·기획	306	295	11	96.4
	소 계	**4,885**	**4,717**	**168**	**96.6**
	합 계	**10,144**	**9,384**	**759**	**92.5**

주: 5개 내역사업 중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는 대변인실(홍보담당관실), '통일문화진흥'은 대변인실(홍보담당관실) 및 통일협력국(협력기획과) 공동 소관, 나머지 3개 내역사업은 통일협력국 소관임.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의 집행률은 85.2%인데, 세부 집행 내용을 보면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됨.

내내역사업 '통일정책 홍보 사업 운영' 중 '매체 활용 등 홍보'에 SNS 홍보비 등으로 2억 9,200만원 편성하였다가 1억 4,900만원 집행(집행률 51%)하였고, '정책홍보 위탁'에 편성한 정책광고 영상 제작비 1억 3,000만원을 다른 내역사업 '통일문화진흥'으로 조정하는 등 당초 계획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됨.

< 내내역사업 '통일정책 홍보사업 운영' 예산(계획)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내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불용사유 등)
통일정책 홍보사업 운영	홈페이지 운영	255	223	32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매체 활용 등 홍보	292	149	143	집행잔액을 포함한 2억원으로 '24.12월 중순 정책 광고 송출을 계획하였으나,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취소
	정책홍보 위탁	635 (→ 505)	479	26	-'SNS 홍보물 제작' 용역 계약 낙찰차액 -'정책광고 영상 제작비' 1.3억은 내역사업 '통일문화진흥'으로 조정하여 집행
	정책홍보 컨설팅	116	104	12	용역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계		1,298 (→ 1,168)	955	213	

자료: 통일부

내내역사업 '공보 기능 강화'의 경우에도 정책설명 간담회, 출입기자단 워크숍 등으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7,900만원 집행(집행률 70.5%)하고 3,300만원이 불용됨.

< 내내역사업 ‘공보기능 강화’ 예산(계획)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내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불용사유 등)
공보 기능 강화	112	79	33	’24.12.11.~12.간 출입기자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취소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당초 12월 중순경 유튜브·지하철 전광판 등을 이용한 ‘정책 광고 송출’에 집행 잔액 5,700만원을 포함한 2억원을, 12월 11~12일간 ‘2024 통일부 출입기자단 워크숍’ 개최를 위해 3,300만원을 각각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12월 3일 발생한 계엄사태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정책 광고 송출’은 연중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이를 연도 말에 집중하여 계획·집행한 것은 계획 수립의 부실 또는 소극적 집행관리로 해석될 수 있음.

내역사업 ‘통일문화진흥’의 ‘통일문화 콘텐츠 창작 활성화’에 당초 2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억 3,000만원을 조정받은 예산현액 3억 9,300만원 중 3억 7,3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1억 1,000만원 초과 집행(집행률 141.8%)한 반면, 일부 항목에서는 낙찰차액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등 계획과 실제 집행 간 불일치가 확인되고,

내역사업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2024년 신규)의 3개 사업 중 ‘국민 대상’ 및 ‘오피니언 리더 대상’ 사업에서 각각 3,500만원, 2,000만원이 불

용된 반면, ‘청년 대상’ 사업에서는 예산대비 1,800만원이 초과 집행된 바, 내내역사업 간 계획 및 예산 배분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음.

내역사업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2024년 신규)에서는, 탈북민 구술 채록 용역 결과 책자 발간이 2025년으로 지연되어 일반수용비 1,000만원이 불용된 바, 이 역시 집행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부족했음을 시사함.

이와 같은 각 내역사업의 계획 변경, 세목 조정, 연말 집중집행 등은 국회의 예산 심의 취지와 정부 예산 집행지침 범위 안에서의 통제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 추가 점검이 필요함.

통일부는 향후 연내 집행 가능성과 외부 변수에 따른 리스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역사업 간 세부항목 배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 변경·불용을 최소화하며,

연중 중간 집행실적 모니터링과 결과 평가를 통해 국민의 통일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5억 9,700만원 중 24억 8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8,9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595	2,595	-	1.5	2,597	2,408	189	92.8	92.7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에 3억 7,300만원,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에 16억 1,400만원,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에 4억 2,1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국제통일기반조성	2,595	2,595	1.5	2,597	2,408	189
·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	447	447	0.7	448	373	75
·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1,720	1,720	0.8	1,721	1,614	107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428	428	-	428	421	7

□ 예산 집행의 일관성 제고 및 주요 협력국 확대 필요

내역사업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는 미국, 독일 등 주요 협력국과의 고위급·실무급 대화 및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한반도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외교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에 편성된 4억 4,700만원 중 3억 7,300만원을 집행됨(집행률 83.4%).

고위급 주요국 협력대화는 예산 대비 초과 집행되었으나, 실무급 주요국 협력대화는 불용되었고, 한국과 독일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는 한독통일자문위원회에서 일부 불용이 발생하여 총 7,400만원이 불용됨.

< 내역사업 '주요국 정부와 통일·대북정책 협력 강화' 예산 및 집행 >

(단위: 백만원, %)

사업 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주요국 협력대화 -고위급	152	178	117.1
주요국 협력대화 -실무급	78	-	0.0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회의 운영	217	195	89.9
계	**447**	**373**	**83.4**

자료: 통일부

이에 대해 통일부는 실무급 주요국 협력대화를 위한 출장은 국제한반도포럼(GKF) 국외세미나(6월 일본, 11월 미국) 계기에 국장급 대화로 대체 추진됨으로써 소요경비(국외여비)가 전액 불용되었고, 2024년도에 한독통일자

문위원회가 부산(4.30.-5.1.)에서 열림에 따라 관련 국외여비 일부[169]가 집행되지 않았다는 설명임.

이와 함께 통일부는 미국, 독일과의 고위급 대화를 통해 대북정책 공조, 북한인권 이슈, 통일담론 확산 등에서 실질적 외교적 성과를 도출하였고,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통해 독일 통일의 경험 공유 및 한반도 통일정책의 국제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한·미·일 3자회의, 독일 통일기념식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통일·대북정책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고위급 출장에서 초과 집행하면서도 실무급 출장은 불용한 점, 한독통일자문위원회에서의 일부 불용, 그리고 미국·독일 양국 중심 협력구도에 따른 대상국의 다양성이 부족한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

통일부는 향후 직급(고위급/실무급)에 따른 예산 집행의 태도를 달리 하지 않도록 주의함과 아울러, 기존 협력국 외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 중심으로 협력국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정책 파급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169) 독일 개최시, 공무원 출장에 소요되는 국외여비

□ **단독 응찰 반복에 따른 수의계약 구조개선 필요**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은 국제회의, 포럼, 연구용역 등 주요 사업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입찰 시 단독 응찰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내역사업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의 ‘국제회의 및 통일공공외교’에서 추진한 국제한반도포럼(GKF), 글로벌 한반도통일청년리더 활동 지원, 해외 연구기관 통일정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짐.

국제한반도포럼(GKF)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 선정 및 섭외, 주제 선정, 국내외 세미나 개최 등 통일·안보 관련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국내 연구기관 1곳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2024년의 경우 조달청 입찰에 ‘○○대학교 산학협력단/(주)△아이엔엠’이 컨소시엄으로 단독 응찰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제3항 등에 따라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음.

‘글로벌 한반도통일청년리더 활동지원’ 및 ‘해외 연구기관 통일정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또한, 조달청 경쟁입찰방식을 통하였고 재공고까지 실시하였으나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단독 응찰로 인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됨.

< 내역사업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의 수의계약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 내용	예산액	계약액	수의계약 사유
2024 한반도국제포럼(GKF) 대행기관 선정	788	771	○○대 산학협력단 단독 응찰
글로벌 한반도통일청년리더 활동 지원	65	64	○○대 산학협력단 단독 응찰
해외 연구기관 통일정책 네트워크 구축	125	117	○○대 산학협력단 단독 응찰
해외여론주도층 통일공공외교 활동 지원	70	64	(사)××××연구원 단독 응찰
북한 및 남북관계 전문 영문웹저널 운영	176 (528)	173 (518)	(재)□□□□연구원 단독 응찰 (3년 장기계약)주)

주: 장기계약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3항에 따라, 장비·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계약으로 분류되어 장기계약 형태로 체결·운영

자료: 통일부

동 사업에서의 일반용역비(210-14) 집행은 경쟁입찰 절차를 따랐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특정 기관에 용역이 집중되는 결과가 반복됨.

이와 같은 계약방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170]에 근거하고 있어 법령 위반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 기관이 반복적으로 단독 응찰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쟁 및 공정성을 저해하고 연구생태계의 다

17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생 략)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

양성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실제로, 일부 사업은 재공고까지 실시했음에도 타 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쟁입찰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한계가 나타남.

향후 통일부는 과업 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컨소시엄 구성 지원 등 실질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또한, 반복적 단독 응찰 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일정 횟수 이상 단독 응찰 시 과업 분할 발주 또는 외부추천을 받는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긴급 수의계약 및 단기 행사 위주의 운영 개선 필요

내내역사업 ‘국제회의 및 통일공공외교’에서 추진한 ‘해외여론주도층·글로벌 한반도통일청년리더 활동 지원’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확산과 미래세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외국인 여론주도층과 청년 리더를 대상으로 통일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였음.

2024년에 ‘해외여론주도층 통일공공외교 활동 지원’ 사업은 (사)××××연구원에서, ‘글로벌 한반도통일청년리더 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각각 위탁 운영하였으며, 외국인 전문가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학술교류, 현장견학, 세미나, 네트워킹 등 다양한 공론화 행사가 추진됨.

< 내내역사업 ‘국제회의 및 통일공공외교’의 긴급 용역 >

(단위: 백만원)

계약명	예산액	계약액	수탁기관	계약 유형	수의계약 사유
해외여론주도층 통일공공외교 활동 지원사업(긴급) 위탁 운영	70	64	(사)×××× 연구원	수의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글로벌 한반도통일청년리더 활동 지원 위탁용역(긴급)	65	64	○○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자료: 통일부

2024년에는 사업 추진 일정의 촉박함, 외국인 청년의 방학 중 본국 귀국 등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긴급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기관이 선정되었는데, 두 용역사업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통일여론 확산과 글로벌 청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당초 목적 달성 여부와는 별론으로, 그 집행과정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해외여론주도층 통일공공외교 활동 지원’ 사업은 2024년 최초로 용역 계약 형태로 시행되었는데,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해외 전문가 섭외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긴급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였으며,

‘글로벌 한반도통일청년리더 활동 지원’ 사업 또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단일응찰로 유찰되어 「국가계약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결과, 외부 민간·지역기관의 참여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고 사업 추진상 확보되었어야 할 경쟁 및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또한 외국인 청년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단기 행사에 치중함에 따라 참가

자 DB 구축, 연례 포럼, 멘토링 등 참가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장기적 네트워크 구축, 후속 협력사업 연계 등 사업의 지속성과 정책 환류 체계가 부재하여 국제적 파급력이 제한된 것으로 보여짐.

향후 통일부는 사업 일정을 여유있게 확보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긴급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확대하여 다양한 기관의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참가자 사후관리(DB 구축, 연례 포럼, 멘토링 등) 강화를 통해 장기적 네트워크 구축, 후속 협력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 및 정책 환류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과 유사사업 추진 시 사업평가 및 환류 제도 마련 필요**

내역사업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은 해외 북한·통일학 연구자의 역량 강화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① 펠로우십, ② 해외 정책·학술 연구지원, ③ 석·박사 학위과정 지원의 3개 사업으로 구성됨.

이 중 ‘펠로우십’ 및 ‘정책·학술 연구지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용역으로 수행하였는데, 3년간 계약금액은 총 12억 880만원이고 연도별 집행액 등은 다음 표와 같음.

< 2022-2024,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예산 및 집행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예산(편성)액	555	555	230
집행액	489.4	489.4	230
사업 현황	- 펠로우십 7인 - 해외 정책·학술 연구지원 7건	- 펠로우십 6인 - 해외 정책·학술 연구지원 6건	- 펠로우십 6인

주: 계약기간(3년: 2022.1.10.~2024.12.31.): 1,665(발주금액) → 1,208(계약금액)
자료: 통일부

‘석·박사 학위과정 지원’은 통일부가 기타보전금(310-14)으로 직접 편성·집행하였으며, 2024년의 경우 1인당 연 1,800만원 기준으로 총 7명(3명은 2024년 1학기에 종료)에 학자금, 체재비, 항공료 등을 지원함.[171]

그런데 동 사업은 20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국립통일교육원 사업(해외 신진학자 초청교육 등)과의 중복성이 제기되어 단계적 폐지가 결정되었음.[172]

즉, 202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동 내역사업이 3개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으나, 단계적 폐지 결정으로 인하여 '해외 정책·학술연구 지원'은 2024년 폐지되었고,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2024년까지 장기계속 위탁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하여 계약만료 이후에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였으며, '석박사 학위과정'의 경우 2024년도 신규 선발이 중단되고 2023년에 선발된 장학생까지만 지원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였음.

동 사업은 총 19명의 해외 연구자 펠로우십 등을 통해 북한·통일학 분야 국제연구 협력기반 조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3년 간의 논문 게재 수 등 추적 가능한 정량지표가 부족하였고, 그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사업 방향 조정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미흡하였다는 점 등도 단계적 폐지의 한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173]

---

171) 동 사업에 편성된 기타보전금(310-04)은 '석박사 학위과정'과 관련된 예산으로, 석사과정 2년(박사과정 3년)간 학기당 1인에게 학자금 및 6개월 체제비 1,800만원, 항공임과 초기 정착비 등을 통일부가 직접 지원.

< 2024년도 '석박사학위 과정', 기타보전금(310-04) 예산 및 집행 내역 >

(단위 : 천원)

2024년 편성액(A)	집행액(B)						집행잔액 (A-B)
	항공료	학자금	생활비	보험료	기타비용	합계	
198,000	251	57,111	132,000	649	667	190,678	7,322

주: 편성액 산출내역 : 1억 2,600만원('24년 1학기, 1,800만원 × 7명) + 7,200만원('24년 2학기, 1,800만원 × 4명)
자료: 통일부

172) 동 사업은 예결산 검토 과정에서의 국회 지적사항 혹은 타부처(교육부, 외교부 등) 사업과의 중복 보다는, 2024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부내 다른 사업(국립통일교육원, 해외 신진학자 초청교육사업)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정부 건전재정 기조를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됨.

향후 통일부는 유사 목적의 학술·교류사업 추진 시,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해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정 종료 이후 사업 참여자들의 관련 분야 취업 상황이나 활동 등을 반영한 사후평가 도입을 통해 사업 결과의 지속적 환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기존의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173)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동 사업을 운영하는 중 위탁운영 업체(경남대)를 통해 자체적인 활동 운영평가 및 점검,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수료자 세미나 개최 등 사후 관리를 진행해왔으며, 사업 참여 연구자들이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개편(2026년 예정) 이후 게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참고자료] < 2022-2024,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사업 현황 >

사업 연도	구분		이름/연구책임자	국적	비 고
2022	펠로우십		Osamu Koike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이론연구부
			Peter Ward	영국	비엔나대 박사 수료
			Taichiro Yoshino	일본	아사히신문 미디어 디자인 센터 버디컬 미디어 편집장('18~)
			Christopher Green	영국	네덜란드 레이던대 교수
			Junya Nishino	일본	게이오대 교수
			Hemant Dubey	인도	인도 자와하랄네루대 박사
			Manon Prud'homme	프랑스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 중국·한국·일본학센터
	해외 정책·학술 연구 지원 사업	학술 연구 지원	Kayla Orta	미국	연구기관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연구그룹(게이오대)
			정지용	중국	연구기관(푸단대학교)
			김상국	독일	연구그룹(베를린 자유대)
			Sharon Squassoni	미국	연구자 단독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Nicola Casarini	이탈리아	연구자 단독 (Chian Mai University)
		학술세미나 지원		스웨덴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2023	펠로우십		Chen Hao	중국	버지니아대 역사학 박사수료
			Yeung Man Fung	중국(홍콩)	담강대 국제관계학 박사수료
			Andrey Kovsh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동양학(한국학) 석박사/국제관계학 박사 수료
			Bianca Patrice Trifoi	미국	조지워싱턴대 역사학 박사 수료
			Quan Lingxian	중국	서울대 법대(헌법) 석박사
			Tahara Ryo	일본	와세다대 석사(국제관계)/서울대 외교학 박사 수료
	해외 정책·학술 연구 지원 사업	학술 연구 지원	Steven Denney	오스트리아	연구기관 (ECNK, University of Vienna)
			Zadeh-Cummings, Nazanin	호주	연구기관 (Deakin Univeresity)
			Geetha Govindasamy	말레이시아	연구그룹 (University of Malaya)
			김애화	중국	연구그룹 (천진사범대)
			김연호	미국	연구자 단독(GeorgeWashington University)
			리 난	중국	연구자 단독(중국사회과학원)
2024	펠로우십		Pan, Binbin	중국	아주대 정치외교(박사)
			Kim, Yeonhee	미국	하와이대 정치학(박사)
			Liao, Muchun	중국	킹스컬리지 런던대 정치학(박사과정생)
			Yang, Xiangfeng	중국(홍콩)	서던 캘리포니아대 정치학&국제관계(박사) /홍콩 랑난대학 조교수
			Horiyama, Akiko	일본	마이니치신문 외신부 기자
			Miyamoto, Satoru	일본	일본 고베대 법학박사 /세이가쿠인대 정치과학·경제학부 교수

자료: 통일부

3. 북한정세분석(1500 프로그램)

가. 개 요

‘북한정세분석’ 프로그램(1500)은 북한정세분석 체계구축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적시성과 실효성 있는 정세분석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역량 강화’, ‘북한자료센터 운영’ 등 2개의 단위사업과 정세분석 역량 강화,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북한자료센터 운영,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도 북한정세분석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12,204	13,998	13,998	13,998	10,632	19,205
□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1533 단위사업)	5,901	4,159	4,159	4,159	3,963	5,376
○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302)	348	-	-	-	-	-
○ 북한 경제·사회 심층조사(301)	-	-	-	-	-	340
○ 정세분석 역량 강화(307)	1,764	2,282	2,282	2,282	2,091	2,251
○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502)	3,789	1,877	1,877	1,877	1,872	2,785
□ 북한자료센터 운영(1535 단위사업)	6,303	9,839	9,839	9,839	6,669	13,829
○ 북한자료센터 운영(308)	1,281	1,011	1,011	1,011	1,005	892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310)	5,022	8,828	8,828	8,828	5,664	12,937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정세분석 역량 강화(1533-307)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은 국내외 북한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공개정보관리실 및 정보상황실 운영, 북한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정리·분석 등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2억 8,200만원 중 91.6%인 20억 9,100만원이 집행되고, 낙찰차액 5,000만원, 집행잔액 14,100만원 등 19,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282	2,282	-	±3	2,282	2,091	191	91.6	91.6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는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공개정보관리실 운영’, ‘정보상황실 운영’, ‘위성정보센터 운영’,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사업이 있음.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에 5,800만원, ‘공개정보관리실 운영’에 2억 9,400만원, ‘정보상황실 운영’에 8억 6,300만원, ‘위성정보센터 운영’에 4억 6,400만원, ‘북한경제연구 포럼 운영’에 2억 2,900만원,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에 1억 8,3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정세분석 역량 강화	2,282	2,282	±3	2,282	2,091	191
· 북한정보 네트워크 강화	100	100	±1	100	58	42
· 공개정보관리실 운영	298	298	-	298	294	4
· 정보상황실 운영	880	880	±2	880	863	17
· 위성정보센터 운영	557	557	-	557	464	93
·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240	240	-	240	229	11
·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207	207	-	207	183	24

자료: 통일부

2)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1533-502)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사업은 북한정보 자료수집 확대 및 정보제공의 다양성 필요에 따라 1차 사업은 내부 분석시스템 구축, 2차 사업은 내부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대국민포털 개편사업으로 진행됨. 내부적으로 북한정보 관련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체계를 구축하며, 「북한정보포털」 개편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북한정보서비스를 확충함. 2024년도에는 본예산 18억 7,700만원이었으며, 18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이 불용됨.

< 2024년도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877	1,877	-	-	1,877	1,872	-	5	99.7	99.7

자료: 통일부

2024년 주요 사업추진 내용은 △북한정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임.

< 2024년 예산안 상세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안 상세 편성내역	비목	상세 집행내역	불용액
① AI·빅데이터 유지관리 : 1,775 -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관리용역비 (210-15)	1,770	5
② 기타운영(감리비 등 기타) : 102 - 국내 데이터 거버넌스 등 : 102 * 각종 수수료(조달수수료 등) 92백만원 * 업무추진비 10백만원	일반수용비 (210-01) 사업추진비 (240-01)	102	-
합 계		1,872	5

자료: 통일부

□ 북한정보 포털의 자료 등록 및 업데이트 구조 개선 필요

통일부는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사업으로 북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정보분석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정보포털(www.nkinfo.unikorea.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흩어진 북한정보를 빅데이터로 모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해당 포털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북한 관련 정보를 주제별로 구성하여 문서자료, 통계자료, 영상자료 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 등록 및 업데이트는 분야별 담당 분석관이 직접 수집·선별하여 수작업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 정보 수집에 있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AI 기반 웹 크롤링(Web crawling) 기술[174]이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음.

< 북한정보포털 내 메뉴 구성 및 자료 등록 업데이트 구조 >

구 성		등록주기	업무담당
북한 이해	△정치	「북한 이해」 책자 발간에 맞춰 업데이트	각과 담당분석관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북한 동향	△동향	매일	각과 담당분석관

174)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로서, 사람이 특정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일일이 확인해 복사해 오지 않아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여러 데이터를 가져와 정리해 주는 기술을 의미함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 동향	계기 시	
	△주간·월간 동향	매주 및 매월	
	△대외동향	계기 시	
	△TV 프로그램 편성표	매일	
	△국내외 매체동향	매일	웹크롤링
북한 테마	△용어 △인물 △통계	계기 시	
전문자료	△간행물	계기 시	자료관리팀
북한 지도		-	국토부 V월드와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자료: 통일부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정보포털이 일반 인터넷 사이트와 차별되는 핵심적 특징은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공인된 자료만을 게시한다는 것이고, 통일부 분석관을 중심으로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여 등록하였으므로 여타 다른 사이트의 북한 관련 정보보다 정보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 경우 통일부 분석관을 통한 정보 등록은 한정된 분석 인원으로 인하여 정보의 업데이트 속도가 현저히 저하시킬 뿐 아니라, 북한 관련 동향의 시의성 확보나 다량의 정보 누적에 있어서도 물리적 제약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인공지능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이라는 사업의 취지와는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또한, AI 웹크롤링 기반 정보 수집은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웹사이트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주기적인 크롤링을 통해 최신의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 정보들을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색, 요약 및 정리하는 것과 큰 차이점이 없는 실정임.

한편, 북한정보포털 중 북한 이해 메뉴는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하는「북한이해」책자 개정에 맞춰 현행화하고 있어「북한 이해」책자 개정에도 불구하고 내용 변동이 없는 부분은 포털의 해당 부분도 수정되지 않는 구조로되어 있음.

이와 같이 일부 내용이 책자 개정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거에 작성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유를 포털에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포털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임.

< 북한정보포털 '북한이해' 중 북한의 통일방안 대남전략 >

민주기지론

남조선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광복 직후인 1945년에 '민주기지론'이란 형태로 처음 제시되었다. 이것은 북한 지역의 혁명역량을 먼저 강화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완수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이 '민주기지론'을 기본적인 대남혁명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광복 직후 여러 면에서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에 비해 우세했던 유리한 조건을 활용해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남조선 혁명론

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

북한은 1970년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남조선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공식 채택했다. 이는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공산화 통일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 아래 우선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 이후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는 ‘단계적 혁명론’이다.

또한 북한은 남조선 혁명을 완성하는 실천 요소로서 북한체제의 혁명역량, 남조선 혁명역량, 그리고 국제적 혁명역량 강화 등의 ‘3대 혁명역량 강화’를 내세웠다. ‘3대 혁명역량 강화’ 노선은 대내적으로 남조선 혁명 수행을 위한 혁명기지로서의 북한의 능력과 역할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사상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정치사상적 무장강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통한 경제역량 강화,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군사역량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대남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 내부의 모순을 최대한 첨예화하고 지하당 조직의 확대, 다양한 형태의 통일전선 형성 등으로 사회혼란을 유도해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인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나. 민족공조론

북한은 2001년 1월 개최한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에서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해 해결해 나가자.”고 제의하는 등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를 통일운동의 핵심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민족공조론’은 탈냉전 이후 대외적 고립과 경제위기 등의 심화로 체제 유지가 최우선 과제로 되면서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전략으로 제시되었다. 북한의 ‘민족공조론’과 이에 대한 강조는 우리 사회 내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동시에 우리의 대북지원이 민족의 상부상조 전통에 의한 것이라는 대주민 선전논리로 활용되어 왔다.

핵무력 기반 통일론

북한은 2021년 1월 당규약을 개정,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에 더해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 군사적 위협들을 제거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2022년 9월 제정한 「핵무력정책법」과 2023년 9월 개정 헌법에 '핵무력을 통한 영토완정'을 규정함으로써 '핵무력 기반 통일론'도 법제화하였다.

(2024.8월 작성)

자료: 북한정보포털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운영할 경우 시의성과 정확성이 핵심인 정보포털로서 제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분석인력을 확충하여 신속성 및 정확성 등을 향상시킬 것인지 아니

면 AI 기술 활용을 고도화함으로써 분석 속도 제고 및 정보 제공 범위 확대 등을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재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봄.

AI 기술도 단순 크롤링 중심이 아닌 데이터 정제[175]·요약·분류 기능을 포함한 고도화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정보 수집과 등록의 자동화, 수집 정보의 정확성 검증, 분야 간 통합검색 및 연계 기능 강화, 메뉴 체계의 전문성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북한정보포털이 국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 운영체계를 지속 점검하면서 현행화해 나가는 한편, 아울러 AI 기술 고도화를 포함하여 운영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175) 데이터정제란 데이터베이스의 불완전 데이터에 대한 검출・이동・정정 등의 작업.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정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들어온 이종(異種)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함.

3) 북한자료센터 운영(1535-308)

북한자료센터 운영사업은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축적·관리하여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북한정세분석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0억 1,100만원 중 99.4%인 10억 5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100만원 및 사업 낙찰차액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북한자료센터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011	1,011	-	±5	1,011	1,005	6	99.4	99.4

자료: 통일부

2024년 주요 사업추진 내용은 북한자료 디지털화, 파본 북한자료 복원·수리, 통일·북한 관련 원문 DB 구축 등이 있고, 센터 소장 도서·영상 등 자료 지원과 센터 내 견학 및 촬영 지원을 추진하였음.

< 2024년도 북한자료센터 운영 사업 추진 실적 >

사업 내용	추진 실적
북한자료 디지털화 사업	'경제연구' 등 5,112권 421,280면
파본 북한자료 복원 및 수리 사업	복원 : '두보시선' 등 22권 6,270면 수리 : '조선말사전' 등 28권
통일 및 북한관련 원문 DB 구축 및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통일부 발행도서 18종 2,014면 원문 DB화
북한 전자자료 구입 사업	'건재공업' 등 전자자료 2,485점

자료: 통일부

4)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535-310)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서초)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북한자료센터를 확대·개편하기 위한 신축 사업으로, 고양시 대화동 2706에 24.12.16일 착공하였음.

2024년도 예산액 88억 2,800만원 중 64.2%인 56억 6,400만원이 집행되었고, 시공업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조달청 심의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31억 6,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감리비 집행잔액 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8,828	8,828	-	±0.2	8,828	5,664	3,160	4	64.2	64.2

자료: 통일부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단계별 추진일정에 맞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통일부는 ’22년～’26년까지 총사업비 484억원을 투입하여 북한자료센터를 신축·이전함으로써 장서확충·열람공간 확대를 통해 북한연구자 및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 제고로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계획임.

<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개요 >

o 목 적 : 북한자료센터를 확대·개편하여 통일·북한 전문·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o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6 o 규 모 : 부지 4,120㎡(1,246평), 건축연면적 8,463㎡(2,557평), 총사업비 484억원

자료: 통일부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통일부는 2023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 사이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12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가 23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5년 11월에 건립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고양시의 건립부지 변경 요청[176]으로 실시설계를 재실시함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가 8개월 순연되고,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등 후속 일정도 각각 1～2개월 가량 지체됨에 따라 2024년 12월에야 비로소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선정함.[177]

176) 고양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22. 9월과 ’23. 6월 두 차례에 걸쳐 통일부와 계약한 고양시 대화동 소재 당초 부지에 대한 변경을 요청함. 부지변경 요청 사유로는 첫째, 당초 부지에 인접한 곳이 국토교통부 사업인 K-UAM 수도권 2단계 실증노선 및 버티포트 구축지역으로 최종 확정(’23. 5월) 됨에 따라 인접 부지개발에 따른 소음과 안전문제 발생우려를 제기하였고, 둘째, 고양시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계약한 부지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177) 공사업체 및 감리업체 선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공사분야	계약금액	계약기간
공사	건축	12,008	24.12.11 ~ 26.11. 5
	전기	1,493	24.12.13 ~ 26.11. 5

<건립 단계별 추진일정 지체 현황>

구분	실시설계 (재설계)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조정 협의	공사업체 공모	공사
2023년 예산편성 당시	'23.6.~'23.10. (5개월)	'23.9.~'23.10. (1개월)	'23.9.~'23.10. (1개월)	'23.10.~'23.11. (2개월)	'23.12.~'25.11. (23개월)
2024년 추진실적	'23.12.~'24.6. (7개월)	'24.6.~'24.8. (3개월)	'24.7.~'24.8. (2개월)	'24.9.~'24.12. (3개월)	'24.12.~'26.11. (23개월)
지체기간	고양시의 부지변경 요청('23.11)으로 재설계 등 1년여간 순연 ('24.12.16 착공)				

※ 통일부

이와 같이 당초 계획보다 시공사의 선정이 13개월이 늦어지게 됨에 따라 실제로 수행 가능한 공기가 부족하여 2024년 공사비(37억 7,600만원)와 감리비(3억 7,300만원) 중 약 76%에 해당하는 31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통일부가 건립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2024년도 사업비를 과다 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임.

<2024년도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세목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통일정보자료 센터 건립	8,828	8,828	-	±0.2	8,828	5,664	3,160	4
- 건설보상비 (410-00)	4,662	4,662	-	-	4,662	4,662	-	-
- 공사비 (420-03)	3.776	3.776	-	0.2	3.776	956	2,820	-
- 감리비 (420-04)	373	373	-	△0.2	373	31	338	4
- 시설부대비 (420-05)	17	17	-	-	17	15	2	-
합 계	8,828	8,828	-	±0.2	8,828	5,664	3,160	4

※ 통일부

	통신	895	24.12.11 ~ 26.11. 5
	소방	1,006	24.12.11 ~ 26.11. 5
감리	건설사업관리	2,243	24.12.12 ~ 26.11. 5
	전기감리	348	24.12.17 ~ 26.11. 5
	재해예방	19	24.12.16 ~ 26.11.30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통일부는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사업을 각 단계별 추진일정에 맞추어 관리함으로써 향후 준공 및 개관 일정이 더 이상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동 센터가 북한연구자 및 국민들로부터 용이하게 이용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동 센터의 개관 및 운영에 맞추어 현행 자료 관리체계를 개방적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178]

178) 2025년 7월 14일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자료센터의 자료 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접근이 매우 제약되는 특수자료 비율이 70%에 달하는 현 자료 관리 체계의 폐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자료 관리 주체도 통일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통일부가 관장하는데 동의한 바 있음.

4. 인도적 문제해결(2100 프로그램)

가. 개 요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이산가족, 납북피해자 문제, 북한인권개선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 및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등 총 3개의 단위사업과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등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도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6,048	13,167	13,167	13,168	12,143	21,174
□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2133 단위사업)	1,125	1,326	1,326	1,333	1,270	1,490
○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302)	412	504	504	504	479	504
○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306)	311	406	406	413	396	601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505)	402	416	416	416	395	385
□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2135 단위사업)	3,521	10,422	10,422	10,416	9,474	18,205
○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302)	2,407	5,794	5,794	5,782	5,452	12,442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303)	717	860	860	856	840	964
○ 북한인권재단 운영(304)	-	475	475	475	-	475
○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305)	-	164	164	154	79	131
○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306)	-	2,749	2,749	2,769	2,766	3,813
○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501)	397	380	380	380	336	380
□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2137 단위사업)	1,402	1,419	1,419	1,419	1,399	1,479
○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301)	1,402	1,419	1,419	1,419	1,399	1,479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2133-302)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사업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이산가족 초청 위로행사를 운영하고,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홍보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산가족교류단체 지원 사업비 지원 및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를 진행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5억 400만원 중 4억 7,900만원이 집행되고, 2,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504	504	-	-0.5	504	479	25	95	95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로는 이산가족교류단체 지원에 8,200만원, 이산가족 초청행사 및 지원 사업에 3억 100만원,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에 9,6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504	504	-0.5	504	479	25
· 이산가족교류지원단체 지원	82	82	-	82	82	-
· 이산가족 초청행사 및 위로사업	322	322	-0.5	322	301	21
·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	100	100	-	100	96	4

자료: 통일부

2)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2133-306)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고 납북피해자의 복지향상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4억 1,300만원 중 3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9%)되었으며, 1,7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06	406	-	+7	413	396	17	97.5	95.9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 1억 8,500만원,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1억 6800만원(납북자보상심의위 운영 등 7,700만원, 귀환 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용역 1,500만원, 납북자·억류자 문제 공감대 확산 7,600만원),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 3,300만원,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에 9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406	406	+7	413	311	17
·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	185	185	-	185	185	-
·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150	150	+25	175	168	7
·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	52	52	-19	33	33	-
·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19	19	-	19	9	10

자료: 통일부

동 세부사업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송환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세부사업 '납북피해자문제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의 예산(편성) 및 집행 실적 >

(단위: 백만원, %)

사업내용	예산계획	집행실적	집행률
1. 전후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185**	**185**	**100.0**
2. 납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	**150**	**168**	**112.0**
납북피해자 정착금, 보상금 등	64	74	115.6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위원회 운영 등	9	3	33.3
귀환납북자 사회적응 지원 용역	15	15	100.0
납북자·억류자 공감대 확산	62	76	122.6
3. 납북자대책팀 국제기구·유관국 협력	**52**	**33**	**63.5**
미국·유엔 방문 등 국제협력	42	27	64.3
한일 협력채널 구축·운영	10	6	60.0
4.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19**	**9**	**47.4**
북한주민 사체 수습·안치 및 인도	15	7	46.7
북한주민 송환 및 사체 인도 관련 간담회	4	2	50.0
계	**406**	**396**	**97.5**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 중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은 인권인도실(이산가족과)에서, 나머지 3개 내역사업은 통일부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 4억 600만원 중 3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5%)되어 집행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일부 내역사업에서 집행 부적정·계획 변경 반복 등의 문제가 확인됨.

내역사업 ‘전후납북자 가족단체 지원’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179]에 근거하여 해당 단체[180]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해당 단체에는 2012년부터 매년 1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181]이 지원되고 있으며, 2024년 보조금은 1억 8,500만원임.

---

179)「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단체)
①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사업
⑤ 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전문개정 2011. 4. 28.]

180) 해당 단체 개요
○ 설립일 : 2012.8.7. (「전후납북자법」 제29조에 따라 법정단체 등록)
○ 조직·규모: 최○○ 이사장(1952년생,) 및 이사 5명, 회원 400여명, 전국 5개 지부(△서울 △경기·인천 △강원도 △충청·전라도 △경상도) 운영
○ 주요활동 : 납북피해자 권익증진 및 생활지원, 국내외 홍보 활동 등
○ 국고보조금 : 1.85억원(2025년)
- 예산은 △‘12~’14년 100백만원, △15~18년 150백만원, △‘19년~현재 185백만원 지원
○ 대표(이사장) 관련 사항
: 1967.6.5. 백령도 인근에서 조업 중 납북된 풍복호 선장 최원모(1910년생)의 차남
모친은 ‘02.4월 제4차 이산가족상봉에서 재북가족인 언니 2명과 상봉

181) 2012-2014년 1억원, 2015-2018년 1억 5,000만원, 2019년 이후 1억 8,500만원

□ 잦은 보조금 집행계획 변경 및 내부 회원에 사례비 지급의 부적정

해당 단체의 2024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통일부가 당초 계획 및 승인한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전후납북자 가족단체의 국고보조금 예산(승인)액 및 집행액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납북피해가족 위로 및 화합 도모	50,340	57,521	114.3
- 납북피해자 명절 선물	35,000	36,450	104.1
- 납북피해자 경조사 지원	2,600	647	24.9
- 납북피해자 위로 간담회 등	8,420	17,345	206.0
- 귀환납북자 위로 간담회	1,920	516	26.9
- 납북자 무사귀환 기원 위령제	2,400	2,563	106.8
○ 납북피해자 권익증대 활동	10,900	7,714	70.8
- 납북자문제 토론회	1,800	0	0.0
- 납북자문제 국제 활동	7,800	1,617	20.7
- 납북피해자 권익증대 활동	1,000	5,877	587.7
- 단체 소식지 및 홍보	300	220	73.3
○ 납북피해자 의료비 및 생계 지원	80,000	61,420	76.8
- 의료비 지원	10,000	3,600	36.0
- 생계비 지원	70,000	57,820	82.6
○ 단체 운영지원	43,760	58,308	133.2
- 사무실 운영비	4,100	11,366	277.2
- 이사회	1,460	960	65.8
- 연석회의	2,880	5,896	204.7
- 공공요금	1,120	1,278	114.1
- 정기총회	2,500	3,937	157.5
- 인건비	31,700	34,872	110.0
계	185,000	184,963	100.0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당초 예산(승인)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큰 사업에 대하여

‘납북피해자 위로간담회 등’(집행률 206%)의 경우, 이사장·임원 선출 및 법 개정 관련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지방에 거주하는 납북피해가족과의 간담회 횟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23년 12회 → ’24년 32회)하였고,

‘납북피해자 권익증대 활동’(집행률 587.7%)의 경우, 법 개정 및 권익증대 대외 활동(전문가 면담, 관계 기관 행사 참석)이 증가하고, 납북자와 피해가족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언론 인터뷰 활동 증가로 당초 예산대비 집행액이 증가하였으며,

‘사무실 운영비’(집행률 277.2%)의 경우, 사무실 비품 소진으로 구매 증가, 새로 선출된 임원(이사 및 고문) 명함 제작 및 법무사 처리 비용, 노후된 사무실 집기와 가구(의자) 변경 등으로 집행액이 증가하였고,

‘연석회의’(집행률 204.7%)의 경우에도 전년도보다 연석회의를 1회 추가 개최(’23년 2회 → ‘24년 3회)함에 따른 집행액 증가이며,

‘인건비’(집행률 110%)의 경우 2023년부터 근무한 소속 직원(사무국장)의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 초과 근무로 인한 수당 지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통일부(납북자대책팀)가 보조단체에 통보한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

사업 안에서는 교부결정액의 20% 범위에서 자체 조정하여 집행 가능하며, 불가피하게 교부결정액의 20% 범위 이상 변경할 경우 등에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도록 하였음.

해당 단체는 2024년 초에 통일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에서 총 5회에 걸친 변경신청을 통해 일반수용비, 위로행사비 등 특정 항목에 몰아 지출하는 등 변경 집행하였음.[182]

< 해당 단체의 보조금 예산변경 승인(2024.12.) 내역 >

(단위: 천원)

2024.12.11.(4차 변경승인)			2024.12.23(5차 변경승인)		
구 분	금액	주요 변경내용	구 분	금액	주요 변경내용
일반수용비 (210-01)	1,900	- 연말 위로물품 및 사무실 운영비 등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한 증액 - 연말 예정된 국외출장 취소로 인한 취소수수료 등 여비 증액 - 납북자 가족 위로행사 및 위로 간담회 등 지방 출장 증가로 인한 사업추진비 증액 - 납북자 가족 위로행사·위문 수요 등에 충당하기 위한 기타운영비 감액	일반수용비 (210-01)	661	- 연석회의 사례비 지급 및 보조금 정산 회계검증 수수료 지급, 사무실 운영 등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한 증액 - 집행 마감으로 인한 불용액을 일반수용비로 변경
국내여비 (220-01)	610		보수 (110-01)	△428	
국외여비 (220-02)	1,650		국내여비 (220-01)	△100	
사업추진비 (240-01)	1,200		국외여비 (220-02)	△33	
보수 (110-01)	△600		사업추진비 (240-01)	△100	
임차료 (210-07)	△40				
기타운영비 (210-16)	△4,720				
계	±5,360		계	±661	

주: '주요 변경내용'은 보조단체가 통일부에 승인요청 시 기재한 변경내용임.
자료: 통일부

182) 2024년 8월 6일 660만원, 9월 26일 530만원, 10월 16일에 1,716만원을 각각 보수, 일반수용비 등으로 변경집행을 요청하였고, 특히 12월에 승인 요청한 세부내역을 보면, 12월 11일 536만원, 12월 23일 66만원 등임.

12월에만 2차례 변경 승인을 요청한 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연도말에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의 잔액을 일반수용비 등 집행이 용이한 항목으로 변경을 요청하였고, 통일부는 이를 승인(통보일: 12.11., 12.23.)하였음.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해당 단체가 새로운 이사장 및 임원 선출(2024. 5.)로 인해 신규 임원진이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및 행사 등이 증가하여 하반기에 사업 변경이 잦았다고 설명함.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사업계획을 반복적으로 변경하여 최종 집행 내역이 최초 계획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과 그 승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됨.

즉,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변경이 반복될 경우 그 사업의 당초 목적 및 내용에서 멀어지고, 누적된 사업계획 변경의 효과가 신규사업 수준에까지 이를 소지가 있음.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9조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 변경 사유의 명확한 입증과 감독기관의 실질적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바, 통일부가 "집행마감으로 인한 불용액을 일반수용비로 변경"을 사업변경의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것은 단순히 서면 절차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또한, 해당 단체는 이사회· 총회 및 연석회의 개최 시, 회원에 사례비를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단체 임원 및 고문, 회원에 한하여 실제 총회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사례비는 내부 회원이 아니라 외부 인사(외부 전문가, 강사, 심사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회원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자부담으로 해야 함. 즉, 총회 등은 단체의 운영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사례비는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임.

□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생계지원비 등 지급 부적정

통일부는 2024년 1월, 해당 단체에 '보조금 지침'을 통보하면서 기타운영비(210-16)에서 의료지원비와 생계지원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즉, 통일부는 지침에서 의료지원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 1회 지급" 등을, 생계지원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연 2회, 1회 10만원씩 지급. 다만, 집행 잔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이라고 명시하였음.

그런데, 의료지원비의 경우 해당 단체의 정관 제9장[183]에 그 지급 기준과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만, 생계지원비의 경우에는 정관에도 그 지급 근거가 없

183) 해당 단체의 「정관」 제9장 의료비 지원 <개정 2021. 4. 5.>
제39조(적용범위) 본회의 의무를 다한 회원으로 적용한다.
제40조(의료지원비 지급기준 및 지급액) 의료지원비는 당해 국가보조금 예산액 책정에 따라 처리하되, 1인 1회 지급을 기준으로 하되 아래사항을 기준으로 개인의 형편을 참고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50만원이상 초과할 수 없다.)
1. (1인1회만 지급)
암·치매 판정으로 6개월 이상 치료시 - 50만원
2. (만75세 이상 - 년 1회 지급)
병원 입원시 - 20만원(동일병명 중복지급 불가)
3. (만75세 이하 - 2년 1회 지급)
10일 이상 입원시 - 30만원(동일병명 중복지급 불가)
10일 미만 입원시 - 20만원(동일병명 중복지급 불가)

음.

한편, 상위 법령에 근거없이 보조단체의 정관만을 근거로 하여 보조금으로써 해당 단체 회원에게 의료지원비, 생계지원비 같은 복지성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의 교부 결정 내용과 그 지급 목적(예: 사업 수행 경비, 정책연구, 행사진행 등) 외 사용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비록 관련 법률 제29조제4항에서 해당 단체의 사업수행 내용 중 하나로 '납북피해자 상호간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단체의 정관에서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단체 정관 또는 실무부서의 지침으로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상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복지비 성격의 보조금 집행은 위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184]

따라서 해당 단체 회원에 의료지원비, 생계지원비 등 복지적 성격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후 이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184) 이는 유사 보조단체(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에도 없는 항목임.

□ 한시기구 ‘납북자대책팀’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조치 여부 등 종합적 검토 필요

통일부는 2023년 9월 직제 개편을 통해 장관 직속의 한시조직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185]하고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전담하도록 하였음.

이는 직제개정 당시 재임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 국제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종래 이산가족과가 수행하던 ‘특수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지원 기능을 분리하여 이관한 결과임.

그러나 납북자 및 국군포로는 본질적으로 생이별 상태에 놓인 ‘남북 이산가족’으로 볼 수 있으며, 자유로운 접촉이나 생사 확인조차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별도 조직(납북자대책팀)에서 관리하는 것은 행정의 지속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실제 2024년도 납북자대책팀의 주요 사업은 2012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소수자(6명)에 집중된 반면, 전체 국군포로 및 전후납북자 가족 등 절대 다

---

185)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의3(납북자대책팀장)
① 장관 밑에 납북자대책팀을 둔다.
② 납북자대책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납북자대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2.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 협상대책 수립 지원
3. 납북자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조
4. 납북자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5. 납북자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6.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주민의 접촉·왕래 및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7.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8. 납북자 관련 국내외 법인·단체 지원
9. 납북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정·개정
10. 납북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
11.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본조신설 2023. 9. 8.]

수는 사업 대상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음.[186]

한편, 국외출장 등을 통한 성과로 제시된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이미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외교적 노력의 성과이며, 납북자대책팀 신설에 따른 직접적인 사업 결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가 단기간에 급부상하거나 위기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전담조직 운영으로 신속한 집행, 혁신적 시범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동 사안은 그 성격이 '가족의 분리와 단절'이라는 점에서 이산가족 정책의 연장선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제기될 수 있음.

< 조직 유형별 특성 비교 >

구분	한시조직(납북자대책팀) 유지	정규조직(이산가족과) 통합
집중성·신속성	단일 이슈에 대한 조직 역량 집중, 신속한 의사결정 용이	이산가족 업무와 병행 시 우선순위·자원 배분에서 상대적 분산 우려
혁신성·유연성	시범사업 추진, 대외 홍보력 강화	표준화된 정책 지속, 기존 실무 관행 중심적 운영
연계성·효율성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 부족, 조직 해산 시 성과 단절 우려	정책적 연속성 확보, 대상 관리 효율성 제고
예산·민원 대응	한시 예산·인력 편성, 종료 시 민원 소관 모호 가능성	장기 예산·인력 확보, 민원 연속적 대응 용이
정책 대표성	소수 현안(최근 억류자 등)에 집중, 대다수 국군포로·일반 납북자 소외 경향	모든 이산가족(일반·특수) 포괄, 대표성 강화
협력 및 외교성과	상징성 부각, 단기 위기대응 유리	안정적 대내외 협력, 지속적 정책교섭 채널 유지

186) 1953년 7월 정전협정 당시 국군실종자 수는 약 8만 2천명으로 추정되나, 포로교환을 통해 귀환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통일부 홈페이지, 주요사업〉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현황〉 국군포로, 검색일 2025. 7.17. 10시 기준). 또한, 이산가족정보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는 13만 4,427명임(2025. 4월말 현재)이고, 생존 남한 이산가족 수는 3만 6,099명임.

따라서 납북자대책팀의 존속기한(2026년 9월)이 도래함을 고려하여 북한억류 소수 납북자에 초점을 둔 한시조직으로서의 전담조직을 계속 운영할지, 이를 정부 조직 정책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단순 정규조직화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 정책의 연속성 및 체계적·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정규조직과 통합할 것인지에 대하여 조직진단 및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봄.

3)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2133-505)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은 이산가족 교류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4억 1,600만원 중 3억 9,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0%)되었고, 2,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16	416	-	-	416	395	21	95.0	95.0

자료: 통일부

4)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사업은 북한인권 정책 수립·추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국제사회 논의를 지원하고, 북한인권 실상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57억 9,400만원이고, 예산현액 57억 8,200만원 중 94.3%인 54억 5,2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8,700만원은 불용(1억 4,300만원 이월)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5,794	5,794	-	△12	5,782	5,452	187	94.1	94.3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로 '북한인권 개선 정책기획 조정' 사업에 5,400만원,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사업에 8억 9,100만원,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사업에 6,300만원, '국립 북한인권센터 건립'에 44억 4,4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5,794	5,794	△12	5,782	5,452	187
· 북한인권 개선 정책 기획 조정	54	54	-	36	36	-
·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1,029	1,029	12	1,041	891	150
·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82	82	△19	63	63	-
· 국립 북한인권센터 건립	4,629	4,629	△5	4,624	4,444	37

자료: 통일부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사업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편성예산 57억 9,400만원 중 54억 5,200만원이 집행됨(집행률 94.1%).

< 세부사업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예산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북한인권 개선 정책 기획 조정	정책개발 및 전문가 의견수렴	33	26	78.8
	유관기관 정책 협의	10	18	180.0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10	9	90.0
	소계	**54**	**54**	**100.0**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 민관협력 강화	194	135	69.6
	주요국 정책협의 및 국제회의 참석	69	44	63.8
	북한인권 국제대화	767	711	92.7
	소계	**1,029**	**891**	**86.6**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북한인권 정책 Q&A 자료 개발	12	-	0.0
	북한인권 참고자료 콘텐츠 개발	40	57	142.5
	미디어 매체활용 홍보	30	5	16.7
	소계	**82**	**63**	**76.8**
국립북한인권 센터 건립 (‘24년~’26년 총사업비 25,927)	토지매입	4,082	4,082	100.0
	설계비	498	318	63.9
	감리비	39	39	100.0
	일반수용비 등	10	5	50.0
	소계	**4,629**	**4,444**	**96.0**
	계	**5,794**	**5,452**	**94.1**

자료: 통일부

□ 예산 편성 내실화 및 집행 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필요

동 세부사업의 전체 집행률(94.1%)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내역사업별 집행을 보면, 일부 사업에서 불용 및 이월, 빈번한 내역변경 및 세목 전용, 연도말 집중 집행 등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간 괴리가 확인됨.

내역사업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은 3개의 내내역사업(북한인권 민관협력 강화, 주요국 정책협의 및 국제회의 참석, 북한인권 국제대화)으로 구성되고, 2024년도에 편성된 예산 10억 2,900만원 중 8억 9,100만원이 집행(집행률 86.6%)되었음.

동 내역사업에 편성된 국외여비는 당초 '주요국 정책협의 및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편성(3,780만원)하였을 뿐 '북한인권 국제대화' 추진을 위한 통일부 소속 공무원 여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

「국가재정법」 제34조[187]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2023. 9. 국회제출)에 따르면, 통일부는 2024년에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국내 1회, 국외 2회 개최할 것을 예정하여 용역비(10억 6,700만원)를 편성하였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3억원이 감액된 7억 6,700만원으로 확정되었는데, 국회에서 심의절차가 진행되는 시기에도 공무원 출장을 위한 국외여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188]

187)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설명서
3. ~ 16. (생략)

188) 「북한인권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통일부가 제출한 <2024년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

즉, 당초 2024년도 예산에는 ‘북한인권 국제대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 총 7억 6,700만원 중 행사 위탁을 위한 일반용역비(210-14) 7억 6,400만원[189], 조달수수료 및 사례비(210-01) 220만원, 전문가 간담회를 위한 사업추진비(240-01) 81만원 등을 편성하면서도 직원 출장을 위한 국외여비(220-02)를 편성하지 아니함.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24년에 ‘북한인권 국제대화’ 해외 개최를 위한 직원 여비 마련을 위해 임차료(210-07)에서 1,700만원을 자체전용하였고, 다른 세부사업 ‘이산가족문제 해결’,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서도 전용하게 된 결과, 동 내역사업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에 편성된 국외여비(3,780만원)보다 2,421만원 초과한 6,200만원을 집행하게 된 것임.

< 내역사업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의 국외여비(220-02) 편성 및 집행 >

(단위: 천원)

구분	예산편성(계획)		집행내역	
	사업내용	예산액	사업내용	집행액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국외여비 (220-02)	주요국 정책협의 및 국제회의 참석	37,799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석 (3.17.~21., 담당 사무관 외 2명)	9,353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참석 (4.14.~18., 담당 과장 외 1명)	9,944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1차,7월) (7.20..~26., 담당 실장 외 3명)	**18,337 (당초 미편성)**
			북한 제4차 UPR 참석 정부대표단 참가 (10.17.~20., 담당 과장 외 1명)	5,966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2차, 10월) (10.28.~29., 담당 국장 외 3명)	**18,404 (당초 미편성)**
	계	**37,799**		**62,004**

자료: 통일부

황>(2024.8., p.11)의 문구로 미루어 볼 때, 2023년까지 국내에서 추진한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2024년부터 해외에서도 개최하기로 정책을 변경한 것이 자체전용 및 국외여비 초과 집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 2024년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

’24년부터는「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국내 개최에서 해외 2회 개최로 확대,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 담론 확산 도모
- 미국 워싱턴D.C.에서「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개최(’24.7.22.~23.),「2024 북한인권보고서」소개 등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
  * 주요 참석자: △데이먼 윌슨(NED 회장), △존 햄리(CSIS 소장), △마이클 커비(前 COI 위원장), △줄리 터너(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유지태(북한인권홍보대사) 등

189) 정부가 제출한 10억 6,700만원 중 국회가 3억원을 감액함에 따라 당초 국내 1회, 국외 2회 개최계획을 국내 1회를 개최하지 않고 국외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함.

통일부는 ‘2024년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2024년 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美 NED 및 CSIS와 협업 사업을 추진하였고, UN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190] 수검을 계기로 10월 28-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인권 문제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대응해야 할 분야를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NGO와 논의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 것으로 설명함.[191]

그러나 향후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 출장을 위한 여비 등은 예산(안) 편성 시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임.[192]

또한, **내역사업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은 2024년 편성 예산 8,200만원 중 6,300만원을 집행(집행률 76.8%)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북한인권 참고자료 콘텐츠 개발’은 당초 예산보다 1,700만원 초과 집행(142.5%)된 반면, ‘미디어 매체활용 홍보’의 집행률은 16.7%에 그쳤고, ‘북한인권 정책 Q&A자료 개발’은 전액 집행되지 아니함.

---

190) 2024년 11월 유엔 인권이사회 주관으로 실시된 ‘북한 제4차 UPR’에는 86개국이 총 294개 권고를 북한에 제시했으며, 우리 정부도 억류 국민의 석방 촉구, 이산가족 문제 해결, 강제북송 탈북민 인권보호, 북한의 군사화에 따른 인권침해 중단 등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음. 북한에 권고한 주요 내용은 정치범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및 고문 중단, 강제노동·아동노동 근절, 표현의 자유 보장,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었음. 북한은 이 중 143개 권고를 수용, 7개는 부분 수용했으나, 144개 권고(정치범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중단, 국제 인권기구 협력 등)는 거부하거나 “noted”(사실상 거부)로 답변하였는데,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 이행, 강제북송 탈북민 보호,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등 핵심 권고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힘.

191) 통일부는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 관련 문안을 외교부에 전달하고 ‘북한인권 국제대화’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활동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함.

192)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당초 편성한 용역비 내에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등 용역사업 진행단계에서 용역비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를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비 내에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를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편성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2025회계연도 국제회의 예산에는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실제로는 600만원 초과한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요금(600만원), 국내여비(100만원), 사업추진비(300만원) 및 일반연구비(3,000만원)를 일반용역비(210-14) 등으로 세목조정 및 자체전용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인권안보 영어 온라인 강의 제작' 등에 총 4,520만원을 집행한 바, 이는 편성 예산(3,000만원)보다 1,520만원 초과 집행(집행률 150.7%)한 것임.

< 내역사업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의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 >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편성(각목)		집행 내역		
			사업 내용	집행액	세부 집행내역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210-01	12,000	북한인권-안보-통일 설명자료 제작	7,400	- 설명자료 제작 - 리플릿 제작 - 영문번역 사례비
	210-02	6,000			
	210-14	30,000	북한인권안보 영어 온라인 강의	48,300	- 제작 용역 계약 - 기술평가 사례비 - 강사료 지급 - 설문조사 답례
	220-01	960			
	240-01	3,000	북한인권 공동 토론회 등	2,700	- 인쇄물 제작
	260-01	30,000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약칭 '북한인권 로드맵') 홍보영상 제작	4,400	- 홍보영상 제작
	계	**81,960**		**62,800**	

주: 일반연구비(260-01) 전액을 일반용역비 등으로 세목조정
자료: 통일부

< 내역사업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의 일반용역비(210-14) 집행내역 >

(단위: 천원)

계획(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30,000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약칭 '북한인권 로드맵') 홍보영상 제작	4,400	150.7%
		북한인권안보 영어 온라인 영상 강의 제작	40,800	
		계	**45,200**	

자료: 통일부

□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필요

동 세부사업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전체에서 2024년도 예산 내역변경, 세목조정 및 자체전용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세부사업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135-306)의 보조사업평가 용역비(2,000만원)로 내역변경된 반면, 다른 세부사업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2133-302),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2133-306)에서 자체전용으로 출장여비 410만원을 확보하였음.

이와 같이 행사경비, 숙박비, 간담회비 등 다양한 용도로 변경집행이 반복되었으며, 특히 4분기인 10월에 3회, 2,830만원, 11월에 4회, 3,840만원, 12월에 2회, 580만원이 변경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사업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의 변경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4.4.22.)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14	20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2135-306)	210-14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보조사업) 평가 용역비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4.8.5.)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2135-303)	220-02	3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20-02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국외출장자 숙박비 통합 결제분 이전
세목조정 ('24.10.8.)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07	0.3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14	세계여아의 날(10.11.) 계기 토론회(10.10.) 경비 충당
세목조정 ('24.10.18.)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02 210-07	6 5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14	'한미일 북한인권 공동행사' 비용 충당
자체전용 ('24.10.29.)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07	17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20-02	북한인권 국제대화 (제네바) 행사 공무국외출장비 확보
자체전용 ('24.11.7.)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2133-302)	220-01	0.5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20-02	북한 제4차 UPR 정부대표단 참가 공무국외출장비 확보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2133-306)	220-02	3.6			
자체전용 ('24.11.13.)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60-01	30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14	'세계여아의 날' 계기 토론회(10.10.) 비용 (15)
						북한인권안보 영어 온라인 강의 제작 (15)
세목조정 ('24.11.26.)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20-01	0.1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20-02	국외출장 숙박비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4.11.27.)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07	4.2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14	북한여성 인권 관련 토크콘서트(12.18.) 행사 비용 충당
내역변경 ('24.12.9.)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2135-303)	240-01	0.8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40-01	북한인권 정책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비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4.12.24.)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14	5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135-302)	210-01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조달수수료 납부

자료: 통일부

아울러, 기본경비에서도 내역변경이 있었던 바, 다른 실·국 또는 세부사업에서 인권인도실 사업 추진을 위해 4분기에 변경집행된 부분만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타 세부사업에서 '인권인도실'로의 내역변경 등 >

(단위: 백만원)

날짜	-에서 (타 세부사업명-세목)		금액	인권인도실로	사유
내역변경 '24.10.14.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20-02**	**12**	**220-02**	**'한미일 북한인권 행사' 국외출장여비 부족 (7011-257)**
자체전용 '24.11.7.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2133-302)	220-01	0.5	220-02	북한 제4차 UPR 정부대표단 참가 공무국외출장비 확보 (2135-302)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2133-306)	220-02	3.6		
내역변경 '24.11.25.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40-02**	**0.8**	**240-02**	**북한인권 전문가 등 업무협의 간담회비 부족분 충당 (7011-257)**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7011-258)	**240-02**	**1.1**		
내역변경 '24.12.9.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2135-303)	240-01	0.8	240-01	북한인권 정책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비 부족분 (2135-302)

자료: 통일부

통일부(인권인도실)는 다른 세부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2024년 10월 '한미일 북한인권 행사'에 공동 소요된 국외여비를 통합 결제하거나, 타 실·국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활용한 소액 전용이므로, 이러한 내역변경 등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명함.

이와 같은 통일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빈번한 내역변경, 전용 및 세목조정은 당초 사업 목적과 계획을 훼손시켜 예산 편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고, 특히 타 세부사업 또는 세목 간 이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미흡함을 보여줌.

특히 여비 항목(220)의 경우 내역사업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에서 국외여비를 2,425만원 초과 집행하였고, 기본경비(7011-257)에서도 반복적인 전용을 통해 당초 편성된 예산액(3,498만원) 보다 1,000만원 가량을 초과 집행한 점은 문제도 볼 수 있음.[193]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국제기구와의 연계 행사, 초청행사 등의 집행 수요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예산(안) 편성시 반영함으로써 분기별·행사별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93) < 인권인도실 기본경비(7011-257) 중 국외여비(220-02) 계획 및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당초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액		실제 집행내역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7011-257)	이산가족교류 추진 관리 지원	10,351	국립북한인권센터 유사시설 벤치마킹	2,542 (4,761)
	북한이탈주민 사후관리	11,192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7,977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 협력	13,436	한미일 북한인권행사	28,171 (1,423)
계		**34,979**		**38,690 (6,184)**

주: 실제 집행내역에서 ( )부분은 기본경비 외 집행을 의미
자료: 통일부

5)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2135-303)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은 「북한인권법」 제13조[194]에 따라 북한주민의 전반적인 인권실태 및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기록하고,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수집·연구·보존·발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8억 6,000만원이고 예산현액 8억 5,600만원 중 98.1%인 8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고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860	860	-	±74	856	840	16	97.6	98.1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5억 4,200만원,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사업에 1,300만원, '조사결과 활용' 사업에 2억 8,4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860	860	±74	856	840	16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612	612	△53	559	543	16
·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34	34	△21	13	13	-
· 조사결과 활용	214	214	+70	284	284	

자료: 통일부

194) 「북한인권법」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 세부사업은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조사결과 활용’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에 8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8억 3,900만원 집행하여 전체 집행률은 97.6%임.

< 세부사업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예산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사업 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탈북민 실태조사(답례품, 여비, 연구용역 등)	90	66	73.3
	분야별 인권실태 평가(회의 준비, 평가회의 등)	6	3	50.0
	조사관 심리상담 및 역량강화(교육, 워크숍, 연구용역 등)	23	5	21.7
	유관기관 업무협의(준비물품, 장소임차, 간담회 등)	8	2	25.0
	자문단 운영(자문 사례비, 간담회 등)	14	3	21.4
	지원인원 인건비(보수, 4대보험 등)	118	108	91.5
	심층조사 및 연구(연구용역)	15	0	0
	기록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실 임차, 공공요금, 관리용역비 등)	338	355	105.0
	소 계	**612**	**542**	**88.6**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자료수집	12	6	50.0
	인권기록 및 북한인권 관련 해외사례 정보수집	22	7	31.8
	소 계	**34**	**13**	**38.2**
조사결과 활용	자료발간(자문 사례비, 인쇄비, 간담회 등)	20	18	90.0
	공개보고서 발간(한글판 국문판 발간비)	170	245	144.1
	설명회 개최(국내외 설명회, 임차, 여비 등)	24	21	87.5
	소 계	**214**	**284**	**132.7**
	합 계	**860**	**839**	**97.6**

자료: 통일부

□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내역사업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은 편성예산 6억 1,200만원 중 5억 4,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8.6%이지만, 탈북민 실태조사 등 내내역사업별로 편성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이 현저히 낮거나 전액 미집행되기도 함.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는 '탈북민 실태조사'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이중 6,6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탈북민 수 감소로 인해 당초 계획된 조사대상(550명)보다 축소된 228명을 조사하여 사례비 등이 덜 집행되었고,[195] 일반연구비로 편성된 6,000만원 중 '북한인권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용역(1건)만 집행(2,000만원)하고 나머지는 다른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비 등으로 집행하였음.

또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조사관에 대한 유니폼 구입을 위하여 세목조정을 실시하여 피복비(210-03) 300만원을 집행한 바, 이에 대하여 기록센터는 원만한 실태조사 수행 및 센터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예산 항목을 신설하여 변경 집행한 것임.

내역사업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는 북한인권 관련 자료수집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 3,400만원 중 1,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8.2%에 불과함.

특히 편성된 일반수용비(210-01) 1,600만원 중 다른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에 1,300만원을 사용하여 실집행은 260만원에 불과하였고,

195) 다만, 탈북민 수 '22년 58명, '23년 163명, '24년 25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

국외여비(220-02)도 동 내역사업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에서 585만원, 다른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에서 1,413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 북한인권기록센터의 2024년도 국외출장 내역 >

(단위: 천원)

출장명	국외출장 내역			
	출장지	출장자	집행액주)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참석 및 「2024 북한인권보고서」 설명회	미국 (워싱턴DC,뉴욕)	국장 1명 과장 1명 5급 1명	o 항공운임료 11,862 o 여비(일비,식비,숙박) 4,336	16,198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참석 * 인권인도실 합동출장	스위스 (제네바)	6급 1명	o 항공운임료 3,457 o 여비(일비,식비,숙박) 319	3,776
계				19,974

주: 미국 출장(1,620만원)은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에서 207만원, ‘조사결과 활용’에서 1,413만원 각각 집행, 스위스 출장은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에서만 약 378만원 집행.
자료: 통일부

기록센터는 유관부서(인권인도실, 통일협력국)와 공동으로 국외 출장을 진행하면서 비용이 절감되었다고 설명하지만, 동 내역사업의 임차료와 여비의 경우, 2021년도 이후 편성대비 집행이 매우 저조하여 그 수요예측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안) 편성의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내역사업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의 임차료 및 여비 편성 및 집행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임차료	5	-	5	2	5	3	5	-
국내여비	2	-	-	-	-	-	0.2	-
국외여비	15	-	13	-	13	13	9	6

자료: 통일부

즉, 이와 같은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2135-303) 사업 집행은 당초 사업 계획의 현실성 부족, 수요 예측 미흡으로 인한 과다 편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반복되는 사업 미집행과 이로 인한 불용은 향후 예산 편성의 신뢰성 저하 및 재정운영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영상 보고서' 제작 부적정 등**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북한인권보고서 영상보고서를 제작하는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동 사업에 편성된 2억 1,400만원에서 7,000만원 초과된 2억 8,400만원이 집행됨(집행률 132.7%).

기록센터는 2023년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첫 공개 발간[196]한 이후, 동 보고서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층을 고려, 기존의 책자형 종합보고서(국문, 영문) 외에 리플릿 형태의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를 제작하게 된 것으로 설명함.

< 2024 북한인권보고서 종류 등 >

종류	내용
종합보고서(국문, 영문)	국내외 전문가·학계·기관 대상
요약보고서(국문, 영문)	일반 국민 대상, 종합보고서의 주요 증언 수록
영상보고서	유튜브 및 SNS 활용, 젊은 세대 접근 및 국내외 공론화 목적

자료: 통일부

196) 북한인권센터는 2023년에도 발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전용 및 세목조정 등을 통해 총 1억 4,1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음.

즉,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대내외 이해 제고를 목표로 내용과 형식을 개편하고 정부 보고서로서의 전문성·엄밀성 제고를 위해 집필·감수 등에 있어서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특히 영문판의 경우 9차례에 걸친 감수를 시행하여 집행액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함.

<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 예산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편성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조사결과 활용	자료발간 (자문 사례비, 인쇄비, 간담회 등)	20	18	90.0
	공개보고서 발간 (국문판, 영문판 발간비)	170	245	144.1
	설명회 개최 (국내외 설명회, 임차, 여비 등)	24	21	87.5
	계	**214**	**284**	**132.7**

자료: 통일부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리플릿 형태의 요약보고서 및 영상보고서 제작 외에도 종합보고서 또한 당초 계획했던 부수(국문 2,500부, 영문 1,500부)보다 각각 1,500부 및 500부를 추가 발간함.

<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예산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2135-303)	종합보고서	국문판 2,500부	59	국문판 4,000부	발간	55
					감수	12
					발송	9
					소계	**76**
		영문판 (감수・번역) 1,500부	82	영문판 2,000부	발간	55
					감수·번역	30
					발송	15
					소계	**100**
	요약	-	-	**리플릿 형태 (국문4,000, 영문3,000)**		**27**
	영상	-	-	**영상보고서**		**55**
		소계	**141**	**소 계**		**258**
비대상 기본경비 (7018-264)		-	-	종합보고서 영문판 발송비		4
		계	**141**	**계**		**262**

자료: 통일부

기록센터가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위해 세목조정 등 변경집행한 내역을 보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4년 4월에 영상보고서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 5,500만원을 용역비로 세목조정한 후 8월에 보고서 발간을 위해 다시 일반수용비로 4,000만원 자체전용하였고,

9월 이후 기록센터 운영에 부족한 일반수용비 마련을 위해 임차료와 국내여비 등을 세목조정 또는 자체전용하였으며, 10월말에는 일반수용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하나원 기본경비(7018-206)에서 기록센터 기본경비(7018-264)로 1,000만원을 내역변경하여 영문보고서 발송비로 400만원을 집행함.

< '2024 북한인권보고서' 관련, 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4.4.23.)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2135-303)	일반수용비 (210-01)	55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2135-303)	일반용역 (210-14)	'북한인권 영상보고서' 제작비 충당
자체전용 ('24.8.23.)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2135-303)	일반연구비 (260-01)	40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2135-303)	일반수용비 (210-01)	보고서 발간 관련 부족분 등 충당
세목조정 ('24.9.26.)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2135-303)	임차비 (210-07)	7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2135-303)	일반수용비 (210-01)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4.10.21.)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2135-303)	임차비 (210-07)	2.8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2135-303)	일반수용비 (210-01)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자체전용 ('24.10.24.)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2135-303)	국내여비 (220-02)	6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2135-303)	일반수용비 (210-01)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4.10.31.)	총액인건비 대상 하나원 기본경비 (7018-206)	특근매식비 (210-05)	10	총액인건비 비대상 북한인권기록센터 기본경비 (7018-264)	일반수용비 (210-01)	기본경비 부족분 충당 (영문판 발송비 4백만원 포함)

자료: 통일부

기록센터는 국회의 예산 심사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한 영상보고서 발간을 위해 빈번한 세목조정과 전용을 시행한 바, 향후 이러한 변경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충실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필요한 사업비를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북한인권보고서의 자료 수집이 대부분 탈북민 인터뷰 및 심층 면접에 의존하고 증언 내용에 큰 차별성이 없어 매년 발간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보고서 발간과 관련하여 발간 주기 등을 재검토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6) 북한인권재단 운영(2135-304)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남북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4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75	475	-	-	475	-	475	-	-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2024년도 예산 4억 7,500만원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예산 세부 편성내역 및 합계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재단 사무실 설치	▪ 설치공사비(인테리어, 전기·소방·설비 등) 365 ▪ 설계 및 감리·부대비 10	375	-	-
사무실 임대·관리비	▪ 2개월분 사무실 임대·관리비 100	100	-	-
합계		475	-	-

자료: 통일부

□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 개선 필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3월 3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197]에 근거, 법 시행일에 맞추어 출범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법 제12조[198]에 따른 재단이사 구성이 완료되지 못해 2025년 7월 현재까지 설립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475	475	-	475	-	-	-	475
2022	475	475	-	475	-	-	-	475
2023	475	475	-	475	-	-	-	475
2024	475	475	-	475	-	-	-	475
2025	475	475	-	-	-	-	-	-

자료: 통일부(2025. 6. 30. 기준)

197) 「북한인권법」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198) 「북한인권법」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로 인하여 2016년 예비비 46억 7,600만원, 2017년 117억 5,500만원, 2018년 108억 5,800만원, 2019년 8억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4억 7,500만원 등 편성된 출연금 전액이 불용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정책개발, 국내외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핵심 조직으로 그 설립이 의무사항인 만큼, 관련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되어 그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199]을 기울이는 한편, 재단 출범 이후에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공간 확보, 운영계획 등 제반 준비사항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봄.

199) 참고로,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하여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이사 추천 협조 요청 공문을 총 14차례 발송한 바 있으며, 「북한인권법」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에 따라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할 경우 재단 출범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임.

< 재단 이사추천 관련 통일부 공문발송(총 14회) >

2016년 4회(8.11, 10.5, 11.4, 12.15), 2017년 1회(8.24) 2018년 3회(3.2, 4.19, 11.9), 2019년 1회(8.28), 2020년 1회(3.27), 2022년 1회(7.25), 2023년 1회(8.30.), 2024년 2회(7.31, 11.18.).

7)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2135-305)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은 인도지원 정책개발 및 인도지원 민관 국제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정책 소통 및 유관기관 간 인도지원 협력 체계 구축·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 예산 1억 6,400만원 중 이·전용액 1,200만원을 제외한 7,900만원이 집행되고, 7,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64	164	-	△10	154	79	75	48.2	51.3

자료: 통일부

< 2024년도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164	164	△10.2	153.8	79	74.8
· 인도지원 정책개발	22	22	△0.2	21.8	19	2.8
·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	142	142	△10	132	60	72

자료: 통일부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은 2024년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인도지원 정책개발’ 및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4년도 편성예산 1억 6,400만원 중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58.5%)됨.

< 세부사업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예산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인도지원 정책개발	정책자문 및 유관기관 등 협의	22	19	86.4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	민관정책협의회	20	3	15.0
	인도협력 전략세미나 운영	69	37	53.6
	국제기구 협력	53	20	37.7
	소계	142	60	42.3
	계	164	79	48.2

자료: 통일부

□ 당초 편성 목적 외 소송경비 집행 부적정

내역사업 ‘인도지원 정책개발’은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의 체계화 및 인도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자문, 전문가 간담회,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2024년도 예산 2,200만원 중 1,900만원이 집행됨(집행률 86.4%).

< 내역사업 '인도지원 정책개발' 예산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사업내용	예산(편성)액	집행액	비고
인도지원 정책개발 (정책자문 및 유관기관 등 협의)	자문 사례비 및 회의자료 제작 등	10	3	전문가 자문
	자료번역비 등	5	-	
	민간단체 의견수렴 출장 등	1	-	
	전문가 간담회	3	3	
	유관기관 간담회	3	2	
	기타 사업 관리	-	11	
	계	22	19	

자료: 통일부

당초 예산에는 전문가 자문과 정책협의에 필요한 사례비 및 회의자료 제작 비용, 우편요금 및 국내 여비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에서는 유관기관 협의 또는 자료발송 관련 우편요금, 국내 출장 여비는 전액 불용되었고, 예상하지 못한 남북협력기금 교부결정 취소청구 소송(2024년 11월 제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으로 1,100만원이 집행됨.

< '기타 사업 관리'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소송 유형	사건 번호	원고	피고	소제기일	사건개요	진행 현황	변호사 비용
행정	2024누 68493	(사)OOOOO	통일부장관	'24.11.21.	남북협력기금 교부결정 취소청구	2심 진행중	11

자료: 통일부

결국 동 내역사업의 집행률은 86.4%이지만, 당초 계획된 정책자문 및 협의를 위해 집행된 금액은 800만원(집행률 36.4%)에 불과함.

통일부는 예상치 못한 소송(남북협력기금 교부결정 취소청구)에 대응하여 해당 소송을 과거 정책사업의 연장선으로 보아 '인도지원 정책개발' 사업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하였다는 입장이나,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소송비용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집행의 목적 적합성 저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즉, 정책자문 및 전문가 간담회 등 본래의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해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기관운영의 경상적 경비(법무 대응 비용)를 정책개발 사업비에서 지출함으로써 사업비와 경상비의 구분 사용 원칙을 약화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음.

향후에는 불가피한 소송 대응과 같은 돌발 상황은 법무대응 경비 등 해당 목적 및 비도(費途)로 편성·운영되는 예산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운영이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봄.

□ 집행 부진 부적정 및 실제 추진 가능한 대안의 적극적 발굴 필요 등

내역사업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은 정부가 민간단체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여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편성예산 1억 4,200만원 중 6,0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42.3%임.

< 내역사업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의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사업내용		예산(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	민관정책 협의회	참석 사례비 및 회의자료 제작 등	10	-	
		민간단체 의견수렴 출장 등	2	-	
		민간단체 방문	2	-	
		민간협의체 간담회	6	3	
		소계	**20**	**3**	**15.0**
	인도협력 전략세미나 운영	발제통역 사례비 및 자료 제작 등	23	13	
		회의장 및 장비 임차료	14	4	
		행사 용역	30	20	
		전문가 간담회	2	-	
		소계	**69**	**37**	**53.6**
	국제기구 협력	국제기구 업무협의 출장	13	-	
		국제포럼 운영	40	20	
		소계	**53**	**20**	**37.7**
	계		**142**	**60**	**42.3**

자료: 통일부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민관정책협의회는 15.0%, 인도협력 전략세미나 운영은 53.6%, 국제기구 협력 37.7% 등으로 저조하였고, 연도말 불용이 예상된 사업비는 다른 세부사업 '납북피해자문제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2133-306)'의 보상금으로 전용되었음.

< 세부사업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의 전용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4.10.25.)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2135-302)	일반수용비 (210-01)	10	납북피해자문제해결 및 인도적송환업무지원 (2133-306)	기타보전금 (310-04)	납북자 피해위로금 지급 부족분 충당
		공공요금 (210-02)	0.2			

자료: 통일부

통일부(인도지원과)는 동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로 북한의 국경 봉쇄 등 대외여건 변화로 인해 대면 행사를 축소하고, 국제기구와의 실무면담을 화상으로 대체함으로써 국외출장 경비 등을 절감한 것에 따른 것으로 설명함.

그러나 이는 통일부가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내외 정세 및 인도지원 여건에 대한 현실성 있는 수요 예측과 계획을 미흡하게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통일부 자체평가 결과에서도 북한 내 유엔기구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부로부터의 인도지원 접근이 제한되는 등 북한 내 실질적 인도주의 활동 여건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평가됨.[200]

그럼에도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기조 위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와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임.

통일부가 이러한 기조와 노력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반복적인 예산의 집행 부진 및 변경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 시 대내외 정세 및 인도적 지원 여건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실제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사업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봄.

200) 동 세부사업은 통일부 자체평가(2024년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보고, 2025.2.)에서도, “북한의 국경 봉쇄 및 외부 지원 거부 등에 따라 유엔기구의 복귀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등 북한 내 인도주의 활동 재개를 위한 실질적 여건 미비”로 ‘부진’으로 평가받은 바, 단순히 행사를 축소하기보다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창의적 방안(디지털 인도협력 등)을 모색하여 집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8)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135-306)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은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사업(인력양성, 문화행사, 공론화 등)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통일인식 제고와 지역사회 통일 교육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27억 4,900만원이고, 예산현액 27억 6,900만원 중 99.9%인 27억 6,600만원이 집행되었고, 3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749	2,749	-	20	2,769	2,766	3	100.6	99.9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로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에 18억 5,000만원, '자유민주평화통일 담론 확산' 사업에 9억 1,6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2,749	2,749	20	2,769	2,766	3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1,830	1,830	20	1,850	1,850	-
· 자유민주평화통일 담론 확산	919	919	-	919	916	3

자료: 통일부

9)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2135-501)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각종 정보 및 북한인권 침해 사건을 기록·보존하기 위해 DB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북한인권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3억 8,000만원 중 88.4%인 3억 3,6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낙찰차액 4,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80	380	-	-	380	336	44	88.4	88.4

자료: 통일부

10)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2137-301)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사업은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0. 9. 27. 시행)에 근거하여 6.25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납북피해자에 대한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14억 1,900만원 중 13억 9,900만원이 집행되고 2,0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419	1,419	-	-	1,419	1,399	20	98.6	98.6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전시납북자 가족단체 지원에 1억원, 기념관 운영에 12억 9,9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2024년도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1,419	1,419	-	1,419	1,399	20
· 전시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100	100	-	100	100	-
· 기념관 운영	1,319	1,319	-	1,319	1,299	20

자료: 통일부

동 세부사업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건립된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전시납북자 가족단체 지원’ 및 ‘기념관 운영’의 두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 예산은 총 14억 1,900만원으로 이 중 1억원은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12억 9,900만원은 기념관 운영 경비로 집행됨(집행률 98.6%).

< 내역사업 ‘기념관 운영’ 편성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기념관 운영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3	683	97.2
	기념관 콘텐츠 개발 및 연구	222	222	100.0
	기념관 홈페이지 운영	22	22	100.0
	기념관 시설 유지관리	166	166	100.0
	기타 기념관 운영 관리	206	206	100.0
	계	**1,319**	**1,299**	**93.2**

자료: 통일부

□ 기념관 운영 예산의 연례적 세목조정 등 변경집행 부적정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약 1,900만원(상용임금 700만원, 고용부담금 1,2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 및 신규 채용 사이에 발생한 공백기간으로 인한 집행 잔액임.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사업의 집행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집행률 100%)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집행을 보면 일반수용비(210-01) 및 시설장비유지비(210-09)가 초과 집행되었음.

기념관은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에 편성된 1억 5,600만원 중 3,200만원을 두 차례 세목조정하여 특별전시 개편 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2,300만원, 전시관 온수탱크 시설 보수(600만원) 및 노후 차량 수리(300만원)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900만원을 집행함.

< 2024년도 내역사업 ‘기념관 운영’의 세목조정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10.23.)	납북자기념관 운영 (2137-301)	210-02	29	납북자기념관 운영 (2137-301)	210-01	특별전시 개편 관련 홍보물 제작(2,300만원)
					210-09	전시관 온수탱크 시설 보수(600만원)
세목조정 (2024.12.5.)	납북자기념관 운영 (2137-301)	210-02	3	납북자기념관 운영 (2137-301)	210-09	노후 차량 수리 (300만원)

자료: 통일부

최근 3년간의 공공요금 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면, 기념관은 매년 공공요금을 일반수용비 등 다른 항목으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 2021~2024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예산편성 및 집행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공공요금 및 제세	156	91	156	114	156	120	156	123

자료: 통일부

< 2021년도 이후, '기념관 운영'의 예산조정 및 불용 사유 >

2021	조정	**△기념관 MI 및 기념품 제작(25백만원) △시설점검(안내표식, 프로젝터 수리) 비용(6백만원) 등을 위해 31백만원**
	불용	△공무직 근로자 퇴직 등 사유로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불용액 발생(52백만원) △코로나로 인한 공공요금 잔액 발생(34백만원) △기타 집행잔액(7백만원)
2022	조정	**△기념관 관람 환경 개선(15백만원) △교육도서 발간, 포스터 제작, 관람시설 개선(28.6백만원) △전시영상 제작 등(8백만원) △전기요금 지급 등(2.1백만원)**
	불용	△공무직 근로자 결원 등 사유로 인건비(39백만원) 및 고용부담금(18백만원) 불용액 발생 △기념관 주차장 설치 공사 조달계약 낙찰차액(4백만원)
2023	조정	**△기념관 홍보물 제작(15백만원) △기념관 전광판 및 장애인 주차장 보수(15백만원) △기념관 홍보 리플렛 및 전시 컨텐츠 자료 추가 인쇄(4.6백만원)**
	불용	△공무직 근로자 결원 등 사유로 인건비(20백만원) 및 고용부담금(19백만원) 불용액 발생 △무형자산(30백만원) 및 공공요금 잔액(2백만원)
2024	조정	**△특별전시 개편 관련 홍보물 제작(23백만원) △전시관 온수탱크 시설 보수(6백만원) △기념관 노후 차량 수리(3백만원)**
	불용	△공무직 근로자 결원 등 사유로 인건비(7백만원) 및 고용부담금(12백만원) 불용액 △공공요금 잔액(1백만원)

자료: 통일부

이에 대하여 기념관은, 2021년 이후 일반수용비와 시설유지비는 매년 부족한 반면, 공공요금, 인건비 등[201]은 불용되고 있는바, 4분기에 공공요금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세목조정 후 전시·교육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노후화된 기념관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세목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기념관은 일반수용비와 시설유지비의 경우 원부자재 등 물가 상승에도 예산액이 매년 동일하거나 감액되어 전시기획 또는 노후된 시설 보수·공사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최대수요 전력으로 관리하여 기본요금이 낮아져 있으나, 변동상황 발생 시에는 기본요금이 상승하는 점과 전기·수도·상하수도의 단가 또한 변동 가능성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공공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기념관 운영 예산의 항목별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공공요금에서의 세목조정이 반복되는 것은, 본래 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할 때 지양할 필요가 있음.

향후에는 세목 간 불용 및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년도 실집행 실적 등을 반영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는 물론 기념관 본연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201) 고용부담금의 불용액이 큰 이유는 기념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근무자들의 나이가 만 60세가 되면서 고용부담금 중 국민연금이 면제되어 상용임금에 비해 고용부담금 불용액이 크게 발생하였음.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2300 프로그램)

가. 개 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교육 강화, 자립·자활 기반 확충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행정지원 등 2개의 단위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74,960	83,897	83,897	84,220	74,014	80,782
□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2331 단위사업)	54,140	52,838	52,838	53,161	52,705	52,609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300)	15,930	15,987	15,987	16,310	15,857	16,945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302)	37,061	36,273	36,273	36,273	36,273	35,086
○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500)	1,149	578	578	578	575	578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2337 단위사업)	20,820	31,059	31,059	31,059	21,309	28,173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301)	10,086	18,757	18,757	18,757	10,704	16,413
○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302)	10,734	12,302	12,302	12,302	10,605	11,760

자료: 통일부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집행액은 740억 1,400만원으로, 2024년 통일부 일반회계에서 회계기금간거래 전출금 1,000억원을 제외한 집행액 1,986억 5,700만원의 37.3%에 해당하는 금액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사용되고 있음.

각 세부사업별 결산 지출액 비중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49.0%,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1.4%,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14.5%,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4.3%,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이 0.8% 순이며, 대부분의 예산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및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등으로 집행되고 있음.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정부·지자체·민간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체계적인 정착지원 제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59억 8,700만원 중 99.2%인 158억 5,7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5,987	15,987	-	323	16,310	15,857	453	99.2	97.2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에 4억 84,000만원, '탈북 청소년학교 지원'에 45억 8,000만원,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에 32억 1,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75억 2,800만원,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에 1억 2,4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5,987	15,987	323	16,310	15,857	453
·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	160	160	328	488	484	4
· 탈북 청소년학교 지원	4,827	4,827	0	4,827	4,508	319
·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3,337	3,337	0	3,337	3,213	124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7,528	7,528	0	7,528	7,528	0
·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	135	135	△5	130	124	6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은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체계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지 차원[20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라 함)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 차원에서는 남북하나재단 및 지역적응센터가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음.

202) 거주지 차원에서는 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지역적응센터, 지역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구성 >

구 분	항 목	내 용
정착금	기본금	▸ 1인세대 1,500만원, 2인세대 2,400만원, 3인세대 3,150만원, 4인세대 3,900만원, 5인세대 4,650만원, 6인세대 5,400만원, 7인세대 이상 6,150만원
	지방거주 장려금	▸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 고령가산금(만 60세 이상인 자): 800만원 ▸ 장애가산금: 1,540만원(중증), 360만원(경증) ▸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1개월 80만원(최대 9개월)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보호결정 당시 13세 미만 아동): 세대당 400만원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50만원 ▸ '무연고청소년가산금'(월 20만원, 18세~24세)
주거	주택알선	▸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연계하여 임대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1,600만원, 2인~4인 세대 2,000만원, 5인 이상 세대 2,300만원
취업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취업장려금	▸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새출발 장려금	▸ 거주지 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 이상 근속시, 200만원/6월(6백만원限)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적립 목적: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 등 - 지원 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4년) - 약정 금액: 소득의 30% 범위 내, 월 최대 50만원
사회 보장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최초 5년간 특례규정(가구원 산정 및 소득인정액 기준 등) 적용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근로무능력), 2종 자격 의료혜택
	연금특례	▸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규정 적용
교육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 시 정원 외 특례입학(제3국 출생자녀 정원내 특례입학)
	학비지원	▸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 사립대 50% 보조 (탈북민 자녀 포함)
상담	-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자료: 통일부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함)에서는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12주간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서는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로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2주간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동안 통일부 및 남북하나재단을 비롯한 관계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취업지원, 사회보장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게 됨.

□ 예산에 없던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전용을 통한 추진

통일부는 2024년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동 사업은 관련 예산이 사전에 미편성되어 있던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2337-302) 사업 등에서 전용 및 세목조정 등을 통해 총 5억 3,401만원 예산을 마련하여 집행하였음.

< 2024년도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사업 전용 등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3.15.)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2337-302)	210-01	70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14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비용 충당
		210-07	30			
전용 (2024.4.19.)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2337-302)	210-01	56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14	
		210-07	55			
		210-14	12			
		210-15	27			
전용 (2024.7.26.)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2337-302)	210-01	3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01	
			52		210-14	
세목조정 (2024.4.18.)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01	15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14	
		210-07	4			
		210-16	1			
세목조정 (2024.7.4.)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14	9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07	
세목조정 (2024.7.5.)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14	2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01	

자료: 통일부

동 행사는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진행하였으며, 그 소요경비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세부사업 중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 내역사업에서 3억 5,434만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그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등(1억 2,400만원)[203], 지정기부금(4,629만원)에서 1억 7,029만원,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부터 937만원이 각각 마련된 것으로 파악됨.

< 2024년도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집행 내역 >

단위: (원)

내역사업명	세목	집행금액(원)	세부내역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 · 조정	210-01 (일반수용비)	4,092,160	- 기념식 행사대행용역 조달 수수료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건립
	210-07 (임차료)	9,077,210	- 시민참여행사 장소 임차
	210-14 (일반용역비)	341,170,500	- 기념식 행사대행 용역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건립
	소계	**354,339,870**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350-02 (사업출연금)	102,570,000	- 시민참여행사 행사대행 용역
		1,430,000	- 시민참여행사 사후원가정산 용역
		10,000,000	- 시민참여행사 부스 운영
		9,077,210	- 시민참여행사 장소 임차
		935,300	- 시민참여행사 다과 구입
	지정기부금	43,210,000	- 시민참여행사 행사대행 용역
		3,080,000	- 시민참여행사 청소 및 물품대여
	소계	**170,302,510**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공모사업	320-01 (민간경상보조)	5,220,000	- 북한이탈주민 예술단(평양예술인협회) 공연
		4,150,000	- 북한이탈주민 작가 기획 전시
합계		**534,012,380**	

자료: 통일부

203) 해당 사업 결산에 대한 검토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부분 참조.

2024년 5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204]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매년 7월 14일)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함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같은 해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임.

해당 행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최초의 정부 주관 공식 행사로서, 기념식, 사례 발표, 문화공연, 대국민 홍보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통일부는 동 행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 확산과 정착 지원정책의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설명함.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개요 >

①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 일시·장소 : 2024.7.14.(월) 10시, 서울 종로구(영빈관)
- 행사컨셉
  - (자유) ‘자유를 향한 용기’를 기리고, 기념일 제정의 의미 조명
  - (희망)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 격려, 꿈을 향해 도전하는 탈북민 응원
  - (통일미래) 연대·화합을 통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염원
- 참석자 : 200~300여 명
  - 탈북민 단체 및 직능별 대표, 성공정착 탈북민, 정착지원 종사자, 유관기관 등

② 「북한이탈주민의 날」 주간 계기 시민참여 문화행사
- 기간·장소: 7.14.(일), 서울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
- 주요프로그램
  - 탈북 문화예술인들이 참가하는 연극공연, 음악회 및 미술작품 전시회
  - 정착지원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정착지원 프로그램 소개
  - 탈북민 창업가, 소상공인 상품 전시회, 정착 성공사례 발표
  - 탈북민 봉사단체 등 탈북민 지역사회 통합사례 발표, 커뮤니티 소개

자료: 통일부

204) 대통령령 제34519호, 2024. 5. 21., 일부개정, 시행 2024. 5. 21.

그러나 본 사업(“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정부 공식행사로 추진할 계획이 없었다고 할 것인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과 정책적 상징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업 추진 여부 및 예산 집행에 관하여 국회의 예산 심사 및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봄.[205]

한편, 2024년 5월 21일 기념일 규정 개정 후 7월 14일에 동 행사를 개최한 상황을 감안하면 행사 준비기간 또한 촉박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경우 행사의 기획·운영 전반에 걸쳐 그 체계적 수행이 이루어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205) 2024년 12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통일부는 동 행사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에는 4억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음.

< 2025년도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행사 사업 예산안 >

(단위: 천원)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예산	집행내역	예산	산출내역
354,333	○ **일반수용비(210-01) : 4,092**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운영경비 : 4,092 ○ **임차료(210-07) : 9,077** • 북한이탈주민의 날 부대행사 장소 임차 : 9,077 ○ **일반용역비(210-14) : 341,170**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 341,170	450,000	○ **일반수용비(210-01) : 20,000** 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20,000) • 기념행사 초청장, 리플릿, 기타 인쇄물 제작 : 10×1식×500명=5,000 •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 및 게시 : 10×1식×500명=5,000 • 기념행사 기념품 제작 : 20×1식×500명=10,000 ○ **임차료(210-07) : 20,000** 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20,000)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장소 임차 : 20,000×1식=20,000 ○ **일반용역비(210-14) : 410,000** 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410,000)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 260,000×1식=260,000 •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문화행사 : 150,000원×1식=150,000

자료: 통일부(2024년도는 실집행 내역 참조)

따라서 향후 통일부는 본 사업과 같이 대외적 파급력과 정책적 의미가 큰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국회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2)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2331-500)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별 맞춤형, 생애 주기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입국 시부터 초기 정착지원과 이후 거주지 정착지원 등 전 과정에 걸친 현황과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5억 7,600만원이 감소한 5억 7,800만원이 되었고 이 중 99.5%인 5억 7,500만원이 집행되고, 낙찰차액인 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578	578	-	-	578	575	-	3	99.5	99.5

자료: 통일부

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2337-301)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의지 제고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정착기본금,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정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187억 5,700만원 가운데 57.1%인 107억 400만원이 집행되고, 80억 5,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8,757	18,757	-	-	18,757	10,704	8,053	57.1	57.1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로는 정착기본금 20억 5,800만원, 주거지원금 47억 600만원, 정착장려금 32억 7,100만원으로 주로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18,757	18,757	-	18,757	10,704	8,053
· 정착기본금	4,145	4,145	-	4,145	2,058	2,087
· 주거지원금	8,813	8,813	-	8,813	4,706	4,107
· 정착장려금	4,707	4,707	-	4,707	3,271	1,436
· 보로금	937	937	-	937	564	373
· (정착)가산금	149	149	-	149	105	44
· 고용지원금	6	6	-	6	0	6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동 세부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2023년부터 탈북민 입국인원이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입국인원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입국인원 및 입소·수료인원 >

(단위: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입국인원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236
입소인원	1,391	1,209	1,034	1,049	404	73	59	176	254
수료인원	1,311	1,221	987	1,210	538	87	50	144	242

자료: 통일부

□ 반복적인 집행률 저조 및 예산 편성의 합리성 제고 필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시설보호단계로 입국 후 국가정보원에서 보호결정 여부를 위한 조사 및 긴급한 치료 등 2개월의 임시보호조치를 거친 후 보호가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 입소하여 12주간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됨. 하나원 퇴소 후 주거알선, 각종 정착 및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동 사업에서 지급하는 정착금 등 각종 지원금은 이 시기에 지급받게 되는 것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187억 5,700만 원 중 107억 4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57.1%로 미흡한 상황임.

<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5년 예산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2021	33,865	33,865	-	△1,655	-	32,210	14,823 [14,823]	43.8	46.0	-	17,387
2022	28,005	28,005	-	-	-	28,005	10,268 [10,268]	36.7	36.7	-	17,737
2023	20,981	20,981	-	-	-	20,981	10,086 [10,086]	48.1	48.1	-	10,895
2024	18,757	18,757	-	-	-	18,757	10,704 [10,704]	57.1	57.1	-	8,053
2025	16,413	16,413	-	-	-	-	-	-	-	-	-

자료: 통일부

이는 전년도(48.1%)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의 집행률로 평가되며, 동 사업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집행

이 부진한 항목임을 감안할 때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해당 사업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초기 정착금, 주거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목적을 가지며, 기본적으로 입국 인원 수에 직접 연동된 수요 기반 예산 항목으로, 2024년도 입국 인원은 총 236명으로 전년도(196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에도 예산 집행률은 60% 미만 수준에 머물렀음. 이것은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예산 편성 시 예측하였던 5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임.

<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

(단위: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입국인원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236	38

자료: 통일부(2025년 3월말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은 본질적으로 외부정세와 북한 내부 변수에 따라 크게 좌우되어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통일부는 입국 인원 추계에 기반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잉 추계 또는 상향 편성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북한의 정치적 폐쇄성과 국경 통제 정책이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단기간 내 급격한 입국 증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편성 방식처럼 탈북민 수요를 과도하게 상정한 예산 책정은 반복적인 불용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2025년도 예산은 164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액 편성되었으나, 연례적인 집행률 흐름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 및 향후 추이를 적정하게 산정함으로써 예산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에는 입국 추이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중장기 전망에 기반한 수요 중심의 예산 설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3년간 분기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정착장려금	보로금	가산금	고용지원금
'22.1분기	86	677	1,283	0	55	22
'22.2분기	77	738	1,943	156	50	15
'22.3분기	54	701	1,500	304	47	10
'22.4분기	99	1,056	1,325	20	45	5
'23.1분기	159	899	1,326	0	43	4
'23.2분기	93	546	1,219	233	42	2
'23.3분기	390	1,388	1,264	29	39	1
'23.4분기	253	1,033	924	164	34	1
'24.1분기	533	1,056	566	117	31	0
'24.2분기	345	1,081	1,012	47	27	0
'24.3분기	537	1,111	565	71	27	0
'24.4분기	643	1,458	1,128	329	20	0

자료: 통일부

다만, 통일부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기간이 2년(2023년과 2024년) 밖에 되지 않아 입국 추이의 구조적 변화에 입각한 정밀한 새로운 추계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인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임.

4)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2337-302)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고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중 3억 2,300만원 전용을 포함한 예산현액 119억 7,900만원 가운데 88.5%인 106억 500만원이 집행되고, 13억 7,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2,302	12,302		-323	11,979	10,605	-	1,374	86.2	88.5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하나원 교육훈련’은 13억 8,200만원, ‘제2하나원 교육훈련’은 6억 9,500만원, ‘하나원 시설운영’은 66억 9,000만원, ‘제2하나원 시설운영’은 18억 3,8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2,302	12,302	△323	11,979	10,605	-	1,374
· 하나원 교육훈련	1,988	1,988	△428	1,560	1,382	-	179
· 제2하나원 교육훈련	897	897	△96	801	695	-	105
· 하나원 시설운영	7,459	7,459	90	7,549	6,690	-	859
· 제2하나원 시설운영	1,958	1,958	111	2,069	1,838	-	231

자료: 통일부

□ 하나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현실화 필요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교육 및 사회적응을 담당하는 주요 시설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

그런데 2024년도 하나원의 전기요금 집행 과정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하나원 교육훈련 사업의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에서 세목 조정을 통해 약 6,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충당한 것으로 확인됨.

<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세목 조정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2020	871	-	871	718	153	
2021	916	-	916	692	224	
2022	861	-	861	655	206	
2023	706	51	757	757	-	전기요금 단가 인상으로 부족분 세목조정
2024	665	60	725	725		전기요금 부족분 세목조정

자료: 통일부

통일부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이 7차례에 걸쳐 누적 약 60%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여 당초 편성된 범위 내에서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에 통일부는 2025년도 예산을 2024년도 집행액을 고려하여 7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여전히 최근 전기요금 상승 추세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전기요금과 같은 필수 공공요금의 경우, 가격 변동과 집행 실적을 면밀히 반영하여 예산을 현실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세목 조정을 통해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은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계획성을 저해할 수 있는바, 향후에는 실제 집행 내역 및 단가 인상 요인을 반영하여 사전에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2331-302)

1) 결산 개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206]'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 및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임.

< 2024년도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예산	증감	예산현액			
총 계(A+B)	39,798	830	40,628	36,638	3,990	90.2
정부예산(A)	39,098	-	39,098	35,897	3,201	91.8
1. 사업비	27,766	-	27,766	24,952	2,814	89.9
가.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3,947	915	4,862	4,798	64	98.7
나. 자립·자활지원	4,510	△167	4,343	4,289	54	98.8
다. 교육개발 및 지원	2,948	△91	2,857	2,833	24	99.2
라.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1,911	△16	1,895	1,884	11	99.4
마.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2,641	△5	2,636	2,602	34	98.7
바. 정착금 지급	11,809	△636	11,173	8,546	2,627	76.5
2. 인건비	9,278	-	9,278	9,016	262	97.2
3. 경상비	1,611	-	1,611	1,589	22	98.7
4. 예비비	444	-	444	440	104	76.5
기부금(B)	700	830	1,530	741	789	93.9

자료: 통일부

주1) 2024년도 정부예산(39,098백만원) = 출연금 36,273백만원 + 결산잉여금 2,825백만원

주2) 예비비 444백만원은 경영평가성과금 충당 비용

20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재단이 아닌 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재단이 대외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재단은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별칭 사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3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내부 사용지침을 제정하고, 「상표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업무표장 등록을 거쳐 별칭을 사용하고 있음.

2010년 3월 26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남북하나재단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년 9월 27일에 설립됨. 이후 6차에 걸친 조직 개편을 거쳐 2025년 6월 현재는 2실 4부 1팀(정원 172명, 현원 182명)으로 운영 중임.

남북하나재단의 2024년 수입·지출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16억 3,200만원 중 366억 7,700만원이 집행되어 정부출연금 7억 1,500만원, 결산잉여금 24억 4,800만원과 기타수입 10억 300만원 및 기부금 집행잔액 7억 8,900만원을 합하여 총 49억 5,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수입·지출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내역	출연금예산	소계	39,658	444	40,102	35,936	4,166
		정부출연금	36,273	-	36,273	35,558	715
		결산잉여금	2,382	444	2,826	378	2,448
		기타 수입[207]	1,003	-	1,003	-	1,003
	기부금		700	830	1,530	741	789
	계		40,358	1,274	41,632	36,677	4,955

자료: 통일부

207) 출연금 환입 594백만원, 이자수입 384백만원, 기타수입 25백만원

2) 사업별 검토

2024년 남북하나재단의 사업비(예산현액 기준)는 277억 6,600만원으로, 이 중 89.9%인 249억 5,200만원이 집행되고, 28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사업별	예산액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27,766	-	27,766	24,952	2,814	89.9
1.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지원	3,947	915	4,862	4,798	64	98.7
2. 자립·자활지원	4,510	△167	4,343	4,289	54	98.8
3. 교육개발 및 지원	2,948	△91	2,857	2,833	24	99.2
4.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1,911	△16	1,895	1,884	11	99.4
5.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2,641	25	2,636	2,602	34	98.7
6. 정착금 지급	11,809	△636	11,173	8,546	2,627	76.5

자료: 통일부

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47억 9,800만원, 자립·자활지원 사업에 42억 8,900만원, 교육개발 및 지원 사업에 28억 3,300만원,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사업에 18억 8,400만원,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사업에 26억 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정착금 지급 사업에 85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음.

사업별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정착금 지급 40.2%,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17.5%, 자립·자활 지원 15.6%, 교육개발 및 지원 10.3%,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9.5%,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6.8% 순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국내정착을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정착금 지급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학업기회 부여와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산금, 교육지원금 및 정착자산형성 단위사업으로 구성됨.

동 프로그램은 2024년도 예산현액 111억 7,200만원 중 85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고, 26억 2,6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4년 정착금 지급 프로그램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24년 예산			집행액 (D)	불용액 (C-D)	집행률 (%,D/C)
프로그램 (사업코드)	단위사업 (사업코드)	당초예산 (A)	예산조정 (B)	예산현액 (C) (C=A+B)			
정착금 지급 (6)	합계	11,808	△636	11,172	8,546	2,626	76.5
	가산금 (6-1)	440	-	440	346	94	78.6
	교육지원금 (6-2)	4,984	-	4,984	4,366	618	87.6
	정착자산 형성 (6-3)	6,384	△636	5,748	3,834	1,914	66.7

자료: 남북하나재단

최근 3년간 정착금 지급 프로그램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 99.5%, 2023년 83.6% 및 2024년 72.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이는 정착금 지급 프로그램 예산의 95.5%(당초예산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지원금 단위사업과 정착자산형성 단위사업의 집행률이 크게 하

락(교육지원금 단위사업: ’22년 113.2%→’24년 87.6%, 정착자산형성 단위사업: ’22년 91.8%→’24년 60.0%)하였기 때문임.

<최근 3년간 정착금 프로그램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22년			2023년			2024년		
프로그램 (사업코드)	단위사업 (사업코드)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정착금 지급 (6)	합계	13,385	13,319	99.5	13,385	11,184	83.6	11,809	8,546	72.4
	가산금 (6-1)	522	548	105.0	522	417	79.9	440	346	78.6
	교육지원금 (6-2)	4,516	5,112	113.2	4,516	4,715	104.4	4,984	4,366	87.6
	정착자산 형성 (6-3)	8,347	7,659	91.8	8,347	6,052	72.5	6,385	3,834	60.0

자료: 남북하나재단

이에 대해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인원 감소[208] 등의 영향으로 2024년 예산편성 시 교육지원금 지원대상자를 1,80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2024년 실제 지원대상자가 1,540명에 머물렀고, 정착자산형성 사업은 2024년 예산편성 시 신규가입자를 671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신규가입자가 112명에 그침으로써 집행률이 미흡한 수준에 그쳤는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9] 및 같은 법 시행령[210]이 개정되어 교육지원금과 정착자산형성 단위사업 지급 대상자를 확

208)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입국인원	1,418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236

209) 법률 제20484호(시행 2025. 4.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함.

210) 대통령령 제35255호(시행 2025. 2.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대하여 향후 집행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함.

< 2025년 지원 대상자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교육 지원금	만 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 중 고졸 이상 학력인정을 받은지 5년 이내 대학 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제3국 및 남한 출생)로 대학 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 대상 확대(자녀 포함) 및 제한기준(연령, 학력인정 기간) 삭제
정착자산 형성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 중에서 거주지 전입 6개월 이후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거주지 보호기간(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미도과자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 중에서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인 자 * 거주지보호기간(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제한 기준 삭제

자료: 남북하나재단

그러나, 2025년 5월말 기준 정착금 지급 프로그램 집행률은 24.3%로, 2024년 5월말 집행률 23.9% 대비 0.4%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정착자산형성 단위사업은 오히려 2024년 5월말 집행률(30.4%) 보다 5.9% 하락한 집행률(24.5%)을 보이고 있음.

<정착금 및 교육지원금 사업 2024년 5월말 대비 2025년 5월말 집행률 비교>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24년 5월말 기준			2025년 5월말 기준		
프로그램 (사업코드)	단위사업 (사업코드)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정착금 지급 (6)	합계	11,809	2,820	23.9	9,733	2,365	24.3
	가산금 (6-1)	440	113	25.8	430	88	20.5
	교육지원금 (6-2)	4,984	767	15.4	4,657	1,203	25.8
	정착자산 형성 (6-3)	6,384	1,939	30.4	4,646	1,140	24.5

자료: 남북하나재단

정령 및 대통령령 제35476호(시행 2025. 4.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을 말함.

또한, 정착자산형성 단위사업은 제도개선 이후 증가하던 신규 가입자 수[211]가 다시 감소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금 지급 프로그램의 집행률이 남북하나재단 측의 설명과 달리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단순히 대상자 확대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금 프로그램을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다른 요인들(예: 신규 가입을 지체시키는 요인, 실질적인 지원 내용에 대한 불만족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새로운 정책 대상자들에게 제도개선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동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국내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11) 2025년 1월 4명, 2월 14명, 3월 56명, 4월 30명, 5월 20명

□ 예산 미편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기존 사업 예산 감액 등 부적정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단위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력 제고와 주민통합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소통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0억 8,500만원 중 10억 8,100만원이 집행되었고, 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단위사업 결산 개요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사업코드)	2024년 예산			집행액 (D)	집행잔액 (C-D)	집행률
	당초예산 (A)	예산조정 (B)	예산현액(C) (C=A+B)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4-1)	1,107	△22	1,086	1,081	5	99.6

자료: 남북하나재단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단위사업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4년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당초예산	예산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정기간행물 기획 및 운영	452	△66	386	386
	홍보콘텐츠 발굴 및 확산	348	62	410	407
	공익광고 및 프로그램 공동기획	78	△77	1	1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230	59	289	287
합계		1,108	△22	1,086	1,081

자료: 남북하나재단

정부는 2024년 5월 2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남북하나재단은 이에 근거하여 2024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행사[212]를 개최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에서 1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당초 예산	예산 조정	예산 현액	집행액	주요집행내역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230	59	289	287	o 사회통합교육 운영 6 - 강사파견 및 지원 5 - 교육 운영비 1 o 착한봉사단 운영 122 - 봉사단 활동 지원 72 - 컨설팅 및 평가 용역 22 - 워크숍 및 연합봉사 22 - 백서 제작 6 o 남북청년 통합역량강화 45 - 남북청년 통합프로그램 22 - 청년 소모임 활동 지원 12 - 6.25 전사자 유해발굴 프로그램 11 **o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행사 114** - 시민참여 행사용역 104 - 행사장 대관 및 운영비 10

자료: 남북하나재단

그런데 당초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212)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행사 개요

목적	• 남북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야외 공간에서 문화예술 공연, 체험행사 등을 통해 기념일 홍보 및 탈북민 인식 개선의 계기 마련
주최	• 통일부, 서울시
주관	• 남북하나재단
행사일자 및 장소	• 2024.7.14.(일) 10:00~18:00,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어울림 광장)
참여인원	• 남북 주민 4천여명
주요 행사내용	• (공 연) △공식 기념행사 생중계 △탈북민 예술가 공연 △통일토크쇼, 스트릿댄스 △스토리 패션쇼 폐막 공연 등 • (전시 및 체험) △사진전 △탈북민 생산품 전시(영농, 창업자) △북한 음식 모형 전시 △북한 음식 체험전 △북한 생필품 전시 △정착지원 정책 홍보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 (공 헌) △탈북민 전문직 종사자 재능기부(의료, 캐리커쳐, 네일아트)

시민참여 행사 관련 경비가 편성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이에 따라 남북하나재단은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단위사업내 홍보콘텐츠 발굴 및 확산 등 3개 세부사업에서 기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였음.

<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행사 비용 조달 현황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감액조정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홍보콘텐츠 발굴 및 확산	△11
		공익광고 및 프로그램 공동기획	△49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54
합계			△114

자료: 남북하나재단

여기에 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행사비가 다른 단위사업으로부터 추가로 집행되었는데, 대외협력사업 단위사업에서 240만원, 일자리 창출 및 자립촉진 단위사업에서 760만원이 집행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행사 비용으로 남북하나재단이 집행한 금액은 총 1억 2,400만원임.

< 타 단위사업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행사 비용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집행액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대외협력사업	국내협력	2.4
자립·자활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및 자립촉진	창업지원	7.6
합계			10

자료: 남북하나재단

이에 대하여 재단은 2024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전이었으며,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여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비용을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행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발생한 새로운 사업의 비용을 이미 국회가 심의·의결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축소하여 충당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함.[213]

아울러 회계연도가 절반 가량 남은 시점에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 편성된 사업비 예산을 축소하여 충당할 경우 기 편성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움.[214]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내 세세부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사회통합교육 운영**	**50**	**6**	**12%**
		착한봉사단 운영	90	122	136%
		남북청년 통합역량강화사업 운영	**90**	**45**	**50%**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행사	0	114	-
합계			230	287	125%

자료: 남북하나재단

213)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은 2024년 12월 20일에 공포·시행되었음.

214) 실제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내 '사회통합교육 운영' 세세부사업은 예산 편성액 대비 12%만 집행되었고, '남북청년 통합역량강화사업 운영' 세세부사업은 50%만이 집행되어 이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음.

따라서 남북하나재단은 향후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당초 사업목적에서 벗어난 예산 집행 부적정

남북하나재단의 예산편성 구조는 먼저 사업비, 인건비, 경상비, 예비비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은 다시 초기정착 및 생활 안전 지원 프로그램 및 그 하위사업(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등으로 세분됨.

< 남북하나재단 예산편성 구조 >

항목	프로그램·단위사업
사업비	**1.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1-1. 지역사회통합지원
	1-2.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2. 자립·자활 지원
	2-1. 일자리 창출 및 자립촉진
	2-2. 취업지원 및 직업역량강화
	2-3. 일자리성공패키지지원
	3. 교육개발 및 지원
	3-1. 통일미래 인재육성
	3-2. 교육 및 적응지원
	4.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4-1. 남북한주민 상호인식 제고
	4-2. 대외협력사업
	5.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5-1. 경영기획
	5-2. 정착실태 조사연구
	5-3. 정보화·정보보안
	6. 정착금 지급
	6-1. 가산금
	6-2. 교육지원금
	6-3. 정착자산형성

항목	프로그램·단위사업
인건비	**1. 인건비**
	1-1 연봉
	1-2 연봉외 급여
	1-3 퇴직적립금
	1-4 법적부담금
	1-5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상비	**1. 경상비**
	1-1 경상비
	1-1-1 기본운영비(세부사업)
	1-1-2 복리후생비(세부사업)
	1-1-3 여비(세부사업)
	1-1-4 업무추진비(세부사업)
	1-1-5 자산관리비(세부사업)
	1-1-6 자산취득비(세부사업)
	1-1-7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세부사업)
예비비	**1. 예비비**
-	-
-	-
-	-
-	-
-	-

2024년 남북하나재단은 '직무급 도입 관련 컨설팅 용역비[215]' 3,000만원

을 경상비(프로그램)-경상비(단위사업)-기본운영비(세부사업)-일반용역비(세세부사업)로 편성하였음.

< 2024년 직무급 도입 관련 컨설팅 용역비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 편성내역	예산액
프로그램 (사업코드)	단위사업 (사업코드)	세부사업 (사업코드)	세세부사업 (사업코드)		
경상비 (1)	경상비 (1-1)	기본운영비 (1-1-1)	일반용역비 (1-1-1-5)	직무급 도입 관련 컨설팅 용역	30

자료 : 남북하나재단

그런데, 남북하나재단은 '직무급 도입 관련 컨설팅 용역비'를 경상비 프로그램에서 집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업비 항목인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프로그램 중 일반연구비 비목에서 4,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남북하나재단 직무체계 및 직무급 설계 용역 대금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집행내역	집행액
프로그램 (사업코드)	단위사업 (사업코드)	세부사업 (사업코드)	세세부사업 (사업코드)	비목		
기획운영 및 조사연구 (5)	정착실태 조사연구 (5-2.)	정착실태 조사연구 (5-2-1)	조사기반 응용연구 (5-2-1-2)	일반 연구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직무체계 및 직무급 설계 용역 대금 지급	40

자료 : 남북하나재단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남북하나재단은 기획연구 및 조사연구 프로그램 중 일반연구비 비목으로 정책연구과제 예산 7,000만원을 편성하면서 그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분야 연구 용역'이라고 밝힌 바 있음.

215)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동 용역은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수립하여 재단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의 운영 기반을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2024년 예산안 편성시 남북하나재단 설명자료 >

5-2	정착실태 조사연구

② 조사기반 응용연구

○ **(정책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분야 연구 용역**

-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 및 연구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개선 및 지원사업 효과성 제고에 필요한 실용적 연구 실시

예산 산출내역	예산액 (단위: 천원)
① 정착실태 조사연구	381,500
나) 조사기반 응용연구 o **정책연구과제 : 35,000×2건 = 70,000** o 과제운영비(심사, 보고회) : 1,500×6회 = 9,000 o 총서 인쇄 : 3,000×2건 = 6,000 o 학술회의·전문가 포럼·세미나·간담회 등 : 20,000 o 웹DB・학술지 구독 : 4,000 o 국내여비 : 3,500	112,500

자료 : 남북하나재단

따라서 정책연구과제 예산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분야의 연구 용역' 용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남북하나재단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에서 벗어나 경상적 경비를 사업비 프로그램에서 집행함.

「국가재정법」은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 예산집행을 통제하고 예산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에 벗어난 집행의 금지 원칙을 규정[216]하고 있는 바, 향후 남북하나재단은 출연금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임을 감안하여 그 세부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을 보다 한정적으로 설정·관리함으로써 사업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216)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3) 사업 외 검토

□ 결산잉여금 축소를 위한 노력 등 필요

결산잉여금이란 정부출연금 등 예산집행 잔액, 출연금 환입액 및 이자수익 등의 합계액을 말하며, 그 규모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결산잉여금은 2022년 28억 600만원 대비 약 50%(14억원)가 증가한 42억 600만원에 달하였으며, 2024년 결산잉여금 중 정부출연금 등 예산집행 잔액의 비중이 76.1%를 차지함.

<최근 3년간 결산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비중)
예산집행 잔액	1,588	2,198	3,201(76.1)
출연금 환입	701	552	594(14.1)
이자수익	201	302	385(9.2)
기타	316	15	26(0.6)
합계	**2,806**	**3,067**	**4,206(100.0)**

자료: 남북하나재단

최근 결산잉여금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정부출연금 등 예산집행 잔액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2022년 15억 8,800만원에 머물던 예산집행 잔액 규모가 2024년에는 32억 1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2.0배(16억 1,260만원) 증가하였음.

이는 해당 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그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에 비례하여 남북하나재단의 사업수행이 효율

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한편, 남북하나재단은 결산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예: 2024회계연도) 일부 금액은 차년도(2025회계연도) 예비비로 바로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차년도(2026회계연도) 수입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

이러한 수입 계상 방식은 결산잉여금이 발생 시점부터 실제 수입으로 계상되어 사용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이 유휴 상태로 남게 되어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증대되는 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휴 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특히, 2024년 12월 20일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더라도 사실상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 25억 3,9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였고, 결과적으로 수령 금액 전액이 예산집행 잔액화되어 2024년 결산잉여금의 규모가 확대되는 주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짐.

<2024년 월별 정부출연금 수령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령일자	수령내역	송부자	수령금액
정부출연금	2024/02/06	2024년 1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2,265
	2024/02/29	2024년 2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4,209
	2024/03/12	2024년 3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4,409
	2024/04/18	2024년 4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3,265
	2024/05/22	2024년 5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3,809
	2024/06/19	2024년 6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3,809
	2024/07/25	2024년 7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2,176

구분	수령일자	수령내역	송부자	수령금액
	2024/08/23	2024년 8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2,539
	2024/09/23	2024년 9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2,539
	2024/10/22	2024년 10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2,176
	2024/11/26	2024년 11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2,539
	2024/12/20	2024년 12월 출연금 교부액 수입	통일부	2,539
합계				36,273

자료: 남북하나재단

따라서 향후 남북하나재단은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각 사업의 실제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통일부는 남북하나재단의 결산잉여금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회계연도말 정부출연금 교부 시 그 집행가능성을 살펴 교부액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6.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3000 프로그램)

가. 개 요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3000) 프로그램은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개성공단 사업지원’,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3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은 철도·도로 관련 출입시설 및 물류센터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임. ‘개성공단 사업지원’ 사업은 개성공단 중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개성공단 기업 지원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하며 남북간 통행 발생시 원활한 통행 지원을 위한 남북전자출입 종합지원관리시스템 관리를 위한 사업임.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사업은 민간의 정책과정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기반 마련 등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이 중 ‘개성공단 사업지원’은 2020년까지 별도 프로그램이던 ‘개성공단 지원’(3200) 프로그램이 2021년부터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3000) 프로그램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3000)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4,391	4,399	4,399	4,319	3,733	4,556
□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3031 단위사업)	2,961	3,417	3,417	3,337	2,994	3,521
○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300)	2,961	3,417	3,417	3,337	2,994	3,521
□ 개성공단 사업지원 (3032 단위사업)	747	733	733	733	573	836
○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303)	458	453	453	453	297	563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506)	289	280	280	280	276	273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3036 단위사업)	683	249	249	249	166	199
○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312)	685	249	249	249	166	199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3031-300)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은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및 물류센터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이는 청사시설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용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의 경우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남북 출입경 역량을 유지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특구 등 북한 내 남북협력지구로의 통행 재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관리가 요구됨.

2024년 예산액 34억 1,700만원 중 87.6%인 29억 9,4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417	3,417	-	△80	3,337	2,994	343	87.6	89.7

자료: 통일부

2)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3032-303)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사업은 개성공단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개성공단 기업 지원 관련 후속조치와 경영정상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24년 예산액 4억 5,300만원 중 65.6%인 2억 9,7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53	453	-	-	453	297	156	65.6	65.6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 2억 800만원,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8,9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453	453	-	453	297	156
·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	353	353	-	353	208	145
·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100	100	-	100	89	11

자료: 통일부

3)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3032-506)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 사업은 RFID 및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간 도로를 통한 통행·통관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남북간 통행 발생시 원활한 통행 지원을 위한 남북전자출입 종합지원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2023년도 예산액은 2억 8,000만원으로 이 중 98.6%인 2억 7,6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80	280	-	-	280	276	-	98.6	98.6

자료: 통일부

4)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3036-312)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민간의 정책과정 참여 및 소통 확대, 중장기 남북경제협력 추진기반 마련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2억 4,900만원 중 1억 6,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6.7%임.

<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49	249	-	-	249	166	83	66.7	66.7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900만원, ‘중장기 남북경제협력 추진기반 마련’ 9,7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249	249	-	249	166	83
·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123	123	-	123	69	54
· 중장기 남북경제협력 추진기반 마련	126	126	-	126	97	114

자료: 통일부

7. 남북회담(4000 프로그램)

가. 개 요

남북회담 프로그램은 남북대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면서 남북 간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인도 분야별 남북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북 간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한반도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2024년도 남북회담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2,290	2,355	2,355	2,355	2,152	2,312
1. 남북회담 추진 (4031 단위사업)	191	305	305	305	192	240
가. 남북회담 추진(300)	191	305	305	305	192	240
2.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4032 단위사업)	2,099	2,050	2,050	2,050	1,960	2,072
가.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302)	2,099	2,050	2,050	2,050	1,960	2,072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남북회담 추진(4031-300)

남북회담 추진 사업은 분야별 모의회담 개최, 회담역량 및 전문성 강화, 분야별 회담의제 개발 및 전문가·유관기관 의견 수렴, 전략수립 및 운영체계 개선 등을 통한 남북회담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3억 500만원 중 62.9%인 1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남북회담 추진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05	305	-	±5	305	192	113	62.9	62.9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분야별 회담 추진' 8,900만원, '남북회담 역량 강화' 2,600만원, '회담 운영 및 지원' 7,7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 남북회담 추진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남북회담 추진	305	305	±5	305	192	113
· 분야별 회담 추진	191	191	△5	186	89	97
· 남북회담 역량 강화	38	38	-	38	26	12
· 회담 운영 및 지원	76	76	5	81	77	4

자료: 통일부

2)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4032-302)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사업은 남북관계관리단이 관리하는 자유의 집과 전방사무소 등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남북회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남북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20억 5,000만원 중 95.6%인 19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도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50	2,050	-	-	2,050	1,960	90	95.6	95.6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인 '남북통신망 운영'의 예산액은 9억 7,700만원이며, 전액을 집행하였음. 남북통신망 간 통화는 2020년 이후 세 차례(2020. 6. 9. ~ 2021. 7. 26., 2021. 8. 10. ~ 2021. 10. 3., 2023. 4. 7. ~ 현재) 중단되었음. 남북통신망은 남북회담에 대비한 상시 중요시설로 보안 및 통신시설로서의 중요성과 지속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도통신망에 준해 KT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경비로서 관리용역비 9억 7,700만원을 전액 집행함.

< 2024년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2,050	2,050	-	2,050	1,960	90
· 남북통신망 운영	977	977	-	977	977	-
· 청사시설 관리	1,009	1,009	-	1,009	923	86
· 남북회담 영상회의실 운영	64	64	-	64	60	4

자료: 통일부

8. 통일교육(5000 프로그램)

가. 개 요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통일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학교 및 사회의 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와 올바른 인식개선을 통해 통일 비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도 주요 사업은 '통일교육 추진' 및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의 2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이버통일교육센터운영(정보화)', '국립통일교육원 시설 운영'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도 통일교육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22,336	22,861	22,861	23,948	22,818	23,967
□ 국립통일교육원 인건비(단위사업 5002)	5,075	5,691	5,691	6,765	6,334	6,936
○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100)	5,075	5,691	5,691	6,765	6,334	6,936
□ 국립통일교육원 기본경비(단위사업 5018)	1,233	1,397	1,397	1,410	1,278	1,422
○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200)	243	250	250	263	251	267
○ 국립통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250)	990	1,147	1,147	1,147	1,027	1,155
□ 통일교육추진(단위사업 5031)	14,596	14,308	14,308	14,308	13,778	14,097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304)	4,873	5,695	5,695	5,265	5,095	2,490
○ 학교 통일교육 강화(308)	4,685	4,412	4,412	4,837	4,616	5,191
○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309)	4,530	3,717	3,717	3,722	3,586	3,644
○ 통일교육 자료개발(310)	-	-	-	-	-	2,288
○ 사이버통일교육센터운영(정보화)(507)	508	484	484	484	481	484
□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단위사업 5033)	1,433	1,465	1,465	1,465	1,428	1,512
○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308)	1,433	1,465	1,465	1,465	1,428	1,512

자료: 통일부

정부 통일교육 추진체계를 보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등을 연계하여 학교 통일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을 주축으로 지자체, 지역통일교육센터, 민간단체, 통일관 등과 연계하여 사회 통일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 통일교육 추진체계 >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 통일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범국가적 차원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제협력을 통한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통일문제와 북한 관련 각종 자료를 발간·보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2억 6,500만원 중 50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1억 7,0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5,695	5,695	-	△430	5,265	5,095	170	89.5	96.8

자료: 통일부

동 세부사업은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통일교육 원내과정', 'DMZ 통일걷기 지원', '통일교육 연구센터 운영',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통일교육 자료개발·보급', '사이버 통일교육 운영', '통일교육 자료센터 운영' 등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4년도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695	5,695	△430	5,265	5,095	170
·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342	342	△3	339	321	18
· 통일교육 원내과정	1,341	1,341	±88	1,341	1,305	36
· DMZ 통일걷기 지원	60	60	-	60	58	2
· 통일교육 연구센터 운영	175	175	±10	175	167	8
·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1,030	1,030	△427	603	587	16
· 통일교육 자료 개발·보급	2,007	2,007	±116	2,007	1,949	58
· 사이버 통일교육 운영	684	684	-	684	652	32
· 통일교육 자료센터 운영	56	56	-	56	56	0

자료: 통일부

□ 국회 의결 내용과 다른 내역사업 신설 후 타 사업으로 내역변경 부적정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내역사업[217]은 대국민, 특히 2030세대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장견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10억 3,000만원이었으나, 내역변경 4억 2,7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6억 300만원 중 5억 8,700만원이 집행되었고, 1,600만원은 불용되었음.

통일부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 내용과 달리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 아래에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내역사업을 신설하였는데, 2024년 1월 10일, 즉 회계년도 개시 약 10일 만에 동 내역사업('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연수 예산 4억 2,700만원을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세부사업으로 내역변경하였음.

<2024년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내역사업 신설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대상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정부안	국회증액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소계	-	1,030	-	△427	603	587	16
	일반인	-	603	-	-	603	587	16
	청소년	-	427	-	△427	-	-	-

자료: 통일부

217) 당초 통일부는 동 내역사업을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 소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가 이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청소년 등의 낮아지는 통일의식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내역사업(현장견학 및 글로벌 교육)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우리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새로운 내역사업을 신설하지 않고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운영'(5031-304) 세부사업 중 '통일교육 원내과정' 내역사업에 청소년과 일반국민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10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나, 통일부는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내용과 달리 '통일교육 원내과정' 내역사업 아래에 청소년과 일반국민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현장견학 프로그램 사업을 신설하지 아니하고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의 새로운 내역사업을 만든 것임.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4.1.10.)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31-304)	210-01	4	학교 통일교육 강화 (5031-308)	210-01	청소년 대상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사업 진행
		210-14	420		210-14	
		240-01	3		240-01	

자료: 통일부

통일부의 이러한 내역변경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먼저,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세부사업의 하위사업에는 이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내역사업이 존재하고 있었음.

<2024년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내역사업 실시 현황>

<table>
<tr><th>세부사업</th><th>내역사업</th><th>내역사업 내용</th></tr>
<tr><td>학교
통일교육
강화
(5031-308)</td><td>참여·체험형
프로그램</td><td>○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 2024년 실적: 제11회 청소년 평화·통일문화 경연대회 2개 부문 운영(50초 통일 쇼츠 영화제,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
○ 학교통일 체험교육
- 2024년 실적
<table>
<tr><th colspan="2">대상</th><th>실제 참여인원</th></tr>
<tr><td rowspan="3">초·중·고 학생</td><td>1박 2일</td><td>63개교</td></tr>
<tr><td>당일</td><td>267개교</td></tr>
<tr><td>2박 3일</td><td>4개교</td></tr>
</table>
○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 2024년실적: 제13기 어린이 및 중학생 기자단 운영(초등 80명, 중등 20명)</td></tr>
</table>

자료: 통일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운영’(5031-304) 세부사업에 청소년과 일반국민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현장견학 프로그램’(10억 3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청소년 등의 낮아지는 통일의식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내역사업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통일부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통일부 증액의견>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단위사업-세부사업)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증감액	수정의견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현장견학 및 글로벌 교육 (5031-304)	5,070	5,015	1,500	○ 동 사업(내역사업인 ‘현장견학 및 글로벌 교육’)은 낮아지는 청소년의 통일의식을 높이고, 한반도 자유민주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산 관련 청소년 및 국제사회 대상 통일교육을 15억원 증액 필요 - 청소년 일반국민 대상 체험형 현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 :10억 3,000만원 증액 필요 - 글로벌 통일교육 프로그램 확대 : 4억 7,000만원 증액 필요

자료: 통일부

이처럼 통일부의 증액의견이 국회에서 수용되었음에도 이를 추진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회계년도 개시 약 10일 만에 기존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세부사업으로 조정한 것은 통일부가 해당 예산을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없었거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안을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또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218]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사람

21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을 의미하므로 학교 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세부사업과 다른 정책대상(예: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사업 추진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추진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으로 내역변경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드는 행정적 노력과 부담을 회피하고 기존의 틀 안에서 안주하려는 소극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 통일부는 신규 예산 편성시 새로운 정책대상 발굴 등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편성된 예산이 소극적·편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예산 소요에 대한 예측력 강화 등 필요

통일교육 자료개발 보급 내역사업은 통일문제와 북한에 관한 각종 자료를 발간·보급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북한관을 확립·제고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0억 700만원 중 19억 4,900만원이 집행되었고, 5,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통일교육 자료개발 보급 내역사업 목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통일교육 자료개발 보급	2,007	2,007	±116	2,007	1,949	58
- 일용임금(110-04)	3	3	-	3	3	-
- 일반수용비(210-01)	810	810	16	826	825	1
- 공공요금및제세(210-02)	6	6	-	6	5	1
- 임차료(210-07)	3	3	-	3	-	3
- 일반용역비(210-14)	708	708	△116	592	583	9
- 국내여비(220-01)	6	6	-	6	4	2
- 사업추진비(240-01)	13	13	-	13	12	1
- 일반연구비(260-01)	455	455	100	555	515	40
- 고용부담금(320-09)	1	1	-	1	0.3	0.7
- 자산취득비(430-01)	2	2	-	2	2	-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4년 9월 30일 통일교육 그림동화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용역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용역비 1억원을 일반연구비로 전용함.

< 이·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4.9.30.)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31-304)	210-14	100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31-304)	260-01	통일교육 그림동화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 용역비 충당

자료: 통일부

이후 통일부는 2024년 9월 25일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9월 30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고, 같은 해 11월 12일 사업자를 선정하였음.

< 통일교육 그림동화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 용역 계약체결 경과 >

(단위 : 백만원)

구분	제안요청서 작성일	조달청 계약의뢰일	조달청 공고일	조달청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계약기간
일자	24.9.25.	24.9.30.	24.10.14.	24.11.12.	92백만원	24.11.12.~ 24.12.31.

자료: 통일부

전용사유에 대해 통일부는 2018년부터 매년 아동 대상 통일교육 그림동화를 개발하여 일반 도서 형태로 유치원, 초등연구학교 등 교육현장에 보급하고 있고, 2024년까지 총 7권의 그림동화 도서가 개발되었는데, 교사 등 교육현장에서 그림동화의 손쉬운 활용 및 체험형 콘텐츠 보급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으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통일교육 강화라는 정부 내 정책 방향이 설정됨에 따라 실감형 콘텐츠 개발을 기획하게 되었고 2025년 통일교육주간'(매년 5월 넷째주)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이상과 같은 통일부 설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봄.

우선 통일부의 예산 수요예측 능력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교육현장에서 2024년까지 개발된 총 7권의 그림동화 도서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체험형 콘텐츠 보급에 대한 지속적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하였음.

이는 2025년 정부내 예산편성 과정(즉, 2024년 9월 이전) 중에 체험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을 통일부가 인지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통일교육 강화라는 정부 내 정책 방향을 미리 예견하지 못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후, 불과 수개월 후인 2024년 9월경에 “실감형 콘텐츠 개발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수요를 예측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에 입각하여 선제적으로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고 집행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의지를 구현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진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통일부의 설명은 그 수요 예측 능력에 상당한 결함이 있었음을 보여줌.

다음으로 실감형 콘텐츠 개발의 시급성 및 「국가재정법」상 전용요

건[219]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2025년 통일교육주간’(매년 5월 넷째주)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통일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실감형 컨텐츠 개발 용역 사업의 사업기간(제안요청서 작성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이 채 90일이 걸리지 아니하였음.

이는 해당 용역비 예산을 국회 심의를 통해 정식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더라도 2025년 통일교육 주간인 2025년 5월 넷째주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통일부가 사업의 필요성만을 근거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용 요건인 '시급성'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규정인 만큼 향후 통일부는 사업 수요에 대한 예측력을 강화하고,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전용을 통한 집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19)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은 전국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가 실시하는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8억 3,700만원 중 46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2억 2,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412	4,412	-	425	4,837	4,616	221	104.6	95.4

자료: 통일부

동 세부사업은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은 '초·중·고 학교통일교육 지원' 10억 4,600만원,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21억 600만원,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14억 6,400만원이 각각 집행됨.

< 2024년도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학교 통일교육 강화	4,412	4,412	425	4,837	4,616	221
· 초·중·고 학교 통일교육 지원	1,140	1,140	△2	1,138	1,046	92
·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2,153	2,153	-	2,153	2,106	47
·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1,119	1,119	427	1,546	1,464	82

자료: 통일부

□ 실소요가 없는 예산 편성 후 불용 부적정

초·중·고 학교 통일교육 지원 내역사업은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활동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1억 3,800만원 중 10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고, 9,2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초·중·고 학교 통일교육 지원 내역사업 목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초·중·고 학교 통일교육 지원	1,140	1,140	△2	1,138	1,046	92
- 상용임금(110-03)	29	29	-	29	28	1
- 일반수용비(210-01)	483	483	-	483	463	2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6	6	-	6	0.3	5.7
- 임차료(210-07)	9	9	-	9	2	7
- 복리후생비(210-12)	1	1	-	1	1	-
- 일반용역비(210-14)	20	20	-	20	-	20
- 국내여비(220-01)	153	153	△2	151	125	26
- 사업추진비(240-01)	10	10	-	10	9	1
-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	100	88	12
- 민간경상보조(320-01)	324	324	-	324	324	-
- 고용부담금(320-09)	5	5	-	5	5	-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

역비 2,000만원을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하였음.

최근 3년간 해당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편성된 예산 2,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으나, 2023년 및 2024년에는 전액 집행되지 아니함.

< 최근 3년간 일반용역비(210-14)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일반용역비(210-14)	20	20	20	0	20	0

이에 대해 통일부는 2023년부터는 학생, 교사가 URL 페이지에 접속하여 만족도 조사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예산이 소요되지 아니하는 방식)을 개편함에 따라 일반용역비를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향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러나 예산 절감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불용한 것까지 예산 절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또한, 예산은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는 예산 수요 중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며, 동 내역사업 일반용역비처럼 사업수행방식이 변경되어 집행 수요가 사라진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고 할 것임.

더욱이 2025년 예산에도 동일하게 일반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통일부는 같은 사유를 들어 일반수용비로 조정하여 집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향후 통일부는 한정된 국가 예산이 집행 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5031-309)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업은 ① 사회통일교육 기관·단체 대상 통일교육 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 통일교육 인프라 확충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②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 ③ 2030세대 특성을 반영한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통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사회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7억 2,200만원 중 35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3,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3,717	3,717	-	5	3,722	3,586	-	136	96.5	96.2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을 보면, '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14억 2,600만원,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에 20억 6,600만원,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에 9,4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2024년도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능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3,717	3,717	5	3,722	3,586	-	136
· 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1,423	1,423	5	1,428	1,426	-	2
·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지역통일관 지원	2,194	2,194	-	2,194	2,066	-	128
·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100	100	-	100	94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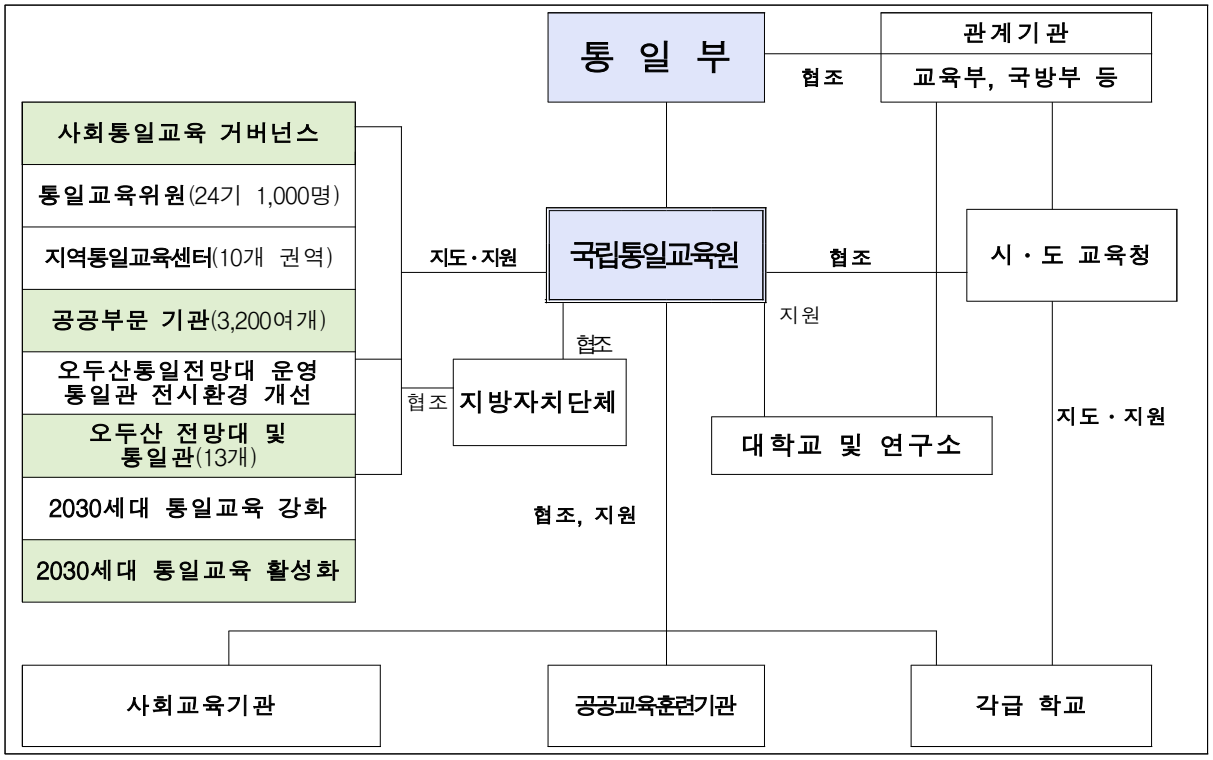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정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10개 권역에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또한, 1987년부터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들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영역의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통일교육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통일부는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일교육·전시 공간으로 오두산통일전망대와 전국에 12개 통일관을 운영 중이며, 동 세부사업의 체계는 다음 표와 같음.

< 사회통일교육 사업체계 >



자료: 통일부

4)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5031-507)

국립통일교육원 사이버통일교육센터사업은 공공, 교원, 일반국민 등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4억 8,400만원 중 4억 8,100만원이 집행되었고, 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484	484	-	-	484	481	3	99.4	99.4

자료: 통일부

5)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5033-308)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사업은 국립통일교육원 청사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노후한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시설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4억 6,500만원 중 14억 2,800만원이 집행되었고, 3,7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465	1,465	-	-	1,465	1,428	37	97.4	97.4

9. 통일행정지원(7000 프로그램)

가. 개 요

‘통일행정지원’ 프로그램은 통일부 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여건 조성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통일부 직원 인건비, 본부 및 소속기관 기본경비 등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024년도 예산현액 656억 6,500만원 중 595억 2,7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7%임.

< 2024년도 통일행정지원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예 산
		예산		예산 현액	결 산	
		본예산	추경			
합 계	**61,330**	**66,562**	**66,562**	**65,665**	**59,527**	**63,337**
□ 인건비(7001 단위사업)	44,590	48,454	48,454	47,380	42,286	44,763
□ 본부 기본경비(7011 단위사업)	5,078	5,360	5,360	5,450	5,035	5,326
□ 소속기관 기본경비(7018 단위사업)	3,207	3,251	3,251	3,331	3,135	3,327
□ 통일업무 R&D(7031 단위사업)	292	271	271	271	263	438
□ 통일업무지원(7032 단위사업)	461	1,085	1,085	1,085	1,040	1,118
□ 대북활동지원(7033 단위사업)	1,386	1,882	1,882	1,882	1,572	1,992
□ 통일정보화(7034 단위사업)	1,914	1,837	1,837	1,837	1,815	1,955
□ 본부 전산운영(7035 단위사업)	4,404	4,422	4,422	4,429	4,381	4,418

자료: 통일부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기관운영 및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경비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7억 9,800만원 중 18억 1,9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101.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액은 8,800만원이며, 불용액은 2,900만원임.

< 2024년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798	1,798	80	58	1,936	1,819	29	101.1	94

자료: 통일부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파견관 행정비용 연례적 불용

통일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관련 국제사회 여론 형성 및 다자외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에 201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파견관을 지속적으로 파견해 왔음.

< 2020~2024년 파견 현황 >

직급	성명	파견기간	비고
서기관	강OO	2020.8.7.~2022.5.31.	
서기관	강OO	2020.6.1.~2022.8.31.	파견 연장

자료: 통일부

< 2020년~2024년 파견관 행정비용 예산 집행 현황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0	14	14	25	-	-	38	21	-	17
2021	21	21	-	-	-	21	20	-	1
2022	19	19	-	-	-	19	-	-	19
2023	18	18	-	-	-	18	-	-	18
2024	19	19	-	-	-	19	-	-	19

자료: 통일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파견관 행정비용[220]은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왔는바, 2022년도 코로나

220) 해외이전(340) 1,900만원
- 국제부담금(340-02): UNESCAP 파견관 행정비용

19 팬데믹의 여파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파견이 일시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도 파견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2022년 이후 매년 UNESCAP 파견관 행정비용 약 1,900만원을 그 편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하여 불용 처리되고 있음.

통일부는 동 사업은 대북제재·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 등으로 북한 인력이 복귀하는 등 여건이 불비하여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23년, '24년 행정비용이 미집행되었으나, 향후 북한동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 재개를 고려 중이며 이 경우 파견관 파견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함.

이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의 협력 필요성과 파견 재개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에 그치는 것인 바, 사업 재개 결정 시 파견관 파견이 즉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 재개 가능성과 관련된 파견 추진 일정이나 인력 선발 계획, 국제기구와의 협의 상황 등 구체적인 재개 일정 또는 현실화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들은 결여된 채 필요성 등만에 입각하여 관련 예산만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목적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반복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합목적성과 집행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것임.

향후 통일부는 UNESCAP 파견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수립 여부를 명확히 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낮거나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관련 행정비용 편성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국제기구 파견 사업은 외교부,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구조와 연계성이 필요한바, 통일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실현 가능한 중장기 파견 전략과 연동된 예산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불용 예산의 반복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통일협력국 기본경비(7011-210, 7011-260)

‘총액인건비 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7011-210)는 통일협력국 신설(2023.9.8.)에 따라 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기본경비로, 2024년도 예산액 9,500만원 중 7,900만원 집행되고 1,600만원이 불용됨.

< 2024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95	95	-	-	95	79	16	83.2	83.2

자료: 통일부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7011-260)는 통일협력 관련 정책 수립 및 통일인식 확산 사업 추진 등 통일협력국 소관 업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2억 6,700만원 중 1억 9,9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75.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2024년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67	267	-	±23 △38	229	199	30	75.0	86.9

자료: 통일부

□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기본경비 수요 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

총액인건비 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7011-210)는 통일협력국 운영에 필요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특근매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비로, 2024년도에 9,500만원이 편성되어 7,900만원이 집행됨(집행률 83.2%).

이중 상용임금과 복리후생비는 전액 집행되었으나, 특근매식비와 기타운영비는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 2024년도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편성 및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세목별	예산(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총액인건비 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7011-210)	상용임금(110-03)	56	56	100.0
	특근매식비(210-05)	21	8	38.1
	복리후생비(210-12)	1	1	100.0
	기타운영비(210-16)	6	4	66.7
	고용부담금(320-09)	11	10	90.9
	계	**95**	**79**	**83.2**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7011-260)	일반수용비(210-01)	94	44	46.8
	공공요금및제세(210-02)	6	1	16.7
	급식비(210-04)	2	2	100.0
	임차료(210-07)	17	9	52.9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3	-
	국내여비(220-01)	19	14	73.7
	국외업무여비(220-02)	69	56	81.2
	관서업무추진비(240-02)	34	27	79.4
	자산취득비(430-01)	26	23	88.5
	계	**267**	**199**	**74.5**

자료: 통일부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7011-260)는 통일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책자문회의 운영 등 통일협력국 운영을 위한 경비로, 2억 6,700만원이 편성되어 1억 9,900만원이 집행됨(집행률 74.5%).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등 일부 세목의 집행률은 50% 내외로 저조하였고, 특히 시설장비유지비는 인천통일플러스센터 원상복구 비용 발생으로 인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2024년 7월 이관 확정 이후 일반수용비에서 자체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됨.

또한, 연도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이 정보분석국 또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내역변경되는 사례가 확인됨.

< 2024년도 통일협력국 기본경비(7011-260) 변경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4.11.1.)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7011-260)	240-02	2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40-02	예산국회 대비 등 관서업무추진비 부족액 충당
세목조정 (24.11.19)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7011-260)	210-01	23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7011-260)	210-09	인천통일플러스센터 원상복구 관련 시설장비유지비 부족액 충당
내역변경 (24.11.27.)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7011-260)	210-01	5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7011-258)	210-01	북한인물 동향 분석 관련 발간비용 등 일반수용비 부족액 충당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4.12.5.)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7011-260)	210-01	21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10-01	업무수첩 및 연하장 제작, 업무택시, 소송 및 법률자문 비용, '25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 책자 인쇄비 등 일반 수용비 부족액 충당
		210-02	4			
		210-07	5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7011-260)	240-02	1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40-02	예산국회 대비 등 관서업무추진비 부족액 충당

자료: 통일부

통일협력국 기본경비의 전체적인 집행률 저조와 빈번한 세목조정 및 전용은 예산 편성과 집행이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시사함.

통일협력국 신설 이후 통일공감대 확산 등 사업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통일문화행사가 축소되었고, 주요국 출장 시 세미나 및 간담회 등 실무정책협의회 중심으로 사업을 간소화하면서 집행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인천통일플러스센터 이관 협의 지연으로 복구비가 발생하는 등 편성단계에서 수요 예측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음.

향후 통일협력국 기본경비는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집행실적과 사업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수요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세목조정 등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주러시아 통일주재관 직위 복원 검토 필요[221]

통일주재관(이하 '통일관', Unification Attaché)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 외교부의 재외공관 파견 절차에 따라 주재국 공관에 배치되어 공관장의 통일 및 북한 관련 업무를 지원하며, 그 주요 업무는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주재국 내 공감대 형성, 북한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현장 기반의 정책 반영 채널 역할 등임.

현재 독일, 미국, 중국 및 일본의 4개국에 통일관이 상주중이며, 주러시아 통일관은 직위 감축 대상에 해당되어 2025년 2월 임기 종료 후 폐지 예정인 상황임.[222]

< 주요국 통일관 현황 등 >

통일관 현황 (상주도시)	주요 활동	직위 설치 연도
독일(베를린)	독일통일 사례 조사 정부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확보	1990년 12월 (1999.8. 폐지되었다가 2012.8 재설치)
미국(워싱턴D.C.)	한-미 대북정책 공조 지원 미국 내 북한·한반도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등 네트워크 관리	1996년 8월
중국(베이징)	중-러 협력 동향 파악 북중 접경지역 주요 동향 파악 정부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확보	1996년 8월
일본(도쿄)	한-미-일 대북정책 공조 지원 납치자 문제 공조	1996년 8월
러시아(모스크바)	정부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확보 러-북 협력 동향 파악	2012년 8월 (2025.2. 파견 종료 및 폐지)

자료: 통일부

221) 통일주재관 관련 예산은 '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7011-260) 중 국외여비(220-02)에 2024년도의 경우 '통일주재관 회의비' 600만원, 귀·부임 경비 3,950만원이 편성됨.

222) 외교부는 2022년 범정부 차원의 인력 효율화 방침에 따라,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공관 인력에 대한 업무 수요 진단 결과를 반영, 주재관 감축 및 재배치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러 통일관을 포함한 9개 직위가 감축 대상에 포함됨.

러시아는 한반도 안보지형 변화 등 통일·대북정책 이행을 위한 핵심 파트너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이행, 북한 관련 결의안 채택 등 전략적 소통이 필요한 국가임.

최근에는 북러 간 군사·외교 협력 수준이 전략적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고, 러시아 내 북한 인력(근로자, 유학생 등)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주러 통일관의 정보 수집 및 정책적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서 주러 통일관 직위의 공백이 지속될 경우에는 북한 관련 현장 기반 정보의 공백이 발생하고, 러시아 내 우리 정부의 통일 관련 입장 전파 및 상호 정책대화 채널의 단절, 통일·대북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외교·정보당국 중심의 접근으로 통일부 시각에서의 접근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임.

러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남북관계에서의 전략적 위상, 최근 북·러 밀착 등 대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와 통일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외교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러시아 통일관 직위의 복원 및 상주 인력 재배치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3)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7011-258)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는 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실태 파악·분석·평가 및 각종 정보와 자료의 종합·생산·배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경비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2억 8,700만원 중 2억 9,4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102.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은 200만원임.

< 2024년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87	287	-	60 △51	296	294	2	102.4	99.3

자료: 통일부

□ 예산 미편성된 종료사업 잔여 물량에 대한 기본경비 활용 부적정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예산을 인건비, 기본경비 및 주요사업비로 구분하면서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본경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세부사업은 예산 구분 상 기본경비에 해당함.

통일부는 2024년 동 세부사업 예산 집행액 2억 9,400만원 중 7,800만원을 예산 구분 상 주요사업비에 해당하는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 소요 경비로 집행하였음.[223]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1533-302)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토대로 북한의 경제·사회·주민의식 관련 심층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 시작된 이래 2023년까지 추진되었으나 재정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2024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2023년에 종료된 사업임.[224]

그런데 통일부는 2023년에 종료된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관련 경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동 세부사업에서 7,830만원,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 세부사업에서 1,57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9,400만원을 2024년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223) 통일부는 2024년 동 세부사업 외에 국제통일기반조성 세부사업(1031-302)에서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관련 경비로 1,570만원을 집행하였음.

224) 연도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1,150	935	800	700	632	528	466	466	466	462	439	417	417	360	종료
집행액	799	739	680	638	597	493	429	447	421	449	414	397	376	348	

<2024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 관련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량/횟수 등	집행 금액	예산과목
북한 경제사회 실태의 이해와 통일·대북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1회	20	7011-258-210-14
국문보고서 평가 사례비	전문가 1명	0.3	7011-258-210-01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영문보고서 감수 비용	기관 1회, 전문가 2명	9	7011-258-210-01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영문보고서 제작비	1,500부	20	7011-258-210-01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영문 리플릿 번역 사례비	전문가 3명	3	7011-258-210-01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영문리플릿 제작비	3,800부	7	7011-258-210-01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강의안 제작비	1회	18	7011-258-210-01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강의안 영문 번역 사례비	전문가 1명	1	7011-258-210-01
소계		78.3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보고서 설명자료 번역(일본어)	전문가 1명	0.7	1031-302-210-01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영문보고서 제작비(해외발송용)	500부	10	1031-302-210-01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영문보고서 해외 발송 대금	500부 배포	5	1031-302-210-01
소계		15.7	
합계		94	

자료: 통일부

세부적으로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의 이해와 통일·대북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 집행한 바 있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영문판) 제작비로 3,000만원 등을 2024년 예산으로 추가로 집행하였음.

< 2023년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등 발간 현황 >

(단위: 백만원)

발간물 명칭	수량	금액	예산과목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3,000부	60	1500-1533-302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국문 리플릿	5,200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영문 리플릿	3,000부		

자료: 통일부

이에 대해 통일부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홍보 관련 국내외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문보고서, 홍보물(리플릿, 강연자료)을 제작·발송하였고,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이 2023년에 종료되고 2024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고서의 홍보, 확산을 위해 불가피하게 분석국 기본경비 등으로 추가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정부내 예산편성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낮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사업의 필요성만으로 예산편성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관련 경비를 집행할 경우 정부 내 예산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심의 과정도 형해화될 수밖에 없음.

또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등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경비와 같이 주요사업비성 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함.

따라서 통일부는 앞으로 기본경비의 성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주요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기본경비 등의 예산이 활용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국외업무여비 예산 연례적 조정 및 전용 부적정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중 국외업무여비는 북한 정세 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타 비목의 부족 재원으로 전용 또는 조정되었음.

< 2024년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세목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287	287	-	60 △51	296	294	2
- 일반수용비(210-01)	178	178	-	24 △20	182	182	0.2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	3	-	10	14	13	0.6
- 급식비(210-04)	3	3	-	△1	3	3	-
- 임차료(210-07)	12	12	-	1	13	13	-
- 일반용역비(210-14)	-	-	-	20	20	20	0.3
- 국내여비(220-01)	12	12	-	5	16	16	-
- 국외업무여비(220-02)	15	15	-	△15	-	-	-
- 관서업무추진비(240-02)	35	35	-	△8	26	26	-
- 자산취득비(430-01)	29	29	-	△7	22	21	0.6
합 계	287	287	-	60 △51	296	294	2

자료: 통일부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00만원이 북한방송 위성 수신용 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용되었고, 450만원은 국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조정되었음.

< 이·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4.9.13.)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7011-258)	220-02	10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7011-258)	210-02	북한방송 위성 수신용 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 충당
세목조정 ('24.10.8.)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7011-258)	220-02	4.5	총액인건비 비대상 정보분석국 기본경비 (7011-258)	220-01	국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자료: 통일부

그런데 동 세부사업 내 국외업무여비는 2022년 및 2023년에도 편성된 예산이 전액 타 사업의 재원이나 동 사업 다른 비목의 부족재원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및 2023년 국외업무여비(220-02)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편성	이·전용 등	이·전용등 내역
2022	16	16	(자체전용)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연구비 부족분 충당(16백만원)
2023	15	15	(세목조정) 국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15백만원)

자료: 통일부

이처럼 편성된 예산을 편성 목적대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타 사업의 부족재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임.

통일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기본경비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비목별로 그 필요성 및 정확한 소요를 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4) 정책연구개발(7031-300)

정책연구개발은 통일 및 북한문제 등과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소 등의 외부전문가에게 정책개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하여 통일·대북정책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2억 7,100만원 중 2억 6,3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97.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은 800만원임.

< 2024년도 정책연구개발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71	271	-	-	271	263	8	97.2	97.2

자료: 통일부

5) 통일업무지원(7032-303)

통일업무지원 사업은 정부혁신·창의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통일부 기록물 및 민간분야 통일사료 수집을 통해 통일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체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자료 제작 및 합동 절차연습을 시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의무 이행을 통한 안전보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며, 재난대응 태세 구축을 통해 유사시 정부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일경험 및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준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0억 8,500만원 중 10억 4,0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95.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은 4,500만원임.

< 2024년도 통일업무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1,085	1,085	-	±24	1,085	1,040	45	95.9	95.9

자료: 통일부

Ⅲ. 2024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 결산 개요

1. 남북협력기금 결산 총괄

가. 기금 총괄

2024년도 남북협력기금 수입·지출 결산액은 7,965억원(전년 6,629억원)으로 계획현액(1조 5,874억원) 대비 50.2%임.

수입금 7,965억원 중 6,064억원을 사업비·기금운영비·공자기금예수금상환 등에 지출하고, 1,901억원은 여유자금[225]으로 운용하였음.

< 수입·지출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	계획현액 (A)	실 적 (B)	달성률 (B/A)
수입	합 계	1,584,114	-	1,584,114	796,466	50.3
	자 체 수 입	43,638	-	43,638	13,105	30.0
	정부내부수입	1,456,476	-	1,456,476	620,000	42.6
	여유자금회수	84,000	-	84,000	163,361	194.5
지출	합 계	1,584,114	3,300	1,587,414	796,466	50.2
	사 업 비	872,235	3,300	875,535	32,987	3.8
	기금운영비	2,239	-	2,239	2,178	97.3
	공자기금원리금상환	596,209	-	596,209	571,211	95.8
	여유자금운용	113,431	-	113,431	190,091	167.6

자료: 통일부

225) 기금 여유자금이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을 의미한다. 여유자금은 운용기간에 따라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으로 분류된다. 단기자산은 1년 미만으로 운용되는 자산으로서 연중 사업에 집행될 "사업대기성 자금"과 연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 유동성 자금"의 용도로 활용된다. 중장기자산은 장래 지출수요에 대비하거나, 기금의 향후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1년 이상 운용되는 자산을 의미하며, 확정금리형, 채권형, 주식형, 대체투자 등의 자산군으로 구성된다.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2018. 10. 15. 기획재정부훈령 제396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여유자금"이라 함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사업성 대기자금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가. 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
나.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나. 수입 결산

2024년도 남북협력기금 수입총계는 7,965억원으로, 계획현액 1조 5,841억원 대비 50.3%임.

자체수입은 131억원(전년 132억원)으로 계획액 436억원 대비 30.0%이고,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은 주로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감소에 기인함.

정부내부수입은 6,200억원으로 계획액 1조 4,565억원 대비 42.6%이며, 여유자금회수는 1,634억원으로 계획액 840억원 대비 194.5%임.

< 수입 결산 세부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4당초계획	'24계획현액 (A)	실 적 (B)	달성률 (B/A)	비고
총 계	1,584,114	1,584,114	796,466	50.3	
자체수입	**43,638**	**43,638**	**13,105**	**30.0**	
○ 재산수입	6,502	6,502	4,706	72.4	
▪ 건물대여료	40	40	35	87.5	미래센터 임대료
▪ 기타민간이자수입	3,856	3,856	1,498	38.8	대출이자수입
▪ 기타재산수입	2,606	2,606	3,173	121.8	여유자금운용수입
○ 경상이전수입	11,399	11,399	2,237	19.6	
▪ 민간출연금	150	150	900	600.0	자발적 민간출연
▪ 기타경상이전수입	11,249	11,249	1,337	11.9	사업비 정산·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177	3,177	56	1.8	
▪ 기타잡수입	3,177	3,177	56	1.8	미래센터 연수비 등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2,560	22,560	6,106	27.1	
▪ 융자원금회수	22,560	22,560	6,106	27.1	대출원금 회수
정부내부수입	**1,456,476**	**1,456,476**	**620,000**	**42.6**	
○ 일반회계전입금	100,000	100,000	100,000	100	정부출연금
○ 공자기금예수금	1,356,476	1,356,476	520,000	38.3	경수로 차입금 상환
여유자금회수	**84,000**	**84,000**	**163,361**	**194.5**	운용기관예치원금회수

자료: 통일부

다. 지출 결산

2024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총계는 7,965억원으로 계획현액 1조 5,874억원 대비 50.2%임.

사업비 집행액은 330억원(전년 224억원)으로 계획현액 8,755억원 대비 3.8%이고, 기금운영비는 22억원으로 계획현액 22.4억원 대비 97.3%이며, 공자기금예수금원리금상환은 5,712억원으로 계획현액 5,962억원 대비 95.8%이고, 여유자금운용은 1,901억원으로 계획현액 1,134억원 대비 167.6%임.

< 지출 결산 세부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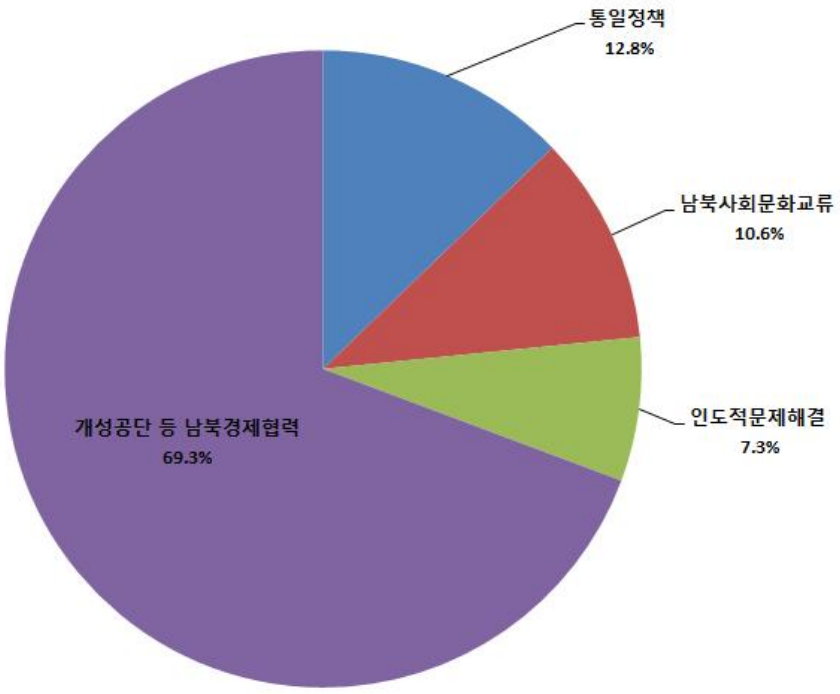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			실적 (B)	달성률 (B/A)
		'24년 계획(당초)	전년도 이월	계획 현액(A)		
사업비	통일정책	4,592	-	4,592	4,220	91.9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4,592	-	4,592	4,220	91.9
	남북사회문화교류	15,951	-	15,951	3,486	21.9
	- 사회문화교류지원	15,951	-	15,951	3,486	21.9
	인도적문제해결	589,498		589,498	2,426	0.4
	- 이산가족교류지원	17,877	-	17,877	1,663	9.3
	- 구호지원	96,307	-	96,307	-	-
	- 민생협력지원	475,314		475,314	763	0.1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262,194	-	265,494	22,855	8.6
	- 경제교류협력보험	3,847	-	3,847	-	-
	- 경협기반(무상)	127,152	3,242	130,694	15,921	12.2
	- 경협기반(융자)	99,014	-	99,014	-	-
	-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9,000	-	9,000	-	-
	- DMZ 평화적 이용	9,408	58	9,466	1,767	18.7
	- 개성공단 운영 대출	6,626	-	6,626	-	-
	- 개성공단 기반조성	7,147	-	6,847	5,168	75.5
	소 계	872,235	3,300	875,535	32,987	3.8
기금운영비		2,239	-	2,239	2,178	97.3
공자기금예수금 원리금상환		596,209	-	596,209	571,211	95.8
여유자금운용		113,431	-	113,431	190,091	167.6
총 계		1,584,114	3,300	1,587,414	796,466	50.2

자료: 통일부

2024년 기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에서 각 프로그램별 결산 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사업비 총 지출액 329억 8,700만원 중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이 약 69.3%(228억 5,500만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통일정책 프로그램이 약 12.8%(42억 2,000만원), 남북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약 10.6%(34억 8,600만원),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약 7.3%(24억 2,600만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4년 결산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중 프로그램별 결산 지출액 비중 >



자료: 통일부

최근 3개년간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집행 현황을 분야별로 보면,

통일정책의 경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체험연수 운영과 시설관리 운영은 경상경비 지출 등으로 3년간 평균 집행률은 89.4%[('22) 84.6% → ('23) 91.7% → ('24) 91.9%]로 양호한 편임.

남북사회문화교류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등으로 집행률은 17.7%를 기록하였고, 인도적 문제해결 및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경우 최근 3개년 모두 저조한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최근 3개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3년간 평균 집행률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통일정책	3,415	2,888	84.6	3,660	3,357	91.7	4,592	4,220	91.9	89.4
남북사회 문화교류	22,095	3,353	15.2	21,520	3,456	16.1	15,951	3,486	21.9	17.7
인도적 문제해결	661,489	4,393	0.7	730,004	1,745	0.2	589,498	2,426	0.4	0.4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595,278	67,282	11.3	454,934	13,876	3.1	265,494	22,855	8.6	7.7
합 계	1,282,277	77,916	6.1	1,210,118	22,434	1.9	875,535	32,987	3.8	3.9

자료: 통일부

2. 남북협력기금 수입 결산 검토

가. 건물대여료

‘건물대여료’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 및 시설 대관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 수입으로, 2024년도 계획액은 4,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실적은 3,500만원임.

< 2024년도 건물대여료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40	-	40	35	35	-	87.5

자료: 통일부

전년(15백만원, 38.6%) 대비하여 계획액 대비 수납률은 87.5%로,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24년도 건물대여료 수입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구내식당 위탁운영	12	7	7	-
시설 대관	28	28	28	-
합 계	40	35	35	-

자료: 통일부

나. 기타민간이자수입 및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재산수입 중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은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의 융자금으로부터 회수되는 이자수입으로, 2024년 계획액은 38억 5,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억 3,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억 9,800만원으로 계획액 대비 수납률은 38.8%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는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에 대한 대출원금 회수 수입으로, 2024년 계획액은 225억 6,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2억 4,700만원이며 수납액은 61억 600만원으로 계획액 대비 수납률은 27.1%임.

< 2024년도 기타민간이자수입 및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A)	이체 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기타민간 이자수입	3,856	-	3,856	4,530	1,498	2,893	139	38.8
기타민간 융자원금회수	22,560	-	22,560	37,247	6,106	27,223	3,918	27.1

자료: 통일부(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4.12월말 결산일 기준)

기타민간이자수입과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최근 5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남북경협 중단 및 개성공단 폐쇄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협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1년마다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226]를 실시하고 있는 바, 경협기업의 규모가 대체로 영세하며 최근에는 코로나19,

226)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환 유예와 기존 대출에 대해 금리 조정{예시: 2021년의 경우에도 21. 6. 10. 기준 기금대출 연체가 아니며, 금리가 1.5% 이상인 대출[264개사(중복제외), 394건 대출잔액 245,488백만원]에 대해 0.5%p인하. 이자경감 규모는 연간 약 12억 3천만원}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이자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원금 수납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 기타민간이자수입 및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계획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기타민간 이자수입	2020	4,992	2,850	1,712	34.3	60.0
	2021	4,062	3,052	1,384	34.1	45.3
	2022	3,411	2,513	804	23.6	32.0
	2023	3,856	3,604	1,440	37.3	40.0
	2024	3,856	4,530	1,498	38.8	33.1

구 분	연 도	계획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기타민간 융자원금 회수	2020	62,143	32,555	10,552	17.0	32.4
	2021	73,099	36,798	9,218	12.6	25.0
	2022	10,600	32,522	6,166	58.2	19.0
	2023	18,241	32,178	5,280	28.9	16.4
	2024	22,560	37,247	6,106	27.1	16.4

자료: 통일부

참고로, 금강산 관광 중단(2008. 7.) 및 5.24 조치(2010), 개성공단 가동 중단(2016) 이후 남북경협 중단 지속으로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고려하여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212개 기업 1,746억원 규모임.

<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상환 유예 현황 >

(단위: 개사,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개성공단	기업수	112	104	96	95	94
	금액	68,046	85,476	79,077	78,227	76,712
개성공단 외	기업수	154	144	135	135	120
	금액	99,797	149,798	48,216	63,181	55,274
합 계	기업수	264	247	229	228	211
	금액	167,843	235,274	127,293	141,408	131,986

자료: 통일부(중복 제외)

기타민간이자수입과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징수결정액은 해당 회계연도에 원리금 만기가 도래한 금액으로, 상환유예 또는 만기연장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에서 제외됨.

< 2024년 남북협력기금 융자 잔액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24년말 융자잔액	융자대상	2024년 만기도래액(원금)			
			계	상환액	상환유예	미상환액
경협기반(융자)[주1]	309,431	조선무역은행	-	-	-	-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171,464	㈜아난티 등 178개	63,920	4,533	55,274	4,113
개성공단운영대출	181,253	재영솔루텍㈜ 등 119개	121,087	1,573	119,307	207
계	662,149[주2]	284개[주3]	185,007	6,106	174,581	4,320

자료: 통일부

주1) 2007년 조선무역은행 앞 차관방식으로 제공한 경공업차관(북측의 의복,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자재장비차관(경의선, 동해선 북측구간 철도, 도로 및 역사 기자재관련 차관)

2) 미달러화 대출은 '24.12.31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1,470.0원) 적용하여 원화 환산

3) 중복 기업수 제외

2024년말 기준 해당 회계연도에 원리금 만기가 도래한 금액 중 상환 유예 또는 만기 연장 경우 등을 제외한 징수결정액은 융자금 372억 4,700만원, 이자 45억 3,000만원이나, 이를 상환하지 못한 융자금 및 이자의 연체 규모는 42개 기업 301억 1,600만원임.

< 남북협력기금 원금 및 이자 연체내역 >

(단위: 개사, 백만원)

구 분		원금(A)		이자(B)		계(A+B)	
		기업	금액	기업	금액	기업	금액
경협대출		3	7,375	3	543	3	7,918
특별대출	교역·경협·금강산	24	10,240	24	1,656	24	11,896
	개성공단	15	9,608	15	694	15	10,302
교역대출		-	-	-	-	-	-
합 계		42	27,223	42	2,893	42	30,116

자료: 통일부(중복기업 수 제외)

대출 원리금 연체 사유는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 5.24조치,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경협·교역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 및 사업기반 약화임.

다.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기금 여유자금 예치에 따른 운용수익 등으로, 2024년도 계획액 26억 600만원의 121.8%인 31억 7,300만원이 수납되었음.

< 2024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2,606	-	2,606	3,173	3,173	-	121.8

자료: 통일부

전반적인 이자율 하락 기조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이 하락하여 전년(수납액: 33억 3,800만원) 대비 수납액이 감소하였음.

라.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기금 무상사업비를 개산급[227]으로 지급한 이후 그 정산에 따른 환입금 수입 및 지난 2013년, 2016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시 지급된 경협보험금 회수액으로, 2024년 계획액은 112억 4,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3억 3,700만원으로 수납률은 11.9%임.

<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11,249	-	11,249	1,337	1,337	-	11.9

자료: 통일부

세부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환입금 수입으로 11억 6,500만원과 경협보험금 반납으로 1억 7,200만원이 수납되었음.

<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환입금 수입	3,547	1,165	1,165	-
경협보험금 환입	7,702	172	172	-
합 계	11,249	1,337	1,337	-

자료: 통일부

‘환입금 수입’ 11억 6,500만원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환입금 6억 8,300만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환입금 4억 5,300만원 등에서 발생하였음.

227) 개산급(槪算給): 갚거나 주어야 할 돈의 액수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 그 금액을 미리 대강 계산하여 주는 일(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환입금 수입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환입금	683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환입금	453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전시 사업 환입금	11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환입금	11
이산가족 교류촉진 사업 환입금	4
개성 만월대 디지털기록관 운영 사업 환입금	2
기타(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사업 환입금 등)	1
합 계	1,165

자료: 통일부

한편, ‘경협보험금 환입수입’은 당초 계획액을 77억 200만원으로 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억 7,258만원으로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2.2%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중단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기업들이 반납해야 하는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경협보험금 환입관련 현황을 보면 약관[228]에 따라 경협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이를 남북협력기금의 세입으로 회수하고 있음. 2013년의 경우 4월 개성공단 사업 중단 후 지급된 59개 기업대상 보험금 1,761억원에 대해서는 같은 해 9월 개성공단 재개 이후 총 1,311억원을 연차적으로 기금의 세입으로 환입 받았음.

228) **「지분 등 투자보험 약관」 제27조의2(대위권 등의 행사)**
③ 기금은 대위권 등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반납기한을 정하여 보험금 반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경상이전수입 경협보험금 연도별 반납 현황 >

(단위 : 개사, 억원)

연 도	기업수	반납금액	비 고
2013년	40	1,166	
2014년	10	87	6개기업 중복
2015년	7	54	7개기업 중복
2016년	-	-	가지급금 초과지급분 및 회수금 통지 지연에 따른 초과지급분 반환 제외
2017년	-	-	-
2018년	-	-	-
2019년	1	0.1	1개기업 중복
2020년	1	0.4	1개기업 중복
2021년	1	0.6	1개기업 중복
2022년	1	1	1개기업 중복
2023년	1	1.2	1개기업 중복
2024년	1	1.1	1개기업 중복
합 계	44	1,311	연도별 중복 반납기업 제외

자료: 통일부

그리고 2013년 보험금을 지급받고 사업 재개 이후에도 반납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피해기업에게 지원해야 할 피해지원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형식으로 지원한 바 있음. 따라서 기금관리주체인 통일부는 개성공단 사업이 다시 재개되지 아니하는 한 보험금 환입 대상 기업은 없다는 입장임.

< 2013년 개성공단 재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경협보험금 미반납 현황 >

(단위 : 개사, 억원)

보험금 지급		보험금 회수		사업 포기		보험금 미회수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금액
59	1,761	44주)	1,311	5	59	14주)	391

자료: 통일부(2024년 말 기준, 보험금 일부반납기업 4개사 포함)

마.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은 교역보험 및 경제협력사업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 수입,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연수자 연수비 및 숙박비 등으로, ’24년 계획액은 31억 7,700만원이고 수납액은 5,600만원으로 수납률은 1.8%임.

< 2024년도 기타잡수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3,177	-	3,177	56	56	-	1.8

자료: 통일부

세부내역을 보면,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2017년 이후 교역·경협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수입은 계속 없었고, 통신관로 임차료 수입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KT간 체결한 「남북철도시설이용에 관한 계약」(2018. 1. 20.)에 따라 KT로부터 통신관로 사용료를 약 700만원 수납하였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연수비의 경우 2024년 통일체험연수가 활성화되면서 전년(21백만원) 대비 증가한 약 4,900만원을 징수·수납함.

< 기타잡수입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보험료 수입	3,046	-	-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체험연수비	131	49	49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통신관로 임차료 수입 등	-	7	7	-
합 계	3,177	56	56	-

자료: 통일부

바.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금예수금

일반회계전입금은「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정부출연금으로 2024년도 계획액 1,000억원을 수납하였음. 수납액은 2024년에 도래하는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예수금의 이자 상환분 512억 1,100만원과 남북협력사업비 충당분 487억 8,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이하 “기금예수금”)은 경수로사업 관련 공자기금 원금상환과 남북협력사업 수요의 변동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만으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예수하는 것으로, 2024년도의 경우 당초 계획액은 1조 3,564억 7,600만원이었으나, 계획액의 38.3%인 5,200억원을 수납하였음.

< 2024년도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금예수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A)	이체 등 증감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	-	100,000	100,000	100,000	-	100
공자기금 예수금	1,356,476	-	1,356,476	520,000	520,000	-	38.3

자료: 통일부

기금예수금 5,200억원은 경수로사업 관련 기존 공자기금 예수 원금 중 202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며, 남북협력사업 관련 계획액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사업 집행률 저조와 여유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예수하지 않음.

3. 남북협력기금 지출 결산 검토

가. 통일정책

‘통일정책’ 프로그램은 접경지대에 남북교류의 공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남북청소년 교류 및 국내외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연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1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도 통일정책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계 획
		계 획	결 산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3,357	4,592	4,220	5,043
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3,357	4,592	4,220	5,043

자료: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최대 40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일체험 연수시설이자 남북교류 지원시설로, 2014년 11월 개관하여 2015년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음.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현황 >

o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남계로 408
o 총 사업비: 493억원(건축비)
o 사업 기간: 2011년~2014년(2014년 9월 준공, 11월 개관)
o 시설 규모: 부지 273,074㎡(약 82,600평), 건축연면적 17,362㎡(약 5,200평)
- 주요시설 현황: 운영센터 및 연수관(지상 2층), 체험관, 체육관 및 식당, 생활관(4층), 가족빌리지, 직원숙소,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야외공연장, 한반도 투어링장 등
o 최대 수용인원: 408명

자료: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통일체험연수는 전국 일선 학교(초·중·고)를 대상으로 당일, 1박 2일,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과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해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초청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온라인 통일미래체험 프로그램과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 총 227개 학교·단체 등, 연인원 38,257명 대상의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하였음.

1)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의 2024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42억 2,0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현액(45억 9,2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1.9%임.

< 2024년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4,592	0	4,592	4,220	-	372	91.9	91.9

자료: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의 집행률은 전년(91.7%) 대비 근소하게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탈북청소년 한마음 체육대회, 주한유학생·재외동포 대상 통일체험연수 등 기존 대비 연수 대상 확대와 콘텐츠의 적극적 발굴·개편 등으로 인한 결과로 설명됨.

나. 남북사회문화교류

‘남북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은 남북간 주민 왕래 및 사회문화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해 남북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상호 호혜적 관계 구축 및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은 예산구조 개편을 거쳐 2016년부터 ‘남북사회문화교류’라는 1개의 단위사업 아래에 ‘사회문화교류 지원’이라는 1개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편성되었음.

< 2024년도 남북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계 획
		계획	결산	
1. 남북사회문화교류	3,456	15,951	3,486	10,368
가. 사회문화교류지원	3,456	15,951	3,486	10,368

자료: 통일부

1) 남북사회문화교류

가) 사회문화교류지원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은 남북한 주민 왕래 및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사회문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통해 사회문화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극복과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남북협력기금법」제8조제1호 및 제2호[229]에 근거하여 남북한 주민의 왕래와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액 159억 5,100만원의 21.9%인 34억 8,600만원이 집행되고, 124억 6,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15,951	-	15,951	3,486	-	12,465	21.9	21.9

자료: 통일부

2024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육·학술협력사업은 계획액 26억 400만원 중 92.1%인 23억 9,8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인적왕래·기타협력사업은 계획액 133억 4,700만원 중 8.2%인 10억 8,800만원이 집행되었음.

229)「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환경,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8. (생 략)

< 2024년도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교육학술협력사업	2,604	-	2,604	2,398	-	206
·인적왕래·기타협력사업	13,347	-	13,347	1,088	-	12,259
합 계	15,951	-	15,951	3,486	-	12,465

자료: 통일부

인적왕래·기타 협력사업으로 집행된 10억 8,800만원의 내역은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전시 3억 7,300만원,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및 활용 5억 9,300만원, 개성 만월대 디지털기록관 운영 1억 2,200만원임.

< 2024년도 기타협력사업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승인액	집행액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전시	373	373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및 활용	593	593
개성 만월대 디지털기록관 운영	122	122
합 계	1,088	1,088

자료: 통일부

다. 인도적 문제해결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교류를 촉진하고, 북한주민들의 식량난·재해 등 복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① 이산가족교류지원, ② 대북인도적 지원의 총 2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 2024년도 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계 획
		계획	결산	
□ 이산가족교류지원	993	17,877	1,663	13,408
○ 이산가족교류지원	993	17,877	1,663	13,408
□ 대북인도적지원	752	571,621	763	588,115
○ 구호지원	-	96,307	-	112,230
○ 민생협력지원	752	475,314	763	475,885

자료: 통일부

1) 이산가족교류지원

가) 이산가족교류지원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은 남북 당국 간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산의 고통을 해소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계획액 178억 7,700만원 중 16억 6,3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9.3%임.

< 2024년도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A)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17,877	-	17,877	1,663	-	16,214	9.3	9.3

자료: 통일부

세부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이산가족교류활성화기반조성 사업에 16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산가족상봉행사 사업과 이산가족면회소운영 사업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이산가족교류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계 획
		계 획(변경)	결 산	
○ 이산가족교류지원	993	17,877	1,663	13,408
· 이산가족상봉행사	-	11,621	-	9,324
· 이산가족교류활성화기반조성	993	1,893	1,663	1,093
· 이산가족면회소운영	-	4,363	-	2,991

자료: 통일부

2) 대북인도적지원

‘대북인도적지원’ 사업은 북한의 식량·경제·재해 등 인도적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과 농축산·산림·환경협력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 등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북인도적지원 1개의 단위사업 아래 구호지원 및 민생협력지원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4년도 대북인도적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계 획
		계획	결산	
○ 대북인도적지원	752	571,621	763	588,115
· 구호지원	-	96,307	-	112,230
· 민생협력지원	752	475,314	763	475,885

자료: 통일부

가) 구호지원

‘구호지원’ 사업은 북한 지역의 자연재해 및 전염병, 식량난 등 인도적 위기상황 발생 시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북한주민의 고통 경감 및 기본적 생존권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은 963억 700만원이었으나 당국간 지원 합의가 없어 전액 미집행 되었음.

< 2024년도 구호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96,307	-	96,307	-	-	96,307	-

자료: 통일부

나) 민생협력지원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통해 통일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축산 협력 및 산림 복구, 환경,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230]

2024년 계획액 4,753억 1,400만원 중 7억 6,300만원이 집행되고, 4,745억 5,100만원이 불용됨으로써 집행률은 계획액 대비 0.1%임.

< 2024년도 민생협력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475,314	-	475,314	763	-	474,551	0.1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인도적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사업은 계획액 10억 6,300만원 중 71.8%인 7억 6,300만원이 대북지원협력사업 통합관리체계구축 사업 등에 집행되었음.

내역사업 중 북한영유아 등 지원, 보건의료협력, 농축산·산림·환경협력 사업은 북한의 국경 봉쇄 및 외부지원 미수용 등 사업 추진 여건 악화로 전액 불용되었음.

230) 2016년도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개발협력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2015년도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및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세부사업을 ‘중점 인도적 지원’에 통합하고 명칭을 ‘민생협력지원’으로 변경하여, 예산구조를 주체와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체계에서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였고, ‘민생협력지원’ 사업은 기존 ‘중점인도적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북한영유아 등 지원, 보건의료협력, 농축산산림환경협력,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 2024년도 민생협력지원 내역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북한영유아 지원	87,134	87,134	-	87,134	-	-	87,134
·보건의료협력	99,416	99,416	-	99,416	-	-	99,416
·농축산산림환경협력	287,701	287,701	-	287,701	-	-	287,701
·인도지원·협력 체계 구축	1,063	1,063	-	1,063	763	-	300
합 계	**475,314**	**475,314**	**-**	**475,314**	**763**	**-**	**474,551**

자료: 통일부

라.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은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 기반을 조성하고, 개성공단 내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 및 공단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현장에서 공단을 관리·운영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단위사업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에 경제교류협력보험, 경협기반(무상), 경협기반(융자),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DMZ 평화적 이용 5개의 세부사업과 단위사업 개성공단 조성에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및 개성공단 기반조성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4년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계 획
		계 획	결 산	
□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6,736	248,421	17,687	176,191
○ 경제교류협력보험	-	3,847	-	2,501
○ 경협기반(무상)	3,908	127,152	15,921	102,649
○ 경협기반(융자)	-	99,014	-	59,051
○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	9,000	-	5,850
○ DMZ 평화적 이용	2,828	9,408	1,767	6,140
□ 개성공단 조성	7,140	13,773	5,168	4,964
○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2,027	6,626	-	2,819
○ 개성공단 기반조성	5,113	7,147	5,168	2,145

자료: 통일부

1)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가) 경제교류협력보험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은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대북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에는 보험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라 계획액 38억 4,700만원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2024년도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3,847	-	3,847	-	-	3,847	-	-

자료: 통일부

나) 경협기반(무상)

‘경협기반(무상)’ 사업은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등 남북 당국 간 합의 또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경협기반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의 무상지원을 통해 남북의 경제적 격차와 통일비용을 줄이고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도 계획현액은 1,306억 9,400만원으로, 이 중 159억 2,1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계획현액 대비 12.2%임.

< 2024년도 경협기반(무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127,152	3,242	130,694	15,921	-	114,773	12.5	12.2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사업에 35억 3,100만원,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사업 90억 900만원, 경원선 철도 복원 사업에 2억 3,100만원,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개선 사업에 31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경협기반(무상)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남북공유하천공동이용	14,421	14,421	-	14,421	-	-	14,421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3,371	3,671	-	3,671	3,531	-	140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73,801	73,801	-	73,801	9,009	-	64,792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35,048	35,048	-	35,048	231	-	34,817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311	311	-	311	-	-	311
·남북관리구역통행체계 개선	200	200	3,242	3,442	3,150	-	292
합 계	**127,152**	**127,452**	**3,242**	**130,694**	**15,921**	**-**	**114,773**

자료: 통일부

□ 시행령 개정을 통한 업무 위탁비 집행 부적정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내역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정부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위탁사업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36억 7,100만원 중 35억 3,1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4,0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내역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3,371	3,671	-	3,671	3,531	-	140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371	3,671	-	3,671	3,531	-	140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해산[231]에 따라, 동 재단이 수행하던 사업[232] 중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사업을 남북협력지원협회에 위탁하였고, 이에 필요한 경비 3억원을 '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내역사업 내 민간위탁사업비를 증액(당초 33억 7,100만원 → 수정 36억 7,100만원)하여 집행하였음.

재단 해산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재산권 보호

231) 통일부는 2024년 3월 22일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각 호(아래 주석 참조)에 따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해산을 결정함.

23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감독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은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통일부는 2024년 3월 19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5항을 신설[233]하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공공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입장이나, 동 법률은 재단 업무의 위임·위탁·대행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단순히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지도·감독 등) ⑤ 통일부장관은 재단이 법 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후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5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업무의 위탁)에 근거하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234]에 위탁하였다고 설명함.

233)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상근(常勤)으로 두어야 하는 임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추진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통일부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3억원을 지원하였다는 것임.

< 계획변경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내역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협의변경 ('24.7.31.)	320	02	남북교류협력 민간위탁	+300	개성재단 해산 및 업무이관 관련 남북협력지원협회 남북협력기금 지원 * (3041-405)개성공단 기반조성 세부사업 세목 320-01(민간경상보조) : △300 감액하여 재원 마련

자료: 통일부

이와 같은 통일부의 설명은 모법(「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타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업무의 위탁)]에 근거하여 위탁하였다는 것이나, 국회 및 정부의 법제 기준에 따르면 권한의 위탁은 법률이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의 근거 법률(모법)에 명시적인 위탁 근거를 두어야 함.

234)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상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함

<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 기준 >

구분	국회(「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726	정부「법령입안심사기준」, p488
내용	권한의 위탁은 법률이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함.	행정권한을 위탁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위탁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동 재단의 업무 수행 범위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재단의 업무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 또한 해당 법률에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임.

통일부의 설명과 같이 시행령 개정 후 타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경우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해당 업무의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업무를 그 청산 이후에는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소극행정으로 인한 국가재정상 손해 발생 여부 조사 실시 필요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내역사업은 철도·도로 등 남북 당국 간 합의 또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 지원함으로써 남북 간 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738억 100만원 중 90억 900만원이 집행되었고, 647억 9,2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내역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73,801	73,801	-	73,801	9,009	-	64,792
- 정책연구비 (260-02)	100	100	-	100	-	-	100
- 해외경상이전 (340-01)	2,500	2,500	-	2,500	-	-	2,500
- 민간경상보조 (320-01)	71,201	61,671	-	61,671	-	-	61,671
- 배상금 (310-02)	-	9,530	-	9,530	9,009	-	521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없었던 배상금 세목(310-02)을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 내역사업에 신설하여 90억 900만원을 집행함.

이는 2022년 3월에 원고 A주식회사(이하 “원고”라고 함)가 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라고 함)을 상대로 ‘미지급한 자재·장비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1심)에서 피고가 패소(2024. 7. 18.)하여 원고에게 원금 38억 6,700

만원과 그 지연손해금 51억 4,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0억 900만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임.

< 배상금 지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배상액	비 고
①원금	3,867	
②지연손해금(～'24.12.19)	5,142	
- '08.9.28～'22.4.12	3,895	연 7.44%
- '22.4.13～'24.12.19	1,247	연 12%
합 계(①+②)	9,009	

* 법원 판결 : △'08.9.28.(대금지급 기한 익일) ～ '22.4.12.(피고 소장 송달 시점) 연 7.44%, △그 익일부터 연 12%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11월, 피고는 화물열차 개통 일정이 촉박하여 기존 사업자인 원고에게 '先 자재·장비 제공, 後 비용 지급'을 구두 약속하였고, 원고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북한에 38억 6,700만원에 상당하는 자재 및 장비 등을 제공하였음.

그러나 예산당국과의 대금지급 관련 협의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무산되어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자재 및 장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임.

< 배상금 지급 관련 주요 경과 >

1. 미지급금 관련 경과

o 경의선·동해선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 동시 착공('02.9월), 원고와 북측 구간 공사용 자재·장비 제공용역 계약 체결('02.10월)

* 원고가 자재·장비를 공급하고 북한이 시공

o '07.11.16. 남북총리회담에서 12.11.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시작 합의

- 후속회담으로 열린 '07.11.21. 철도협력분과위 제1차 실무접촉에서 문산-봉동간 화

물열차 운행을 위한 자재·장비 제공 목록 합의

o ’07.11월, 화물열차 개통 일정이 촉박하여 기존 사업자인 원고에 ‘先 자재·장비 제공, 後 비용 지급’을 구두 약속 下 사업추진

* 화물열차 개통 : ’07.10.4. 정상회담 합의 → 11.16. 총리회담 합의 → 11.21. 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합의 → 12.11. 화물열차 운행 시작

o ’08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철도·도로 연결 공사 중단

- ’07.11.1.~’08.8.15. 원고의 대북 자재·장비 제공에 대한 비용 38.7억원 미지급

o 예산당국과 대금지급 관련 협의를 지속 추진하였으나, 예산 확보 무산

2. 소송 경과

o 원고, 통일부가 미지급한 자재·장비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소 제기(’22.3월)

o 1심 선고(7.18.), 원고 청구 인용,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원금 약 38.7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 판결

* △원금 3,866,627,670원 △‘08.9.28.(대금지급 기한 익일) ~ ’22.4.12.(피고 소장 송달 시점) 연 7.44% △그 익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o 패소 판결 확정(’24.8.2.)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발생

자료: 통일부

1심 판결 후 피고는 항소를 포기하였는 바,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금 의무가 발생됨에 따라 조속히 대금 지급을 완료하여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실제로 2008년부터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지연손해금 51억 4,200만원은 원금의 1.3배에 달하는 규모이고, 특히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된 2022년 4월 13일 이후 대금지급 완료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2억 2,300만원에 달함.

이는 대금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의 지체, 특히 2016년 4월 이후 통일부와 예산당국과 간에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가 중단된 점이 지연손해금이 늘어난 주요 배경으로 보여짐.

< 예산당국과 통일부 간 예산 확보 관련 주요 협의 연혁 및 입장 >

○ 통일부는 '07.11월부터 원고가 先 투입한 자재·장비 대금 지급 문제를 '07.12월, '10.12월, '12.2월, '16.4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235]'에 상정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였으나, 협의 결과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원고 先투입 자재·장비 대금 지급 문제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음.

자료: 통일부

그렇다면 통일부와 예산당국간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수행으로 배상 규모가 늘어나 국가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236]

통일부는 배상금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

23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3. 제14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36) 현행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조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임.

따라서 통일부 및 예산당국의 소극행정 등으로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점은 없는지 여부 및 민간기업에 부당하게 소송수행 등의 부담을 지게 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 경협기반(융자)

‘경협기반(융자)’ 사업은 사업의 공공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남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선사업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남북한간 경제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교류협력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에는 계획액 990억 1,400만원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2024년도 경협기반(융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99,014	-	99,014	-	-	99,014	-	-

자료: 통일부

라)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은 해외 수출입 및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 위험도가 높고 일반 금융기관의 지원이 취약한 북측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소요자금을 대출함으로써 남북한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에는 경제교류협력 자금대출 신규 대출수요 미발생에 따라 계획액 90억원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2024년도 경제교류협력대출(융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9,000	-	9,000	-	-	9,000	-	-

자료: 통일부

마) DMZ 평화적 이용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은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실현을 위해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남북공동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임.

2024년도 계획현액은 94억 6,600만원임. 이 중 17억 6,700만원이 집행되고 76억 9,9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계획현액 대비 18.7%임.

< 2024년도 DMZ 평화적 이용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9,408	58	9,466	1,767	-	7,699	18.8	18.7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계획현액 11억 1,900만원 중 5억 3,200만원은 집행하고, 5억 8,700만원은 불용하였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계획현액 59억 5,200만원 전액 불용하였음.

판문점 견학 통합 운영 사업의 경우 계획현액 21억 5,500만원 중 11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6,300만원은 불용하였으며, 남북철도·도로 출입 시설 역사관 운영 사업은 계획현액 2억 4,000만원 중 4,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7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4년도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의 내역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	1,061	1,061	58	1,119	532	-	587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5,952	5,952	-	5,952	-	-	5,952
·판문점 견학 통합 운영	2,155	2,155	-	2,155	1,192	-	963
·남북철도·도로 출입 시설 역사관 운영	240	240	-	240	43	-	197
합 계	**9,408**	**9,408**	**58**	**9,466**	**1,767**	**-**	**7,699**

자료: 통일부

□ 관행에 따른 예산 과다 편성 후 불용 부적정

「DMZ 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은 DMZ 통합시스템 운영·관리 및 콘텐츠 현행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통일부는 2024년 「DMZ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획액 7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4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8,700만원은 불용하였음.

<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 내역사업 중 DMZ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관리용역비(210-15)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	1,061	1,061	58	1,119	532	-	587
(DMZ통합시스템 운영)	761	761	-	761	474	-	287
-관리용역비(210-15)	761	761	-	761	474	-	287

자료: 통일부

「2024년 DMZ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낙찰자 선정과정을 보면, 통일부는 2023년 10월 5일 제안요청서 작성하여 같은 해 10월 17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고, 같은 해 12월 14일 낙찰자를 선정하였음.

< 「2024년 DMZ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약체결 경과 >

구분	제안 요청서 작성	조달청 계약의뢰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조달청 입찰공고 (유찰)	조달청 입찰공고 (수의)	낙찰자 선정
일자	'23.10.5.	'23.10.17.	'23.10.17.	'23.11. 1.	'23.12. 8.	'23.12.14.

자료: 통일부

그런데 통일부가 2023년 10월 5일 작성한 제안요청서 상 「2024년 DMZ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소요예산이 4억 8,300만원에 불과함.

< 「2024년 DMZ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산출내역서 >

(단위 : 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산출내역서		금 액
유지관리비	개발SW 유지보수비	50
	상용SW 유지보수비	18
	SW 운영(운영기획·사용자지원 등)	415
합 계		483

자료: 통일부

즉, 통일부는 「DMZ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소요경비가 4억 8,3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어도 2023년 10월 5일 이전에 인지하였음에도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237]에서 이를 감액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소요액을 과다편성(7억 6,100만원)하여, 2억 8,700만원이 불용되는 결과를 초래함.

< 2024년 예산안 외통위 심사 경과 >

구분	외통위 회부일	외통위 상정일	외통위 의결일
일자	2023. 9. 4.	2023.11. 9.	2023. 11.15.

237)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예산심사 경과

구분	상정일	소위심사일	의결일
외교통일위원회	2023.11. 9	2023.11.15	2023.11.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1. 3	2023.11.24	미의결

이에 대해 통일부는 다음 연도 유지관리 사업 발주 준비 시기인 2023년 9월 말에 2024년 DMZ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금액(4억 8,300만원)을 산출하였으나, 2024년 예산편성 절차가 2023년 상반기 중에 진행됨에 따라 전년과 같은 금액(7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 2023년도 및 2024년도 세부 산출내역 비교 >

(단위: 백만원)

'23년 계획		'24년 계획	
계획	산출내역	계획	산출내역
761	○ 관리용역비(210-15) : 761 가. DMZ 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 (761) ・시스템 유지관리비 : 761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SW 운영비 산정)	761	○ 관리용역비(210-15) : 761 가. DMZ 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 (761) ・시스템 유지관리비 : 761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SW 운영비 산정)

하지만 이상과 같은 통일부의 설명은 예산(안) 및 계획(안) 편성 과정에서 실제 사업 수요 및 단가 등을 정확히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 및 계획(안)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통일부가 이러한 원칙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과거 관행에 따라 형식적으로 예산(안) 및 계획(안)을 편성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임.

예산 및 계획 편성 단계에서의 과다 편성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바, 향후 통일부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국회 심의 시 변화된 상황의 적시 반영 필요

판문점견학[238] 통합운영 내역사업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비무장화가 이루어진 판문점을 더 많은 국민들이 견학·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통일부는 2024년 계획액 21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11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6,300만원은 불용하였음.

< 판문점견학 통합운영 내역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판문점견학 통합 운영	2,155	2,155	-	2,155	1,192	-	963

자료: 통일부

동 내역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 94.2%, 2023년 64.0% 및 2024년 55.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최근 3년 간 판문점견학 통합운영 내역사업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22	2,056	2,056	234	2,290	1,936	94.2	-	354
2023	2,079	2,079	-	2,079	1,331	64.0	-	748
2024	2,155	2,155	-	2,155	1,192	55.3	-	963

자료: 통일부

238) 현재 판문점견학은 주 4일(화·수·금·토), 1일 총3회 실시되고 있는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견학 1회(40명 규모)와 국빈, 외교사절, 국내외 차관급 이상의 귀빈과 정부기관 및 통일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견학 2회로 나뉘어 운영됨.

이는 견학인원의 감소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22년 및 2023년에는 3,700여 명에 이르던 견학인원이 2024년에는 한·아프리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시에라리온 대통령 일행 41명이 유일한 견학인원임.

< 판문점 견학 일원화 이후 견학 인원 >

(단위: 회, 명)

연도	일반견학 횟수	인원	특별견학 횟수	인원	총횟수	총인원
2020년	38	1,285	6	198	44	1,483
2021년	89	1,605	27	380	116	1,985
2022년	73	2,329	64	1,320	137	3,649
2023년	83	2,835	44	938	127	3,773
2024년	-	-	1	41	1	41

※ 2023년 7월 18일 판문점에서 미군병사가 월북한 이후 판문점 견학 중단(2025.5월 중순, 특별견학 재개 예정)
자료: 통일부 (2020.11.이후 2025.5.7.까지)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2023년 7월 18일에 미군 병사 무단월북 사건 직후 판문점 견학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함.

그런데 2023년 월별 견학 실적을 보면, 미군 병사의 무단 월북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부터 견학인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2023년 8월부터는 일반견학 실적이 전무하였고, 통일부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시점(2023년 9월 1일)에는 이미 견학 중단 상황이 최소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었으며, 그 재개 시점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었음.

<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월별 견학 현황 >

(단위: 회, 명)

구 분	일반견학		특별견학		합 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23년 1월	13	416	2	14	15	430
2월	14	489	4	53	18	542
3월	11	376	3	45	14	421
4월	14	479	10	235	24	714
5월	11	385	9	238	20	623
6월	14	488	11	243	25	731
7월	6	202	4	91	10	293
8월	-	-	-	-	-	-
9월	-	-	-	-	-	-
10월	-	-	-	-	-	-
11월	-	-	1	19	1	19
12월	-	-	-	-	-	-
2024년 6월	-	-	1	41	1	41
합계	83	2,835	45	979	128	3,814

자료: 통일부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이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오히려 최근 5년 내 최고 금액인 21억 5,500만원을 2024년 계획액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견학 재개 여부 및 시기에 대한 현실적인 예측 없이 과거의 관행에 따라 계획액을 편성하였음을 보여줌.

< 최근 5년간 판문점견학 통합운영 내역사업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액	1,655	1,927	2,056	2,079	2,155

자료: 통일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 9월 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되고 11월 9일에 상정되는 등 국회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 중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맞춰 국회 심의 단계에서 계획액의 감액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규모 불용액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음.

따라서 향후 통일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 여건을 충실히 반영함과 함께, 국회의 심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소요경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개성공단 조성

‘개성공단 조성’ 단위사업은 ①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가동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건립·운영, ② 현장에서 공단을 관리·운영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비 지원, ③ 개성공단 기업·근로자 지원 등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및 개성공단 기반조성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4년도 개성공단 조성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계 획
		계 획		결 산	
		당 초	변 경		
□ 개성공단 조성	7,140	13,773	13,473	5,168	4,964
○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2,027	6,626	6,626	-	2,819
○ 개성공단 기반조성	5,113	7,147	6,847	5,168	2,145

자료: 통일부

가)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사업은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통해 기반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기업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66억 2,600만원 전액 불용하였음.

< 2024년도 개성공단 운영대출(융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6,626	-	6,626	-	-	6,626	-	-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 사업은 계획현액 17억 8,100만원 전액 불용하였으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상황 지속으로 공단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계획현액 48억 4,500만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2024년도 개성공단 운영대출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개성공업지구지원 재단 지원(유상)	1,781	-	1,781	-	-	1,781
공단 기반시설 지원(융자)	4,845	-	4,845	-	-	4,845
합 계	6,626	-	6,626	-	-	6,626

자료: 통일부

나) 개성공단 기반조성

‘개성공단 기반조성’ 사업은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가동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을 건립·운영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피해 기업 경영정상화 및 근로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68억 4,700만원 중 51억 6,8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75.5%임.

< 2024년도 개성공단 기반조성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대비 집행률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
7,147	-	6,847	5,168	-	1,679	72.3	75.5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에 51억 6,8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상황 지속으로 인해 공단 기반시설 건설 지원 사업은 전액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개성공단 기반조성 사업 내역사업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지원(무상)	5,168	-	5,168	5,168	-	-
·공단 기반시설 건설 지원	1,979	-	1,679	-	-	1,679
합 계	7,147	-	6,847	5,168	-	1,679

자료: 통일부

마.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프로그램은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 및 사업관리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수출입은행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액 22억 3,900만원 중 21억 7,8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7.3%임.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계 획
		계 획	결 산	
1. 남북협력기금 운영비	2,256	2,239	2,178	2,688
가. 기금관리비	42	65	38	65
나. 위탁수수료	2,182	2,101	2,101	2,550
다. 사업관리비	31	73	39	73

자료: 통일부

내역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기금관리비가 계획액 6,500만원 대비 58.5%인 3,800만원 집행되었고, 위탁수수료는 21억 100만원 전액 집행, 사업관리비는 계획액 7,300만원의 53.4%인 3,900만원이 집행되었음.

바. 기금간 거래

남북협력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함) 예수원금 및 예수이자 상환 현황을 보면, 2024년도 남북협력기금은 공자기금 예수원금 5,200억원, 예수이자 512억 1,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712억 1,100만원을 상환하였는데, 공자기금 예수원금 5,200억원은 공자기금을 차입하여 상환하였고, 예수이자 512억 1,100만원은 일반회계전입금(정부출연금)으로 상환하였음.

< 2024년도 기금간 거래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계 획
		계획	결산	
1. 기금간 거래	474,873	596,209	571,211	548,737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원금상환	430,000	520,000	520,000	455,400
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	44,873	76,209	51,211	93,337

자료: 통일부

공자기금 예수금은 1999년부터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임.

< 경수로사업 추진경과 및 청산현황 >

□ 추진경과

o ’94.10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서 체결

- 1,000MWe급 경수로 2기(46억$) 제공 등

o ’95.12 : KEDO-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 함경남도 신포에 경수로 2기 건설 계획

o ’97. 8 : 부지정지공사 착공식(협상단계→시행단계 진입)

o ’02.10 : 북한의 핵개발(고농축 우라늄 이용) 의혹 제기

- 경수로 사업 속도조절 결정(’03. 2)→ 사업중단(suspension) 결정(’03.11)

o '06. 5 : KEDO집행이사회, 사업종료 공식 결의

※ 사업공정률 : 34.5% ('03.11), 공사비 투입액 : 15.75억달러(한국 11.46억달러, 1.37조)

□ 청산현황

o KEDO-한전간 사업종결협약(Termination Agreement '06.12) 체결

- KEDO 소유의 북한 외부 기자재를 한전에 양도하고 한전은 청산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

o 한전의 청산 결과

- KEDO의 對 한전 미지급금(원자로 터빈 등 주기기 제작 투입 비용) : 약 6,100만달러
- 한전 하청업체 클레임 처리 : 약 2,600만달러
- 경수로 기자재 : 보관비용 약 6,440만달러, 수익 약 7,900만달러

o 남은 기자재는 △한수원 예비품, △교육·연구·전시용, △해체처분 등의 방법으로 처리

※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북미 제네바 합의('94.10)」 이후 한·미·일 3국은 '95.3.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합의

- 기능 및 역할: 1,000WMe급 원전 2기 대북 제공 및 재원 마련
  1호기 완성까지 대체에너지 공급 및 기타 제네바합의 이행 조치 수행
- KEDO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이사회'와 실무기구인 '사무국'으로 구성
  · 집행이사회: 한국(의장국), 미국, 일본, EU('97.9. 합류)
  · 일반회원국: 뉴질랜드, 캐나다, 폴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체코, 아르헨티나, 칠레, 우즈베키스탄 등 9개국

자료: 통일부

당초 정부는 대북 경수로사업의 사업실시기관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라 함)와의 차관공여협정(1999. 7. 2.)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경수로 계정을 설정하고, 국채발행을 통해 조성된 공공자금관리금 예수금을 차입하여 KEDO에 공사비 총 1조 3,744억원을 지출하였음.

그러나, 2006년 경수로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북한-KEDO 간 채권채무 관계의 청산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협력기금은 공자기금에 대해 매년 기일이 도래하는 예수금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통일부는 경수로사업 이후 2011년도까지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공사비 원금(1조 3,744억원)과 이자를 공자기금을 재차입[239]하는 방식으로 상환하였음.

이 과정에서 발생 이자가 원금이 되어[240] 공자기금 차입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일부는 2012년부터 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중 매년 기일이 도래하는 예수원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재차입하여 상환하고, 매년 발생하는 공자기금예수금 이자는 일반회계전입금(정부출연금)을 통해 상환하고 있으며, 공자기금 차입금 규모는 2조 2,995[241]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음.

<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차입 및 상환 현황('99~24년) >

(단위: 억원)

연 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차 입(❶)		1,498	2,549	3,100	5,050	8,230	3,100	4,100	9,400	5,216	1,475	810	8,750	1,044	4,000
상환	원금(❷)	-	-	-	1,498	2,549	3,100	2,820	7,730	5,330	500	100	7,700	-	4,000
	이자	-	190	391	626	701	795	838	967	984	963	1,002	1,048	1,051	1,126
	소계	-	190	391	2,124	3,250	3,895	3,658	8,697	6,314	1,463	1,102	8,748	1,051	5,126
잔 액(❶-❷)		1,498	4,047	7,147	10,699	16,380	16,380	17,660	19,330	19,216	20,191	20,901	21,951	22,995	22,995

연 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합 계
차 입(❶)		5,300	2,286	905	2,070	7,650	2,784	2,030	5,486	2,370	1,055	4,300	5,200	99,758
상환	원금(❷)	5,300	2,286	905	2,070	7,650	2,784	2,030	5,486	2,370	1,055	4,300	5,200	76,763
	이자	1,054	932	931	912	820	636	580	570	461	431	449	512	18,971
	소계	6,354	3,218	1,836	2,982	8,470	3,420	2,610	6,056	2,831	1,486	4,749	5,712	95,734
잔 액(❶-❷)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22,995

자료: 통일부

239)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을 갚기 위해 다시 국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함.

240) 예를 들면, 1999년 12월 8일 예수금의 경우 원금 1,498억원과, 이자 626억원(이자율 8.66%) 총 2,124억원을 만기일인 2002년 12년 6일 상환하기 위해 공자기금에서 2,124억원을 다시 차입함에 따라 이자 626억원이 원금이 됨.

241) 2011년 이후 잔액 2조 2,995억원은 대출원금 1조 3,744억원과 원금화된 이자 9,251억원의 합임.

사. 여유자금 운용

‘여유자금 운용’ 프로그램은 남북협력기금 조성액 중 사업비·기금관리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자산운용 수익을 얻는 사업임.

2024년도 계획액 1,134억 3,100만원은 통화금융기관예치분 48억 5,500만원과 비통화금융기관예치분 1,085억 7,600만원의 합으로, 이 중 통화금융기관예치 집행액은 계획액 대비 1.9%인 9,3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집행액은 계획액 대비 175.0%인 1,899억 9,700만원임.

< 2024년도 여유자금 운용 프로그램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결 산	2024년			2025년 계 획
		계 획		결 산	
		당 초	변 경		
여유자금 운용	163,361	113,431	113,431	190,091	94,334
통화금융기관예치	140	4,855	4,855	93	4,855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63,221	108,576	108,576	189,997	89,479

자료: 통일부

Ⅳ.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1. 재정상태 분석

<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금액(C=A-B)	비율(C/B)
자산합계(a)	3,776,732	3,568,824	207,908	5.8
1. 유동자산	396,959	239,252	157,707	65.9
2. 투자자산	2,853,394	2,808,732	44,662	1.6
3. 일반유형자산	415,236	405,263	9,973	2.5
4. 무형자산	12,497	16,014	△3,517	△22.0
5. 기타비유동자산	98,646	99,562	△916	△0.9
부채합계(b)	2,318,936	2,306,947	11,989	0.5
1. 유동부채	472,939	527,159	△54,220	△10.3
2. 장기차입부채	1,844,100	1,779,500	64,600	3.6
3. 장기충당부채	-	-	-	-
4. 기타비유동부채	1,897	288	1,609	558.7
순자산(a-b)	1,457,796	1,261,877	195,919	15.5

자료: 통일부

< 회계별 재정상태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자산	355,098	3,421,633	3,776,732
부채	7,203	2,311,733	2,318,936
순자산	347,895	1,109,901	1,457,796

자료: 통일부

가. 자 산

자산은 3조 7,767억원으로 일반회계 3,551억원, 남북협력기금 3조 4,21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5.8%인 2,079억원이 증가하였음.

세부적으로 상각 등으로 인해 무형자산이 35억원 감소하고 장기미수채권 감소 등으로 기타비유동자산이 9억원 감소하였으나 남북협력기금의 단기자산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유동자산이 1,577억원, 환율 상승에 따른 장기대여금 증가 등으로 인해 투자자산이 447억원, 토지 취득 및 재평가 등으로 일반유형자산이 100억원 증가 하였음.

일반회계의 자산은 3,551억원으로 토지, 건물 등 일반유형자산(3,415억원)이 전체 자산의 96.2%를 차지함.

< 일반회계 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성내역	금 액	비 고
1. 유동자산	301	미수채권, 단기임차보증금 등
2. 일반유형자산	341,536	
o 토지	146,914	통일교육원, 남북회담본부 청사 부지 등
o 건물	156,86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건물 등
o 구축물	16,677	동해선 공동야드 정거장시설 등
o 기계장치 등	14,527	사무용 기계 및 비품 등
o 건설중인유형자산	6,554	통일정보자료센터 관련 건설중인 건물 및 북한인권센터 관련 건설중인 토지, 건물
3. 무형자산	12,497	개발소프트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
4. 기타비유동자산	764	장기임차보증금 등
합 계	355,098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자산은 3조 4,216억원으로 투자자산(2조 8,534억원)이 전체 자산의 83.4%를 차지함.

< 남북협력기금 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성내역	금 액	비 고
1. 유동자산	396,658	
o 현금및현금성자산	93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등
o 단기투자증권	194,332	지분증권
o 미수채권	32,771	미수이자수익, 미수보험금
o 단기대여금	169,462	단기융자금
2. 투자자산	2,853,394	장기지분증권, 장기융자금
3. 일반유형자산	73,700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토지, 건물 등
4. 기타비유동자산	97,882	장기미수대여금이자수익
합 계	3,421,633	

자료: 통일부

나. 부 채

부채는 2조 3,189억원으로 일반회계 72억원, 남북협력기금 2조 3,117억원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0.5%인 120억원이 증가함.

일반회계의 부채는 72억원으로 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취득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관련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됨.

< 일반회계 부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성내역	금 액	비 고
1. 유동부채	5,306	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관련 미지급금('25년 지급 예정),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2. 기타비유동부채	1,897	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관련 미지급금('26년 이후 지급 예정)
합 계	7,203	-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부채는 2조 3,117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로 구성됨.

< 남북협력기금 부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성내역	금 액	비 고
1. 유동부채	467,633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25년 만기도래), 미지급이자
2. 장기차입부채	1,844,100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26년 이후 만기도래)
합 계	2,311,733	-

자료: 통일부

다. 순자산

순자산은 1조 4,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5%인 1,959억원 증가하였음.

2. 재정운영 분석

< 재정운영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금액(C=A-B)	비율(C/B)
1. 프로그램순원가	△5,702	174,511	△180,213	△103.3
2. 관리운영비	71,032	72,796	△1,764	△2.4
3. 비배분비용	57,111	46,125	10,986	23.8
4. 비배분수익	7,569	5,666	1,903	33.6
5. 재정운영순원가 (1+2+3-4)	114,871	287,766	△172,895	△60.1
6. 비교환수익 등	900	-	900	-
7. 재정운영결과(5-6)	113,971	287,766	△173,795	△60.4

자료: 통일부

재정운영결과는 일반회계의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와 관리운영비로 구성되고,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주로 외화자산 관련 외화환산이익 등으로 구성됨.

< 회계별 재정운영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남북협력기금	내부거래	통일부
1. 프로그램순원가	141,279	△146,981	-	△5,702
2. 관리운영비	70,994	38	-	71,032
3. 비배분비용	4	57,107	-	57,111
4. 비배분수익	1,685	5,884	-	7,569
5. 재정운영순원가	210,593	△95,722	-	114,871
6. 비교환수익 등	-	46,242	△45,342	900
7. 재정운영결과	210,593	△141,964	45,342	113,971

자료: 통일부

가. 프로그램순원가

프로그램순원가는 국가의 정책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총원가(사업비)에서 프로그램관련수익을 차감한 금액임.

프로그램순원가는 1,4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5%인 341억원이 감소하였음.

프로그램별로 북한정세분석, 인도적 문제해결, 통일교육 등이 증가하고, 통일정책, 남북사회문화교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남북회담 등은 프로그램순원가가 감소하였음.

< 프로그램순원가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금액(C=A-B)	비율(C/B)
1. 프로그램순원가	△5,702	174,511	△180,213	△103.3
o 통일정책	19,368	20,534	△1,165	△5.7
o 북한정세분석	9,097	6,395	2,702	42.3
o 남북사회문화교류	3,667	3,745	△78	△2.1
o 인도적 문제해결	10,388	7,338	3,050	41.6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74,734	75,867	△1,133	△1.5
o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150,798	△1,623	△149,175	9,191.3
o 남북회담	3,213	38,930	△35,717	△91.7
o 통일교육	24,627	23,325	1,302	5.6

자료: 통일부

나.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기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경비를 의미함.

관리운영비는 7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인 1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인건비 감소에 기인함.

다.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직·간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원가로 분류하기 어려운 비용을 의미함.

비배분비용은 571억원으로 전년 대비 23.8%인 1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이자비용 증가에 기인함.

라.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프로그램수익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수익을 의미함.

비배분수익은 76억원으로 전년 대비 33.6%인 1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자산처분이익 증가에 기인함.

3. 순자산변동 분석

< 순자산변동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금액(C=A-B)	비율(C/B)
1. 기초순자산	1,261,877	1,285,482	△23,605	△1.8
2. 재정운영결과	113,971	287,766	△173,795	△60.4
3.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03,813	263,709	40,104	15.2
4. 조정항목	6,078	451	5,627	1,247.7
5. 기말순자산(1-2+3+4)	1,457,796	1,261,877	195,919	15.5

자료: 통일부

가. 기초순자산

기초순자산은 전기 말 순자산 금액으로 1조 2,619억원임.

나.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결과는 1,139억원으로 일반회계 2,106억원 및 남북협력기금 △966억원(내부거래제거후)으로 구성되며, 재정운영결과로 인해 순자산은 감소하였음.

다.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3,038억원으로 재원의 조달 3,072억원 및 재원의 이전 34억원으로 구성되며, 재원의 조달로 순자산이 증가하고 재원의 이전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였음.

재원의 조달은 국고수입 및 인사혁신처 등이 통일부를 대신하여 부담한 공무원연금 국가부담금 등이며, 재원의 이전은 국고이전지출 등임.

라. 조정항목

조정항목은 61억원으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및 자산재평가이익 변동 등으로 순자산이 증가함.

Ⅴ.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조치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시 통일부는 13건의 주의, 9건의 시정과 17건의 제도개선 등 총 36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음.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조치 결과 현황 >

조치 결과	구분			소계
	주의	시정	제도개선	
조치 완료	8	8	13	29
조치 중	2	1	4	7
소 계	10	9	17	36

* 시정요구유형의 중복(시정·주의 : 3건)은 시정에 반영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전문위원 김사우

I.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개요

1. 세입 결산

2024년도 세입예산액 500만원 중 1,9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700만원이 수납(예산액 대비 수납률 140.0%)되었음.

< 2024년도 세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세 입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
5	19	7	-	12	2	14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4년도 세입예산의 주요 수납 내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조직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운영비, 사업비)의 이자수입인 기타재산이자수입 500만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국가채권 세입 등의 기타경상이전수입 200만원 등임.

< 2024년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 입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구 분	세입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일반회계	5	19	7	-	12	2
11관 재산수입	3	5	5	-	-	2
54항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	5	5	-	-	2
546목 기타재산이자수입	3	5	5	-	-	2
12관 경상이전수입	2	14	2	-	12	-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2	14	2	-	12	-
596목 기타경상이전수입	2	14	2	-	12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세출 결산

가. 총괄 내역

202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349억 7,400만원이고, 이 중 97.2%인 339억 9,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9억 7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세출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34,974	-	34,974	33,996	978	97.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4년도 세출예산 프로그램은 '통일정책자문·건의 성과제고(1000)'와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1100)'로 구성되어 있음.

'통일정책자문·건의 성과제고 프로그램(1000)'은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 조성(1031)', 정보화사업(1033)' 등 3개의 단위사업과 '자문회의 운영', 정보화사업 추진'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 프로그램(1100)'은 '지역협의회 활동지원(1131)', '사무처 인건비(1101)' 등 4개의 단위사업과 '자문위원 역량강화', '지역협의회 운영',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등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지역협의회 활동지원(1131) 사업에 203억 4,900만원이 집행되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 집행액(339억 9,600만원)의 59.9%를 차지하고 있음.

세부사업별로 보면, 자문회의 운영(1031-300) 사업 44억 8,800만원, 자문위원 역량강화(1131-300) 사업 25억 2,900만원, 지역협의회 운영(1131-301) 사업 121억 4,100만원, 지역협의회 활동추진(1131-302) 사업으로 56억 7,9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그 밖에 사무처 공무원 인건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91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합 계	34,974	-	34,974	33,996	978	97.2%
통일정책자문·건의 성과제고(1000)	5,041	-	5,041	4,952	89	98.2%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1031)	4,530	-	4,530	4,488	42	99.1%
자문회의 운영(300)	4,530	-	4,530	4,488	42	99.1%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1082)	37	-	37	37	0	100.0%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304)	37	-	37	37	0	100.0%
정보화사업(1033)	474	-	474	427	47	90.1%
정보화사업 추진(500)	474	-	474	427	47	90.1%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1100)	29,933	-	29,933	29,044	889	97.0%
사무처 인건비(1101)	7,082	-	7,082	6,463	619	91.3%
인건비(100)	7,082	-	7,082	6,463	619	91.3%
기본경비(1111)	1,905	-	1,905	1,858	47	97.5%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200)	377	-	377	347	30	92.0%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총액인건비비대상 기본경비(250)	1,346	-	1,346	1,329	17	98.7%
전산운영경비(251)	182	-	182	182	0	100.0%
지역협의회 활동지원(1131)	**20,552**	**-**	**20,552**	**20,349**	203	99.0%
자문위원 역량강화(300)	2,589	-	2,589	2,529	60	97.7%
지역협의회 운영(301)	12,265	-	12,265	12,141	124	99.0%
지역협의회 활동추진(302)	5,698	-	5,698	5,679	19	99.7%
시설관리(1132)	**394**	**-**	**394**	**374**	20	94.9%
청사관리 운영(303)	394	-	394	374	20	94.9%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최근 세출결산의 집행률 추이를 보면, 2020년 90.4%의 집행률에서 2021년 95.0%, 2022년도 96.9%로 증가했다가, 2023년에는 96.7%로 낮아졌지만, 2024년에는 97.2%로 회복했음.

< 최근 5년 세출 결산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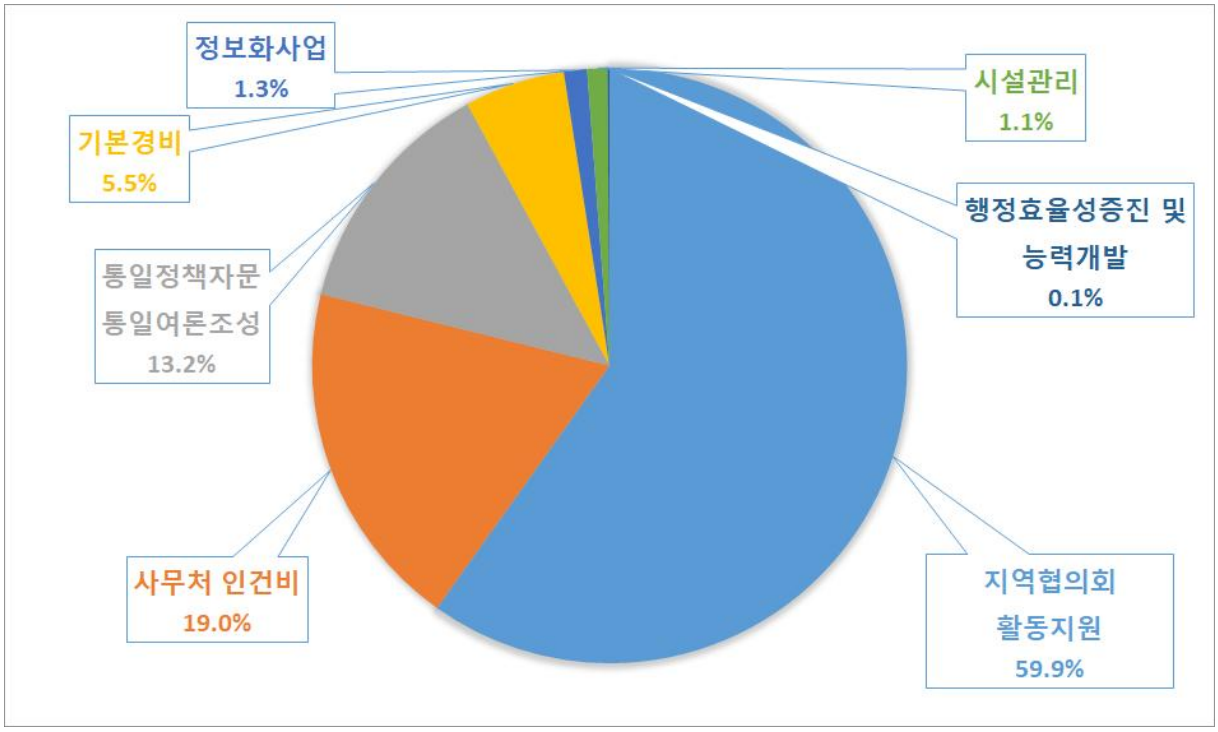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확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이용] (전용)	<세목조정> {내역변경}					
2020년	32,476	760	(±1,160)	<±546> {0}	32,819	29,683	-	3,136	90.4
2021년	32,918	-	(±134)	<±165> {±2}	32,918	31,262	-	1,656	95.0
2022년	34,025	-	(±76)	<±150> {±0}	33,728	32,686	-	1,042	96.9
2023년	34,033	-	(±120)	<±121> {±29}	34,033	32,907	-	1,126	96.7
2024년	34,974	-	(±6)	<±247> {±0}	34,974	33,996	-	978	97.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7개 단위사업의 집행액 비중을 보면,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59.9%(203억 4,900만원), 사무처 인건비 19%(64억 6,300만원),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사업 13.2%(44억 8,800만원), 기본경비 5.5%(18억 5,800만원), 정보화사업 1.3%(4억 2,700만원), 시설관리 1.1%(3억 7,400만원),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0.1%(3,700만원)임.

< 2024년도 단위사업별 집행액 비중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나. 이체·이용 및 이월 내역

2024년도 세출결산의 이체·이용 및 이월액은 없음.

다. 전용 내역

2024년도 세출결산의 전용액은 2023년도 1억 2,000만원 대비 1억 1,400만원 감소한 600만원임.

구체적인 내역으로 총액인건비 직급상향분 보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에서 ‘인건비’로 600만원을 전용하였음.

< 2024년도 세출예산 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1111-200)	210-05	6	인건비 (1101-100)	110-01	총액인건비제 직급상향분 보수 부족분 충당
계		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3. 2024 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 주요 검토내용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242]」을 마련하여 예산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위원 구성 시 위원 수를 과소(기준: 7인 이상 →실제 운영: 5인 이상)하게 운영하고 있고, 외부 위원 선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심의사항도 통일부 등 다른 중앙관서와는 달리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예산 전용 시 예산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예산집행과 관련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예산심의회가 재정집행 관련 내부통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향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내부통제 제도가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시성이 있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22년부터 사업수행방식을 보조금 교부에 의한 지역조직 수행방식(민간경상보조비 교부방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접수행 방식(위탁사업비 등 직접집행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

24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고,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예산심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 왔으나, 직접수행방식으로 전환된 사업의 실적이 감소하였는 바, 사업수행방식을 전환한 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별로 그 전환이 해당사업의 추진체계 및 양적·질적 성과 등에 미친 영향 분석을 실시하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해당 사업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자문회의 운영 세부사업 중 국내·해외 지역회의 내역사업(28억 6,4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의 과소편성 및 과다집행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바,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과거 집행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반복적인 예산 과소편성 및 과다집행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4) 자문회의 운영 세부사업 중 국내·해외 지역회의 내역사업(28억 6,4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해외지역회의 현장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물품 구입경비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는 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자문회의 운영 세부사업 중 간부위원 활동지원 내역사업(2억 4,4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간부 자문위원의 활동경비가 직책수행경비(250-02)와 기타보전금(310-04)으로 나누어 집행되고 있는 바,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 및 집행할 필요가 있음.

(6) 자문위원 역량강화 세부사업 중 평화통일자료 지원 내역사업(3억 8,6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영상자료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

비목(210-01)과 일반용역비 비목(210-14)으로 혼용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영상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일한 성격의 경비가 혼용 집행되지 아니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을 정비하여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Ⅱ.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별 검토

1. 세입

2024년도 세입예산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1,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2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과 동일함.

< 2024년도 세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 입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예산액 대비 수납율
합 계	5	19	7	2	140.0
기타재산이자수입	3	5	5	2	166.7
기타경상이전수입	2	14	2	0	10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4년도 징수결정액 1,900만원의 세부 내역은 사무처 및 국고보조금(운영비, 사업비) 통장 이자 500만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200만원, 과년도 소송비용액 미상환금 1,200만원임.

최근 5년간 연도별 세입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최근 5년 세입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 입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 차액	예산액 대비 수납율
2020년	6	4	4	△2	66.7
2021년	6	27	15	9	250.0
2022년	5	24	12	7	240.0
2023년	5	32	20	15	400.0
2024년	5	19	7	2	14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최근 5년 세입발생 현황 >

(단위: 백만원)

연 도	과 목	금 액	세 부 내 역
2020년	기타재산수입	2	o 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 통장 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2	o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
	계	**4**	
2021년	기타재산수입	3	o 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 통장 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12	o 과년도 국고보조금 및 과오납 반납금, 퇴직급여 환급금
	기타잡수입	0.02	o 퇴직자 보유 공적항공마일리지 반납
	기타고정자산매각	0.2	o 배전반용 변압기 및 진공차단기 매각대금
	계	**15**	
2022년	기타재산이자수입	2	o 사무처 및 국조보조금 통장 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10	o 과년도 국고보조금 및 과오납 반납금
	계	**12**	
2023년	기타재산이자수입	2	o 사무처 및 국조보조금 통장 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18	o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 및 과오납 반납금
	계	**20**	
2024년	기타재산이자수입	5	o 사무처 및 국조보조금 통장 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2	o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 및 과오납 반납금
	계	**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세출(총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내부통제기능 미흡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243]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 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는 등 재정집행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2024년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예산집행심의회를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도록 하면서,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사항으로는 당해 중앙관서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기준 등[244]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

---

243)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244) 이외에도 「2024년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사항으로 ① 장단기 집행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④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⑤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⑥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⑦ 소속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⑧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245]」을 마련하여 예산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동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원 수를 과소(기준: 7인 이상→실제 운영: 5인 이상)하게 운영하였었고, 외부 위원 선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심의사항도 통일부 등 다른 중앙관서와는 달리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였었음(2024년 12월 31일 기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비교(2024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통일부
규정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위원구성	위원장 1인과 5인의 위원 (전원 사무처 소속)	위원장 1인과 7인 이상의 위원(외부전문가 2인 이상 포함)
집행관련 심의사항	1.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의 주요 방침 2. 사업계획(계약, 설계 등을 포함한다)의 중대한 변경 3. 예산 전용, 내역변경 등 중요한 예산변경 4. 예산 집행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 5. 그 밖에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자체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산의 이용, 하나의 사업에 5억원 이상 전용으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예산변동 사항 4.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사항, ⑨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보조금 비리 신고포상금 포함),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⑩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⑪ 세입징수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⑫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장기 미집행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취소 또는 보조금 반납 여부에 관한 사항 ⑬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나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4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고,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예산심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통일부
		5.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7.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 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10.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예산심의회 회의 개최실적 측면을 살펴보면, 예산 전용 시 예산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예산집행과 관련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예산심의회가 재정집행 관련 내부통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 2024년 예산심의회 회의 개최 실적 >

구분	일시	안건	결과(주요 내용)
예산 심의	2024년 5.17(금) 10:00	2025년 예산 요구안 적정성 (지출재구조화 및 재투자, 신규·증액 요구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	o 심의결과: 2025년도 민주평통 예산안 344억 편성 o 심의결과 상세(단위 : 백만원) - (격년사업 증·감액) 해외 출범회의 △1,543,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 +61, 국내출범회의 +822, 자문위원 구성 +304 - (지출 재구조화) 평화통일 자료지원 △40, 해외 평화통일포럼 △150, 국내 정기회의 △31, 해외 특화사업 △125, 청소년 평화통일 공감사업 △393 - (증액요구 사업 순위) 국내 통일특화사업 2,800, 국내 출범회의 595, 간부위원 활동지원 655,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216
집행 심의	개최실적 없음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을 개정('25.6.23.)[246]하여 예산심의회에 외부위원을

24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훈령 제316호, 2025. 6. 23., 일부개정) **제2조(설치와 구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문건의국장
2. 위원지원국장
3. 운영지원담당관
4. 자문건의과장
5. 사업총괄과장
④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회 구성 시에는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명(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기사업계획 수립 방향
2. 단년도 예산 편성 방향
3. 사업별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과 사업 구조조정
4. 그 밖에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의 주요 방침

포함하고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완료하였다고 설명함.

향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예산심의회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내부통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국가재정법령 등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제도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화하여야 할 것임.

---

2. 사업계획(계약, 설계 등을 포함한다)의 중대한 변경
3. 예산 이월・이용・전용 등 중요한 예산변경
4. 예산 집행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
5. 일용직, 무기계약직 관련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6. 예산 절감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예산낭비사례 및 우수 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 절감 제안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
9. 예산 성과급 등 소속직원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업수행방식 전환 효과에 대한 성과 분석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국내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비(320-01)로 편성 및 집행하고 있음.

이들 세부사업의 2024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자문위원 역량강화 세부사업은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여 2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협의회 운영 세부사업은 29억 6,3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세부사업은 47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46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 지역회의 등 민간경상보조비 편성 및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코드)	내역사업	편성액	집행액	사업 시행장소	보조사업 수행주체
자문위원 역량강화 (1131-300)	청년여성위원역량지원(해외)	216	215	해외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지역협의회 운영 (1131-301)	협의회 운영비	2,963	2,963	국내, 해외	국내 및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1131-302)	평화통일포럼	169	166	국내, 해외	국내 및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평화통일 시민교실	334	334	국내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지역평화통일활동 지원	3,087	3,109	국내, 해외	국내 및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1,010	983	해외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해외 평화통일정책강연회	107	107	해외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소계	4,707	4,699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그런데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247]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조직으로 국가기관에 해당함.

보조금의 정의, 예산의 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등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정의함.[248]

이에 따라 2021년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조직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국회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적되었음.

<민간경상보조비 예산 편성에 관한 지적사항>

구분	지적사항	답변(조치사항)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관리단 (기재부, 2021년)	국가기관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민간경상보조금 교부는 부적절	보조사업 중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22년, 자문위원 연수),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23년),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24년, 국내) 등을 단계적으로 직접집행 사업으로 전환

24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24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지적사항	답변(조치사항)
예결위 (국회, 2021년)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중 지역회의 기획사업비(민간경상보조)로 정책회의 성격의 운영위원회 개최비용을 집행한 것은 보조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중 정책회의 성격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24년부터 직접집행사업으로 전환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회 등의 지적사항 이행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22년 자문위원 역량강화(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2023년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및 2024년 자문위원 역량강화(청년·여성위원역량지원)의 사업수행방식을 보조금 교부에 의한 지역조직 수행방식(민간경상보조비 교부방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접수행 방식(위탁사업비 등 직접집행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여 왔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수행방식 전환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코드)	내역사업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변경연도
		예산과목	금액	예산과목	금액		
자문위원 역량강화 (1131-300)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합계	1,000	합계	890	기재부 등 의견 반영	2022
		210-01	64	210-01	64		
		210-07	39	210-07	39		
		210-14	180	**210-14**	**700**		
		220-01	82	220-01	82		
		240-01	5	240-01	5		
		320-01	**630**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1131-302)	우리고장 평화플랜(~2022)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2023~)	합계	127	합계	94	기재부 등 의견 반영	2023
		210-01	16	**210-01**	**64**		
		220-01	6	210-07	9		
		240-01	14	220-01	4		

		320-01	**91**	240-01	17		
자문위원 역량강화 (1131-300)	청년·여성위원역량지원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합계	306	합계	180	기재부 등 의견 반영	2024
		210-01	12	210-01	22		
		210-07	3	210-07	5		
		220-01	32	**210-14**	**120**		
		240-01	1	220-01	32		
		320-01	**258**	240-01	1		
자문위원 역량강화 (1131-300)	청년·여성위원역량지원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합계	306	합계	180	기재부 등 의견 반영	2024
		210-01	12	210-01	22		
		210-07	3	210-07	5		
		220-01	32	**210-14**	**120**		
		240-01	1	220-01	32		
		320-01	**258**	240-01	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조직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비로 교부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세부사업 기준으로 3개 세부사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사업효과성 부재 등의 사유로 3개 세부사업 모두에 대하여 감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진행상황('25. 5.26 기준) >

(단위: 백만원)

평가대상 세부사업 (사업코드)	보조사업 (내역사업)		예산	보조사업 평가단 평가의견
자문위원 역량강화 (1131-300)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해외	186	<감축> - 지역협의회 활동에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
지역협의회 운영 (1131-301)	협의회 운영비	국내	1,672	<감축> - 사업 효과성 관련 내용이 부재하여 사업성과를 파악할 수 없음
		해외	1,699	

		소계	3,371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1131-302)	평화통일포럼	국내	79	<감축> - 5개의 내역사업별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중심으로 사업성과를 관리하고 있어 사업효과 판단이 제한적
		해외	120	
		소계	199	
	평화통일시민교실		384	
	지역통일활동 지원	국내 정기회의	549	
		해외 정기회의	317	
		국내 특화사업	825	
		국내 청년여성	198	
		탈북민 공감	840	
		해외 특화사업	1,233	
		글로벌 특위	125	
		소계	4,087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617	
	해외 통일정책강연회		10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추가적 감축은 국가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적정성을 완화할 수 있고, 소요예산도 절감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직접수행방식으로 전환된 사업의 실적을 보면, 보조금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내역사업('22년 전환) 및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내역사업('23년 전환)의 사업수행 실적이 전환 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청년·여성위원역량지원(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내역사업('24년 전환)은 전환 전 대비 약 15%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수행방식 전환 후 실적 변화 추이>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내역사업	변경 연도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실적	2024년 실적
자문위원 역량강화 (1131-300)	지역통일 준비 역량강화	2022	권역별 연수 58회, 온라인 연수 4회 실시 694백만원 집행	권역별 연수 38회, 온라인 연수 5회 실시 527백만원 집행	지역회의별 연수 18회, 지역회의·협의회 간사 연수 1회 실시 381백만원 집행	지역회의별 연수 17회, 지역회의·협의회 간사 연수 1회 실시 366백만원 집행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1131-302)	우리고장 평화플랜 (~2022)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2023~)	2023	시민대화 6회 실시, 152백만원 집행	시민대화 6회 실시, 130백만원 집행	시민대화 3회 실시, 91백만원 집행	시민대화 3회 실시, 91백만원 집행
자문위원 역량강화 (1131-300)	청년·여성위원역량지원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2024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활동 20회 실시 360백만원 집행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활동 22회 실시 360백만원 집행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활동 16회 실시 414백만원 집행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활동(직접사업) 12회 실시 253백만원 집행
자문위원 역량강화 (1131-300)	청년·여성위원역량지원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2024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활동 18회 실시 309백만원 집행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활동 26회 실시 274백만원 집행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활동 32회 실시 192백만원 집행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활동(직접사업) 5회 실시, 104백만원 집행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업수행방식 전환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행방식이 전환된 사업별로 그 성과 등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전환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와 같은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사업수행방식을 전환한 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별로 그 전환이 해당사업의 추진체계 및 양적·질적 성과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분석을 실시하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해당 사업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세출(사업별)

가. 통일정책자문 · 통일여론조성(1000-1031 단위사업)

1) 개 요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문회의 운영’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단위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본예산과 동일한 45억 3,000만원이며, 이 중 99.1%인 44억 8,800만원이 집행되고 4,2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통일정책자문 · 통일여론조성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4,530	4,530	-	-	4,530	4,488	42	99.1
○ 자문회의 운영 (1031-300)	4,530	4,530	-	-	4,530	4,488	42	99.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세부사업별 검토

가) 자문회의 운영(1031-300 세부사업)

‘자문회의 운영’ 사업은 통일정책 건의를 위한 법정회의 개최와 통일여론 수렴을 위한 사업으로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국내·해외 지역회의’, ‘자문회의 구성’, ‘자문위원 일반지원’, ‘간부위원 활동지원’, ‘직능별정책회의’, ‘지역운영위원회’ 등 총 8개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 45억 3,000만원 중 99.1%인 44억 8,800만원이 집행되고 4,2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자문회의 운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 자문회의 운영	4,530	4,530	-	-	4,530	4,488	42	99.1
·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519	519	-	30	549	547	2	99.6
·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253	253	-	△19	234	230	4	98.3
· 국내·해외 지역회의	2,869	2,869	-	18	2,887	2,864	23	99.2
· 자문회의 구성	-	-	-	-	-	-	-	-
· 자문위원 일반지원	157	157	-	±1	157	156	1	99.4
· 간부위원 활동지원	250	250	-	-	250	244	6	97.6
· 직능별정책회의	182	182	-	△12	170	165	5	97.1
· 지역운영위원회	300	300	-	△17	283	282	1	99.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세부사업의 비목별 주요 집행내역은 운영비(210목) 16억 4,600만원, 여비(220목) 23억 1,800만원 등임.

< 2024년도 '자문회의 운영' 사업 비목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목-세목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	추경							
○ 자문회의 운영		4,530	4,530	-	-	-	4,530	4,488	-	42
110-04	일용임금	16	16	-	-	-	16	15	-	1
210	운영비	1,673	1,673	-	±11	-	1,673	1,646	-	27
220	여비	2,325	2,325	-	±23	-	2,325	2,318	-	7
240-01	사업추진비	225	225	-	-	-	225	225	-	-
250-02	직책수행경비	121	121	-	-	-	121	121	-	-
250-03	특정업무경비	14	14	-	-	-	14	14	-	-
310-04	기타보전금	129	129	-	-	-	129	123	-	6
320-09	고용부담금	2	2	-	-	-	2	1	-	1
430-01	자산취득비	25	25	-	-	-	25	25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관련 사업은 자문위원 임기 2년을 주기로 하여 출범하는 홀수년도에는 국내·해외 출범회의가, 출범회의 다음연도인 짝수년도에는 국내·해외 지역회의가 각각 개최됨.

최근 3년간 동 세부사업의 추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최근 3년간, 자문회의 운영 사업 추진 현황 >

연 도	사업 추진 현황
2022년	o 운영위원회 개최 : 3회 o 상임위원회 개최 : 1회 o 분과위원회 개최 : 40회 o 정책 건의 : 11회(분기별 정기건의 4회, 수시건의 7회) o 남북관계전문가토론회 : 3회 o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발간 : 4회 o 통일문제여론조사 : 15회 o 국내지역회의 : 8,326명 참석(53%) o 해외지역회의 : 1,744명 참석(45.9%) o 직능별 정책회의 : 9회, 712명 참석 o 국내 지역운영위원회 : 52회, 965명 참석 o 해외 지역운영위원회 : 20회, 205명 참석
2023년	o 운영위원회 개최 : 4회 o 상임위원회 개최 : 1회 o 분과위원회 개최 : 38회 o 정책 건의 : 11회(분기별 정기건의 4회, 수시건의 7회) o 남북관계전문가토론회 : 3회 o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발간 : 4회 o 통일문제여론조사 : 15회 o 국내출범회의 : 10,525명 참석(48.8%) o 해외출범회의 : 2,523명 참석(62.5%) o 자문위원 위촉 : 제21기 자문위원 21,984명 위촉 o 직능별 정책회의 : 7회, 653명 참석 o 국내 지역운영위원회 : 72회, 1,318명 참석 o 해외 지역운영위원회 : 20회, 262명 참석
2024년	o 운영위원회 개최 : 4회 o 상임위원회 개최 : 1회 o 분과위원회 개최 : 36회 o 정책 건의 : 12회(분기별 정기건의 4회, 수시건의 8회) o 남북관계전문가토론회 : 2회 o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발간 : 4회 o 통일문제여론조사 : 6회 o 국내지역회의 : 8,713명 참석(49.5%) o 해외지역회의 : 2,566명 참석(63.1%) o 직능별 정책회의 : 6회, 485명 참석 o 국내 지역운영위원회 : 72회, 1,285명 참석 o 해외 지역운영위원회 : 20회, 311명 참석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사업은 통일 관련 자문회의의 운영과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기 위한 법정회의를 개최하여 평화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자문·건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정위원회[249]는 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대통령)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및 10개 이내로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로 구성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정위원회 현황 >

기 구	구 성	기 능
상임위원회 (법 제18조)	500명 (부의장 25명, 분과위원장 10명, 직능대표 상임위원 463명, 간사 2명)	○ 전체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 의장이 명한 사항 ○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운영위원회 (법 제19조)	50명 (부의장 25명, 직능대표 운영위원 24명, 간사 1명)	○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자문위원 해촉 심사 ○ 기타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법 제18조제5항)	10개 이내 분과×50명 내외	○ 각 분야별 안건 심의 및 건의 ○ 분과별 통일정책 연구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4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상임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되며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상임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개회한다.
⑤ 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상임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통일여론 수렴·분석

‘통일여론 수렴·분석’ 사업은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통일여론 수렴 및 대상·시기별 여론분석을 위한 사업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그 결과를 통일 관련 정책 자문 또는 건의 등에 활용하고 있음.

2024년도 동 내역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통일여론분석 보고서를 4회 발간하고, 통일문제 여론조사를 14회 실시하였으며,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2회 개최하였음.

< 2023년 및 2024년도 통일여론 수렴·분석 사업 추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집행실적			
	2023년		2024년	
	발간 등 횟수	집행액	발간 등 횟수	집행액
통일여론분석보고서 발간	4회 발간	89	4회 발간	90
통일문제 여론조사	15회 실시	105	14회 실시	104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3회 개최	41	2회 개최	3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4년도 통일문제 정기 여론조사의 기간 및 조사대상은 아래 표와 같음.

< 2024년도 통일문제 정기 여론조사 기간 및 조사대상 >

구 분 (대주제)	조사기간	조사대상
정기 1차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주민 포용 방안)	3.22 ~ 3.24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3.22 ~ 3.28	·통일·북한 전문가 150명
	3.22 ~ 3.28	·제21기 자문위원 대상
정기 2차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도전과 극복방안)	6.7 ~ 6.9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6.7 ~ 6.13	·통일·북한 전문가 150명
	6.7 ~ 6.13	·제21기 자문위원 대상
정기 3차 (통일환경 급변에 따른 북한 변화 및 국론결집 방안)	9.20 ~ 9.22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9.20 ~ 9.26	·통일·북한 전문가 150명
	9.20 ~ 9.26	·제21기 자문위원 대상
정기 4차 (통일환경 변화를 고려한 통일·대북정책의 대내외적 구현 방안)	11.22 ~ 11.24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11.22 ~ 11.28	·통일·북한 전문가 150명
	11.22 ~ 11.28	·제21기 자문위원 대상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4년 정기조사 주제는 다음과 같음.

< 2024년도 통일여론조사 정기조사 주제 >

구분	통일여론조사 정기조사 주제	결과 활용
1분기	△북한 대남노선 전환, △새로운 통일비전, △통일의지 결집 추진과제, △북한이탈주민 친밀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중점사항, △통일관련 추이분석 등	「통일 여론·동향」 발간
2분기	△통일 미래상에서 중요한 것,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정책,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의 기대효과, △납북자·억류자 인지도, △통일관련 추이분석 등	「통일 여론·동향」 발간 2분기 정책건의 연계
3분기	△8·15 통일독트린 우선 추진방안,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변화, △통일교육프로그램 활성화 과제, △납북자·억류자 군군포로 문제, △통일관련 추이분석 등	「통일 여론·동향」 발간 3분기 정책건의 연계
4분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반영, △2025년 북한의 도발 강도, △2025년 남북관계 전망, △통일관련 추이분석 등	「통일 여론·동향」 발간 4분기 정책건의 연계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24년도 통일여론조사 정기조사 응답률 현황 >

구분	국민여론조사	전문가 여론조사	자문위원 여론조사
조사 개요	· 일반국민(전국 만19세 이상 1,000명) · 분기별 3일 · 전화면접조사 (가구전화 20%, 휴대전화 80%) · 고정문항 5개, 현안문항 5개 · 글로벌알앤씨 수행	· 통일·북한 전문가 150명 · 분기별 6~7일 · 이메일 조사 · 고정문항 5개, 현안문항 5개 전문가 대상 추가문항 2개 · 글로벌알앤씨 수행	· 해당기수 자문위원 대상 · 분기별 6~7일 ·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병행조사 · 고정문항 5개, 현안문항 5개 · 자체 온라인 조사
1분기	· 2024.3.22 ~ 3.24(3일) · 응답률 10.1% · 신뢰수준 95%,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 2024.3.22 ~ 3.28(7일) · 100명 응답(응답률 66.7%)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7%p	· 2024.3.22 ~ 3.28(7일) · 11,273명 응답(응답률 51.9%)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0.6%p
2분기	· 2024.6.7. ~ 6.9.(3일) · 응답률 10.2% · 신뢰수준 95%,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 2024.6.7. ~ 6.13.(7일) · 100명 응답(응답률 66.7%)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7%p	· 2024.6.7. ~ 6.13.(7일) · 11,116명 응답(응답률 51.5%)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0.7%p
3분기	· 2024.9.20. ~ 9.22.(3일) · 응답률 10.1% · 신뢰수준 95%,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 2024.9.20. ~9.26.(7일) · 100명 응답(응답률 66.7%)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7%p	· 2024.9.20. ~9.26.(7일) · 11,560명 응답(응답률 53.9%)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0.6%p
4분기	· 2024.11.22. ~11.24.(3일) · 응답률 10.0% · 신뢰수준 95%,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 2024.11.22. ~11.28.(7일) · 100명 응답(응답률 66.7%)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7%p	· 2024.11.22. ~11.28.(7일) · 10,766명 응답(응답률 49.9%)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0.6%p

주: 국민여론조사 응답률은 전화조사 응답에 성공한 횟수에 대한 것임. 국민여론조사는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 할당 추출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며, 대부분의 경우 1,000명 정도를 표본으로 함.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3) 국내·해외 지역회의

국내・해외 지역회의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250]에 따라 구성된 국내 17개 시·도, 이북5도 및 해외 5개 등 총 23개 지역회의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자문회의 출범연도에는 출범회의가 개최되고, 출범 다음 연도에는 각 지역별로 지역회의가 개최됨.[251]

제21기 국내·해외 지역회의는 해당 지역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국내는 해당 지역별로 개최하고, 해외는 자문위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개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2024년도의 경우 국내 지역회의는 18개 지역회의별로 1회씩, 총 18회 개최하였으며, 해외 지역회의는 미주, 유라시아(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으로 나누어 총 2회 개최하였음.

< 2024년 국내 지역회의 개최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

지역회의	일 시	장 소	집행액	참석인원	참석률
서 울	9.26.(목) 14:00	세종대(광개토관 컨벤션홀)	80	1,587	44.3
부 산	10.11.(금) 14:00	부산시청(대강당)	17	487	53.9
대 구	10.14.(월) 14:00	대구은행(제2본점 대강당)	18	456	56.6

25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251) 국내·해외 지역회의 조직 현황(2025. 6. 기준)

구 분	대 상	지 역	계
국내 지역회의	특별시, 특별자치시, 시·도·특별자치도, 이북5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북5도	18
해외 지역회의	대륙별·국가별 협의회 설치 등 고려	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중동·아프리카	5

지역회의	일 시	장 소	집행액	참석인원	참석률
인 천	10.22.(화) 14:00	인천시청(대회의실)	12	322	52.5
광 주	10.14.(월) 14:00	김대중컨벤션센터(컨벤션홀)	17	296	56.4
대 전	10.23.(수) 14:00	대전시청(대강당)	9	198	52.8
울 산	10.16.(수) 14:00	울산시티컨벤션(안다미로홀)	12	271	60.1
세 종	10.17.(목) 14:00	세종시청(대회의실)	3	55	41.7
경 기	10.11.(금) 13:30	일산킨텍스(그랜드볼룸)	68	1,137	43.5
강 원	10.7.(월) 13:30	횡성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5	419	50.6
충 북	9.27.(금) 13:00	한국가스안전공사(대강당)	12	320	51.4
충 남	9.30.(월) 14:00	예산군문예회관(공연장)	18	458	51.5
전 북	10.16.(수) 14:00	전북도청(공연장)	21	459	49.2
전 남	10.17.(목) 14:00	전남도청 (김대중강당)	20	582	48.8
경 북	10.4.(금) 13:30	포항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24	697	53.5
경 남	10.7.(월) 14:00	경남도청(대강당)	21	628	48.9
제 주	10.10.(목) 14:00	제주도청(본청 대강당)	6	152	59.8
이북5도	10.11.(금) 14:00	이북5도청(평화강당)	8	189	58.9

< 2024년 해외 지역회의 개최 현황 >

(단위: 명, %)

지역회의	기간	참석인원	참석률
미주	9. 9.(월) ~ 9.12.(목)	1,116	60.4
유라시아	12. 2.(월) ~ 12. 5.(목)	1,450	65.3

□ 국내지역회의 임차료 반복적 과소편성 및 초과집행 부적정

국내·해외 지역회의 내역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28억 8,700만원이며, 이 중 28억 6,400만원이 집행되고 2,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국내·해외 지역회의 내역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국내·해외 지역회의	2,869	2,869	0	18	2,887	2,864	23
- 일용임금(110-04)	7	7	0	0	7	7	0
- 일반수용비(210-01)	363	363	0	△3	360	360	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	5	0	△5	0	0	0
- 특근매식비(210-05)	1	1	0	△1	0	0	0
- 임차료(210-07)	146	146	0	9	155	155	0
- 일반용역비(210-14)	390	390	0	0	390	369	21
- 국내여비(220-01)	282	282	0	△30	252	252	0
- 국외업무여비(220-02)	1,658	1,658	0	48	1,706	1,705	1
- 사업추진비(240-01)	16	16	0	0	16	16	0
- 고용부담금(320-09)	1	1	0	0	1	0	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내·해외 지역회의 내역사업 중 임차료 비목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국내 지역회의의 경우 1,950만원을 편성한 후 7,67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편성액의 약 4배를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세부적으로는 서울 지역회의 임차료가 예산편성액(1,100만원) 대비 약 2.5배(2,720만원)를 집행하였고, 경기 등 17개 지역회의 임차료가 예산편성액(850만원) 대비 5.8배(4,950만원)를 집행하였음.

<2024년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편성		집행	
편성내역	금액	집행내역	금액
1) 회의장 및 시설 임차료	19.5	1) 회의장 및 시설 임차료	76.7
가) 서울	11	가) 서울	27.2
나) 서울외 17개시도	8.5 (500,000원× 17개 시도)	나) 대구	2.2
		다) 광주	6.2
		라) 대전	1.5
		마) 울산	2.5
		바) 경기	30.8
		사) 충남	1.8
		아) 전북	4.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회의 참석인원, 일자,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회의시설을 임차함에 따라 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초과하였다고 설명함.

< 2024년 국내 지역회의 개최 현황(임차료 발생 지역) >

(단위: 명)

구분	장소명	소유주체	참석위원수
서울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	세종대 (민간)	1,587
대구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	대구은행 (민간)	456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광주관광공사 (공공)	296
대전	대전시청 대강당	대전시 (공공)	198
울산	울산시티컨벤션 안다미로홀	울산시티컨벤션㈜ (민간)	271
경기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	㈜킨텍스 (공공)	1,137

구분	장소명	소유주체	참석위원수
충남	예산군문예회관 공연장	예산군 (공공)	458
전북	전북도청 공연장	전라북도 (공공)	459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그런데 서울 및 경기 지역회의의 경우 2020년 및 2022년에도 참석위원 규모[252] 등을 고려하여 민간시설을 임차한 바 있었으며, 임차료 집행액이 최소 1,477만원에서 최대 3,177만원에 달한 바 있음.

< 2020년 및 2022년 서울·경기 지역회의 개최 현황 >

(단위: 명)

연도	구분	장소명	소유주체	임차료 집행액	참석위원수
2020년	서울	반얀트리 페스타홀	반얀트리 (민간)	-회의장: 13,280천원 -회의장비: 13,200천원 -합계: 26,480천원	1,780
	경기	안산 GD컨벤션	GD 컨벤션 (민간)	-회의장: 4,276천원 -회의장비: 10,498천원 -합계: 14,774천원	1,737
2022년	서울	KBS아레나	KBS비즈니스 (민간)	-회의장: 11,770천원 -회의장비: 20,000천원 -합계: 31,770천원	1,656
	경기	신안산대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안산대 (민간)	-회의장: 4,740천원 -회의장비: 19,000천원 -합계: 23,740	1,299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처럼 서울 및 경기 지역회의의 경우 최근 2회(2020년 및 2022년)에 걸쳐 임차료 집행사례가 누적되어 있었던 바, 이를 참고하여 2024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민간시설을 임차하는 경우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예산을 과소편성한 후 집행단계에서 변경집행

252) 2020년 국내지역회의 참석위원수 규모(서울·경기 제외)는 최소 61명에서 최대 856명이었고, .2022년 국내지역회의 참석위원수 규모(서울·경기 제외)는 최소 61명에서 최대 606명이었음.

을 통해 과다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2020년 및 2022년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				2022년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내역	금액	집행내역	금액	편성내역	금액	집행내역	금액
1) 회의장 및 시설 임차료	19	1) 회의장 및 시설 임차료	165	1) 회의장 및 시설 임차료	19.5	1) 회의장 및 시설 임차료	79.7
가) 서울	11	가) 서울	26	가) 서울	11	가) 서울	31.7
나) 서울외 16개시도	8 (500,000원*16개시도)	나) 부산	11	나) 서울외 17개시도	8.5 (500,000원*17개시도)	나) 인천	5
		다) 대구	7			다) 광주	6
		라) 인천	13			라) 대전	1.5
		마) 광주	7			마) 경기	23.7
		바) 대전	8			바) 강원	3.4
		사) 울산	9			사) 충북	1.2
		아) 세종	5			아) 충남	1.2
		자) 경기	15			자) 전북	2
		차) 강원	7			차) 경북	4
		카) 충북	7	-	-	-	-
		타) 충남	9	-	-	-	-
		파) 전북	7	-	-	-	-
		하) 전남	7	-	-	-	-
		A) 경북	8	-	-	-	-
		B) 경남	8	-	-	-	-
		C) 제주	8	-	-	-	-
		D) 이북5도	3	-	-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가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과거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합리적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반복적인 예산 과소편성 및 과다집행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당초 예산 미편성 물품 구입 최소화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해외지역회의 현장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에게 답례로 지급하기 위한 물품 구입경비로 5,000만원을 해외 지역회의 사업 중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집행하였음.

< 지급품 구입 현황 >

구입목적	수량	단가 (원)	구매금액 (백만원)	지급대상
자문위원 지급품	1,230	40,640	50	해외 자문위원

그런데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해외지역회의 사업 중 일반수용비 2억 4,300만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인쇄비 5,900만원, 회의용품구입 및 제작비 2,500만원, 역할자 사례비 4,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을 뿐 자문위원 지급품 구입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 2024년 예산 편성 시 해외 지역회의 사업 중 일반수용비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 해외지역회의 일반수용비(210-01) : 243			
1) 인쇄비	59	4) 사진인화비	11
가) 회의안내서	12	5) 회의용다과구입비	36
나) 회의자료	47	6) 현장시찰보험료	3
2) 회의용품구입 및 제작	25	7) 현장시찰물품구입비	31
가) 문구류및회의소모품	12	8) 회의용 음료 구입	31
나) 명찰및비표	4		
다) 현수막 및 안내 표지판	9		
3) 역할자사례	47		
가) 강연	8		
나) 통역	16		
다) 번역	2		
라) 문화공연	2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해외지역회의 현장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물품을 구매하였고, 소요 예산은 인쇄비, 현장시찰 보험료, 현장시찰 물품구입비 등의 절감액으로 충당하였다고 설명함.

< 해외지역회의 일반수용비 편성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편성		집행	
편성내역	금액	집행내역	금액
나. 해외지역회의	243	나. 해외지역회의	279
1)인쇄비	59	1)인쇄비	32
가)회의안내서	12	가)회의안내서	16
나)회의자료	47	나)회의자료	16
2)회의용품구입및제작	25	2)회의용품구입및제작	121
가)문구류및회의소모품	12	가)문구류및회의소모품	71
나)명찰 및 비표	4	나)명찰 및 비표	1
다)현수막 및 안내 표지판	9	다)기념품 제작	50
3)역할자사례	47	3)역할자사례	40
가)강연	8	가)강연	6
나)통역	16	나)통역	15
다)번역	2	다)번역	4
라)문화공연	20	라)기타	14
4)사진인화비	11	4)사진인화비	10
5)회의용다과구입비	36	5)회의용다과구입비	41
6)현장시찰보험료	3	6)현장시찰보험료	0
7)현장시찰물품구입비	31	7)현장시찰물품구입비	14
8)회의용 음료 구입	31	8)기타 수수료 등	2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53]」은 기념품 등 물품구매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을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급품 구매가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253)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예) 기념품, 상품권, 피복, 내구소비재, 소모품, 비품, 인쇄비, 연구용역비 등

있기에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임.

따라서 향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자문위원·간부위원 지원

‘자문위원 일반지원’과 ‘간부위원 활동지원’ 사업은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 자문위원들의 지역통일활동 지원과 원활한 직무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자문위원 일반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억 5,700만원 중 99.4%인 1억 5,600만원이 집행되고 1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간부위원 활동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억 5,000만원 중 97.6%인 2억 4,400만원이 집행되고 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자문위원·간부위원 지원 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 자문위원 일반지원 (3005)	157	157	-	±1	157	156	1	99.4
· 간부위원 활동지원 (3006)	250	250	-	-	250	244	6	97.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인 전체 자문위원 21,984명을, 간부위원은 수석부의장(1명)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간사(1명), 상임위원회 간사(2명), 국내·외 부의장(24명), 분과위원장(9명), 분과위원회 간사(9명) 등 46명을 의미함.

수석부의장(1명)은 의장(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며, 기타 간부자문위원(45명)은 지역의 통일활동 및 정책건의 활동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각각「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254]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하고 있음.[255]

< 간부자문위원별 활동경비 월별 지급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수석 부의장	운영위 간사	상임위 간사	부의장	분과위원장	분과위 간사
지급액	6,000	1,500	1,300	300	200	15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5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법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시행령 제5조제2항(수당과 여비 등) 부의장, 상임위원회의 간사, 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간사, 운영위원회의 간사, 지역회의의 지회장, 협의회의 회장·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드는 활동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255) 지역회의의 지회장, 협의회의 회장・지회장에 지급하는 직무관련 활동경비는 없음.

▢ 간부 자문위원 활동지원비 예산과목 일치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사무처는 같은 법 제13조[25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257]에 근거하여 간부 자문위원 48명에게 활동경비를 지급하고 있음.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수석부의장(1명)[258], 상임위원회 간사(2명), 운영위원회 간사(1명)의 활동경비는 직책수행경비(250-02)로, 지역 부의장(24명), 분과위원장(10명), 분과위원회 간사(10명)의 활동경비는 기타보전금(310-04)으로 편성되는 등 직책수행경비와 기타보전금 비목으로 나누어 편성 및 집행하고 있음.

< 2024년도 간부 자문위원 활동지원예산 집행현황 >

(단위: 만원)

구 분	인원	총액	지급기준	비고(비목)
수석부의장	1명	7,200	600×1인×12개월	직책수행경비(250-02)
운영위원회 간사	1명	1,800	150×1인×12개월	〃
상임위원회 간사	2명	3,120	130×2인×12개월	〃
지역 부의장	24명	8,640	30×24인×12개월	기타보전금(310-04)
분과위원장	9명	2,160	20×9인×12개월	〃
분과위원회 간사	9명	1,620	15×9인×12개월	〃
계	48명	24,540		

주: 상임위원회에 10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제21기 자문회의의 분과위원회 수는 9개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56)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법」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257)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수당과 여비 등) ① (생 략)
② 부의장, 상임위원회의 간사, 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간사, 운영위원회의 간사, 지역회의의 지회장, 협의회의 회장·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드는 활동 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258) 2018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가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됨에 따라 2019년도에는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로 조정됨.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직책수행경비(250-02)는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고, 기타보전금(310-04)은 '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259]

< 직책수행경비와 기타보전금 비교 >

구분	직무수행경비(250목)	보전금(310목)
적용대상	**직책수행경비(250-02)**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기타보전금(310-04)**[260]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2.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3. 법령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 4.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5.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해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지원금 6. 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3조에 따르면,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

259)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41, p. 248.

260)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386.

직제(職制)란 일반적으로 직무와 직위에 대한 제도를 의미하는 바, 자문위원이 직제에 의한 공적인 직위를 가진 것이 아니고 '무보수 명예직의 민간인' 신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수석부의장 이하 모든 자문위원의 활동경비를 기타보전금으로 편성 및 집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임.

반면, 현재 기타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부의장, 분과위원장, 분과위원회 간사의 경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도 수석부의장 등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직책수행경비로 편성 및 집행하여야 일관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될 것임.

나.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1000-1032 단위사업)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은 변화관리 워크숍, 성과관리, 제안제도 등을 통해 발전적 조직문화 활성화 및 행정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3,700만원 모두 집행되었음. 세부 집행내역은 사무처 변화관리 워크숍 2회에 3,150만원, 제안제도 운영 150만원, 성과관리제도 운영 400만원 등임.

< 2024년도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
	본예산	추경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37	37	-	37	37	0	1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단위사업의 최근 4년간 추진 실적은 다음 표와 같음.

< 최근 4년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추진 실적 >

연 도	사업 추진 현황
2021년	o 사무처 변화관리 워크숍: 2회 o 제안제도 운영: 2회 o 재정성과관리 운영: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1회)
2022년	o 사무처 변화관리 워크숍: 1회 o 제안제도 운영: 1회 o 재정성과관리 운영: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1회)
2023년	o 사무처 변화관리 워크숍: 2회 o 제안제도 운영: 1회 o 재정성과관리 운영: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1회)
2024년	o 사무처 변화관리 워크숍: 2회 o 제안제도 운영: 1회 o 재정성과관리 운영: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1회)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다. 정보화사업 추진(1000-1033 단위사업)

‘정보화사업 추진’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와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 업무지원을 위한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4억 7,400만원 중 4억 2,700만원이 집행되고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4,7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정보화사업 추진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					
□ 정보화 사업 추진	474	474	-	474	427	47	90.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주요 집행내역은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1억 7,6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억 800만원, 행정업무용 PC 백신 프로그램 및 기록관리 전용 백신 라이센스 구입에 1,300만원, 통합관리시스템 메신저 교체에 1,600만원, 대량메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1,4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정보화사업 추진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차액	사유
□ 정보화 사업 추진		474	427	47	-
○ 행정업무용 PC 백신 프로그램 구입	자산취득비 (430-01목)	13	13	-	-
○ 통합관리시스템 메신저 교체	자산취득비 (430-01목)	16	16	-	-
○ 대량메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자산취득비 (430-01목)	15	14	1	집행잔액

세부내역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차액	사유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관리용역비 (210-15목)	200	176	24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210-15목)	230	208	2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라. 사무처 인건비(1100-1101 단위사업)

2024년도 '사무처 인건비'(1100-1101 단위사업) 예산액은 70억 8,200만원이고, 총액인건비 직급상향분 보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600만원을 전용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70억 8,800만원으로, 이 중 91.3%인 64억 6,3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2,500만원은 불용됨.

< 2024년도 사무처 인건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확정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이용](전용)	<세목조정>{내역변경}				
□ 인건비	7,082	7,082	6	-	7,088	6,463	625	91.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24년도 사무처 인건비 비목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목-세목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인건비		7,082	7,082	-	6	-	7,088	6,463	-	625
110-01	보수	6,759	6,759	-	△4	-	6,755	6,139	-	616
110-02	기타직보수	270	270	-	10	-	280	280	-	-
110-05	연가보상비	53	53	-	-	-	53	44	-	9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4년 12월 말 기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공무원 정원은 80명이고, 현원은 77명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원·현원 현황 >

(2024.12.31. 기준)

구분	계	정무직(차관)	고위공무원	3급	4급	5급	6급이하
정원	80	1	3	3	12	20	41
현원	77	1	3	3	12	22	3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는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1111-200-2002)의 특근매식비(210-05)에서 인건비 직급상향분(6급→ 5급, 1명) 급여 충당을 위해 600만원을 자체전용('24. 2.29.)한 바,

최근 4년간의 결산 내역을 보면, 기본경비에서 매년 600만원을 전용하여 직급상향분의 보수 부족분으로 충당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인건비(1101-100)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B)	집행액(C)[실집행액]	집행률(C/A)	집행률(C/B)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6,684	6,684	-	6	-	6,690	6,461	96.9	96.7	-	229
2022	6,796	6,786	-	6	-	6,792	6,270	92.4	92.3	-	522
2023	6,948	6,948	-	6	-	6,954	6,185	89.0	89.0	-	769
2024	7,082	7,082	-	6	-	7,088	6,463	91.3	91.3	-	62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의도적 절감[261] 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을 자율항목에 속하는 인력증원 등에 전용할 수 있는 바,

사무처는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업무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으로 직급상향 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261) 의도적 절감: 시행기관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제로 절감한 재원을 말함.

마. 기본경비(1100-1111 단위사업)

‘기본경비’(1100-1111 단위사업)는 기관의 유지·운용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로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비대상 기본경비 및 전산운영경비로 이루어져 있음.

2024년도 예산액은 19억 500만원이고, 총액인건비 직급상향분 충당을 위해 인건비(1101-100)로의 전용으로 6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18억 9,900만원이며, 이 중 97.5%인 18억 5,800만원이 집행되고 4,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기본경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 기본경비	1,905	1,905	△6	1,899	1,858	41	97.5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1111-200)	377	377	△6	371	347	24	93.5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1111-250)	1,346	1,346	-	1,346	1,329	17	98.7
○ 전산운영경비 (1111-251)	182	182	-	182	182	-	10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바. 지역협의회 활동지원(1100-1131 단위사업)

1) 개 요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사업은 국내·해외 지역조직의 평화통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문위원 역량강화’, ‘지역협의회 운영’,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단위사업의 2024년도 본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05억 5,200만원이고, 이 중 99.0%인 203억 4,9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20,552	20,552	-	-	20,552	20,349	203	99.0
○ 자문위원 역량강화 (1131-300)	2,589	2,589	-	△6	2,583	2,529	54	97.9
○ 지역협의회 운영 (1131-301)	12,265	12,265	-	±10	12,265	12,141	124	99.0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1131-302)	5,698	5,698	-	6	5,704	5,679	25	99.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세부사업별 검토

가) 자문위원 역량강화(1131-300 세부사업)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은 자문위원의 정책건의 역량과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지역평화통일준비 역량강화’, ‘유공자문위원 포상’, ‘기관지 제작, ‘평화통일자료 지원’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현액은 25억 8,300만원이며, 이 중 97.9%인 25억 2,900만원이 집행되고 5,4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 자문위원 역량강화	2,589	2,589	△6	2,583	2,529	54	97.9
·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655	655	±1	655	650	5	99.2
· 지역평화통일준비 역량강화	727	727	△29	698	690	8	98.9
· 유공자문위원 포상	99	99	20	119	119	-	100
· 기관지 제작	692	692	12	704	684	20	97.2
· 평화통일자료 지원	416	416	△9	407	386	21	94.8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세부사업의 비목별 주요 집행내역은 운영비(210목) 19억 4,500만원, 민간경상보조(320-01) 2억 1,500만원 등임.

< 2024년도 자문위원 역량강화 비목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목-세목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	추경							
○ 자문위원역량강화		2,589	2,589	-	△6	-	2,583	2,529	-	54
110-03	상용임금	90	90	-	-	-	90	83	-	7
210	운영비	1,992	1,992	-	△6	-	1,986	1,945	-	41
220	여비	219	219	-	-	-	219	218	-	1
240-01	사업추진비	24	24	-	-	-	24	24	-	-
310-03	포상금	30	30	-	-	-	30	30	-	-
320-01	민간경상보조	216	216	-	-	-	216	215	-	1
320-09	고용부담금	18	18	-	-	-	18	14	-	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최근 3년간 동 세부사업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추진 현황 >

연 도	사업추진 현황
2022년	o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 전국 청년분과위원장 정책회의 등 청년위원 활동 : 22회 - 전국 여성분과위원장 정책회의 등 여성위원 활동 : 26회 - 세계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 2회 - 해외지역 청년·여성위원 역량강화 활동 : 24회 o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 온라인 통일콘텐츠(온라인 지식서비스) : 16건 - 권역별 자문위원 연수, 부의장·협의회장 워크숍 등 : 40회 o 유공자문위원 국민훈장 수여 : 45개 o 기관지 제작 - 평화+통일 발행 : 12회/각 23,000부 - 민주평통 블로그 운영 : 515개 콘텐츠 게재 및 뉴스레터 제작 24회 o 평화통일자료 지원 - 영상자료 제작 : 11편 - 소책자(12,000부) 제작 및 발송, 공무직 인건비 등

연 도	사업추진 현황
2023년	o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 여성운영위원회 등 여성위원 활동 : 32회 - 청년운영위원회 등 청년위원 활동 : 16회 - 세계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 2회 - 해외지역 청년·여성위원 역량강화 활동 : 18회 o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 온라인 통일콘텐츠(온라인 지식서비스) : 16건 - 권역별 자문위원 연수, 부의장·협의회장 워크숍 등 : 20회 o 유공자문위원 국민훈장 수여 : 43개 o 기관지 제작 - 평화통일 발행 : 12회/각 23,000부 - 민주평통 블로그 운영 : 569개 콘텐츠 게재 및 뉴스레터 제작 24회 o 평화통일자료 지원 - 영상자료 제작 : 11편 - 리플릿(22,000부) 제작 및 발송, 공무직 인건비 등
2024년	o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 여성운영위원회 등 여성위원 활동 : 5회 - 청년운영위원회 등 청년위원 활동 : 12회 - 세계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 2회 - 해외지역 청년·여성위원 역량강화 활동 : 12회 o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 온라인 통일콘텐츠(온라인 지식서비스) : 12건 - 권역별 자문위원 연수, 부의장·협의회장 워크숍 등 : 19회 o 유공자문위원 국민훈장 수여 : 45개 o 기관지 제작 - 평화통일 발행 : 6회/각 24,500부 - 민주평통 블로그 운영 : 545개 콘텐츠 게재 및 뉴스레터 제작 24회 o 평화통일자료 지원 - 영상자료 제작 : 27편 - 리플릿(10,000부) 제작 및 발송, 공무직 인건비 등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내역사업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은 미래 통일시대 준비의 중요한 축인 청년·여성위원의 통일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고 통일준비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은 6억 5,500만원, 예산현액은 6억 5,500만원이며 이 중 99.2%인 6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4년도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655	655	±1	655	650	5	99.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사업은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과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해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2024년도에는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사업 12회,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5회, 해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14회를 각각 실시하였음.

< 2024년도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실적 >

(단위: 회, 백만원)

사 업 명		개최 횟수	집행액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 청년운영위원회	2	8
	▪ 국내 청년분과위원장 워크숍	1	43
	▪ 청년위원 역량강화 기획사업	9	202
	계	12	253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 여성운영위원회	2	6
	▪ 국내 여성분과위원장 워크숍	1	55
	▪ 여성위원 역량강화 기획사업	2	43
	계	5	104
해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 해외 청년위원 컨퍼런스	1	131
	▪ 해외 여성위원 컨퍼런스	1	126
	▪ 해외 청년·여성 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	12	36
	계	14	29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집행액에는 사업비, 수용비, 여비 등 모두 포함)

(2) 지역평화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

내역사업 '지역평화통일준비 역량강화'는 지역통일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지역별·대상별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통일준비를 위한 실천과제 발굴과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이며, 온라인 통일 콘텐츠 제작 및 연수자료집 제작 등을 통해 자문위원 연수에 필요한 영상 및 교재를 직접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있음.

< 2024년도 지역평화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 주요 추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o 온라인 지식서비스 제작 12편	143	140	136
o 자문위원 연수 19회 (간부위원 2회, 국내 자문위원 17회)	513	513	511
o 연수자료집 제작	71	44	44
합계	727	697	69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연도별 온라인 지식서비스 예산집행 내역 및 2024년 조회실적은 아래 표와 같음.

< 연도별 온라인 지식서비스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180	180	180	180	139
집행	167	169	172	177	136
제작편수	18편	16편	16편	16편	12편
제작단가	9.3/편당	10.6/편당	10.8/편당	11.1/편당	11.2/편당
조회수	7,100/편당	7,568/편당	14,263/편당	29,931/편당	25,727/편당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24년 온라인 지식서비스 조회실적 >

(단위: 회)

연번	제 목	조회 수 ('24.12.31기준)
1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 무엇이 필요할까 (제도적 지원 vs 본인 의지)	30,894
2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북한의 핵도발, 한국의 생존 전략은?	27,193
3	남북 더 이상 동족 관계 아니다?! 김정은의 의도는?	26,336
4	북한 경제·사회 실태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생각은?	24,984
5	'지방발전 20*10정책' 암울한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은?	24,902
6	북한여성의 삶, 북한이 강요한 슈퍼우먼이 가져온 사회변화는?	25,505
7	북한주민의 자유권 실태와 증진 방안은?	32,117
8	8.15 통일 독트린에 담긴 통일의 지향점은?	24,527
9	K-컬처 아프리카 대륙까지 상륙?! 세계에 부는 한류 바람과 통일공공외교 전략은?	22,968
10	김정은 시대, 북한 청년들의 의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25,197
11	식량위기를 불러온 재해성이상기후!! 북한의 대응책은?	22,981
12	트럼프행정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까?	21,121
총 조회수	308,72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3) 기관지 제작 및 평화통일자료 지원

내역사업 '기관지 제작' 및 '평화통일자료 지원'은 자문위원에게 통일·대북정책, 남북관계 현안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건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화통일 발간', '블로그 제작 및 SNS 운영', '영상자료 제작', '기타 평화통일자료 지원' 등으로 이루어짐.

< 2023·2024년도 민주평통 기관지 제작 및 통일자료 지원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추진 현황	2023년 집행액	2024년 집행액
기관지 제작	「평화통일」	o 발간횟수 : 6회 (격월) o 발간부수 : 매회 24,500부 (모바일「평화통일」병행) o 배 부 처 : 자문위원 및 유관기관·관련 단체	542	442
	블로그	o 발행주기 : 상시 o 콘텐츠 수 : 월 30~40개 o 대국민 공개 서비스(네이버 블로그)	248	242
평화통일자료 지원		o 영상자료 제작 : 27편 o '21기 민주평통 안내서' 소책자 제작 등 o 홈페이지 다국어 번역 서비스	217	38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영상제작비 예산과목 혼용(210-01 ↔ 210-14) 집행 부적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영상자료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 비목(210-01)과 일반용역비 비목(210-14)으로 혼용하여 집행하고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영상제작서비스' 등 2종의 경비는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집행하였고, '2024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종합영상 제작비' 등 4종의 경비는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집행하였음.

< 2024년 비목별 영상제작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비목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건명	집행액
일반 용역비 (210-14)	1131	300	210	14	2024 평화통일 영상자료 제작 용역	198
	1131	302	210	14	2024년 국내 정기회의 영상제작 용역	31
	소계					229
일반 수용비 (210-01)	1131	302	210	01	2024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종합영상 제작비	7
	1031	300	210	01	제21기 미주지역회의 추가 영상 제작비	8
	1031	300	210	01	제21기 미주지역회의 자문위원 활동사진 영상 제작비	2
	1111	250	210	01	평화통일 홍보동영상 제작	7
	소계					2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홍보동영상 제작비(1111-250-210-01)의 경우, '2024 평화통일 영상자료 제작' 용역사업(1131-300-210-14)의 과업이 기

존 계획보다 많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 일반수용비로 영상제작비 집행 사유 >

(단위: 백만원)

건명	집행액	일반수용비 집행사유
2024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종합영상 제작비	7	예산서 상 영상 제작비가 편성되어 있고,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로 보아 일반수용비로 지출
제21기 미주지역회의 추가 영상 제작비	8	△대통령(의장) 임석에 따른 추가 영상제작 소요 발생, △회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참석 자문위원의 성취감을 제고하기 위해 부득이 추가 제작하였음.
제21기 미주지역회의 자문위원 활동사진 영상 제작비	2	
평화통일 홍보동영상 제작비	7	평화통일 홍보동영상 제작비(1111-250-210-01)의 경우, 예산서 상 영상 제작비가 편성되어 있고, '2024 평화통일 영상자료 제작' 용역사업(1131-300-210-14)의 과업이 기존 계획보다 많이 증가하여 부득이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
합계	2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그러나「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영상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일반용역비 관련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목번호	목	세목(내역)
210	운영비	210-14 일반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또한 ‘2024 평화통일 영상자료 제작’ 용역과 같이 당초 계약 물량보다 과업이 증가한 경우 이·전용 등 예산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일한 성격의 경비를 서로 다른 비목으로 집행할 경우 예산 집행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비목 구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예산집행방식은 적절하지 아니함.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불가피한 소규모의 긴급한 소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성격의 경비가 혼용 집행되지 아니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을 정비하여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나) 지역협의회 운영(1131-301 세부사업)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262]에 따라 구성되는 지역회의[263]와 지역협의회[264]의 운영비와 국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행정실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의회 인건비’, ‘협의회 운영비’, ‘협의회 직무교육’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동 세부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본예산과 동일한 122억 6,500만원이고, 이 중 99.0%인 121억 4,1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2,4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
	본예산	추경					
○ 지역협의회 운영	12,265	12,265	-	12,265	12,141	124	99.0
· 협의회 인건비	9,220	9,220	△7	9,213	9,090	123	98.7
· 협의회 운영비	2,967	2,967	1	2,968	2,967	1	100
· 협의회 직무교육	78	78	6	84	84	-	1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62)「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26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 2023년 12월 31일 기준 23개(국내 18개, 해외 5개)

264)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구성, 2023년 12월 31일 기준 273개(국내 228개, 해외 45개)

최근 3년간 동 세부사업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추진 현황 >

연 도	사업추진 현황
2022년	o 협의회 직원 인건비 매월 지급 o 협의회 운영비 지급(국내 연초 1회, 해외 분기별) o 협의회 직원 직무교육 : 전국단위 개최(1회)
2023년	o 협의회 직원 인건비 매월 지급 o 협의회 운영비 지급(국내 연초 1회, 해외 분기별) o 협의회 직원 직무교육 : 전국단위 개최(1회)
2024년	o 협의회 직원 인건비 매월 지급 o 협의회 운영비 지급(국내 연초 1회, 해외 분기별) o 협의회 직원 직무교육 : 전국단위 개최(3월, 1회)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협의회 인건비·운영비

협의회 인건비는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265]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2024년도에 9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협의회 직무교육 부족분 충당을 위해 700만원을 감 조정한 예산현액 92억 1,300만원 중 98.6%인 90억 9,0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2,300만원은 불용되었음.

265) 국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공무직 근로자(행정실장) 현황

(단위: 명)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북 5도
247	26	17	10	11	6	6	1	6	32	19	12	16	15	23	23	20	3	1

< 2024년도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인건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설치기준	예산현액	집행액	지급기준	비 고
국내 지역회의 (18)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9,213	9,090	매월 29일 행정실장 개인별 지급 (기본급, 수당 등)	매월 1인당 200여만원 실급여 지급
국내 지역협의회 (228)	시·군·구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협의회 운영비는 자문회의 지역조직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정기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에 29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해외 운영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1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예산현액 29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지역회의 및 협의회 운영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지급기준
합 계	**2,963**	**2,963**	
국내 지역회의(18)	194	194	연 1,080만원(연 1회) × 18지역회의
국내 지역협의회(228)	1,477	1,477	연 648만원(연 1회) × 228협의회
해외 지역회의(5)·지역협의회(45)	1,292	1,292	(지역회의)분기당 666만원 × 5지역 × 4분기 (협의회)분기당 644만원 × 45협의회 × 4분기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해외 송금수수료(400만원) 제외)

국내 18개 지역회의에는 '협의회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연 1회 평균 1,080만원)하고,

국내 228개 지역협의회에는 ‘자문위원 수’(60인 이하, 61~100인, 101~140인, 141~180인, 181인 이상)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연 1회 평균 648만원)함.

< 2024년 국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급 기준 >

(단위 : 천원)

<table>
<tr><th>구분</th><th>기본경비
(연, 정액)</th><th colspan="2">관할 협의회 당
추가지급액(연)</th><th>지역회의 수</th><th>지급액</th></tr>
<tr><td>지역회의</td><td>6,440</td><td colspan="2">320</td><td>18</td><td>194,400</td></tr>
<tr><td rowspan="8">지역협의회</td><td rowspan="6">6,190</td><td>자문위원수</td><td>추가
지급액(연)</td><td>협의회 수</td><td>지급액</td></tr>
<tr><td>1~60인</td><td>0</td><td>123</td><td>761,370</td></tr>
<tr><td>61~100인</td><td>430</td><td>53</td><td>350,860</td></tr>
<tr><td>101~140인</td><td>610</td><td>30</td><td>204,000</td></tr>
<tr><td>141~180인</td><td>919</td><td>10</td><td>71,090</td></tr>
<tr><td>181인 이상</td><td>1,320</td><td>12</td><td>90,120</td></tr>
<tr><td colspan="2">소계</td><td>228</td><td>1,477,440</td></tr>
<tr><td colspan="5">총 계</td><td>1,671,840</td></tr>
</table>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해외 5개 지역회의에는 기준(기본경비 130만원, 협의회당 5만원, 사무실 임차료 최대 100만원, 인건비 최대 150만원)에 따라 분기당 489~924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해외 45개 지역협의회에는 기준(기본경비 60만원, 국가 및 도시 등급에 따라 최대 30만원, 자문위원 수에 따라 최대 20만원, 관할 지회당 40만원, 사무실 임차료 최대 100만원, 인건비 최대 150만원)에 따라 분기당 211~1,083만원을 차등 지급함.

< 2024년 해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급 기준 >

(단위 : 천원)

<table>
<tr><th>구분</th><th>기본경비
(연,정액)</th><th colspan="3">관할 협의회 당 추가지급액(연)</th><th>사무실
임차료*</th><th>실무인력
인건비 지원**</th></tr>
<tr><td rowspan="2">지역
회의
(5개)</td><td>15,600</td><td colspan="3">600</td><td>최대
12,000</td><td>최대 18,000</td></tr>
<tr><td colspan="5">소 계(지급액)</td><td>138,480</td></tr>
<tr><td rowspan="9">지역
협의회
(45개)</td><td rowspan="8">7,200</td><td colspan="3">추가 지급액(연)</td><td rowspan="2">사무실
임차료</td><td rowspan="2">실무인력
인건비 지원</td></tr>
<tr><td>자문위원수</td><td>국가·도
시별</td><td>관할 지회수
당</td></tr>
<tr><td>1～49인
(1,200)</td><td rowspan="2">가등급
(3,600)</td><td rowspan="6">4,800</td><td rowspan="6">최대
12,000</td><td rowspan="6">최대 18,000</td></tr>
<tr><td>50~70인
(1,440)</td></tr>
<tr><td>70～100인
(1,680)</td><td rowspan="2">나등급
(3,000)</td></tr>
<tr><td>101～130인
(1,920)</td><td rowspan="2">다등급
(2,400)</td></tr>
<tr><td>131～150인
(2,160)</td></tr>
<tr><td>150인 이상
(2,400)</td><td>라등급
(1,800)</td></tr>
<tr><td colspan="5">소 계(지급액)</td><td>1,153,200</td></tr>
<tr><td colspan="6">총 계(지급액)</td><td>1,291,680</td></tr>
</table>

*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240만원~1,200만원까지 차등 지원 / 실지급액의 최대 70%이내)

** 실무인력을 운영하는 경우(240만원~1,800만원까지 차등지원 / 실지급액의 최대 70%이내)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다) 지역협의회 활동추진(1131-302 세부사업)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따라 구성되는 국내외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 단위의 통일활동 추진에 관한 사업으로,

‘평화통일포럼’, ‘평화통일 시민교실’, ‘지역평화통일활동 지원’, ‘청소년 평화통일공감 사업’,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등 6개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동 세부사업의 2024년도 본예산은 56억 9,800만원, 예산현액은 57억 400만원이고, 이 중 99.5%인 56억 7,900만원이 집행되고 2,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5,698	5,698	6	5,704	5,679	25	99.5
· 평화통일포럼	475	475	△6	469	463	6	98.7
· 평화통일 시민교실	344	344	-	344	344	-	100.0
· 지역평화통일활동 지원	3,555	3,555	44	3,599	3,580	19	99.5
·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1,030	1,030	△27	1,003	1,003	-	100.0
· 해외평화통일정책 강연회	200	200	△5	195	195	-	100.0
·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94	94	-	94	94	-	10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최근 3년간 동 세부사업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 추진 현황 >

연 도	사업추진 현황
2022년	o 국내평화통일포럼 : 51회, 3,190명 참석 o 해외평화통일포럼 : 3회, 420명 참석 o 평화통일시민교실 : 152회, 9,216명 참석 o 국내 평화통일활동 지원 : 183회(강연회·토론회 70회, 통일문화행사 등 113회) o 국내 정기회의 : 4회(분기별), 33,786명 참석 o 해외 평화통일활동 지원 : 162회, 31,716명 참석 o 해외 정기회의 : 3회(1~3분기), 6,401명 참석 o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 212회, 24,032명 참석(국내 161회, 20,985명, 해외 51회, 3,047명) o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 : 14회(대면 12회, 비대면 2회) o 우리고장 평화플랜 : 6회, 594명 참석
2023년	o 국내평화통일포럼 : 34회, 3,625명 참석 o 해외평화통일포럼 : 4회(해외포럼 3회·국제학술회의 1회), 1,174명 참석 o 평화통일시민교실 : 139회, 12,291명 참석 o 국내 평화통일활동 지원 : 122회(강연회·토론회 44회, 통일문화행사 등 78회) o 국내 정기회의 : 4회(분기별), 39,773명 참석 o 해외 평화통일활동 지원 : 165회, 39,508명 참석 o 해외 정기회의 : 3회, 5,898명 참석 o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 229회, 58,950명 참석(국내 168회, 54,773명, 해외 61회, 4,177명) o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 : 14회, 1,175명 참석 o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 3회, 420명 참석
2024년	○ 국내 평화통일포럼 : 17회, 1,703명 참석, 86백만원 ○ 해외 평화통일포럼 : 4회(해외포럼 3회·국제학술회의 1회), 730명 참석 ○ 평화통일 시민교실 : 164회, 18,849명 참석 ○ 국내 지역평화통일활동 지원 : 200회(강연회·토론회 등 48회, 통일문화행사 등 48회, 공모전 등 15회, 견학·체험 등 44회, 청년·여성 등 45회), 236,448명 참석 ○ 국내 정기회의 : 4회(분기별 1회), 38,176명 참석 ○ 해외 지역평화통일활동 지원 : 205회, 41,851명 참석 ○ 해외 정기회의 : 3회, 6,430명 참석 ○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 255회, 61,397명 참석(국내 202회, 57,784명 / 해외 53회 3,613명) ○ 해외 평화통일정책강연회 : 16회, 1,643명 참석 ○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 3회, 386명 참석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평화통일포럼 사업 및 평화통일 시민교실 사업

내역사업 '평화통일포럼'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 및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포럼과 해외포럼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음.

2024년도 국내포럼은 총 17회 개최되어 1,703명이 참석하였고, 해외포럼은 총 4회(해외포럼 3회, 국제학술회의 1회) 개최되어 730명이 참석하였음.

< 최근 4년 국내·외 평화통일포럼 실시내역 >

(단위: 회, 명,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개최 횟수	45	5	51	3	34	4	17	4
참가자	2,458	901	3,190	420	3,625	1,174	1,703	730
예산액	179	186	203	187	180	386	89	386
집행액	**209**	**138**	**188**	**208**	**181**	**404**	**86**	**37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내역사업 '평화통일 시민교실'은 통일·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기반 구축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 지역협의회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음.

동 내역사업은 통일·대북정책, 국민통합, 북한 사회·문화, 역사 등으로 강연 주제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총 164회 개최되어 18,849명이 참여하였고 3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 평화통일 시민교실 개최 실적 >

개최 횟수	참가인원	집행예산	비 고
164	18,849명	344백만원	회당 사업비 210만원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최근 5년 평화통일 시민교실 개최 횟수 및 참가인원 >

연 도	개최 횟수(회)	참가인원(명)
2020년	127	6,714
2021년	132	8,760
2022년	152	9,216
2023년	139	12,291
2024년	164	18,849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지역평화통일활동지원

내역사업 '지역평화통일활동지원'은 지역 단위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및 통일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지역 통일운동을 전개하여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35억 5,500만원에서 4,400만원이 조정 증액된 예산 현액 35억 9,900만원 중 35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지역평화통일활동지원 사업 예산 비교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집행액		2024년 집행액	
		집행내역	집행액	집행내역	집행액
계			2,656		3,580
국내 정기회의		0.6×229개소 ×4분기 (자료집 : 22)	572	0.6×229개소 ×4분기 (자료집 : 61)	611
해외 정기회의		2.8×45개소 ×3회 (자료 번역비 등 : 18)	391	2.35×45개소 ×3회 (자료 번역비 등 : 18)	335
지역회의·협의회 특화사업	국내	3.06×246개소 (여비 : 19)	772	4.54×246개소 (여비 : 20)	1,137
	해외	9.7×95개소	921	11.85×95개소 (용역비 등: 371)	1,49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3)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내역사업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은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국가관·통일관 정립 및 통일의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통일골든벨'과 '찾아가는 통일퀴즈 원정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동 내역사업의 2024년도 예산 현액은 10억 300만원으로, 편성 대비 2,700만원 감액 조정되었으며, 10억 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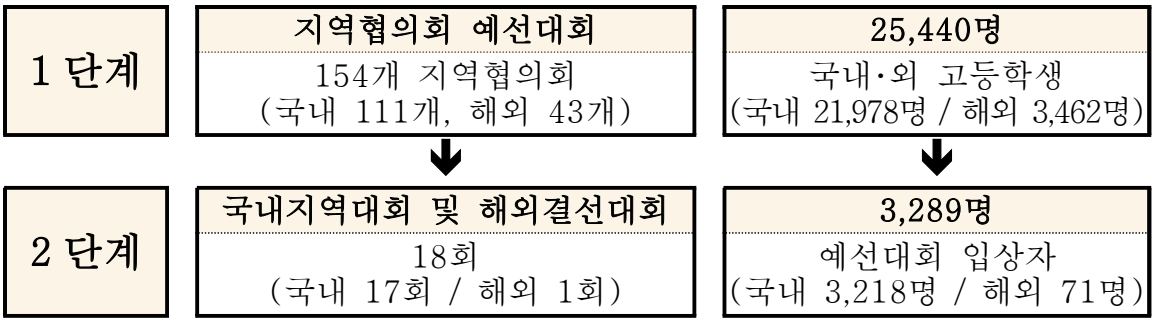
< 최근 4년 청소년평화통일공감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대상	예산액	집행액	참여현황(학생 수)	진행 방식
2021년	중·고등학생	1,000	999	o 총 14,007명 - 통일골든벨: 14,007명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진행
2022년	중·고등학생	830	835	o 총 17,114명 - 통일골든벨: 17,114명	온·오프라인 병행
2023년	중·고등학생	1,030	1,029	o 총 50,016명 - 통일골든벨: 50,016명	온·오프라인 병행
2024년	중·고등학생	1,030	1,003	o 총 61,397명 - 통일골든벨: 28,729명* - 통일퀴즈 원정대: 32,588명(신규) * 국내의 경우 고교생 대상으로 진행	온·오프라인 병행 * 해외골든벨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온라인 참여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청소년 통일골든벨 진행 단계 및 2024년 참가 학생 수 현황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4)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

내역사업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는 통일·대북정책, 통일준비에 대한 재외동포사회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총 16회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총 1,643명이 참석하였음.

동 내역사업의 2024년도 본예산액은 2억원, 예산현액은 편성 대비 500만원 감액 조정된 1억 9,500만원이고, 1억 9,5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 추진 현황 >

(단위: 명)

권 역	주 관	일 자	장 소	주 제	참석 인원	사무처 인원	방식
계(16)					1,643		
일본 (2)	일본서부	6.22.	오리엔탈 호텔	국제관계의 변화와 한일협력	80	2	대면
	일본지역회의	6.24.	한국중앙회관	국제관계의 변화와 한일협력	70	2	대면
중국 (2)	광저우	12.20.	광저우 건국호텔	한반도 글로벌 통일 인식 조사	100	0	대면
	상하이	12.28.	상하이 길상호텔	최근 북한 동향과 '25년 정세 전망	100	0	대면
아시아·태평양 (2)	호주	7.29.	시드니 한인회관	격량의 국제정세 속에 통일·인권문제 바로 알기	90	4	대면
	뉴질랜드	7.31.	The Wharf	격량의 국제정세 속에 통일·인권문제 바로 알기	110	4	대면

권 역	주 관	일 자	장 소	주 제	참석 인원	사무처 인원	방식
미주 (8)	남미서부	4.15.	협의회 사무실	북한인권 실상과 증진 방안	170	0	대면
	로스앤젤레스	6. 7.	가든스위트 호텔	최근 한반도 정세와 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88	2	대면
	오렌지샌디에고	6. 8.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45	2	대면
	오렌지샌디에고	7.12.	가든스위트 호텔	북한인권 실상과 증진 방안	200	0	대면
	뉴욕	10.25.	DMOS Manor	북한 변화와 8.15 통일 독트린	80	5	대면
	필라델피아	10.27.	힐튼 호텔	북한 변화와 8.15 통일 독트린	120	5	대면
	워싱턴	11. 1.	한인 커뮤니티센터	북한 변화와 8.15 통일 독트린	100	7	대면
	밴쿠버	11.23.	쉐라톤 밴쿠버	8.15 통일 독트린과 북한인권	120	0	대면
유럽·중동·아프리카 (2)	중동(사우디)	6. 6.	마다림 호텔	2024 통일 환경의 변화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70	2	대면
	중동(이집트)	6. 8.	포시즌 카이로	2024 통일 환경의 변화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100	2	대면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5)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내역사업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는 평화통일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 통일과제를 발굴하고 실천계획 도출을 위해 2021년도에 신설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9,4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으며, 실적은 국내 3개 지역에서 총 386명이 참석하였음.

< 2024년도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사업 개최 현황 >

(단위: 백만원)

지역	일자	장소	참석	집행액
경기 용인시	5.22.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114명	31
대전 대덕구	9.4.	한남대학교 무어아트홀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107명	31
경남 김해시	11.26.	롯데호텔앤리조트김해 가야홀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165명	3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 시설관리(1100-1132 단위사업)

‘시설관리’ 사업은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호원, 미화원, 조리원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사관리 운영’ 단일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24년도 예산액 3억 9,400만원 중 3억 7,4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청사관리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					
○ 청사관리 운영	394	394	-	394	374	20	94.9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단위사업의 연도별 예산 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청사관리 직원의 경우 2018년도부터 직접 고용방식(무기계약 근로자)으로 전환하여 청소원 3명, 방호원 6명, 조리원 1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음.

< 연도별 시설관리 사업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331	333	366	383	39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Ⅲ.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1. 재정상태표[266]

< 재정상태표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기 2024(A)	전기 2023(B)	변동액 (C=A-B)	변동률 (C/B)
1. 자산합계	28,889	28,905	△16	△0.1
가. 유동자산	-	-	-	-
나. 일반유형자산	28,350	28,355	△5	0.0
다. 무형자산	539	550	△11	△2.0
라. 기타비유동자산	-	-	-	-
2. 부채합계	-	-	-	-
가. 유동부채	-	-	-	-
3. 순자산	28,889	28,905	△16	△0.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66)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재정상태표) ①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재정상태표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 경우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②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가. 자 산[267]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산은 288억 8,903만원으로, 전년 대비 0.1%인 1,591만원이 감소하였음.

유동자산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반유형자산은 283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감소하였는데, 세부내역은 건물 8,800만원 감소, 구축물 1억 700만원 증가, 기계장치 1,900만원 증가, 집기비품 및 차량운반구 1,900만원 감소, 기타일반유형자산 2,400만원 감소임.

무형자산은 5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 감소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소프트웨어 및 기타 무형자산의 신규취득으로 1억 8,400만원이 증가하고, 감가상각으로 1억 9,500만원 감소하였음.

---

267)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②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하 “유산자산”이라 한다)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 보충정보로 공시한다.
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부 채[268]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채로 집계된 금액은 없음.

다. 순자산[269]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순자산은 부채가 없으므로 자산 가액과 같은 288억 8,903만원으로, 전년 대비 0.1%인 1,591만원이 감소하였음.

---

268)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①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6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③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④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2. 재정운영 분석[270)]

< 재정운영표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기 2024(A)	전기 2023(B)	변동액 (C=A-B)	변동률 (C/B)
1. 프로그램순원가	35,085	34,132	953	2.8
2. 관리운영비	-	-	-	-
3. 비배분비용	-	-	-	-
4. 비배분수익	7	20	△13	△65.0
5. 재정운영순원가(1+2+3-4)	35,078	34,112	966	2.8
6. 비교환수익 등	-	-	-	-
7. 재정운영결과(5-6)	35,078	34,112	966	2.8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70)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③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더하고, 제3호의 수익은 빼서 표시한다.
1. 관리운영비: 기관운영비와 같이 기관의 여러 정책이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관리업무비를 말한다)
2. 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3. 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④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제28조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빼서 표시한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가. 프로그램순원가 및 관리운영비[27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프로그램순원가는 350억 8,52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인 9억 5,298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예산 집행의 증가가 프로그램순원가 증가의 주요 원인임.

프로그램순원가의 주요 증감 사례는 인건비(4억 1,800만원 증가), 복리후생비(5,000만원 감소), 인쇄비(4,500만원 감소), 세금과공과(5,900만원 감소), 지급임차료(4억 4천만원 감소), 여비교통비(12억 1,900만원 증가), 외주용역비(6억 5천만원 증가), 보조비(4억 6,900만원 감소) 및 기타 프로그램비용(2억 7,100만원 감소)임.

나. 비배분비용[272]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비배분비용은 없음.

---

271)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지침)
(3) 프로그램순원가
- ㅇ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함.
- ㅇ 행정형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와 같이 징수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함.
- ㅇ 사업형 회계는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과 같이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함

(4) 관리운영비
□ 관리운영비란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함.
□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수행을 위한 관리업무비를 말함.
□ 관리운영비의 범위는 국가회계실체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 ㅇ 행정형 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를 전액 관리운영비로 구분함
- ㅇ 사업형 회계(기업특별회계, 기금): 개별적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기업적인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동 실체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 중 사업의 수행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는 관리운영비로 구분함.

* 사업형 회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는 간접원가로 보아 해당 프로그램에 배부함.

27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①·② (생략)
③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더하고, 제3호의 수익은 빼서 표시한다.
2. 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다. 비배분수익[273]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비배분수익은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0%인 1,300만원이 감소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지출금반납금이 1,800만원 감소하고, 잡이익이 500만원 증가하여 전년 대비 1,300만원 감소하였음.

라. 재정운영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274]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재정운영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는 동일하며 350억 7,784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인 9억 6,537만원이 증가하였음.

---

27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①·② (생략)
③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더하고, 제3호의 수익은 빼서 표시한다.
3. 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274) 재정운영순원가는 해당 국가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뿐 아니라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낮은 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비용을 모두 반영함으로써 전체 재정활동을 통해 소요된 원가를 나타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④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제28조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빼서 표시한다. 다만,「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50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3. 순자산변동 분석[275]

< 순자산변동표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기 2024(A)	전기 2023(B)	변동액 (C=A-B)	변동률 (C/B)
1. 기초순자산	28,905	29,053	△148	△0.5
2. 재정운영결과	35,078	34,112	966	2.8
3. 재원의조달및이전	35,064	33,967	1,097	3.2
4. 조정항목	△2	△2	0	-
5. 기말순자산(1-2+3+4)	28,889	28,905	△16	△0.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가. 기초순자산[276]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초순자산은 289억 500만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대비 변동은 없음.

나. 재정운영결과[277]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재정운영결과는 350억 7,784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인 9억 6,53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재정운

275)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순자산변동표) ①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276)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지침)
Ⅰ. 기초순자산
1. 기초순자산의 정의 및 계정분류
(1) 기초순자산의 정의
기초순자산은 전기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당기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하여 기초순자산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전기에 보고한 금액을 "보고금액"으로 별도 표시하고, 회계정책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이 매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변경누적효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77) 재정운영표에서 산출한 재정운영결과는 순자산변동표의 구성에 포함됨.

영표의 내용과 동일함.

다. 재원의 조달 및 이전[278]

국고수입, 기타재원의 조달 및 국고이전지출 등으로 구성되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350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인 10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음.

라. 조정항목[279]

2024회계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가 상계되어 전년 대비 변동이 없음.

---

278)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지침)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행정형 회계의 비교환수익과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 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를 말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재원의 조달
(가) 국고수입
(나) 부담금수익
(다) 제재금수익
(라) 기타비교환수익
(마) 무상이전수입
(바) 채무면제이익
(사) 기타재원조달
(2) 재원의 이전
(가) 국고이전지출
(나) 무상이전지출
(다) 기타재원이전

279)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지침)
(조정항목) 조정항목은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하는 거래이나, 수익 또는 비용거래나 재원의 조달 및 이전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납입자본의 증감
(2) 투자증권평가손익
(3) 파생상품평가손익
(4) 자산재평가이익
(5)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6) 기타순자산의증감

Ⅳ.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현황 >

조치 결과	구분			소계
	주의	시정	제도개선	
조치 완료	2	-	-	2
조치 중	-	-	1	1
소 계	2	-	1	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건의 주의와 1건의 제도개선 요구를 받았고, 이에 대해 1건은 조치 중, 2건은 조치 완료된 것으로 국회에 보고하였음.

재외동포청 소관 :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I.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 입

< 세입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과 목	세 입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 차 (C-A)	예산액대 수납액 비율 (C/A)
재산수입	-	1	-	-	1	-	-
경상이전수입	-	8,798	8,798	-	0.4	8,798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	4	4	-	-	△5	44.4
합 계	**9**	**8,803**	**8,802**	**-**	**1**	**8,793**	**97,800**

2024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88억 200만원으로 당초 세입 예산액 대비 87억 9,300만원이 증가(97,800%)하였음.

수납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舊 재외동포재단 재산의 국고 귀속 및 과년도 사업비 반납 등임.

< 세입증감액조서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편성대비 증감액		증 감 사 유
	증	감	
11관 재산수입	**1**	**-**	민간단체 보조금의 과년도 반납, 예치 이자 등
54항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	-	
546목 기타재산이자수입	1	-	
12관 경상이전수입	**8,798**	**-**	舊 재외동포재단 재산 국고 귀속, 공관 사업비 및 동포단체 보조금의 과년도 반납 등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8,798	-	
596목 기타경상이전수입	8,798	-	
13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5**	수수료 수입액 감소
65항 면허료및수수료	-	5	
651목 면허료및수수료	-	5	
합 계	**8,798**	**5**	

2. 세 출

가. 개 요

< 세출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율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C/A)	(C/B)		
106,660	109,901	100,700	94.4	91.6	820	8,381

※ 예산현액(109,901백만원) = 당초 예산액(106,660백만원) + 전년도 이월액(3,241백만원)

2024년도 당초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66억 6,0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2억 4,100만원으로 인하여 예산현액이 1,099억 100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 1,007억원을 집행(94.4%)하였고, 8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3억 8,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나. 예비비

해당사항 없음.

다. 전 용

< 전용 개요 >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전 용 사 유	금 액
사업계획 변경 및 기타	**(해외이전)** 러시아 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 사업 예산 조정	392
	(여비)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 초청 및 재외동포 담당관회의 사업 수행 등 여비 부족분 조정	375
	(운영비) 세계한인회장대회 숙박비 집행 및 사할린 위문품 지원사업 수행 등 운영비 확보를 위한 예산 조정	277
	(연구용역비)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위한 예산 조정	174
합 계		**1,218**

2024년도 전용액은 총 12억 1,800만원으로, 러시아 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 사업 예산 조정 3억 9,200만원,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 초청 경비 등 여비 조정 3억 7,500만원, 세계한인회장대회 숙박비 집행 등을 위한 운영비 조정 2억 7,700만원, 재외동포정책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조정 1억 7,400만원이 전용되었음.

라. 이 용

해당사항 없음.

마. 수입대체경비

해당사항 없음.

바. 이 월

< 이월 개요 >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이월사유	금 액
미지급금 이월	연구용역 미완료로 인한 이월	310
	일반용역 미지급금 발생	265
	소 계	**575**
기본사업비 이월	「국가재정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기본경비 이월	245
	소 계	**245**
합 계		**820**

2024년도 이월 규모는 8억 2,000만원으로, 청 출범 이후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일반용역 수행 미지급 등(5억 7,500만원)이 주요 사유임.

사. 불 용

< 불용 개요 >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불 용 사 유	금 액
지급사유 미발생	사업비 지급사유 미발생	384
	소 계	**384**
계획변경 또는 취소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	379
	소 계	**379**
예산 절감	사업 예산 절감	140
	소 계	**140**
환율 변동	집행 환율 변동	2
	소 계	**2**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4,597
	소 계	**4,597**
집행잔액 등	기타 집행잔액 등	2,879
	소 계	**2,879**
합 계		**8,381**

2024회계연도 불용액은 83억 8,100만원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3억 8,400만원, 계획변경 또는 취소 3억 7,900만원, 예산 절감 1억 4,000만원, 환율 변동 200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45억 9,700만원, 집행잔액 등 28억 7,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Ⅱ.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검토의견

1. 개 요

2024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구조를 보면, 재외동포 지원 및 재외동포 행정지원 등 2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1,066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4,100만원으로 인하여 예산현액 1,099억 100만원임. 이 중 1,007억원을 집행하였고, 8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3억 8,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재외동포청 프로그램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2023 결산	2024년				2025 예산
		본예산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계	42,129	106,660	109,901	100,700	91.6	107,063
[5000] 재외동포 지원	24,513	73,965	74,959	71,554	95.5	82,580
[7100] 재외동포 행정지원	17,615	32,695	34,941	29,147	83.4	24,483

2. 총 괄

□ 과도한 예산조정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재외동포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23년 6월 5일 개청된 신설 조직으로, 2024년은 출범 이후 본격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진 첫 회계연도임.

2024년도 재외동포청의 소관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과 달리 다수의 전용, 내역변경, 세목조정이 이루어졌음[280].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의 반복적인 조정이 발생하였고, 특히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5000)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음.

< 2024년 재외동포청 사업의 예산 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일자	구분	감액(~에서)			증액(~으로)		
		세부사업명 (0000-000)	세목 (000-00)	금액	세부사업명 (0000-000)	세목 (000-00)	금액
4.11.	자체 전용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5035-301)	국외업무여비 (220-02)	170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5035-301)	일반용역비 (210-14)	170
5.29.	자체 전용	워킹홀리데이 이행 (5032-301)	일반수용비 (210-01)	3	워킹홀리데이 이행 (5032-301)	국외업무여비 (220-02)	3
7.3.	자체 전용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 (5034-302)	정책연구비 (260-02)	60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 (5034-302)	일반수용비 (210-01)	60
8.14.	자체 전용	워킹홀리데이 이행 (5032-301)	일반수용비 (210-01)	3	워킹홀리데이 이행 (5032-301)	국외업무여비 (220-02)	3
9.5.	승인 전용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5035-301)	민간경상보조 (320-01)	392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5035-301)	해외경상이전 (340-01)	392

280) 2024년의 경우 자체전용 및 기획재정부 승인전용은 14회, 내역변경은 8회, 세목조정은 72회가 이루어짐.

일자	구분	감액(~에서)			증액(~으로)		
		세부사업명 (0000-000)	세목 (000-00)	금액	세부사업명 (0000-000)	세목 (000-00)	금액
9.19.	자체 전용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5035-302)	일반용역비 (210-14)	10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5035-302)	정책연구비 (260-02)	10
9.30.	자체 전용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정보화) (7131-302)	일반수용비 (210-01)	42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정보화) (7131-302)	일반연구비 (260-01)	42
9.30.	자체 전용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5035-301)	국외업무여비 (220-02)	7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 (5031-301)	국외업무여비 (220-02)	7
10.11.	자체 전용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 (5034-302)	국외업무여비 (220-02)	17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 (5034-302)	일반수용비 (210-01)	16
						임차료 (210-07)	1
10.25.	자체 전용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 (5034-301)	일반용역비 (210-14)	80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 (5034-301)	정책연구비 (260-02)	80
10.28.	자체 전용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5033-301)	국외업무여비 (220-02)	30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5033-301)	일반용역비 (210-14)	30
11.19.	자체 전용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활성화 (5035-304)	일반용역비 (210-14)	345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활성화 (5035-304)	국외업무여비 (220-02)	345
11.22.	자체 전용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5033-302)	일반수용비 (210-01)	6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5033-302)	국외업무여비 (220-02)	18
			임차료 (210-07)	12			
11.22.	자체 전용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7121-301)	일반수용비 (210-01)	42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7121-301)	일반연구비 (260-01)	42

※자료: 재외동포청

이는 재외동포청의 초기 기획·편성 역량 부족과 더불어, 부처 간 협의 지연, 조직 및 사업계획 수립의 미비 등 출범 초기 행정역량 한계로 인해 예산의 본래 목적에 따라 집행되지 못하고 다수의 변경이 이루어진 결과로 보임.

국가 예산의 조정제도는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에도 집행 과정에서의 변화된 상황이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예산 항목 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하

고 행정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이러한 예산조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이 집행단계에서 자의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 저하, 편법 집행 가능성 등의 문제점로 이어질 수 있음.

예산조정은 필연적이고 유용한 제도이지만, 남용될 경우 예산 통제 및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재외동포청은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용 등 예산조정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3. 재외동포 지원

가. 개 요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별·분야별·세대별 맞춤형 동포지원 및 재외동포사회와의 교류증진을 통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으로 7개의 단위사업과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 예산액은 739억 6,500만원이고, 715억 5,400만원이 집행됨.

<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B)	
				본예산	추경(A)		
[5000] 재외동포 지원			24,515	73,965	73,965	71,554	82,580
	[5031]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		830	3,065	3,065	2,976	4,673
		[301]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	830	906	906	904	1,006
		[302]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	-	2,159	2,159	2,072	1,917
		[302] 동포간담회 개최 (※ 2025년 신규사업)	-	-	-	-	1,750
	[5032] 글로벌 인재양성		295	922	922	901	589
		[301] 워킹홀리데이 이행	295	665	665	653	532
		[302]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	257	257	248	57
	[5033] 재외동포 권익향상		666	1,410	1,410	1,231	1,696
		[301]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339	728	728	645	582
		[302]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327	682	682	587	1,114
	[5034] 지역별 재외동포 정책 강화		1,484	10,022	10,022	9,790	10,100
		[301]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	384	820	820	607	131
		[302] 아주러시아동포 정책 강화	1,100	9,202	9,202	9,182	9,969
	[5035] 세대별 분야별 재외동포 협력지원		7,655	33,105	33,105	31,207	33,556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B)	
				본예산	추경(A)		
		[301]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2,679	7,100	7,100	6,569	6,972
		[302]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1,808	22,194	22,194	21,288	22,652
		[303] 재외동포 차세대 및 인권지원	1,398	1,353	1,353	1,313	1,283
		[304]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활성화	1,770	2,458	2,458	2,036	2,649
	[5036] 재외동포정책 기반조성		420	1,687	1,687	1,695	4,209
		[301] 공보·홍보 역량강화	420	1,687	1,687	1,695	4,209
	[5037] 재외동포협력센터		13,165	23,754	23,754	23,754	27,757
		[302]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13,165	23,754	23,754	23,754	27,757

나.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5032-302)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은 차세대 재외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단기 인턴 활동을 통해 모국 연계 및 국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 및 거주국과 모국 간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257	-	-	-	257	248	-	9	96.5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은 2억 5,700만원으로, 이 중 2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은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5%임.

□ 청년인턴십의 실효성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필요

동 사업은 만 20세부터 34세까지의 차세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6개월 이내의 단기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청년인턴은 재외공관에서 공공외교, 영사업무, 홍보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를 경험함으로써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향후 재외동포 인적자원의 정책적 활용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24년도에는 재외공관의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총 18개 재외공관에서 24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하였고, 인턴십 기회를 부여받은 청년인턴은 각 공

관에서 공공외교, 영사서비스 지원, 홍보 및 문화행사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공관별 여건에 맞추어 단기 실무과제를 수행하였음.

< 2024년 재외공관별 청년인턴 선발 현황 >

재외공관	선발(명)	재외공관	선발(명)
주뉴욕(총)	2	주멜번(분)	2
주LA(총)	1	주카자흐스탄(대)	2
주휴스턴(총)	1	주프랑크푸르트(총)	1
주일본(대)	2	주상파울루(총)	1
주오사카(총)	3	주오클랜드(분)	1
주러시아(대)	1	주프랑스(대)	1
주토론토(총)	1	주인도네시아(대)	1
주밴쿠버(총)	1	주태국(대)	1
주호주(대)	1	주키르기즈(대)	1

※(대): 대사관, (총): 총영사관, (분): 분관

※자료: 재외동포청

동 사업은 차세대 재외동포 청년에게 국정참여 및 외교 현장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인턴십 과업의 내용과 수준이 공관별로 상이하여,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턴이 수행한 업무의 전문성·실효성에는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공관에서는 인턴에게 단순 행정지원 위주의 업무만을 배정하여 교육적 효과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임.

< 재외동포 청년인턴의 재외공관 담당업무 >

재와공관명	과업(담당업무)
주인도네시아(대)	[영사] 민원안내, 동포행사 지원
주카자흐스탄(대)	[영사] 고려인 동포행사 지원, 고려인 동포 관련 SNS 영상 제작 등
주토론토(총)	[경제] 캐나다 경제 분야 조사 및 연구
주프랑크푸르트(총)	[정무],[홍보] 정무, 문화홍보, 통번역
주오클랜드(분)	[홍보] 문화,공공외교보조,SNS 관리, 재외동포
주오사카(총)	[영사] 민원안내, 동포행사 지원
주일본(대)	[영사] 민원안내, 동포행사 지원
주밴쿠버(총)	[홍보] 재외동포 · 공공외교 · 보훈행사지원
주호주(대)	[영사] 재외공관 업무 지원
주휴스턴(총)	[홍보] 공관 SNS 관리 및 콘텐츠 제작, 공관 행사 홍보 및 취재, 서포터즈 운영 등
주키르기즈(대)	[홍보] 재외동포, 공공외교 업무 지원
주러시아(대)	[영사] 영사서비스 업무 지원
주프랑스(대)	[홍보] 공공외교, 문화, 재외동포 행사 준비, SNS 콘텐츠 제작, 통번역 업무 등
주멜번(분)	[홍보] 공공외교
주상파울루(총)	[영사] 정무, 동포 업무 지원
주태국(대)	[영사] 영사과민원인방문안내등
주뉴욕(총)	[영사] 동포팀업무지원
주LA(총)	[영사] 민원실 업무 지원, 민원환경 및 서비스 개선방안 검토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동 사업은 2024년 2억 5,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신규로 도입되되었으나,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2억원이 감액된 5,700만원만이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2025년 청년인턴 채용 규모도 5명 수준으로 축소된 상황임. 이러한 급격한 예산 감축에 따라 향후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제기되고 있음.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이 국정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당초의 정책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영사

및 홍보 분야의 보조적인 업무에 한정되어 있는 청년인턴의 과업 분야를 정무, 경제 분야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2024년 사업 운영 결과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 및 정량적 성과지표, 2025년 재외공관의 수요[281]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산당국과의 협의 과정[282]에서 사업 필요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고, 중장기적인 예산 확보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281) 2025년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수요조사 개요
○ (기간) 2025. 1. 12. ~ 30.
○ (대상) 전 재외공관
○ (회신 공관) 35개 공관, 인턴 40명 수요 파악
- '24년 사업 운영 공관 18개 중, 15개 공관 재신청(83.3%)
○ (근무형태) ▲주 2회 4시간(2개 공관) ▲주 2회 8시간(1개 공관) ▲주 4회 8시간(1개 공관)
▲주 5회 4시간(8개 공관) ▲주 5회 8시간(23개 공관) 등

282) 재외동포청은 2026년 예산안을 2024년 사업 규모(25명) 수준인 3억 5,500만원으로 증액 요청하였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에 있음.

다.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5033-302)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사업은 재외동포정책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국민여론, 동포사회 분위기 등을 조사·수렴하여 성공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제고」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682	66	-	-	748	587	106	55	78.4

2024년도 예산액 6억 8,2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6,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억 4,800만원 중 1억 600만원은 이월되고 5,5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5억 8,700만원은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8.4%임.

□ 재외동포 긴급 지원 예산의 집행 적정성 및 체계 개선 필요

‘해외 위난 재외동포 긴급 지원’은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생필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역사업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의 내내역사업 중 하나임. 2024년도 예산액은 일반수용비(210-01)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1,500만원을 집행하였음.

재외동포청은 정책의 중점 추진방향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정책 강화”를 설정한바,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283]을 제정(2024. 2. 28.)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면서 해외 위난 상황에 처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 위난에 대한 재외동포 지원 개요 】

○ **(지원 내용)** 식품·의류 침구 등 생필품, 의약품, 임시거소 등 지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재외동포단체가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신청서 제출

동 사업의 2024년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재외동포단체인 쿠바한글학교의 요청에 따라 발전기 가동에 필요한 물품과 선풍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 1,5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내구연한이 있는 발전기 등은 일반적으로 자산취득의 성격의 물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의 편성 비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서 예산 집행지침[284]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83)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위난"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해외재난
나.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다.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유지 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
2. "지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별 해외위난 극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을 말한다.
가. 급식・식품・의류 침구 및 기타 생필품 또는 비용 지원
나. 의약품을 포함한 구호물품・장비 또는 비용 지원
다.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기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현물 또는 비용 지원

284)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일반수용비는 각종 물품 구입, 공공요금 납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용 물품 구입, 인쇄 및 유인비, 소모성 물품

< 해외 위난 재외동포 긴급 지원 사업 집행 내역 >

내내역사업명	비목	집행명	집행일시	집행 물품 내역	집행액 (백만원)
해외 위난 재외동포 긴급 지원	일반수용비 (210-01)	쿠바지역 해외 위난 지원 경비 공관 송금	2024.11.21.	발전기 2대 발전기 부품, 연료 배터리 세트 충전식 선풍기 차양막 및 철망	15

※자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은 쿠바 현지의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로 생활용수 공급, 냉장고 가동, 냉방 등 필수적인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쿠바 한글학교에서 필요한 항목을 명시하여 요청함에 따라, 구호품 이송에 소요되는 시간 및 운송비용, 현지 물가 등을 고려하여 지침 제6조제2항[285]에 따라 관할 공관의 감독하에 해당 단체에서 필요한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도록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함.

향후 재외동포청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과목 성격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비목을 사전에 검토 및 조정하여 예산의 목적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구입비,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등의 용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85)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6조(지원물품 및 지원금의 교부) ① 재외동포청장은 지원을 결정한 경우 지원 물품 또는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대상단체에 알려야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하여 지원대상단체에 지원물품 또는 지원금을 교부한다. 지원물품 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지원대상단체가 허위로 긴급지원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라.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5034-301)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 사업은 미주·유럽 지역의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시행과 더불어, 전 지역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위상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820	39	-	-	859	607	147	105	70.7

2024년도 예산현액은 8억 5,900만원으로, 이 중 6억 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 1억 4,700만원과 불용액 1억 5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연구용역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 필요

재외동포청은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도에 연구용역비 3억 6,200만원을 집행하여 연구용역 7건을 추진하였으나, 이 중 5건에서 예산 이월이 발생함.

< 2024년 연구용역비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 기간	수행기관	공개 여부	계약 방법
2024 재외동포 한민족 정체성 함양지수 조사	21	-	21	2024.11. ~2025.2.	글로벌리서치 이엑스	비공개	제한경쟁 계약
2024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용역	22	22	-	2024.9. ~2024.12.	주식회사 케이스탯컨설팅	비공개	수의계약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 기간	수행기관	공개 여부	계약 방법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해외입양동포 실태조사	45	45	-	2024.8. ~2024.12.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공개	수의계약
재외동포기업 모국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	**95**	**-**	**95**	**2024.12. ~2025.5.**	**인하대학교 산학 협력단**	**-**	**수의계약**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 연구용역	**80**	**64**	**16**	**2024.12. ~2025.6.**	**한양대학교 에리카 산학협력단**	**-**	**제한경쟁 계약**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북미 지역 재외동포정책 연구 용역	49	42	7	2024.10. ~2025.2.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비공개	제한경쟁 계약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중남미 지역 재외동포정책 연구 용역	50	42	8	2024.10. ~2025.2.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비공개	제한경쟁 계약

※자료: 재외동포청

특히 '재외동포기업 모국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 및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 연구용역' 2건의 경우에는 2024년 10월에 일반용역비(210-14)의 전용 및 일반연구비(260-01)의 세목조정을 통하여 예산을 신규로 마련하였고, 입찰공고를 통하여 12월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음.

이는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구용역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점에 추진한 사례로서, 사업 추진의 시기적 부적절성으로 인해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 사업의 연구용역비 조정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내역사업명	목-세목 코드		내역사업명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10.18.)	조사연구 활성화	일반연구비 (260-01)	56	조사연구 활성화	정책연구비 (260-02)	국내 체류 동포 실태조사를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적정 예산 확보 필요
내역사업 간 조정 (2024.10.18.)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지위향상	정책연구비 (260-02)	40	조사연구 활성화	정책연구비 (260-02)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내역사업명	목-세목 코드		내역사업명	목-세목 코드	
전용 (2024.10.25.)	조사연구 활성화	일반용역비 (240-14)	80	조사연구 활성화	정책연구비 (260-02)	재외동포기업의 국내 정착 지원 정책연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확보 필요

※자료: 재외동포청

「국가재정법」 제46조[286]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자체전용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행 자체의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다만, 예산집행지침은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하는 한편,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외동포청은 연구용역 예산 및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

286)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 ~ ⑥ (생 략)

4. 재외동포 행정지원

가. 개 요

「재외동포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제도개선 및 민원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해 재외동포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5개의 단위사업과 1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 예산액은 326억 9,500만원이고, 291억 4,700만원이 집행됨.

< 재외동포 행정지원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B)	
				본예산	추경(A)		
[7100] 재외동포 행정지원			17,615	32,695	32,695	29,147	24,483
	[7101] 인건비		3,059	12,721	12,721	8,451	10,214
		[101] 인건비	3,059	12,721	12,721	8,451	10,214
	[7111] 기본경비		1,582	5,683	5,683	5,122	5,856
		[201]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330	1,270	1,270	927	1,240
		[202] 대변인실 기본경비(총액)	-	3	3	3	5
		[203]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	-	18	18	12	18
		[204]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기본경비(총액)	-	11	11	10	18
		[205] 재외동포정책국 기본경비(총액)	-	13	13	12	21
		[206] 교류협력국 기본경비(총액)	-	12	12	12	20
		[251] 기관운영 기본경비	1,252	2,777	2,777	2,274	2,374
		[252] 대변인실 기본경비	-	33	33	30	33
		[253]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	188	188	149	188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		결산(B)	
				본예산	추경(A)		
		[254]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기본경비	-	1,264	1,264	1,608	1,752
		[255] 재외동포정책국 기본경비	-	47	47	43	140
		[256] 교류협력국 기본경비	-	47	47	42	47
	[7112] 사무환경조성		5,459	-	-	1,325	-
		[251] 사무환경 조성	5,459	-	-	1,325	-
	[7121]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	300	300	212	260
		[301]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	300	300	212	260
	[7131] 재외동포 정보화		7,514	13,991	13,991	14,037	8,153
		[301]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501	4,703	4,703	4,507	4,041
		[302]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정보화)	3,687	6,954	6,954	7,244	2,212
		[30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326	2,334	2,334	2,287	1,900

나. 인건비(7101-101)

「인건비」 사업은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

< 인건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12,721	-	-	-	12,721	8,451	-	4,270	66.4

2024년도 예산액은 127억 2,100만원으로, 이 중 84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42억 7,000만원은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6.4%임.

□ 인건비 예산 불용률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재외동포청의 인건비는 「재외동포청 직제」 제12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및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9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따라 정원 151명을 기준으로 편성되고 있음.

2024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인건비의 33.6%에 해당하는 42억 7,0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함.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상당 규모의 인건비 예산 불용에 대해 2023년 개청 이후 지속된 정·현원 차이, 재외동포청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 직원의 보수 지급 기관, 편성 단가와 실제 보수 지급 금액 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설명하고 있음.

< 인건비 비목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인건비	12,721	12,721	-	-	-	12,721	8,451	-	4,270	10,214
- 보수(110-01)	12,622	12,622	-	△4	-	12,617	8,399	-	4,219	10,125
- 기타직보수(110-02)	-	-	-	4	-	4	4	-	-	-
- 연가보상비(110-05)	99	99	-	-	-	99	47	-	52	89

※자료: 재외동포청

우선, 2024년 재외동포청의 월별 정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4명의 공석이 유지되고 있음. 이는 2023년 6월 개청 당시 정원 151명 대비 현원 47명으로 정원상 104명이 부족하던 상황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충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인력 부족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여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보임.

< 2024년 재외동포청 정현원 현황 >

(단위: 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정원(A)	151	151	151	151	151	151	151	151	151	151	151	151
	현원(B)	135	137	138	142	137	137	137	133	136	138	139	139
	초과현원 (B-A)	△16	△14	△13	△9	△14	△14	△14	△18	△15	△13	△12	△12

※자료: 재외동포청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제2항[287]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파견된

287)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②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이 파견 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는 기관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2024년 기준, 재외동포청은 직제상 정원에 포함된 타 부처 파견 공무원 15명 중 5명(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관세청 소속 각 1명)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 이는 「재외동포청 직제」 제12조제3항[288]에 따라 타 부처 직무파견 인력이 정원에 포함되어 예산상 인건비가 편성되었음에도,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건비 예산 불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재외동포청은 향후 인력운영 계획과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정원과 현원 간 괴리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고, 직무파견 인력의 보수 분담 방식에 대한 협의를 체계화함으로써, 인건비 예산의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88) **「재외동포청 직제」**
제12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③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교육부, 5명(5급 3명, 7급 2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7급 1명)은 국가보훈부, 1명(7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국세청, 1명(7급 1명)은 관세청, 3명(5급 2명, 7급 1명)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다.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7121-301)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사업은 신설조직인 재외동포청의 성과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 내 소통강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청렴 문화 정착 및 법제지원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통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청렴문화 정착 및 법제지원 강화」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300	-	-	-	300	212	7	81	70.6

2024년도 예산액은 3억원으로, 이 중 700만원은 이월되고 8,1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2억 1,200만원은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0.6%임.

□ 수요 대비 과다 편성된 소송예산의 불용 문제

내역사업 「청렴문화 정착 및 법제지원 강화」는 재외동포청 내 청렴교육 및 감사 자문을 통해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구성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검토 등 법제지원과 함께 소송업무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2억 1,900만원이고, 이 중 2억원은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편성되었음.

< 청렴문화 정착 및 법제지원 강화 사업의 편성근거 및 집행내역>

편성근거	집행내역
■ 일반수용비(210-01): 219백만원 - 청렴 관련 교육 강사비: 1백만원 - 감사 관련 전문가 자문: 3백만원 - 감사장 설치·운영: 2백만원 - 감사 관련 사례집 발간: 1백만원 - 법령검토 자문 등 지원: 10백만원 - 소송대리인 선임: 200백만원 - 소송업무 참고자료 구입 등: 3백만원	■ 131백만원 - 청렴문화 정착: 16백만원 · 감사장 운영(복무평가, 자체감사 등), 청렴문화 정착 관련 기념품 제작, 감사 관리자 및 실무자교육 - 법제지원 강화: 82백만원 · 법률자문, 해외 법률서비스 구독료, 개혁TF 회의, 정부혁신 박람회 참여(부스 설치비 등) - 적극행정 추진 지원: 18백만원 - 조직진단 용역 선금: 15백만원

※자료: 재외동포청

그런데 세부 집행 내역을 확인해보면,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편성된 2억원 전액이 불용되었고, 해당 예산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일반용역비와 일반연구비로 일부 전용되어 집행되었음.

<청렴문화 정착 및 법제지원 강화 사업의 비목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청렴문화 정착 및 법제지원 강화	219	219	-	-	-	219	131	7	81	180
- 일반수용비(210-01)	219	219	-	△72	-	147	66	-	81	180
- 일반용역비(210-14)	-	-	-	50	-	50	50	-	-	-
- 일반연구비(260-01)	-	-	-	22	-	22	15	7	-	-

※자료: 재외동포청

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타 중앙부처의 사례(외교부 4억원, 국토교통부 5억원, 해양수산부 2억 7,00만원)를 참고하여 2억원을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에는 실제 소송이 발

생하지 않아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례는 재외동포청이 소송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타 중앙부처의 사례를 일률적으로 준용하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로 볼 수 있음. 특히, 소송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신설 기관의 특성과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소송 제기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타 부처 수준의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한 것은 기관의 특수성과 실제 소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에는 소송의 발생 가능성 및 예상 소요 수준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의 계획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재외동포협력센터

가. 개 요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 등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외동포기본법」[289]에 따라 설립[290]된 재외동포청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임.

나. 수 입

2024년도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수입은 정부출연금 237억 5,400만원, 자체수입 6,900만원을 합쳐서 총 238억 2,300만원임.

---

289)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
2.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
3.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장과 필요한 임직원을 둔다.

⑤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립,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90) 「재외동포기본법」 공포(2023. 5. 9.)에 따라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 개청과 함께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설립됨.

< 재외동포협력센터 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증 감	예산현액(A)	결 산(B)	차 액 (B-A)	집행률 (B/A)
총 계	23,754	-	23,754	23,823	69	100.3
1. 정부출연금	23,754	-	23,754	23,754	-	100.0
2. 자체수입	-	-	-	69*	69	-
- 이자수입	-	-	-	10	10	-
- 잡수익	-	-	-	59	59	-

* 자체수입 예산 미편성에 따라 전액 반납

다. 지 출

2024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 37억 1,000만원, 경상운영비 11억 6,900만원, 사업비 188억 7,500만원으로, 총 237억 5,400만원 중 205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22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8,2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재외동포협력센터 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증 감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D=A-B-C)	집행률 (E=(B+C)/A)
1. 인건비	3,710	-	3,710	3,710	-	-	100.0
2. 경상운영비	1,169	-	1,169	899	233	37	96.8
3. 사업비	18,875	-	18,875	15,973	2,057	845	95.5
계	**23,754**	**-**	**23,754**	**20,582**	**2,290**	**882**	**96.3**

< 재외동포협력센터 사업비 등 세출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결산	2023결산	2024년			2025예산
			예산(A)	결산(B)	B/A	
총 계	-	11,282	23,754	22,872	96.3	27,757
□ 인건비	-	3,161	3,710	3,710	100.0	3,821
□ 경상운영비	-	1,103	1,169	1,132	96.8	1,169
□ 사업비	-	7,018	18,875	18,030	95.5	27,757
1. 차세대육성사업	-	2,486	8,020	7,997	99.7	9,166
- 차세대육성사업	-	2,486	8,020	7,997	99.7	9,166
2. 재외동포 장학사업	-	1,744	4,200	3,664	87.2	4,074
- 재외동포 장학사업	-	1,744	4,200	3,664	87.2	4,074
3. 동포지원사업	-	898	3,867	3,609	93.3	630
- 동포지원사업	-	898	3,867	3,609	93.3	630
4. 민족교육 육성	-	635	472	464	98.4	339
- 민족교육 육성	-	635	472	464	98.4	339
5. 기록전시운영	-	235	315	308	97.7	154
- 기록전시운영	-	235	315	308	97.7	154
6.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	- (647)*	- (7,809)	- (-)	- (-)	7,203 (7,809)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	- (647)	- (7,809)	- (-)	- (-)	7,203 (7,809)
7. 통합네트워크 지원	-	1,020	2,001	1,989	99.4	1,201
- 통합네트워크 지원	-	1,020	2,001	1,989	99.4	1,201

* 2023년 및 2024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 ) 안은 재이월액임.

라. 검토의견

1) 동포지원사업

「동포지원사업」은 세계한인 정치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인 정치인의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확대 및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지원을 통한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계한인정치인포럼」,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개발」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 동포지원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5 예산액
		추경·전용	내역조정					
동포지원사업	3,580	-	-	3,867	2,874	735	258	630
▪세계한인정치인포럼	580	-	287	867	813	-	54	580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개발	3,000	-	-	3,000	2,061	735	204	50

2024년도 예산현액은 38억 6,700만원으로, 이 중 28억 7,4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 7억 3,500만원과 불용액 2억 5,8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신규사업 편성 시 중장기 추진전략 및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개발」 사업은 급격한 재외동포 사회의 세대교체와 다문화·다중 정체성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차세대 동포의 한민족 정체성을 고취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에 신규로 추진된 사업임.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유튜브 영상, 다큐멘터리, 웹툰, 캠페인 영상 등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중심의 홍보사업을 기획하였고, 2024년도 예산액으로 30억원을 편성하여 외부 전문제작사와의 협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 플랫폼 운영, 특별 방송 제작, 서포터즈 운영 등을 추진하였음.

<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개발 사업 세부실적 >

ㅇ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제작 및 재외동포 홍보 통합 SNS 플랫폼 운영
-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저작권 분석
- SNS 플랫폼 활성화 전략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 콘텐츠 제작
  • SNS 플랫폼: 유튜브(자랑스런 재외동포, 재외동포협력센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 유튜브 본영상 70건 외, 하이라이트 쇼츠, 카드뉴스 300건 등 제작
- 콘텐츠 시리즈 브랜딩 및 참여형 이벤트 운영 등
ㅇ 한인 정체성 함양 특별기획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소개를 통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 재외동포청 제작 콘텐츠(2023년) 후속 특별기획 콘텐츠 제작
  • 유튜브 본영상 25건 및 하이라이트 쇼츠 50여건 등 제작
  • (히스텔링) 재외동포 역사·인물·모국기여 사례
  • (차세대 인간극장) 거주국에서 모범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차세대 동포 이야기
  • (오! 코리아!) 모국문화 체험을 통한 뿌리찾기 프로젝트
ㅇ 재외동포 관련 특별 테마방송 제작 및 송출
- 주요 테마를 활용한 방송 프로그램 및 다큐멘터리 제작
  • 재외동포 특집 KBS 동네한바퀴(299회 카자흐스탄, 300회 우즈베키스탄) 2부작
  • 글로벌 휴먼기행 김영철이 간다(아르헨티나, 미국) 2부작
  • 700만개의 아리랑 1부작
- 재외동포 홍보 통합 SNS 플랫폼용 콘텐츠 제작 및 홍보
ㅇ 재외동포 홍보 통합 플랫폼 서포터즈 'KrossOveR' 운영
- 국내외 차세대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숏폼 영상, 단편 웹툰 등 월 20여편 / 활동기간 중 총 150편 제작
- 활동인원: 30명(재외동포 11개국 16명, 내국민 14명)
- 활동기간: 2024. 8월~2025. 2월, <7개월>

※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그러나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지 1년 만에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2025년에는 관련 예산이 5,0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되면서, 사실상 신규 콘텐츠 기획·제작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이로 인해 제작 추진 중이던 일부 콘텐츠의 활용계획 미비, 외부 용역 및 제작에 투입된 예산의 집행 효과 미흡, 정책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콘텐츠 기획·제작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과 시간이 요구되는 중장기 사업이므로, 충분한 사전 수요조사 및 정책 연계 계획을 토대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동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의 장기적 추진전략 및 예산 확보 계획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는, 현행 「재외동포기본법」[291]상 재외동포 대상 홍보 사업이 센터의 수행 기능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 사업이 본래 기능과 부합하나, 재외동포청이 현재 수행 중인 국내외 재외동포 대상 홍보 사업과의 기능 중복을 고려한 정책적 변화[292]를 반영한 사항이라고 설명함.

향후 재외동포협력센터는 기관의 고유 기능과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를 고려하여 신규사업을 발굴·

---

291)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

292)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업무 범위 중 재외동포 대상 홍보 사업을 삭제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2025. 3. 11.)되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검토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집행의 일관성,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사업은 차세대동포 정체성 함양 및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재외동포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재외동포와 내국인 간 상호이해·존중 바탕의 사회통합 및 한인 역량 결집을 위한 전시, 아카이브, 교육·연수, 조사연구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할 계획임.

< 2024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5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추경 등	내역조정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	7,809	-	-	7,809	-	7,809	-	7,203
▪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축	-	7,809	-	-	7,809	-	7,809	-	7,203

동 사업은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24년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전년도 이월액인 78억 900만원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실행력 제고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 필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사업은 당초 구 재외동포재단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외동포 관련 상징적 시설물 건립을 위하여 2021년부터 외교부 예

산에 반영하여 시작한 사업으로, 정부출연금 252억 5,300만원과 동포사회 기부금 47억 2,1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99억 7,4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에 해당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293]임.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개요 >

○ 사업명: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축
○ 사업기간: 2021년~2025년, <5년>
○ 설계기간: 2023. 1. 25.~2025. 8. 29.
○ 위치: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
○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063㎡
○ 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문화 및 집회시설
○ 총사업비: 29,974백만원
- 출연금 25,253백만원, 기부금 4,721백만원
○ 주요 기능
- 해외이주 역사유물전시관
• 급속히 소실되어가는 재외동포 이주 역사 및 유물 수집, 전시
• 전시자료·미전시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동포 자녀 및 내국민에 대한 올바른 이주 역사 교육
- 정체성 함양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차세대동포 대상 한국어, 한국 역사·문화, 한국 예절 교육 등 관련 상시적·전문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중국·CIS지역 등 소실되어가는 우리 민족교육의 일선 교사들을 위한 국내 초청연수
-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
• 재외동포와 내국민이 함께하는 각종 화합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 재외동포 특강, 포럼, 토론회 등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제고 프로그램 상설화

※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293)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아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2.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3.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선박·항공기 건조사업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동 사업은 당초 2021년 부지 선정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부지 검토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면서 당초 계획된 부지 확보가 무산되었고, 2024년에 대체부지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부지를 최종적인 위치로 확정하여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음.

이처럼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관련 예산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이관된 이후에도 계속 이월되고 있는 실정임.

세부적으로 보면, 2021년과 2022년에 편성된 설계비 및 건축비 총 84억 5,6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고, 2023년과 2024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2024년까지 집행된 예산은 2023년에 기본조사 및 설계비로 집행한 6억 4,700만원이 전부인 상황임. 2025년에는 공사비 예산으로 72억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78억 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0억 1,200만원임.

< 최근 5년간 예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추경 등	내역 조정				
2021	1,270	-	-	-	1,270	-	1,270	-
2022	7,186	1,270	-	-	8,456	-	8,456	-
2023	-	8,456	-	-	8,456	647	7,809	-
2024	-	7,809	-	-	7,809	-	7,809	-
2025	7,203	7,809	-	-	15,012	-	-	-

※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3년 1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 시작된 기본설계가 그간의 예상하지 못한 지연 상황을 거치면서 2025년 6월에 완료된 바, 향후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명을 따르더라도 실시설계는 2026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후 공사입찰 및 계약, 착공 등을 거쳐 최종적인 준공은 2028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재외동포협력센터는 관계 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는 물론, 실시설계 및 공사 계약 등 제반 절차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향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계획된 일정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Ⅲ. 재외동포청 통합 재무결산 분석

1. 총 괄

국가재정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을 근간으로 한 「국가회계법」이 제정(2007. 9)되고, 결산보고서의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한 개정「국가회계법」(2008. 12)이 시행되고 있는바,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는 2009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모든 기금에 대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의 국회제출이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의무화되었음.

이하에서는 재외동포청 일반회계에 대한 통합재무제표를 분석하고자 함.

2. 재정상태표[294]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4(A)	2023(A)	증 감(A-B)	
				금 액	비 율
자 산	일반회계	21,219	7,989	13,230	165.6
부 채	일반회계	-	103	△103	순감
순자산	일반회계	21,219	7,886	13,333	169.1

294)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가. 자 산[295]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자산은 전년 대비 132억 3,000만원 증가한 212억 1,9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은 3억 7,000만원 감소 했지만, 무형자산이 113억 6,900만원 증가하고, 일반유형자산이 20억 1,8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2억 7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나. 부 채[296]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부채는 전년 대비 1억 300만원 감소한 0원으로 주요 요인은 유동부채 9,000만원, 장기충당부채 1,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기 때문임.

다. 순자산[297](=자산-부채)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순자산은 전년 대비 133억 3,300만원 증가한 212억 1,900만원으로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따른 것임.

---

295)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하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성자산으로 구분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296)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하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등으로 구분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297)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으로 구분함.

3. 재정운영표[298]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4(A)	2023(A)	증 감(A-B)	
				금 액	비 율
Ⅰ.프로그램순원가	일반회계	70,322	24,523	45,799	186.8
Ⅱ.관리운영비	일반회계	24,551	13,826	10,725	77.6
Ⅲ.비배분비용	일반회계	-	-	-	-
Ⅳ.비배분수익	일반회계	4,667	-	4,667	-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일반회계	90,206	38,349	51,857	135.2
Ⅵ.비교환수익 등	일반회계	-	-	-	-
Ⅶ.재정운영 결과(Ⅴ-Ⅵ)	일반회계	90,206	38,349	51,857	135.2

가. 프로그램순원가

프로그램순원가[299]는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 자원의 소모액을 의미하며 정부회계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원 소요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재외동포청 프로그램순원가 산출단위는 총 2개의 프로그램임.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도 245억 2,300만원 대비 457억 9,900만원 증가한 703억 2,200만원이며, 이는 주로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298)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임(「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299)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나.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정부행정기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경비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각종 수수료, 제세공과금, 교육훈련비, 여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연구개발비 등이 이에 해당함.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138억 2,600만원 대비 107억 2,500만원 증가한 245억 5,1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 증가에 의한 것임.

다.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국가의 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자산처분 손실과 같이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과 직접적·간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비용을 의미함.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비배분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음.

라.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자산처분이익, 평가이익 등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발생하거나 프로그램 외의 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의미함.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비배분수익은 전년도 40만원 대비 46억 6,660만원 증가한 46억 6,7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지출금반납금 등 기타수익

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마. 비교환수익 등

비교환수익 등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의미함.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비교환수익 등은 발생하지 않았음.

바. 재정운영 결과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300]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뺀 것을 의미함.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383억 4,900만원 대비 518억 5,700만원 증가한 902억 600만원임.

300)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은 더하고 비배분수익은 뺀 액수를 의미함.

4. 순자산변동표[301]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4(A)	2023(B)	증 감 (A-B)	
				금 액	비 율
Ⅰ.기초순자산	일반회계	7,886	-	7,886	-
Ⅱ.재정운영 결과	일반회계	90,206	38,349	51,857	135.2
Ⅲ.재원의 조달 및 이전	일반회계	103,539	46,234	57,305	123.9
Ⅳ.조정항목	일반회계	-	-	-	-
Ⅴ.기말순자산(Ⅰ-Ⅱ+Ⅲ+Ⅳ)	일반회계	21,219	7,886	13,333	169.1

가. 기초순자산

기초순자산은 전기(前期)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 금액임.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기초순자산은 78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함.

나. 재정운영 결과

재정운영 결과는 재정운영표에서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에서 재정운영에 대한 원가회수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지표로 앞의 재정운영표에서 증감요인을 설명하였음.

다.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년도 462억 3,400만원 대비 573억 500만원 증가한 1,035억 3,900만원이며 이는 국고수입

301) 순자산 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임.

의 증가 등에 따른 것임.

라. 조정항목

조정항목은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조정항목은 발생하지 않았음.

마. 기말순자산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 결과를 빼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과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출하는 개념임.

2024년도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기말순자산은 전년도 78억 8,600만원 대비 133억 3,300만원 증가한 212억 1,900만원임.

Ⅳ. 재외동포청 성과관리 분석

1. 총 괄

「성과관리제도」란 기존의 투입·통제 중심의 방식을 벗어나 성과관리를 통해 획득된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정부 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위주로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함.

「국가재정법」 제85조의5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6호에서는 성과관리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즉, 성과관리란 각 기관이 그 임무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후,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이나 자원배분, 개인의 성과보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 각 정부기관은 성과계획서에 그간의 정책

성과, 해당연도의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의 조직, 인원 등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성과목표체계에 따라 임무,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를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순차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프로그램 목표에 해당하는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임무,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및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 및 성과 달성률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목표달성 기여도와 목표달성 과정 및 성과미달성 원인분석과 향후 성과이행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2. 성과체계 현황

재외동포청의 임무는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간 상생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이며, 비전은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체계는 1개의 전략목표와 2개의 프로그램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 재외동포청의 성과 목표 및 과제 현황 >

전략목표 (Strategic Goal)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1	2	8	14

재외동포청의 2024회계연도 예산 1,067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 예산 총액은 828억원이며, 결산액 기준으로는 806억원임.

< 재외동포청 사업별 재정운용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 액(A+B)		-	-	1,067	994
성과관리 대상	일반재정	-	-	711	688
	정보화	-	-	117	118
	R&D	-	-	-	-
	소계(A)	-	-	828	806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	-	-	127	85
	기본경비	-	-	102	95
	교부금	-	-	-	-
	예비비	-	-	-	-
	차입이자 상환	-	-	-	-
	내부거래	-	-	-	-
	보전지출	-	-	-	-
	기타	-	-	10	9
	소계(B)	-	-	239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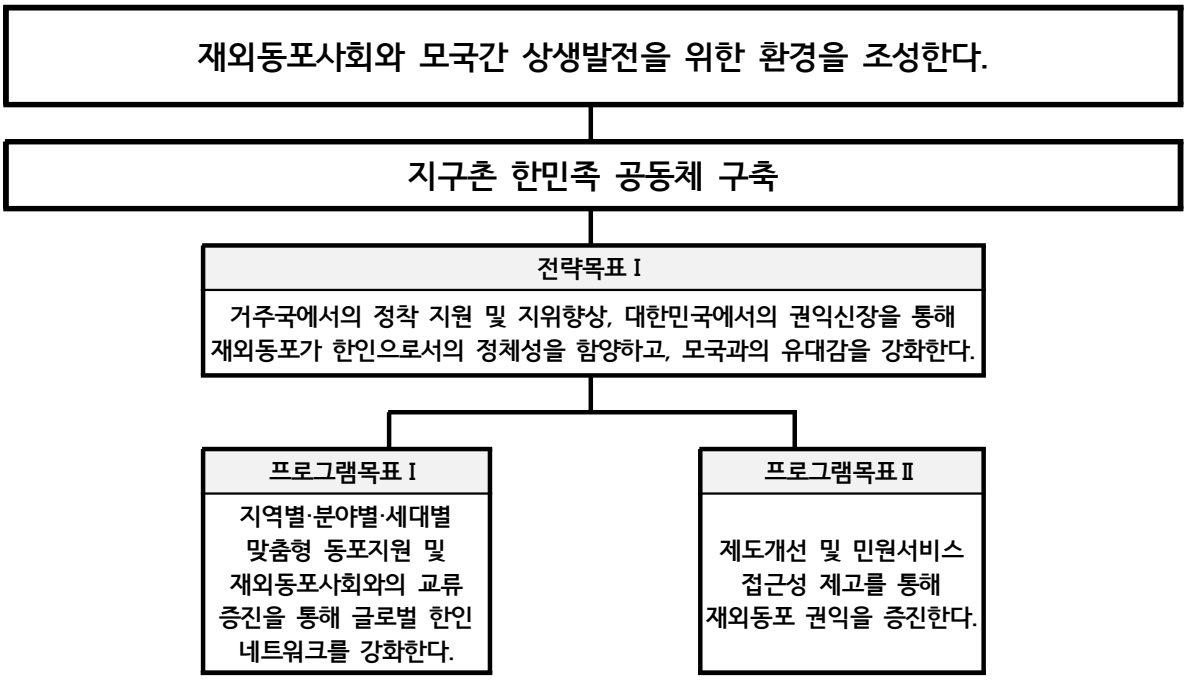
2024년도 결산의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재외동포청은 1개의 전략목표인 “거주국에서의 정착 지원 및 지위향상, 대한민국에서의 권익신장을 통해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한다”에 806억원(100%)를 투입하였음.

< 재외동포청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결산액	비중
□ 전략목표 1 : 거주국에서의 정착 지원 및 지위향상, 대한민국에서의 권익신장을 통해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806	100.0

< 재외동포청 2024년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3. 2024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재외동포청의 2024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를 보면, 2개의 프로그램 목표에 총 2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2개 성과지표 중 1개 성과지표는 달성(100%) 하였고, 1개의 성과지표 목표는 미달성(87.9%) 하였음.

< 재외동포청 2024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1	2	2	-	1	1
		100.0%	-	50.0%	50.0%

< 성과지표별 달성 현황 >

성과지표	목표 대비 달성률	
1. 한민족 정체성 함양 지수	목표 / 실적	88.6점 / 88.67점
	달성률(%)	100.1%
2. 영사민원 24 이용건수	목표 / 실적	115,035건 / 101,061건
	달성률(%)	87.9%

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해당사항 없음.

Ⅵ.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시 재외동포청은 총 11건의 주의 및 제도개선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조치완료 9건 및 조치 중 2건이라는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음.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조치 결과	구분				소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징계	
조치완료	-	1건	8건	-	9건
조치 중	-	1건	1건	-	2건
소 계	-	2건	9건	-	11건

Ⅴ. 대체토론 요지

1. 외교부 소관

○ 없음

2. 통일부 소관

○ 없음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없음

4. 재외동포청 소관

○ 없음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1. 외교부 소관

○ 1건의 시정, 19건의 주의, 37건의 제도개선 등 총 57건의 시정요구와 2건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2. 통일부 소관

○ 1건의 시정, 10건의 주의, 24건의 제도개선, 주의 및 제도개선 1건 등 총 36건의 시정요구와 2건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1건의 주의, 5건의 제도개선 등 총 6건의 시정요구를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4. 재외동포청 소관

○ 1건의 주의, 3건의 제도개선 등 총 4건의 시정요구를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Ⅵ. 심사결과

1. 외교부 소관

원안의결

2. 통일부 소관

원안의결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원안의결

4. 재외동포청 소관

원안의결

Ⅶ. 부대의견

1. 외교부 소관

○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 현안의 논의·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2. 통일부 소관

○ 통일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와의 정책협의 활성화 등을 통해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

○ 통일부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남북관계에서의 전략적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러시아 통일주재관 직위 복원을 위해 노력한다.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없 음.

4. 재외동포청 소관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Ⅸ. 시정요구사항

<외교통일위원회 시정요구서>

1.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 총 103건(결산)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외교부	-	-	1	19	37	-	57
통일부	-	-	1	11	25	(1)	3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	1	5	-	6
재외동포청	-	-	-	1	3	-	4
합계			2	32	70	(1)	103

2. 시정요구사항(결산)

가. 외교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	**관유물대여료 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세입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외교부는 2024년도 관유물대여료 예산액을 4억 2,900만원 편성하였으나, 10.5%인 4,500만원이 수납되었음 - 외교타운 내 민간임대 공간에 대하여 편성한 4억 2,900만원 중 1,000만원(2.3%)이 수납되었으나, 2025년도 예산액이 3억 9,600만원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실적 부진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관유물대여료 수납률 제고를 위해 산정기준을 고도화하고, 세입 추계 검증 절차를 마련할 것		
2	**북한 핵문제 대처 사업 효용성 확보**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 핵문제 대처(1131-401)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북한 핵문제 대처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액된 반면, 집행률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도 불용률은 28.5%로 매우 높음 - 2024년의 경우 조직 개편으로 행정비용이 일부 감소했다고 하나, 장기간 누적된 저조한 집행실적은 제도적·구조적 한계를 방치한 결과임 - 조직 개편에 따라 북핵수석대표 활동 목표 구체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이 강구되었어야 하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국민적 관심 유도 부족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북핵수석대표 활동 목표 내실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용성을 확보하는 등 북핵문제 대처 사업의 장기 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집행 구조와 운영 절차를 재정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3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1134-401)	시정	외교부
		지적사항	○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은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여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집행률은 30.6%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의 목표 및 기대성과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 내역사업 전반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집행부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1135-401)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와 「한-인도 카라반 사업」은 각각 17.1% 및 31.7%에 불과하여 집행 실적이 저조함 -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사업 중 '한-인-일 3자 협의체 참석'의 경우 전액 미집행하였고, 「한-인도 카라반 사업」은 총 예산 8,200만원 중 국외여비 3,800만원을 타 사업에 지출하고도 1,8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향후 당초 사업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5	**내역사업 간 유사성 및 중복성 고려한 통합·조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1135-401)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세부사업은 총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사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사업들이 다수 분절되어 편성되어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내역사업 단위는 예산 운용의 실효성과 사업 성과 관리의 기준이 되는바, 세부사업 내 구성은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동 세부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들의 사업 간 유사성과 중복성을 감안하여, 통합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체계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특정 내내역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1332-401)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내 특정 내내역사업들의 연례적 부진에 대해 외교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의 이유로 인한 것이라 설명하였으나, 해당 내내역사업들의 경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도 집행률이 낮은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저성과 내내역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통합하고 성과지표를 상향할 것 ○ 외교부는 향후 유럽지역 역내 정세 변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연도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액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7	외교행사 연계 사업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예산 반영 미흡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1432-401)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외교부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별 개황 책자 디자인 및 발간 용역’ 사업, 개황 원고 작성 및 검수 사례비 등 총 2억 5천만 원을 전용 등을 통하여 집행함 - 동 정상회의 개최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개황책자 수요는 예측 가능했던바, 예산 편성 시 반영할 필요가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향후 사업 추진 전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편성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8	한·아프리카재단의 결산보고서 상 감사의견서 미첨부에 따른 투명성·신뢰성 저해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1432-402) : 총괄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재단은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라 감사를 두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감사의견서를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나, 감사 공백으로 인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감사의견서가 누락되어 있음 - 재단의 「감사규정」은 감사의 보조기관으로 검사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단은 감사 공백 기간 동안 검사역 또한 임명하지 않은바, 결산 검토를 보완할 수 있는 내부 감사 기능이 전무한 상태에서 결산보고가 이루어짐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단의 감사 임명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고, 재단이 검사역 등 내부 감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인력 운용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9	한·아프리카재단의 특근매식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1432-402) : 총괄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2024회계연도 한-아프리카재단의 특근매식비 배정액 및 집행액은 총 4만원으로 초과근무 실적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편성 및 집행액임 -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 공제를 피하기 위해 특근매식비를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 데 기인하며, 특근매식비 관련 별도의 규정은 없음 -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 복지를 위한 특근매식비 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예산 운영 왜곡을 초래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재단이 특근매식비 제도 관련, 직원 대상 안내 강화 및 내부 운영지침 정비, 실제 수요 기반의 예산편성 기준 마련, 유사기관의 운영사례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 집행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0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 사업의 집행 부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1432-402) :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한·아프리카재단의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아프리카동창회, Af-PRO)’ 사업의 집행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예산액 대비 53.6%, 38.5%의 낮은 집행률을 기록함 - 동 사업의 집행 부진은 동창회원 등 대상자 관리 미흡, 콘텐츠 활용계획 부족, 낮은 대국민 접근성과 파급력, 홍보전략 부재 등 기획과 운영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재단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강연회 일정 및 협업 방식의 조기 확정,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 등 체계적인 개선을 하도록 조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1	행사 필수경비 미편성에 따른 예산운용계획 부실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1432-403)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외교부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사업에서 관리용역비(210-15), 시설장비유지비(210-09) 및 일반용역비(210-14)를 세목조정하여 집행함 - 정상회의와 같은 고위급 국제행사의 경우, 행사에 수반되는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리용역비 등 필수 부대경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집행 과정에서 반복적인 세목 조정과 전용을 초래하여 집행 시 행정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추진 시, 행사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 비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실효성과 준비과정을 보다 내실화할 것		
12	한국 소재 국제기구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2131-404)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한국에 소재한 국제기구인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은 행정 경비에 비하여 활동성 경비의 집행률이 낮은 상황이며, 부서별 집행률도 20%p 이상의 편차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분담금을 납부한 한국 소재 국제기구의 사업 계획 대비 예산의 실효적 집행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체계적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교부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한국 소재 국제기구에 대한 기관별 성과계약서를 도입하고, 분담금의 성과와 연동된 환류 절차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3	2024-25 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집행부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2231-403)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외교부는 「2024-25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사업을 위하여 2024년도에 2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액은 14억 7,8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2.2% 수준임 - 회의·세미나 개최 횟수, 인력 운영 규모 등 실질적 활동이 계획 대비 축소되었으며, 국외업무여비의 집행률이 53.1%임 ○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2025년도 역시 집행부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사업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 예산의 집행계획을 면밀히 설계·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14	부처 공동사업 추진 시 각 부처간 면밀한 협의 및 사전 설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2331-402)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정부는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를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주최하도록 각 부처에 각각 31억원씩 배정하였는데, 외교부는 당초 준비기획단 인건비로 책정된 9,300만원에 1억 1,100만원을 전용 등을 통하여 추가로 집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정책연구비 1억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향후 부처 공동사업 추진 시, 부처 간 기능별 분담 및 세부 세출항목에 대한 실무 협의를 사전에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설계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국별협력사업의 연차별 실소요를 반영한 집행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국별협력사업(ODA)의 예산 대비 실집행률과 예산 현액 대비 실집행률 간의 차이가 큼 -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80~100%인 경우가 전체의 16.4%인데 반하여, 예산 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80~100%인 경우는 전체의 82.9%임 ○ 이는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ODA 사업의 자원배분 전략, 성과 달성도 등을 충분하게 점검하게 어려운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ODA 현장의 정보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연차별 실소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조정을 최소화할 것		
16	**국별협력사업의 집행부진 원인 및 사전검토 · 현지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국별협력사업(ODA)에서 수원국 법·제도 요건, 선행 절차 미이행, 선행사업 종료·사후관리 지연, 수원국 내 다른 사업과의 중복, 현지 정세 불안, 수원국 제도적 기반 미비 등으로 인한 집행부진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예시로, '베트남 부동산 가격관리 역량강화사업'은 법 개정 동향을 사전에 반영하지 못해 계획변경 및 집행부진이 발생했고, '케냐 아띠리버센터 사업'은 기본약정서 미체결로 예산 조정을 통해 전액을 감액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국별협력사업 추진 시 수원국의 법·제도 요건 및 선행 절차, 현지 정세, 행정절차 소요기간,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예비조사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사업 일정에 반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7	**국별협력사업의 종료보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규정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최근 4년간 종료된 94건의 국별협력사업 중 종료보고 기한(사업종료연도 다음 해 1월 말)을 준수한 사업은 48건이며 나머지 46건은 기한을 경과하여 보고하였음 ○ ‘이집트 한-이 기술대학 설립사업’과 ‘세네갈 지속가능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 사업’은 종료보고가 누락되었음이 사후에 확인되어 기간 도과 후 종료보고가 진행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국별협력사업 종료보고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종료연도의 ODA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것 ○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수원국으로부터 제출받는 평가자료의 접수 및 검토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국별협력사업 종료보고 기간을 현실화하는 등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18	**유상 ODA 인정액 제고방안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 기본계획」에 따르면, 유무상 ODA 인정액 비율을 37~43:63~57 수준으로 관리할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2022년부터 양자 ODA 인정액 중 유상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31%보다 낮아지면서 목표 범위를 이탈하였음 - 차관 집행액의 절반 이하만 유상 ODA 실적으로 인정받는 사업들의 비중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적정 수준의 이자율과 거치기간,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등 유상 ODA 인정액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9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 미교부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한국국제협력단의 2024년도 출연금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96.9%이나, 본예산 대비 집행율은 92.6%임. 이와 같은 편차는 예산당국이 출연금을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함 ○ 출연금 미교부는 당초 예산 편성이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과도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수요 예측을 통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향후 ODA 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을 강화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의 미교부를 최소화할 목표치를 설정하고, 출연금의 분기별 교부계획 수립 등 집행 구조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20	신규사업의 초년도 예산 집행 저조 및 착수 지연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한국국제협력단의 2024년도 신규 국별 협력사업의 초년도 집행현황에 따르면 71개의 신규 사업 중 33개의 집행액이 전혀 없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신규 국별 사업 중 집행액이 전무한 경우도 있음 ○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초년도에 협의의사록 미체결 및 사업관리기관 미선정 등의 이유로 착수가 지연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초년도 예산 집행 저조 및 착수 지연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제반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통해 사업의 기대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21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면밀한 집행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당해 연도 내 집행 완료가 원칙이나, 2023~2024년 동안 사업에 착수한 연도에 전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단년도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이월 사례가 반복되어, 사업의 긴급성과 시급성을 저해하고 예산 효율성을 떨어뜨림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추진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액 이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집행 일정 및 여건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외교부는 재외공관 및 한국국제협력단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수원국 협의 지연, 사업 설계 미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당해연도 예산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를 지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22	**다부처 협업 ODA 패키지 리스크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개발협력(2400)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다부처 협업 ODA 패키지에서 개별 사업의 취소가 연쇄적으로 패키지 내 다른 사업 취소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패키지’의 핵심 부분을 구성하는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이 수원국 현지의 사정 등을 이유로 취소됨에 따라, 패키지 내의 타 사업인 ‘인도네시아 국가데이터센터 통합 운영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도 함께 취소되어 패키지 전체의 전망이 불확실함 ○ 여러 ODA 사업을 패키지로 결합할 경우, 특정 사업의 집행 부진이 같은 패키지 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패키지 전체의 성과 저해를 초래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ODA 사업 패키지의 사전 기획 단계부터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3	**사업 심사단계에서 제시된 검토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베트남(ODA)(2431-401)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베트남 부동산 가격관리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 심사 과정에서 법·제도 요건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수원국 토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최초 사업계획에 반영된 ‘부동산 가격산정 모델 및 가격정보 종합시스템’ 직접 구축은 제외하기로 결정되었음 ○ 이 과정에서 협의의사록 체결이 예상보다 지연되어 관련 예산이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ODA 사업의 사업 심사단계에서 제시된 법·제도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면밀하게 반영하여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24	인도네시아 ODA 사업 추가지연 방지를 위한 제반 사항 면밀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도네시아(ODA)(2431-402)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ICT 기반 통합지식교육센터 구축 사업’은 현지 시공업체 현지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이 지연되었고, 추후 MOOC 시스템 적용 및 기자재 도입 과정에서 추가 지연 가능성이 있어 사업기간 연장을 검토중임 *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ICT 기반 통합지식교육센터 구축 사업) MOOC 시스템 개발자 및 관리자 역량강화와 스마트 교실 및 스튜디오 기자재 지원 사업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ICT 기반 통합지식교육센터 구축 사업의 선행사업 종료 보고 및 사후관리를 마무리 한 후 후속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		
25	아시아 지역 ODA 사업 집행률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도(ODA)(2431-412)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인도의 경우 2023년도 42%, 2024년도 22.3%로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 - 수원국과 협의의사록(RD) 협의 단계에서 수원국의 비협조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인도 ODA 사업을 현지 수요와 호응도가 높은 방식으로 방식을 전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26	정세불안 수원국에 대한 ODA 집행관리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미얀마(ODA)(2431-413), 우크라이나(ODA)(2434-405)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한국국제협력단의 미얀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별협력사업의 경우 수원국 현지의 정세불안으로 인하여 다른 수원국에 추진되는 사업에 비해 실집행 실적이 부진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수원국 현지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사업 전반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조치할 것 ○ 외교부는 미얀마 사업에 대하여 현지 정세를 전면 재평가하고 사업의 존속 여부와 집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		
27	사업 착수 전 수원국의 제도적 기반 면밀 파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타지키스탄(ODA)(2434-404)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타지키스탄에 대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정부기능 디지털 전환 이행 지원사업(’24-’27/650만달러)’은 예비조사 단계에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수원국의 제도적 기반, 성과관리 체계 등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여 실집행액이 전무하며 협의의사록 체결이 미완료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사업의 주요 구성요소와 관련한 수원국의 제도적 기반 등을 예비조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예비조사 단계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실적 달성률 제고방안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2435-401)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사업현장에서의 수요와 파견 계획간의 불일치로 일부 사업의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저조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운영에 있어 개발국과 파견현장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인력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조치할 것		
29	학위과정 연수에서의 연례적 이월액 발생 관행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글로벌 연수(ODA)(2435-402)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학위연수의 운영에 있어 이월액의 발생 규모가 점점 늘어나 최근 3개년 누적액이 약 16억 6,300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이월액을 발생시키지 않는 취지인 장기계속계약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한 집행임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학위연수 운영에 있어 차년도 이월이 반복되는 관행을 지속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하에 사업 예산 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조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30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전반적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2435-404)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운영에 있어 2019년 이후 SEED3 진입 기업이 전무하여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CTS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고 ODA가 아닌 민간 시장에서 사업을 이어갈 우려가 있음 ○ TIPS 연계형의 사업공모분야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10대 초격차 분야’에서 설정한 10대 분야와 동일함 ○ CTS의 성과 측정방식은 당해연도 종료사업을 기준으로 하나, 사업 특성 상 연간 종료사업이 매우 적어 비현실적임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CTS의 목적성을 재확립하고 성과지표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 외교부는 CTS 사업 예산안 편성·집행 시 SEED3 단계 예산을 타 단계로 전용할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향후 SEED3 예산을 SEED1, 2로 전환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담은 ‘단계 간 전용 관리지침’을 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31	국제기구 실집행 현황을 고려한 약정금 교부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기구협력(ODA)(2435-403)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국제기구와 약정 체결 이후 사업이 지연되어 국제기구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다수 있음 - 특히 2024년 교부금 중 당해 연도 전혀 집행이 없는 사업도 있음 ○ 실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에 매년 추가 교부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예산 집행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국제기구협력」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기구 내부 미집행 잔액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동일 사업의 약정금 교부 규모나 시기를 조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교부는 신규 국제기구협력 사업 추진 시 약정서에 실집행 현황 보고 의무 및 집행 부진 시 교부금 조정 조항을 포함할 것		
32	전략사업비 효과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략적 협력강화(ODA)(2437-401)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우크라이나 전쟁피해 아동 긴급지원을 위한 지역거점 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은 소규모 단순 물자지원 사업으로 효과에 대한 검증이 미흡할 우려가 있음 - 단순 물자지원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의 「물자 및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연차점검과 종료평가의 절차를 생략하게 됨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33	예산 집행을 통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도적지원(ODA)(2438-402)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KDRT 사무국 관련 행정업무를 위한 위탁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는데, KDRT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이미 무기계약직 2인 고용 및 3억 5천만원 상당의 자회사 위탁을 실시하고 있고, 코웍스의 인력 또한 증원되었음을 고려할 때 동 용역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더욱이 KDRT 사무국 관련 코이카 현원이 4명으로 정원 8명에 미달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의 정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보조사업자가 예산 집행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을 수행할 것 ○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예산 집행을 통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조치할 것		
34	인도적지원 관련 시정조치 이행 미흡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도적지원(ODA)(2438-402)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인도적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2023년 결산 심사에서 ‘인도적지원 예산에 대한 효과성 평가 메커니즘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의 체계적이고 적시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고 외교부가 조치완료라고 보고하였음 ○ 그러나 긴급재난 및 만성재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정상 공약 이행에 사용되고, KDRT 관련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용역이 수행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긴급구호를 비롯한 인도적지원 예산의 집행 계기와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조치할 것 ○ 외교부는 국회의 시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35	인도적지원 용역 다빈도 집행의 효율성 및 중복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도적지원(ODA)(2438-402)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KDRT 사무국 예산에서 KOICA 인도지원처 관련 홍보·연구·정산용역 등 다수용역이 2024년에 집중하여 수행되었음 - KDRT 사무국 예산으로 인도지원처 전반 홍보 용역을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및 범위를 일탈할 소지 ○ 용역 집행의 효율성 및 중복성을 검토할 필요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KDRT 관련 각종 용역 수행 시 성과지표 설정 및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36	**인도적지원 예산에서 정상공약 이행을 위한 지원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도적지원(ODA)(2438-402)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지난 11월 우리 정상이 G20 정상회의 참석에서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가입을 선언하며 연내 1천만달러를 지원하기로 밝힘에 따라 동 사업에서 GAAHP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 인도적지원 사업에서 정상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인도적지원의 독립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음 - GAAHP에 대한 지원은 오로지 재난의 인도적 필요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기보다는, G20 정상회의라는 외교적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공약 이행이라는 정부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격을 지님 ○ GAAHP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인 지원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 동 지원은 정상의 공약 이행을 위한 결정에 의한 것으로 긴급재난이나 만성재난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인도적 지원 예산에서 정상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집행한 것과 같이 법과 원칙, 절차를 지키지 않은 예산사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외교부는 정상공약 이행 관련 지출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37	정부광고법에 따른 광고 의뢰 절차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공외교 역량강화(2631-403)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제2회 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홍보를 위한 매체 광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를 의뢰하였는데, 이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3조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집행으로 보임 - 2023년에 추진한 제1회 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는 정부광고법에 따라 모든 업무가 진행되었으며, 제안요청서 상에도 정부광고법에 따라 광고를 의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용역계약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한 절차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		
38	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정보 시정 관련 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공외교 역량강화(2631-403)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일부 재외공관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 시정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서도 외교적인 시정 활동 및 시정결과 회신 등 협조가 미흡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외국교과서 등 한국 관련 오류정보 배포·발견 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외 그 누구라도 간편하게 신고하고 오류에 대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간편 오류 신고 서비스 프로토콜을 마련할 것 ○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오류 시정을 위한 노력을 감독하는 한편, 인력 확충 등 오류 시정을 위한 제반이 각 공관에서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39	재외공관의 비목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관행 시정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공외교 역량강화(2631-403)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일부 재외공관은 일반수용비를 행사 내 식음료 구입, 차량 등 임차, 항공운임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향후 동 사업의 편성에 있어 사업의 특성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다소 늘리는 방향 등을 고려하여 비목에 맞게 집행하면서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예산 집행을 도모할 것		
40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 지원사업의 면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국민 보호(2731-401)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외교부는 영사 인력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부 대학교와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외무영사직 시험대비반의 운영 지원에 사용되어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향후 사업목표를 면밀하게 고려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예산 계획 및 집행 내역을 심사할 것 ○ 외교부는 향후 대학교에 대한 국고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서 및 중간 보고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41	사건사고 대응인력 심리치료 지원사업 확대 및 내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국민 보호(2731-401)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전문가 심리상담의 횟수 제한, 현지 공관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고위험군 케어의 최대 연1회 제한 등 불만족이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남 ○ 현재 심리상담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더라도 이어지는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추후 사건사고 대응인력 심리치료 사업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의 수요에 따른 지원 횟수 및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외교부는 심리치료 지원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42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조력 서비스 예산 불용 최소화 및 운영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국민 보호(2731-401), 영사서비스 지원(2731-402)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해외위난상황 대비 영사조력 제공」, 「양자/다자 영사외교 강화」의 집행률이 50% 안팎에 그치며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됨 ○ 해외공관 위기 대응 인력 충원 지원 및 사업 추진 절차상 차질 등 반복으로 위기 대응 체계의 실효성 저하 및 정책 신뢰도 하락이 우려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앞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 ○ 외교부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 위기 대응 인력 보강 및 해외안전망 인프라를 신속 구축하고 영사콜센터 운영, 해외위기 컨설팅 등 핵심 기능을 우선 집행 관리할 것 ○ 외교부는 불용액 발생 사유를 국회에 정기 보고하고 집행 지연 사업에 대한 사전 경보제 및 부처 차원의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43	교육·평가 사업의 동일 수탁기관 수임에 따른 공정성 우려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2931-651)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외교부는 2023년부터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 위탁운영’과 ‘여권서비스 만족도 조사’ 두 사업을 동일 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 여권 실무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동일 기간 중 여권 서비스 만족도 평가 업무를 함께 수행할 경우, 교육 효과나 서비스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정책 평가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 저하 우려 - 교육과 평가 간 기능 분리가 미흡할 경우, 정책 평가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실질적 환류(feedback)가 어려워 여권서비스의 품질 개선 효과 저하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향후 여권 실무교육과 여권서비스 만족도조사 간 기능적 독립성과 정책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기관의 중복 수탁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교육과 평가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44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직제를 우회한 조직운영 개선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3032-401)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이 모두 공무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로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적인 책임성을 지니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조직 운영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경제안보외교센터 공무직 인력이 외교부 본부 건물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경제안보외교센터의 공무직 인원 9명 중 3명은 광화문에 위치한 사무실에 근무 중인데, 이를 위해 1년 동안 약 1억 5천만원의 임차료가 집행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직제를 개정하여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예산을 통해 인력을 보충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행태를 시정할 것 ○ 외교부는 청사의 유휴 공간이 마련될 시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청사 내 입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45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 채용 부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3032-401)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재외공관 경제안보 전문관 예산이 일용임금(110-04) 비목으로 편성됨에 따라 1년 이내의 단기 계약직 형태로 채용이 되고 있고, 미국 이외 지역의 경우 외국 국적자만 채용이 가능함 ○ 인력 충원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인원인 6명 중 일부만 채용된 상태임 - 2024년에는 미국(워싱턴), 애틀란타, 인도, 네덜란드 공관에 각 1명씩 총 4명이 채용되어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재외공관이 전문적인 경제안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전문관 채용 관련 비목 변경을 비롯한 사업 방식 전반에 대하여 재고할 것		
46	예산 편성 취지에 맞는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3131-401)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외교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5)’의 집행을 위해 20개의 다른 내내역사업을 감액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 대비 감액 규모가 50% 이상이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특정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다른 사업들을 지나치게 감액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편성 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 관행을 조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47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예산 실효성 확보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3532-402)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주요국은 각자의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이행 후속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나, 우리 정부는 2024년 예산 불용률 40%로 제대로 된 전략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2025년도 예산은 1억 원에 불과하여 사업 추진의 차질이 예상되는바, 필요한 예산 확보를 통해 인태 전략의 중요성 및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위한 계획·성과·현안 및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		
48	정보외교시대, 신속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3532-403)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외교정보기획국 신설(’24.5.28.)에 따른 예산 집행 순연과 해외 싱크탱크 연구용역 계약 체결 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 집행률이 78.6%로 저조함 ○ ‘한-미 외교정보 협력 MOU’ 체결(’24.6.) 후속조치인 ‘공동 정세분석 보고서’ 발간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기조변화 및 ’24.12. 계엄으로 인하여 발간이 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정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고유한 외교정보 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예산 집행과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외교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우방국과의 공조 체제를 구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49	정착지원금 근거 규정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4012-251)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정착지원금 지급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공무원 개인에 대한 금전 지급 성격이므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세목조정이나 전용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정착지원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착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세목조정, 전용 등을 통하여 예산을 증액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재외공무원 정착지원금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 ○ 외교부는 정착지원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		
50	재외공관 행정직원 인력운용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4021-401)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재외공관 행정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8.7년에 불과하여 퇴직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공석을 대체하기 위한 채용 소요기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상시적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임 -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매년 인건비의 전용과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근속연수가 짧고 교체가 잦은 이유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인력 운용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노력을 병행할 것 ○ 외교부는 국가별 재외공관 행정직원 인력수요 예측, 순환배치 실시 및 고도화, 결원보충을 위한 한시정원 도입 등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51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의 면밀한 집행계획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1)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국외여비로 당초 예산을 초과한 148억 4,700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예산액의 28.4%인 32억 8,900만원이 부족하여 예산 전용과 다른 사업의 국외업무여비의 내역변경 등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함 ○ 매년 관련 예산이 실집행액에 대비하여 상당 부분 부족하게 편성되어 이전용을 통한 예산 충당이 관례화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면밀한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이전용 등 예산변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액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		
52	재외공관 주요행사비의 취지에 맞는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공관 주요행사비(7033-402)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2021년부터 재외공관 주요행사비의 일부를 공관직원 교체여비 부족을 사유로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국외업무여비 예산에 매년 관행적으로 전용하여 사실상 교체여비의 일부로 집행해 왔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재외공관 주요행사비를 적합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가 승인한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53	청년인턴 채용 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용 방안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7033-403)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2024년 청년인턴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 인턴 80%와 단기 인턴 2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단기 인턴의 채용 규모가 59%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 불용이 발생함 ○ 단기 인턴 위주의 채용방식으로는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역량 강화라는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청년인턴 채용 시 장기 인턴 비중 확대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		
54	재외공관장회의 사업 예산의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7033-404)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인원의 증가, 항공료 및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관련 예산 부족으로, 당초 책정된 예산의 63%에 해당하는 9억 8,400만원을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자체전용하여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시 예산의 초과 집행과 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55	조속한 지출 구조 조정 방안 마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 국제교류기금 - 법정부담금(12-59-593): 국제교류기여금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기여금 수입 감소와 적립금 급감이라는 재정 여건 악화에 직면하여, 2024년도에 사업별로 빈번한 자체변경을 실시하였으며, 그 사유 대부분이 사업 구조조정 또는 사업 내용의 구체화에 따른 것임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예측할 수 없는 소요 발생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허용됨을 감안할 때, 재단은 기금운용계획을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전반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 재설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국제교류재단이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종합적인 지출 구조조정 방안과 기금운용계획의 일관성·예측 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56	환율 변동으로 인한 GAVI 지원 미흡	관련사업명	국제질병퇴치기금 -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2439-403)	제도개선	외교부
		지적사항	○ GAVI(세계백신면역연합)에 대한 지원은 당초 계획 500만불 대비 23.6%인 118만불만 이행되었음 - 이는 편성환율 대비 시장환율 급등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외교부가 환율 변동에 대응하고자 기금 계획을 일부 조정하였으나 GAVI에 대한 지원이 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 반영되지 못하였음 ○ 환율 위험에 대한 대비 미흡은 국회의 시정 요구가 있었던 사안으로, 외교부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여전히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예산 운용과 같은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국제기구에 대한 당초 지원 계획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57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 미정산에 따른 지연가산금 발생**	관련사업명	국제질병퇴치기금 - 출국납부금 징수위탁(2439-404)	주의	외교부
		지적사항	○ 외교부는 2025년도 예산에 출국납부금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공항공사에 대한 수수료인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수수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기금 폐지를 위한 외교부의 사전 준비작업이 면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2025년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수수료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함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향후 사업 이관 시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징수위탁 수수료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속하게 지급할 것 ○ 외교부는 출국납부금 환불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할 것		

나. 통일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사항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통일부가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2024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여 작성한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8개 성과지표 중 목표를 달성한 지표를 6개(75%)임. ○ 특히,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고객만족도 지표는 3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는 반면, 통일부와 유사하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임무로 하면서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표체계를 가진 외교부는 전체 15개 성과지표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조사대상과 평가방식을 재설계하고, 사업 내용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며,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되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구조를 재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1억원 이상 보조단체의 회계검사 비용 기준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7개 세부사업 공통 (2133-306, 2135-306, 2137-301, 5031-308, 5031-309, 2040-401, 3041-405)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보조금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외부 회계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통일부 소관의 2024년도 민간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회계검사 비용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단체와 자부담으로 처리한 단체가 혼재되어 있고, 단체별 회계검사 지출액과 보조금 교부액 대비 비율도 편차가 있는 바, 이는 연초 각 사업 담당부서에서 보조단체에 통보하는 ‘보조금 지침’에 명확한 지침이 없이 통보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1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검사 비용과 관련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부서 담당자가 이를 숙지하도록 하는 한편, 개별 보조단체에 통보하는 보조금 지침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여 통보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수납률 저조한 과태료의 수납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세입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2024년도의 과태료 부과 내역은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에 대한 200만원 등 총 11건 1,120만원이며, 이 가운데 9건 97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징수결정 이후 집행 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추징 노력을 통해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신년 특별좌담회' 등 분할 수의계약 집행 추진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일정책추진(1031-300)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에 편성된 일반용역비 1억 5,900만원 중 83.6%에 해당하는 1억 3,300만원이 총 6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됨. ○ 통일부는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은 집행상의 편의를 우선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큼. ○ 특히, 당초 예산계획에 없던 '통일부장관-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좌담회'(용역)를 추진하면서, 단일 행사임에도 무대환경 조성과 행사대행을 각각 2,200만원의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는데, 단일 목적의 행사는 '분할계약금지' 원칙에 따라 일괄계약 및 일괄집행이 타당하고, 인위적 분리계약은 경쟁입찰의 회피 또는 수의계약 남용으로 보여질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사업 실무자가 '긴급성' 등 계약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사유별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실효성 확보 및 활용방안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일정책추진(1031-300)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의 내내역사업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는 총 사업비를 일반연구비로 계약하여 집행한 바, 인건비, 조사비, 회의비, 자문사례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각 항목별 산출 근거와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행의 투명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전체 예산의 65.8%에 해당하는 조사비(1억 7,500만원)는 국가별 응답자 1인당 단가, 문항별 비용 등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여 그 적정성 검토가 곤란하고, 책임연구원 등 인건비, 수용비, 등과 한국갤럽의 조사수행비, 기타 비용 간의 관계 및 구조도 모호한 실정임. 또한, 베트남의 경우 고학력 응답자가 과대 표집되는 등 표본 설계가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동 조사결과는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의 글로벌화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향후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수행 시 조사비, 인건비 등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에 대한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결과의 정책 반영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5.16 및 유신 독재 정당화 연구용역에 긍정 평가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일정책추진(1031-300)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의 내내역사업 '대북·통일전략 기획 및 법제 체계화 추진' 중 '남북 통일·통합 정책·법제개발 및 해외사례 연구용역'에서 5.16, 유신독재를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구용역을 '적절'로 평가함. ○ 정책연구용역 과정에서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내리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바, 향후 정책연구 평가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합당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평가 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합당하게 평가하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세목별 초과집행 등 예산 집행의 불균형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일정책추진(1031-300)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의 집행률은 90.9%로 양호한 편이나, 세부 항목별로 초과집행 또는 불용이 반복됨. 세부적으로 '통일·통합 관련 연구 네트워크 구축'(집행률 117.2%, '심사·평가비 및 회의 준비비'(118.2%) 등은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집행된 반면, '통일연구DB 유지보수 및 전산장비 구입'(50.0%), '남북관계발전 정책포럼'(40.0%) 등은 집행이 저조하여 계획과 실집행 간 괴리가 발생함. ○ 주요 세목별로도 여비 및 자산취득비는 전액 또는 대부분 불용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소요 예측이 면밀하지 못하였고, 연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세목 조정이 이루어져 집행관리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을 시사함.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불용되거나 초과 집행되는 세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집행 가능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일반용역비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부터 세부 계약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의 실질적 성과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일정책추진(1031-300)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전체회의 2회, 위원장단 회의 5회, 특별위원회 회의 3회, 각 분과위원회별 3회 등을 개최하고, 회의비로 총 6,459만원을 집행함. ○ 동 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8.15 통일독트린' 내 정책 항목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정책 완성도 제고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를 갖추고, 행사 참여자 수, 언론보도 분석, 정책 전후의 여론 변화 등을 종합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시정요구사항	○ 위원회의 활동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성과평가 등을 실시할 것 ○ 각 분야별 전문가 논의가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항목은 사업실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최소화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정책자문위원회와 중복되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폐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일정책추진(1031-300)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통일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인데, 통일부 내 운영중인 정책자문위원회와 그 기능이 중복됨. ※정책자문위원회는 통일정책분과, 인권인도분과, 정보분석분과, 통일협력분과, 남북관계관리분과, 통일교육분과 등으로 구성・운영중 ○ 국회 협의 및 국민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8.15 통일독트린)으로 약 7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바, 사업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추진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정책자문위와 중복되고 의미있는 통일담론 마련에 실패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폐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자문기구 예산의 적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일정책추진(1031-300)	시정	통일부
		지적사항	○ 통일부는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9억 4,000만원 집행)에서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을 위해 장관이 주재하는 '수요포럼', '통일이 있는 저녁' 등 다양한 간담회를 추진함. ○ '수요포럼'(조찬모임)과 '통일이 있는 저녁'(만찬모임)은 집행방식에 차이(조찬모임 총 14차례 중 11차례에서 사례비가 지급되었고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호텔에서 개최되어 임차료가 별도 집행된 반면, 만찬모임 총 13차례 중 한 차례만 사례비가 지급되고 임차료는 대부분 집행되지 아니함)가 있어 집행의 일관성 측면에도 미흡하였음. ○ 동 위원회가 통일부장관 직속의 자문기구임을 감안하더라도 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만이 참석·주재하였음에도 그 경비를 위원회 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해당 사업의 본래 취지와의 정합성이 부족한 집행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위원회 예산이 장관의 일반 업무추진성 경비로 전용되지 않도록 집행기준을 명확히 할 것 ○ 통일부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식 및 예산 운영체계를 재정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1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예산 집행관리 내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의 집행률은 85.2%이지만, 세부집행 내용을 보면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됨. ○ 통일부는 12월 중순경 유튜브·지하철 전광판 등을 이용한 '정책광고 송출'에 2억원을, 12월 11일과 12일간 '출입기자단 워크숍'에 3,300만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12월 3일 발생한 계엄사태로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설명함. ○ 정책 광고 송출은 연중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연도말 추진을 계획한 것은 소극적 집행관리로 해석될 수 있는바, 향후 연내 집행 가능성과 외부 변수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통일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이라는 사업의 정책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등 추진 시 연내 집행 가능성과 외부변수 리스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보조금 관리 및 사업관리 철저 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통일부는 통일플러스센터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였음. - 통일부는 충청남도에 대하여 설계용역 면밀 추진 및 예산 증액 반영에 따른 설계 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 착공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 가능성이 부족함에도 2024년에 보조금을 모두 교부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에서 교부된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결과가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에도 원인행위는 완료하였으나 집행시기의 미도래로 인해 4억 6,700만원의 이월액의 발생하였는데, 1차 교부와 2차 교부 사이의 간격이 1개월에 불과하여 공사의 진행 상황이나 지연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보조금이 교부됨.		
		시정요구 사항	○ 통일부는 사업시행주체(충청남도, 경기도)에 대하여 공사 착수 지연 등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교부된 보조금이 불필요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사업시행주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2025년 말에 예정된 개관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단독 응찰 반복에 따른 수의계약 구조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통일기반조성(1031-302)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동 세부사업은 국제회의, 포럼, 연구용역 등 주요 사업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입찰 시 단독 응찰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일반용역비(210-14) 집행에서 경쟁입찰 절차를 따랐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기관에 용역이 집중되는 결과가 반복되었는 바, 이러한 계약방식은 실질적인 경쟁 및 공정성을 저해하고 연구생태계의 다양성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통일부는 과업 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반복적 단독 응찰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일정 횟수 이상 단독 응찰 시 과업 분할 발주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통일부는 국제통일기반 조성사업 등에서 수의계약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위성정보센터 운영 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세분석 역량 강화(1533-307)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위성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북한지역 위성 영상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의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분야별 변화를 분석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5억 5,700만원 중 4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9,300만원이 불용되었음(집행률 83.3%). ○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위성영상 구독료 및 군집·정밀 위성영상 구매비로,신규 촬영보다는 기존 촬영 영상과 초해상화 영상 구매비중이 높았는바, 고해상도 영상 구매와 활용에 대한 명확한 집행 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 초해상화는 이미지나 영상의 해상도를 인위적으로 높여 더 선명하게 만드는 기술을 의미함. 주로 낮은 해상도의 사진이나 영상을 고해상도로 변환해 세부 정보를 복원하거나, 노이즈·블러(흐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 활용됨.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위성정보센터 운영 사업의 예산을 실제 활용 목적과 부합하도록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해상도 정밀 위성영상의 적시 구매 및 활용을 위한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건립 단계별 추진일정에 맞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535-310)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통일정보자료센터는 북한전문도서관 기능의 자료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건립계획보다 시공사의 선정이 13개월이 늦어지게 됨에 따라 2024년 공사비(37억 7,600만원)와 감리비(3억 7,300만원) 중 약 76%에 해당하는 31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음. ○ 이는 통일부가 건립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2024년도 사업비를 과다 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사업을 각 단계별 추진일정에 맞추어 관리함으로써 향후 준공 및 개관 일정이 더 이상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소요 파악 없는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2135-302)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외국인들을 상대로 북한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의 ‘북한인권안보 영어 온라인 강의’ 영상 9편(인트로 제외)을 제작하여 2025년 2월부터 온라인에 공개하였고, 8월 현재, 9개 영상(인트로 제외)의 평균 조회수는 41회에 불과함. ○ 최초 공개된 1강에서 강연자(이○훈 전 북한인권대사)는 2024년 7월, TV조선 보도로 확산된 ‘남한 드라마 시청 중학생 30명 공개처형’ 사례를 언급하였음. ※ 이 사례는 통일부가 공식입장을 통해 ‘진위 확인 불가’로 밝힘. ○ 또한 당초 강의를 이수한 외국인 중 10-20명을 선정해 국립통일교육원 글로벌 통일교육과 연계한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수자에 대해서는 장관 명의의 수료증도 발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 완전 중단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북한인권 관련 사업 추진 시 명확한 소요 파악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통일부는 북한인권 관련 영상 등 홍보·교육용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사실을 과장·왜곡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예산편성과 집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2135-303)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의 집행률은 88.6%이지만, 탈북민 실태조사 등 8개 내내역사업별로 편성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현저히 낮거나 전액 미집행됨. ○ 내역사업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의 경우 북한인권 관련 자료수집 등을 위해 편성한 3,400만원 중 1,300만원을 집행(집행률 38.2%)함. 특히, 일반수용비 1,600만원 중 다른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에 1,300만원을 사용하여 실집행이 260만원에 불과하였음. ○ 국외여비도 동 '정보수집 및 문헌조사'에서 585만원, 다른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에서 1,413만원을 각각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반복되는 사업 미집행과 이로 인한 불용은 향후 예산 편성의 신뢰성 저하 및 재정운영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불용을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영상' 북한인권보고서 제작 부적정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2135-303)	주의 및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조사결과 활용'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영상' 보고서를 제작하는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2억 1,400만원)을 7,000만원 초과한 2억 8,400만원이 집행(집행률 132.7%)됨. ※ 영상보고서 제작, 종합보고서 추가 발간 등은 당초 국회 승인 예산에 없었고,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일반수용비, 임차료, 국내여비, 하나원 기본경비 등을 세목조정 또는 자체전용함. ○ 보고서의 자료 수집이 대부분 탈북민 인터뷰 등에 의존하고 증언 내용에 큰 차별성이 없어 매년 발간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국회의 승인 없는 신규사업 추진 및 이로 인한 잦은 세목조정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통일부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간물 종류, 부수, 매체 활용 등 충실한 계획을 통해 필요한 사업비를 정규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할 것(제도개선) ○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주기, 발간 형태(책자, 요약본, 영상 등)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9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인권재단 운영(2135-304)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북한인권 실태조사,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 시행일(2016.9.4.)에 맞춰 재단이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재단 이사 구성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편성된 출연금 전액이 불용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재단이 조속히 출범되어 예산 집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출범 후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20	**당초 편성 목적 외 소송경비 집행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2135-305)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인도지원 정책개발’은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의 체계화 및 인도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역량강화 사업인데, 당초 예산은 전문가 자문과 정책협의에 필요한 사례비 등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남북협력기금 교부결정 취소청구 소송(2024.11.)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으로 1,100만원이 집행되어, 당초 예정한 정책자문 및 협의를 위해 집행된 금액은 800만원에 불과함. ○ 정책자문 및 전문가 간담회 등 본래의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아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편, 기관의 경상적 경비(법무대응 경비)를 정책개발 사업비에서 지출함으로써 사업비와 경상비의 구분 사용 원칙을 약화시킨 선례가 되었음. ○ 향후에는 불가피한 소송 대응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무대응 경비 등 해당 목적으로 편성·운영되는 예산비목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봄.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경상경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집행부진 부적정 및 실제 추진 가능한 대안의 적극적 발굴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2135-305)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동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1억 5,400만원 중 7,9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은 불용됨. - 내역사업 ‘인도지원 정책개발’은 2,200만원 계획 대비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내역사업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은 1억 4,200만원 계획대비 6,000만원이 집행(집행률 42.3%)되어 실적이 저조함, ○ 통일부는 동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로 북한의 국경 봉쇄 등 대외여건 변화로 인해 대면 행사를 축소하고, 국제기구와의 실무면담을 화상으로 대체하는 등 국외출장 경비를 절감한 것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통일부가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국내외 정세 및 인도지원 여건에 대한 수요예측 및 계획을 미흡하게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부 자체평가에서도 북한 내 유엔기구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부로부터의 인도지원 접근이 제한되는 등 북한 내 실질적 인도주의 활동 여건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기조 위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임.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사업의 예산집행 부진 및 변경집행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을 적극 발굴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명시 등 사전 검증체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135-306)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국제협력·문화예술·공론화 등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일부는 공모과정에서 자부담이 있는 단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민단단체의 자부담 없이도 1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민간보조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 정책상 장려를 위해 지원’하고, 민간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율적 수행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2024년 사업평가 ‘미흡’ 단체가 2025년 사업자로 재선정되거나, 허위 출장내역 작성, 소재지 불분명 또는 대북전단 옹호 등 문제적 단체 지원, 결과보고서 누락 등 다수의 부정·부실 사례가 확인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조사나 징계, 제도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보조 시 자부담 비율 및 규모에 따른 가점부여 등 사전검증체계를 도입하고, 자부담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및 사후 확인을 병행하는 등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 통일부는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는 등 문제 단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민화협, 민통 등 국고보조금 지정 지원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2135-306)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통일부는 민간의 통일준비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대표적 통일운동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과 민족통일협의회(민통)을 통해 민간통일운동 활성화를 추진해왔으나, 2024년부터 전(全) 민간단체 대상 공모로 지원방식이 변경됨. ○ 2023년까지 민화협과 민통에 지원되는 금액은 8.97억원이었으나, 지원단체가 2024년 6곳, 2025년 8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 지원금액이 5억원으로 줄어들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민간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해 두 단체(민화협, 민통)에 지정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4</td><td rowspan="3">기념관
운영예산의
연례적 세목조정
등 변경집행
부적정</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2137-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통일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 ‘기념관 운영’은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집행을 보면 세목조정으로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초과집행되었음.
< 2024년도 내역사업 ‘기념관 운영’의 세목조정 내역 >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날짜)</th><th colspan="2">~에서</th><th rowspan="2">금액</th><th colspan="2">~으로</th><th rowspan="2">이·전용 등 사유</th></tr>
<tr><th>세부사업 명
(사업코드)</th><th>목-세목
코드</th><th>세부사업 명
(사업코드)</th><th>목-세목
코드</th></tr>
<tr><td rowspan="2">세목조정
(2024.10.23.)</td><td rowspan="2">납북자기념관 운영
(2137-301)</td><td rowspan="2">210-02</td><td rowspan="2">29</td><td rowspan="2">납북자기념관 운영
(2137-301)</td><td>210-01</td><td>특별전시 개편 관련 홍보물 제작(2,300만원)</td></tr>
<tr><td>210-09</td><td>전시관 온수탱크 시설 보수(600만원)</td></tr>
<tr><td>세목조정
(2024.12..5.)</td><td>납북자기념관 운영
(2137-301)</td><td>210-02</td><td>3</td><td>납북자기념관 운영
(2137-301)</td><td>210-09</td><td>노후 차량 수리
(300만원)</td></tr>
</table>
자료: 통일부

○ 최근 3년간, 기념관의 공공요금 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면, 매년 공공요금을 일반수용비 등 다른 항목으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고 있는 바, 항목별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공공요금에서의 세목조정이 반복되는 것은 본래 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할 때 지양할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통일부는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에서 세목조정 등 변경집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년도 실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예산에 없던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전용을 통한 추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통일부는 2024년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동 사업은 관련 예산이 사전에 미편성되어 있던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2337-302) 사업 등에서 전용 및 세목조정 등을 통해 총 5억 3,401만원 예산을 마련하여 집행하였음. ○ 또한, 2024년 5월 21일 기념일 규정 개정 후 7월 14일에 동 행사를 개최한 상황을 감안하면, 행사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행사의 기획·운영 전반에 걸쳐 체계적 수행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봄.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대외적 파급력과 정책적 의미가 큰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국회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 본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26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국내정착을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2331-302)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정착금 지급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학업기회 부여와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률이 2022년 99.5%, 2023년 83.6% 및 2024년 72.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25년 5월말 기준 정착금 지급 프로그램 집행률은 24.3%로, 2024년 5월말 집행률 23.9% 대비 0.4%p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정착자산형성 단위사업은 오히려 2024년 5월말 집행률(30.4%) 보다 5.9%p 하락한 집행률(24.5%)을 보이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금 프로그램을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다른 요인들(예: 신규 가입을 지체시키는 요인, 실질적인 지원 내용에 대한 불만족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새로운 정책 대상자들에게 제도개선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동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국내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7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취업·창업 대책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2331-302)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2024년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4%p 감소하고, 실업률이 1.8%p 증가하는 등 경제적 취약성이 증가한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취업·창업 대책을 모색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여성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대책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취업·창업 대책 및 생계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남북하나재단 운영 각 사업의 실제 수요와 집행가능성 분석 후 예산 편성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2331-302)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결산잉여금 규모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결산잉여금은 2022년 28억 600만원 대비 약 50%(14억원)가 증가한 42억 600만원에 달하였음. ○ 이는 해당 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그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에 비례하여 남북하나재단의 사업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시정요구사항	○ 향후 통일부는 남북하나재단의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각 사업의 실제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 또한 통일부는 남북하나재단의 결산잉여금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회계연도 말 정부출연금 교부 시 그 집행가능성을 살펴 교부액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정착금 지급 관련 반복적인 집행률 저조 및 예산 편성의 합리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2337-301)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 의지 제고 등을 위해 정착기본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187억 5,700만원 가운데 57.1%인 107억 400만원이 집행되고, 80억 5,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입국 인원은 총 236명으로 전년도(196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예산 집행률은 60% 미만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는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 수료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예산 편성 시 예측치 5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 및 향후 추이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예산집행 추세를 예산 편성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예산불용을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30	하나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2337-302)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교육 및 사회적응을 담당하는 주요 시설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 ○ 그런데 2024년도 하나원의 전기요금 집행 과정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하나원 교육훈련 사업의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에서 세목 조정을 통해 약 6,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충당한 것으로 확인됨. ○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이 7차례에 걸쳐 누적 약 60%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여 당초 편성된 범위 내에서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매년 반복적으로 세목 조정을 통해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은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계획성을 저해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하나원 필수 공공요금의 경우 가격 변동과 집행 실적을 사전에 면밀히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31	신규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통일부는 국회의결 내용과 다른 내역사업 신설 후, 회계년도 개시 약 40일 만에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사업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연수 예산 4억 2,700만원을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사업으로 내역변경하였음.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므로 학교 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세부사업과 다른 정책대상(예: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사업 추진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추진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으로 내역변경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드는 행정적 노력과 부담을 회피하고 기존의 틀 안에서 안주하려는 소극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	○ 향후 통일부는 신규 예산 편성시 새로운 정책대상 발굴 등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편성된 예산이 소극적·편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32	통일정책지도자 과정 현장위주 프로그램 운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통일부는 2024년 통일정책지도자 과정을 통해 65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 3억 3,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함. -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정책지도자 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 중점사항과 맞지 않는 현장 방문에 458만원의 예산을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통일정책지도자 과정 현장 방문 및 시찰일정이 본 프로그램의 운영취지에 맞도록 현장위주로 진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33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비 전용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2024년 9월 30일 통일교육 그림동화기반 실감형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용역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용역비 1억원을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였음. ○ 통일부가 사업의 필요성만을 근거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용 요건인 '시급성'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시정요구사항	○ 향후 통일부는 예산 수요에 대한 예측력을 강화하고,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전용을 통한 집행을 최소화할 것		
34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예산 편성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학교 통일교육 강화(5031-308)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통일부는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예산 2,000만원을 2023년 및 2024년에 전액 집행하지 아니하였음. ○ 예산은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는 예산 수요 중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며, 동 내역사업 일반용역비처럼 사업수행방식이 변경되어 집행 수요가 사라진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함.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한정된 국가 예산이 집행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관행적 예산 과다 편성 후 불용 방지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남북협력기금 - DMZ 평화적 이용(3040-405)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DMZ 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은 DMZ 통합시스템 운영·관리 및 콘텐츠 현행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통일부는 2024년 「DMZ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획액 7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4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8,700만원은 불용하였음. ○ 통일부는 「DMZ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소요경비가 4억 8,3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어도 2023년 10월 5일 이전에 인지하였음에도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를 감액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소요액을 과다편성(7억 6,100만원)하여, 나머지 금액 2억 8,700만원이 불용되는 결과를 초래함.	
		시정요구사항	○ 향후 통일부는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관행적 예산편성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36	유지비용 최소화 방안 등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남북협력기금 - DMZ 평화적 이용(3040-405)	제도개선	통일부
		지적사항	○ 판문점 견학 통합 운영 내역사업은 2023.12.1. 이후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음에도 견학시스템 유지관리비, 공무직 인건비, 버스임차료 등 상당액의 고정지출이 발생하고 있음. ○ DMZ 평화올레길, 세계평화공원 조성 내역사업 등은 환경영향평가, 남북합의 등 사전 절차 미비로 집행이 지연되어, 다수 사업에서 전액 불용 사례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장비·시설 등 유지비용 최소화 방안 및 대체활용 계획을 마련할 것 ○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은 사전절차(환경평가·남북합의 등)를 충실히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 개선할 것 ○ 장기간 지연·불용되는 사업은 단계별 점검·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예산을 감액하거나 구조조정할 것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제도 주기적 점검 및 현행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제도개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적사항	○ 국가재정법령은 예산집행심의회를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사항으로는 당해 중앙관서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 ○ 그런데 민주평통은 동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원 수를 과소(기준: 7인 이상→실제 운영: 5인 이상)하게 운영하였고, 외부 위원 선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심의사항도 통일부 등 다른 중앙관서와는 달리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였음(2024년 12월 31일 기준).		
		시정요구사항	○ 민주평통은 예산심의회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내부통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국가재정법령 등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제도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화할 것 ○ 민주평통은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 기능을 약화시켜 운영한 측면이 있는 바, 향후 통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을 기울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사업수행방식 전환 사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 실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자문위원 역량강화(1131-300) 등]	제도개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적사항	○ 민주평통은 2022년 자문위원 역량강화(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등의 사업수행방식을 지역조직 수행방식(민간경상보조비 교부방식)에서 민주평통 직접수행 방식으로 전환 후, 사업수행 실적이 크게 감소함. ○ 사업수행방식 전환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행방식이 전환된 사업별로 그 성과 등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민주평통은 전환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와 같은 분석이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민주평통은 사업수행방식을 전환한 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별로 그 전환이 해당사업의 추진체계 및 양적·질적 성과 등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하여 체계적·종합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해당 사업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3	**국내 지역회의 참석률 제고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문회의 운영(1031-300)	제도개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적사항	○ 내역사업 국내·해외 지역회의 사업은 지역회의별로 활동방향 결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2024년에는 국내 지역회의별로 지역회의 18회, 해외 지역회의는 미주지역과 유라시아지역을 나누어 국내에서 2회 개최하였음. ○ 2024년 지역회의의 참석률을 살펴보면, 국내 18개 지역회의의 평균 참석률은 49.5%에 그침. 이는 사업 성과목표 66% 대비 미달한 수치로서, 제19기 67.2%, 제20기 53.0%에 비해서도 더 낮아진 수치이며, 특히, 지역대표인 지방의회 의원과 청년위원의 참석률이 각각 18.6%, 38.3%로 저조하게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민주평통은 자문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국내 지역회의 프로그램 개선, 다수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 일정 조기 확정 및 안내 등 국내 지역회의의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예산 과소편성 및 과다집행 문제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문회의 운영(1031-300)	제도개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적사항	○ 내역사업 국내·해외 지역회의 사업은 국내 17개 시·도, 이북5도 및 해외 5개 등 총 23개 지역회의를 개최하는 사업임. 동 내역사업 중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1,950만원을 편성한 후 7,67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편성액의 약 4배를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 그런데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의 과소편성 및 과다집행 사례는 최근 개최된 지역회의(2020년 및 2022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민주평통은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예산을 편성할 때 과거 집행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반복적인 예산 과소편성 및 과다집행 문제를 해소할 것		
5	동일한 성격의 경비 혼용 집행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문위원 역량강화(1131-300) 등	주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적사항	○ 내역사업 평화통일자료 지원은 자문위원에게 영상자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영상자료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 비목(210-01)과 일반용역비 비목(210-14)으로 혼용하여 집행하였음.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영상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민주평통은 불가피한 소규모의 긴급한 소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성격의 경비가 혼용 집행되지 아니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을 정비하여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통일공감 사업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1131-302)	제도개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적사항	○ 내역사업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은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전 공유를 통해 건전한 통일관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함. 2024년 청소년 평화통일공감 사업은 통일골든벨, 찾아가는 통일퀴즈 원정대, 일반 청소년 사업의 3가지 내내역사업으로 실시되었음. ○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일골든벨은 청소년이 알아야 할 통일・안보・역사・북한인권 등 전문가가 출제한 문제를 국내와 해외 청소년들이 경쟁을 펼쳐 입상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됨. - 최근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통일골든벨과 KBS 도전 골든벨과 연계한 결승대회가 중단되었으며, 입시 중심 고교 학사 운영에 따라 학교의 협조도 어려워졌음. - 또한 현재의 퀴즈 형태 사업은 지식 전달 위주로 청소년들의 상향식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지난해에는 출제 문항별 분포에 관한 논란도 제기된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민주평통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 현재 민주평통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은 단순 지식 전달 위주의 사업이 아닌 쌍방향 소통과 적극적 참여가 확보될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을 전환할 것		

라. 재외동포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과도한 예산조정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주의	재외동포청
		지적사항	○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의 반복적인 조정이 발생하였고, 특히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5000)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음 ○ 과도한 예산조정은 국회의 예산 통제권 약화 뿐만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 저하, 편법 집행 가능성 등의 문제점로 이어질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재외동포청은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용 등 예산조정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		
2	재외동포 긴급 지원 예산의 집행 적정성 및 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5033-302)	제도개선	재외동포청
		지적사항	○ 일반적으로 자산취득의 성격에 해당하는 물품을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의 편성 비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서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재외동포청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과목 성격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하고, 예산의 목적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연구용역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5034-301)	제도개선	재외동포청
		지적사항	○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구용역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점에 추진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시기적 부적절성으로 인해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재외동포청은 연구용역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수요 대비 과다 편성된 소송예산의 불용 해소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7121-301)	제도개선	재외동포청
		지적사항	○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편성된 2억원 전액이 불용되었고, 해당 예산이 당초 계획에 없었던 일반용역비와 일반연구비로 일부 전용되어 집행된 것은 소송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임		
		시정요구사항	○ 재외동포청은 소송의 발생 가능성 및 예상 소요 수준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의 계획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것		

3. 시정요구사항(예비비)

- 해당사항 없음

4. 부대의견

가. 외교부

○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 현안의 논의·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나. 통일부

○ 통일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와의 정책협의 활성화 등을 통해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

○ 통일부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남북관계에서의 전략적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러시아 통일주재관 직위 복원을 위해 노력한다.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재외동포청

- 해당사항 없음